2024.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검토보고(부처별III)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

CONTENTS

외 교 통 일 위 원 회

❖ 외교부 ····· 3

Ⅰ. 개 관 ····· 3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3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6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8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9

Ⅱ. 사업별 검토 ····· 11

【일반회계】 ····· 11

<총 괄> ····· 11

1.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사업: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과 종합기본계획상의 중점협력국 연계 필요 ····· 11

<세 입> ····· 14

2. 건물대여료: 외교타운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세입 확대 노력 필요 ····· 14
3. 변상금 및 위약금: 수납실적을 반영하여 변상금 및 위약금 세입예산 편성 필요 ····· 18

<세 출> ····· 20

4. 재외공관 현장실습원 파견: 재외공관 경제외교 현장실습원 사업 재검토 필요 ·· 20

5.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신규): 면밀한 준비일정 수립 필요 ····· 25

6.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대체 매커니즘 운영 사업(신규): 향후 전문가 패널 대체 매커니즘의 공신력 제고 방안 모색 필요 ····· 28

7. 2025 APEC 의장국 운영: 회의시설 적시 구축을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및 외교타운 활용 검토 등 필요 ····· 31

8. 동북아 정세분석, 신시장 정세분석: 상용임금 편성을 통한 직제상 사무 수행 재검토 필요 ····· 38

9. 국가별 협력사업(ODA): 취소·중단사업 조정 및 집행부진 사업 적정 소요액 검토 필요 ····· 41

10.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1단계)(신규):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사업과 연계 추진 필요 ····· 51

❖ 통일부 ····· 56

Ⅰ. 개 관 ····· 56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56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59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61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62

Ⅱ. 사업별 검토 ····· 63

【일반회계】 ····· 63

<세 출> ····· 63

1. 글로벌 통일체험 사업(신규): 사업 효과성에 대한 검토 필요 ····· 63
2.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 배포 사업(신규): 사업수요 및 기대효과 검토 필요 67
3. 평화경제특구 운영 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입찰 준비 및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70
4.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 건립 지연 상황을 고려하여 철저한 공정별 사업관리 필요 ····· 73
5.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사업: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별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 ····· 76

【남북협력기금】 ····· 79

<총 괄> ····· 79

6. 일반회계전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사업: 적정 여유자금 규모 검토 필요 ····· 7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83

Ⅰ. 개 관 ····· **83**

1. 예산안 개요 ····· 83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84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85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85

Ⅱ. 사업별 검토 ····· **86**

【일반회계】 ····· 86

<세 출> ····· 86

1. 자문회의 운영 사업: 여성 부의장 및 여성·청년 자문위원 비율 확대 노력 필요 ····· 86

❖ 재외동포청 ····· 91

Ⅰ. 개 관 ····· **91**

1. 예산안 개요 ····· 91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93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94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94

Ⅱ. 사업별 검토 ····· **95**

【일반회계】 ····· 95

<세 출> ····· 95

1.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신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 철저 필요 ····· 95
2.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사업: 사업 추진 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 99
3. 재외동포 국내정착 지원 사업(신규): 교육프로그램 개발 후 사업 진행 필요 ··· 103
4. 재외동포와의 소통 플랫폼 구축 사업(신규): 기존 송출 인프라 활용방안 강구 필요 ····· 107

국 방 위 원 회

❖ 국방부 ····· 113

Ⅰ. 개 관 ····· 113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113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116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120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21

Ⅱ. 사업별 검토 ····· 122

【일반회계】 ····· 122

<세 입> ····· 122

1. 징계부과금: 수납액 증대 노력 필요 ····· 122

<세 출> ····· 125

2. 장비획득 사업: 장기계속사업의 낙찰차액 감액 필요 ····· 125
3. 장병 마약류 검사키트 사업(신규):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 마약류검사비 조정 필요 ····· 129
4. 3군단 마좌리 실전적 과학화 훈련장 사업(신규): 사전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 논의 필요 ····· 132
5. 교육용 상용드론 구매 사업(신규): 사업목적에 맞는 드론 단가 책정 필요 136
6. 국방 사이버보안 지원체계 구축 사업 : 장기계속사업의 낙찰차액 감액 필요 ·· 139
7. 주요기관 교육용 탄약 사업: 전력유지비 성격에 맞는 사업 추진 필요 ····· 142

8. 해군 2함대사 스마트 군항 구축(통신시설) 사업: 장기계속사업의 낙찰차액 조정 필요 ····· 147
9. 입소귀향여비 사업: 집행실적을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150
10. 국제관함식 사업(신규): 과거 해군창설 70주년 행사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153
11. F-35A 주미 군수연락장교 직위 신규편성 사업(신규): 신규 편성 사업의 적정성 검토 필요 ····· 156
12. 국방부장관배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 사업(신규): 행사성 예산의 신중한 추진 필요 ····· 159

【국방·군사시설 이전특별회계】 ····· 162

<세 출> ····· 162

13.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 사업: 의견 수렴을 통한 신중한 사업추진 필요 ··· 162

❖ 병무청 ····· 165

Ⅰ. 개 관 ····· 165

1. 예산안 개요 ····· 165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167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168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68

Ⅱ. 사업별 검토 ····· 169

【총 괄】 ····· 169

1. 병역판정검사·병무행정운영 사업: 병역면탈 예방·단속 및 병역기피자 수사 관련 예산의 통합 운영 검토 필요 ····· 169

【일반회계】 ·····173

<세 출> ····· 173

2. 사회복귀준비금 사업: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173

❖ 방위사업청 ·····177

※ 비공개 (177 ~ 226쪽)

행 정 안 전 위 원 회

❖ 행안부 ·····229

Ⅰ. 개 관 ····· 229

1. 예산안 개요 ····· 229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232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235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36

Ⅱ. 사업별 검토 ····· 238

【일반회계】 ·····238

<세 출> ····· 238

1.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정보화) 사업(신규), AI 행정업무 적용 사업: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238
2. AI기반 안전신고 정보의 과학적 분석서비스 기술개발(R&D) 사업: 과제 협약 체결 지연을 고려한 감액조정 검토 필요 ····· 244
3.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사업(신규): 과거 유사 사업 성과를 고려한 사업추진 필요 ····· 247
4. 부내 정보시스템 통폐합 방안 수립 사업(신규): 시스템 통폐합 계획 수립 후 개별 시스템별 통폐합 실시 필요 ····· 250
5. 한국섬진흥원지원 사업: 연내 집행가능한 규모로 출연금 조정 필요 등 ···· 254
6.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 적정 사업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 258
7. 재난대책비 사업: 당해연도 재난 복구의 차년도 예산 편성 방식의 적정성 검토 필요 ····· 261
8.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사업 효과성에 대한 검토 필요 ····· 264
9.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사업: 국가재정 부담 완화 방안 마련 필요 ····· 270
10. 행정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273
11.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 단년도 공사비 편성 방식 적정성 검토 필요 ····· 276
1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 사업관리 철저 필요 ····· 27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282

<세 출> ····· 282

13.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 28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284

<세 출> ····· 284

14.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집행 부진 및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 ····· 284

❖ 경찰청 ·····287

Ⅰ. 개 관 ····· 287

1. 예산안 개요 ····· 287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290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292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93

Ⅱ. 사업별 검토 ····· 294

【일반회계】 ·····294

<세 출> ····· 294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 사업: 사업 준비 철저 필요 ····· 294
2. 현장장비구입 사업: 저위험권총 구입 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필요 ····· 299
3. 항공 운영비 사업: 최근 보험료 집행을 고려한 조정 필요 ····· 302
4. 차량관리 사업: 불용액 최소화 노력 필요 ····· 305
5.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조사 진술분석전문가 참여 사업: 진술분석전문가 참여실적 제고 필요 ····· 308
6. 국제경찰청장회의 개최 사업(신규): 순환개최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 ····· 311
7. 기타 청사시설 관리 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 집행 주의 필요 ··· 315

❖ 소방청 ·····318

Ⅰ. 개 관 ····· 318

1. 예산안 개요 ····· 318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320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322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22

Ⅲ. 사업별 검토 ····· 323

【일반회계】 ····· 323

<세 출> ····· 323

1.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 구조·구급·상황실 근무자 지원을 위한 사업구조 개선 검토 필요 ····· 323
2. 국립소방병원 건립 : 개원 후 차질없는 의료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 327
3. 전기차 화재대응 진압장비 지원 사업(신규): 무인파괴방수차 도입의 활용성 검토 필요 ····· 330
4. 119빅데이터 분석운영 : 빅데이터 플랫폼의 활성화 노력 필요 ····· 336

❖ 인사혁신처 ····· 339

Ⅰ. 개 관 ····· 339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339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342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344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45

Ⅱ. 사업별 검토 ····· 346

【일반회계】 ····· 346

<세 출> ····· 346

1. 장·단기 국외훈련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국외훈련이 이뤄지도록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346
2. 공무원 재해예방사업 추진 사업(신규): 관련 법령 개정 등 사전 준비 철저 필요 ····· 350

【공무원연금기금】 ····· 354

<지 출> ····· 354

3. 임대주택건립 사업(신규): 사업관리 철저 필요 ····· 35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359

Ⅰ. 개 관 ····· 359

1. 예산안 개요 ····· 359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361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361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62

Ⅱ. 사업별 검토 ····· 363

【일반회계】 ····· 363

<세 입> ····· 363

1. 기타경상이전수입: 선거보전비용 반환금의 철저한 수납 필요 ····· 363

<세 출> ····· 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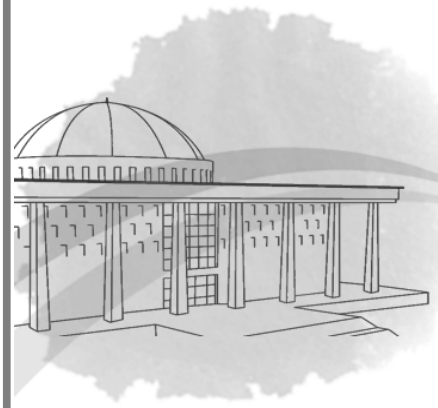
2. 재보궐선거관리 계도홍보 사업(신규): 하반기 유권자 의식조사 감액 조정 검토 ····· 367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70

Ⅰ. 개 관 ····· 370

1. 예산안 개요 ····· 370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371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371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72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외교부 소관 총수입은 3,334억원으로, 전년 대비 599억원(△15.2%) 감소함. 예산은 2,737억원으로 전년 대비 36억원(△1.3%) 감소하고, 기금은 597억원으로 전년 대비 563억원(△48.5%) 감소함.[1)]

[2025년도 외교부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2,773	2,737	△36	△1.3
기 금	1,160	597	△563	△48.5
총수입	3,933	3,334	△599	△15.2

2025년도 외교부 소관 총지출은 4조 3,194억원으로 전년 대비 1,289억원(3.1%) 증가함. 예산은 4조 2,624억원으로 전년 대비 2,326억원(5.8%) 증가하고, 기금은 5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38억원(△64.5%) 감소함.

문의 : 손재일 예산결산조사관 sonjaeil@assembly.go.kr (02-6788-5676)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외교부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40,298	42,624	2,326	5.8
기 금	1,608	570	△1,038	△64.5
총지출	41,905	43,194	1,289	3.1

나. 예산안

2025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세입예산안은 2,737억원으로 전년 대비 36억원(△1.3%) 감소함.

[2025년도 외교부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2,773	2,737	△36	△1.3
합 계	2,773	2,737	△36	△1.3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외교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4조 2,624억원으로 전년 대비 2,326억원(5.8%) 증가함.

[2025년도 외교부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40,298	42,624	2,326	5.8
합 계	40,298	42,624	2,326	5.8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외교부 소관 1개 기금(국제교류기금)의 수입계획안은 597억원으로 전년 대비 151억원(△20.2%) 감소함.

다만,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계획에 따라 412억원이 순감하여, 외교부 전체 기금 수입계획은 전년 대비 563억(△48.5%) 감소함.

[2025년도 외교부 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국제교류기금	748	748	597	△151	△20.2
국제질병퇴치기금	412	412	-	△412	순감
합 계	1,160	1,160	597	△563	△48.5

주1)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2025년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2025년도 외교부 소관 1개 기금(국제교류기금)의 지출계획안은 5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억원(△17.0%) 감소함.

다만, 질병퇴치기금 폐지계획에 따라 921억원이 순감하며, 외교부 전체 기금 수입계획은 전년 대비 1,038억(△64.5%) 감소함.

[2025년도 외교부 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국제교류기금	687	687	570	△117	△17.0
국제질병퇴치기금	921	926	-	△921	순감
합 계	1,608	1,613	570	△1,038	△64.5

주1)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2025년 질병퇴치기금 폐지에 따라 2024년 글로벌국제질병퇴치 사업(730억)은 2025년 일반회계 국제기구 사업분담금(글로벌 보건기여/482억)으로 이관, 2024년 국제기구협력국제질병퇴치 사업(164억)은 2025년 일반회계 국제기구협력(ODA) (34억)으로 이관, 2025년도 UNITAID, GAVI 기여금은 정부안 미편성으로 일반회계 인도적지원(ODA)-해외긴급구호 사업으로 추진 검토 중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외교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1개(68억 5,4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사업은 우리정부 최초 중앙아시아와의 정상급 국제회의인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전략적 중요성이 큰 중앙아시아지역과의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심화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68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외교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계획안)
[일반회계]		
1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6,854
총지출		6,854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외교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국제개발협력(ODA)’, ‘국제기구 분담금(ODA)’, ‘2025 APEC 의장국 운영’ 사업 등 총 22개임.[3)]

[2025년도 외교부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유엔 정규예산분담금 납부(ODA)	107,284	123,580	16,296	15.2%
2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301,614	383,253	81,639	27.1%
3	MIKTA 중견국 외교	160	244	84	52.5%
4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1,115	3,005	1,890	169.5%
5	몽골(ODA)	17,122	25,909	8,787	51.3%
6	네팔(ODA)	9,438	16,855	7,417	78.6%
7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62,841	87,598	24,757	39.4%
8	미얀마(ODA)	950	2,354	1,404	147.8%
9	가나(ODA)	15,943	21,533	5,590	35.1%
10	콜롬비아(ODA)	7,306	14,059	6,753	92.4%
11	볼리비아(ODA)	8,024	18,500	10,476	130.6%
12	중남미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32,676	47,017	14,341	43.9%
13	우크라이나(ODA)	700	9,422	8,722	1,246.0%
14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ODA)	128,756	143,026	14,270	11.1%
15	ODA 선진화(ODA)	812	1,271	459	56.5%
16	영사서비스 지원	234	720	486	207.7%
17	2025 APEC 의장국 운영	2,460	100,830	98,370	3,998.8%
18	양자 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5,381	7,716	2,335	43.4%
19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	1,000	1,390	390	39.0%
20	재외공관 인건비	284,188	299,243	15,055	5.3%
21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208,655	224,367	15,712	7.5%
22	외교업무 디지털 혁신(정보화)	2,666	13,254	10,588	397.1%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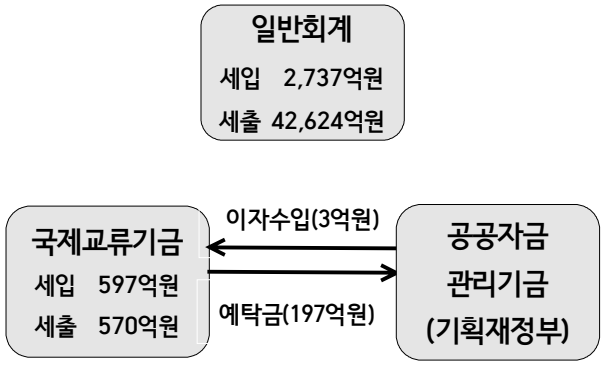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외교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국제교류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국제교류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97억원을 예탁할 계획임.

[외교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사업 중 ODA 사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임. 외교부 전체 예산안 4조 3,194억원 중 ODA 사업(국제기구 분담금 포함)이 2조 8,488억원으로 66.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 대비 1,453억원(5.1%) 증가하였음.

외교부는 외교정책에 부합하는 개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시민사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공적개발원조 사업 예산을 확대하였으며, 우리나라 개최 정상회의의 성과 제고를 위한 관련 국제기구 재정기여 확대 및 2년차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평화 달성 노력 기여를 위해 국제기구 분담금을 증액 편성하였음.

또한, 외교부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의장국 활동의 적극적인 수행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지속 확대를 위해 ‘2025 APEC 의장국 운영’ 사업에 983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앙아시아와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 강화를 통한 전략지역과의 외교 지평 확대를 위해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사업에 6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반면, 질병퇴치기금 폐지 계획으로 인해 질병퇴치기금 수입계획안은 412억, 지출계획안은 921억이 각각 순감하여, 2025년에는 미편성되었음.

2025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건물대여료’의 경우 외교타운 민간임대 공간 중 일부가 장기간 공실인 상황이고, 기존 임대업체도 유상사용허가 기간이 종료한 후 이를 갱신하지 않은 상황으로 건물대여료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외교부는 세입 확보 방안 모색 및 공실을 활용한 세출 예산 절감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둘째, ‘재외공관 현장실습원 파견’의 경우 경제외교 현장실습원 파견 사업은 사업계획이 목적 달성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대체 매커니즘 운영’의 경우 장기적으로 전문가 패널 대체 매커니즘의 공신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넷째, ‘2025 APEC 의장국 운영’의 경우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관련 시설물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고, 외교타운의 공실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1단계)’의 경우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대국민 서비스 관련 사항을 범정부 인공지능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고, 데이터센터 대사관 구축 계획의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함.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총 괄>

1.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사업: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과 종합기본계획상의 중점협력국 연계 필요

가. 개 요

외교부의 2025년도 ODA 예산안 중 국가별 협력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694억 4,600만원(8.8%)이 증액된 8,586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는 전년 대비 9억 6,700만원(0.3%)이 증액된 3,075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외교부 공적개발원조사업 기능별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B)	증감 (B-A)	
		본예산(A)	예산 현액	집행액			증감율 (B-A)/A
국가별 협력 (39.8%)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275,641	275,641	223,301	324,586	48,945	17.8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306,614	306,614	254,683	307,581	967	0.3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73,671	73,671	60,571	101,118	27,447	37.3
	중동CIS지역 국가원조	133,274	133,274	112,461	125,361	△7,913	△5.9
	소계	789,200	789,200	651,015	858,646	69,446	8.8
인도적지원(ODA) (37.3%)		740,111	740,111	532,938	677,503	△62,608	△8.5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ODA) (6.5%)		128,756	128,756	103,005	143,026	14,270	11.1
글로벌연수, 국제기구, 신성장, 민관협력 등(12.2%)		241,896	241,896	156,108	258,218	16,322	6.7
협력사업지원, 전략적 협력강화 등 (3.4%)		67,260	67,260	48,903	67,790	530	0.8
ODA 선진화 (0.04%)		812	812	469	1,271	459	56.5
국제기구초급전문가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0.7%)		14,115	14,115	100	16,072	1,957	13.9
합 계		1,982,150	1,982,150	1,492,538	2,022,526	40,376	2.0

주) 2024년 8월 말 기준, 국제기구 분담금 중 ODA로 계상되는 분담금과 국제질병퇴치기금의 ODA 예산 제외

나. 검토의견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의 아프리카 지역 중점협력국은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과 종합기본계획상의 중점협력국이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 제11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심사·의결하고 있음. 현재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계획(2021~2025)이 수립되어 있음.[4)]

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과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매년 심사·의결하여 확정함. 법 제14조제7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난 10여 년간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상위의 기본계획과 중점협력국에 대한 전략문서인 하위의 ‘국가협력전략(CPS)’만 있었고, 아프리카·중남미·아시아 등에 대한 지역전략은 부재하였음.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신흥시장·투자지역으로 부상중인 아프리카와의 전략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2023년 2월)로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을 마련함.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에 따르면, 지원대상을 최저개발국·취약국, 중소득국, 고성장 저소득국 등 4개로 분리, 발전수준에 맞는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아프리카의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달성 지원과 중장기 협력 기틀을 마련하고 그 이행전략으로 중점협력국과 분야별 협력거점을 중심으로 지원하여 성과를 확산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인 예산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기본계획상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은 가나와 이집트를 제외한 5개국이 최저개발국으로서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과 기본계획상의 중점협력국이 연계되지 않고 있어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상의 국가들에 대해 예산지원이 어려우므로 전략 수립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음.

따라서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상 아프리카 중점협력국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

4)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계획(2021~2025) 상 중점협력국 및 중점협력분야]

지역	중점협력국	중점협력분야
아시아	베트남	공공행정, 교육, 보건위생, 환경, 교통
	인도네시아	물관리 및 보건위생, 공공행정, 환경보호, 교통
	캄보디아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통, 교육, 지역개발
	필리핀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지역개발, 기후환경, ICT
	방글라데시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공공행정
	몽골	교육, 공공행정,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통, 기후환경
	라오스	물관리, 보건위생, 에너지, 지역개발, 교육
	네팔	지역개발, 교육, 물관리 및 보건위생, 에너지
	스리랑카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지역개발, 교통
	파키스탄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에너지, 지역개발
	미얀마	교통, 에너지, 지역개발, 공공행정, 교육
	인도	지역개발,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환경, 그린에너지, ICT
아프리카	**가나**	지역개발, 보건, 교육, 에너지, 교통
	에티오피아	교통·에너지, 지역개발,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르완다	농업, 교육, ICT
	우간다	보건위생, 지역개발, 교육
	탄자니아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통, 교육, 에너지, 지역개발
	세네갈	지역개발 및 농림수산, 교육, 보건의료, 교통
	이집트	교통, 환경·에너지, 공공행정, 교육, 통신
중동-CIS	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 지역개발
	키르기스스탄	환경, 농림수산, 공공행정, 보건위생
	우크라이나	교통, 산업, 보건위생, 공공행정
	타지키스탄	산업, 교육, 에너지, 농림수산, 교통
중남미	콜롬비아	산업, 교통, 평화, 지역개발
	페루	공공행정, 환경보호, 교통, 보건위생
	볼리비아	지역개발, 보건위생, 교통, 에너지
	파라과이	공공행정, 교통, 보건, 지역개발

자료: 외교부

[유엔 최저개발국(2024년 9월 현재)]

지역	중점협력국
아프리카 (45)	앙골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 니제르, 르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토고, 우간다, 탄자니아, 잠비아

주) 밑줄은 중점협력국을 의미함
자료: 유엔 홈페이지

<세 입>

2. 건물대여료: 외교타운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세입 확대 노력 필요

가. 개 요

‘건물대여료’ 는 외교타운 내 사무실 유상사용허가에 따른 건물사용료를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300만원(△7.7%)이 감액된 3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음.[5)]

[2025년도 건물대여료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건물대여료	429	396	△33	△7.7

나. 검토의견

외교타운 민간임대 공간 중 일부가 장기간 공실인 상황이고, 기존 임대업체도 유상사용허가 기간이 종료한 후 이를 갱신하지 않은 상황으로 건물대여료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외교부는 세입 확보 방안 모색 및 공실을 활용한 세출 예산 절감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020년 1월 외교타운(서초구 양재동 소재)[6)]에 대한 관리권이 외교부로 환수되어 국립외교원에서 외교타운을 직접관리 중이며, 외교타운 내 민간임대에 대해 발생하는 건물임대료를 세입으로 편성하고 있음.

5) 일반회계-건물대여료(51-512)(국립외교원)

6) 외교타운 시설현황: (건립연도) 1996.9.23. / (층수) 지하 2층, 지상 12층 / (부지면적) 9,764㎡ / (연면적) 27,338.79㎡

[최근 5년간 건물대여료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0	-	-	-	364	364	100	100	-	-
2021	-	-	-	358	358	100	100	-	-
2022	-	-	-	329	329	100	100	-	-
2023	390	-	390	249	249	64	100	-	-
2024	429	-	429	-	-	-	-	-	-

주) 2024년 9월 말 기준
자료: 외교부

현재 외교타운 내 민간임대 예정공간은 6개실 총 914.51㎡이고, 이 중 305·306호(2개실)이 장기간 공실인 상황으로 2023년 건물대여료 세입이 전년 대비 8,000만원(△24.3%) 감소한 데 이어, 2024년 1월에 102호를 사용하던 업체의 유상사용허가가 종료됨으로써 2024년 9월 말 현재 세입이 전무한 상황임.

[외교타운 내 민간임대 예정공간 현황]

호수	층	면적	비고
102호	1층	135.56㎡	카페 라크리마 유상사용허가 종료(2024. 1. 17.) 이후 공실
201호	2층	36㎡	아포스티유 번역공증 유상사용허가 취소(2023. 7. 29.) 이후 공실
202호	2층	220㎡	법무법인 한미 유상사용허가 취소(2023. 7. 29.) 이후 공실
304호	3층	146.4㎡	법무법인 센트럴 유상사용허가 취소(2023. 8. 18.) 이후 현재 임시로 국립외교원 경제안보연구센터에서 사용 중
305·306호	3층	376.55㎡	민간임대 예정공간(2020년 이후 공실)
면적 합계			914.51㎡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외교부는 민감임대 공간을 사용하던 업체의 유상사용허가 취소 및 종료에 따라 세입 확보를 위하여 온비드 공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7] 이와 함께 기존에 외교 관계 업종만 입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던 것을 정부기관 관계 업종으로 완화하고, 사회적 기업에 무상사용허가를 하는 방안(102호), 재외동포협력센터 등 공공기관에 사무공간으로 무상사용허가를 하는 방안(305·306호)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음.[8]

7) 2023년 총 35회차, 2024년 총 15회차 공고

8)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료를 면제하여 사용허가 가능

「국유재산법」

한편 2022부터 2024년 9월까지 외교부가 구성한 임시조직 현황을 보면 약 30인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것을 볼 수 있음.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청사 배정 면적이 1인당 약 8㎡인 것을 고려하면, 외교부가 검토 중인 무상사용허가 방안 외에도 외교타운의 공실을 임시조직의 사무실로 사용함으로써 세출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2022~2024년 9월 외교부 임시조직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임시조직명	활동기간	인원	주요업무	임차사무실 규모	월 임차료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2024.6.~	8	2024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준비 및 개최 지원	정부청사 서울 본관 사무실 이용 중	-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제2차 고위급회의 준비기획단	2023.12.~	16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준비 및 기획	445.167㎡	15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2023.9. ~2024.7.	-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기획, 준비 이행 등 업무	427㎡	13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2023.12.~	27*	2025 정상회의 준비 및 개최	675.99㎡	37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2023.7 ~2024.8.	-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행사 준비 및 개최	1,069.48㎡	39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2023.1. ~2023.8.	18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준비 및 개최 관련 업무	326㎡	11

주) * 2024. 9. 25. 기준 현원(2024. 9. 20. 훈령 개정에 따라 행안부 승인 총원은 44명으로 관계부처 등 협의를 거쳐 발령 절차 진행)
자료: 외교부

따라서 외교부는 민간임대 입찰공고의 유찰 원인을 검토하여 향후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세입 결손을 최소화하고, 이와 함께 무상사용허가를 통한 사회적 기여 방안, 임시조직의 외교타운 공실 활용을 통한 세출예산 절감 방안 등 외교타운 공실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 법령에 따라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

[외교타운 층별 입주 현황]

<table>
<tr><td colspan="7">국립외교원 국제회의장(KNDA 홀)
(12층 전체) / (1,044.90㎡)</td><td>12층</td></tr>
<tr><td colspan="3">한국국제교류재단 데이터센터
(1101~1102호) / (320.27㎡)</td><td colspan="2">외교부 여권과(업무시설)
(1,103)외교부 / (146.4㎡)</td><td colspan="2">한국조폐공사 차세대
전자여권발급 이원화센터
(1104~1106호) / (466.67㎡)</td><td>11층</td></tr>
<tr><td colspan="7">외교부 여권과(업무시설)
(10층 전체) / (1,026.14㎡)</td><td>10층</td></tr>
<tr><td colspan="7">외교부 영사콜센터
(9층 전체) / (1,026.14㎡)</td><td>9층</td></tr>
<tr><td colspan="7">국립외교원 다목적교육관
(8층 전체) / (1,026.14㎡)</td><td>8층</td></tr>
<tr><td colspan="7">국립외교원 외국어교육관
(7층 전체) / (1,026.14㎡)</td><td>7층</td></tr>
<tr><td colspan="7">외교부 여권과(교육센터 등)
(6층 전체) / (1,045.90㎡)</td><td>6층</td></tr>
<tr><td colspan="4">국립외교원 국민외교아카데미관(502~505호)
/ (631.90㎡)</td><td colspan="3">舊 외교부 국민외교센터
(501·506호, 업무시설)
/ (414.00㎡)</td><td>5층</td></tr>
<tr><td colspan="5">한·아프리카 재단
(401~404호) / (669.35㎡)</td><td colspan="2">재외동포협력센터
(405~406호) / (376.55㎡)</td><td>4층</td></tr>
<tr><td rowspan="2">연결통로</td><td>국립외교원
운영지원과
시설지원팀
(301호) /
(207.00㎡)</td><td>국립외교원
운영지원과
(302호) /
(169.55㎡)</td><td>국립외교원
외국어교육과
(303호) /
(146.40㎡)</td><td>경제안보
연구센터
(304호) /
(146.40㎡)</td><td>민간임대
예정공간
(305) /
(169.55㎡)</td><td>민간임대
예정공간
(306) /
(207.00㎡)</td><td>3층</td></tr>
<tr><td>민간임대 예정공간
(201호) / (36㎡)</td><td>민간임대
예정공간
(202호) /
(220㎡)</td><td colspan="3" rowspan="2">로 비</td><td>국립외교원 시설지원팀
관리공간
(203~205호) / (329.4㎡)</td><td>2층</td></tr>
<tr><td>여권과 발급팀
(101호) /
(281.85㎡)</td><td>민간임대
예정공간
(102호)
/ (135.56㎡)</td><td>국립외교원 시설지원팀
관리공간
(103~105호) / (197.37㎡)</td><td>1층</td></tr>
<tr><td colspan="7">주차장(3,650.18㎡), 중앙감시실(94.44㎡)</td><td>B1층</td></tr>
<tr><td colspan="7">주차장(3,650.18㎡), 기계실(842.14㎡), 전기실(645.70㎡)</td><td>B2층</td></tr>
</table>

3. 변상금 및 위약금: 수납실적을 반영하여 변상금 및 위약금 세입예산 편성 필요

가. 개 요

‘변상금 및 위약금’은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납할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2025년도 외교부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않음.[9)]

나. 검토의견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 수납실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납실적에 근거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2019년 이후 외교부 결산 결과를 보면 매년 변상금 및 위약금이 1억원 이상 수납되고 있으나, 2025년 예산안에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음.

[2019년~2024년 변상금 및 위약금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19	-	-	-	649	136	-	-	513	-
2020	-	-	-	515	126	-	-	389	-
2021	-	-	-	587	198	-	-	389	-
2022	-	-	-	793	404	-	-	389	-
2023	-	-	-	561	518	-	-	43	-
2024	-	-	-	61	18	-	-	43	-

주) 2024년 8월 말 기준

외교부는 변상금 및 위약금은 발생 빈도가 적을 뿐만 아니라 계약 불이행 지체상금 등으로 예산 추계를 할 수 없어 수입예산 편성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임.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17조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도록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10)] 또한 2019년 이후 매년 변상금

9) 일반회계-변상금 및 위약금(57-572)(기획조정실)

및 위약금 수납실적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외교부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고려하여 2025년도 세입예산안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을 과거 5년간 수납액 평균치 등의 방법으로 산출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10)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세 출>

4. 재외공관 현장실습원 파견: 재외공관 경제외교 현장실습원 사업 재검토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은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증진하고 차세대 민간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억 7,300만원(66.5%) 증액된 19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11)]

내역사업인 **‘재외공관 경제외교 현장실습원 파견’**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해외 경제외교 현장 체험 기회 제공 및 현지 경제 동향 조사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예산안은 11억 6,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2)]

[2025년도 재외공관 현장실습원 파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공공외교 역량강화	16,103	15,754	△349	△2.2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1,229	2,335	1,106	90.0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1,162	1,935	773	66.5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5.381	7,716	2,335	43.4
재외공관 경제외교 현장실습원 파견	-	1,167	1,167	순증

11) 일반회계-공공외교 역량강화(2631-403)(공공문화외교국)

12) 일반회계-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3032-401)(양자경제외교국)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이하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 및 재외공관 경제외교 현장실습원 파견(이하 ‘경제외교 현장실습원 사업’) 사업은 우수한 우리나라 청년을 선발하여 재외공관에 파견하는 사업으로, 청년층에 공공외교 및 경제외교 현장체험 기회를 부여하고 해외 진출 및 진로 모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적의 사업임.

외교부에 따르면 경제외교 현장실습원 사업은 개도국 중심으로 파견되어 경제동향 조사 및 기업 지원활동 업무를 보조한다는 점에서 공공외교 사업(문화행사, 한국학 세미나 등)을 보조하는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과 구별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파견 및 재외공관 경제외교 현장실습원 사업 비교]

구분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재외공관 경제외교 현장실습원 파견
사업개요	·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증진하고 차세대 민간 공공외교를 활성화	· 개도국을 중심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해외 경제외교 현장 체험 기회 제공 및 현지 경제 동향 조사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
사업목적	· 청년들에게 공공외교 현장을 체험하고, 해외 진출 및 진로 모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공관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을 지원	· 청년들에게 해외 경제외교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해외 일경험을 지원 · 재외공관이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외교지원‘의 대내·외 인식 제고 · 우리 기업이 해외진출 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 생성량 증가
선발인원	· 100명 내외(2024년 60명)	· 30~40명 내외
활동기간	파견일로부터 6개월	파견일로부터 6개월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 · 19세 이상 34세 이하 · 비자취득 및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자	· 대한민국 국적자 · 19세 이상 34세 이하[1)]
선발기준	〈서류〉 · 어학 성적 · 가점 부여 사항(국가유공자, 취업 취약계층, 지방인재, 사회적 배려 대상자) · 공관 요청사항(컴퓨터 활용 능력, 현지어 구사 등), 자기소개서 등 고려 〈면접〉 · 공공외교 이해도, 인성 및 기초소양, 업무 능력, 어학 능력, 현지 적응력 등 평가 ※ 가점부여사항: 국가유공자, 취업 취약계층, 지방인재, 사회적 배려대상자	· 어학(영어 또는 현지어) 능력 및 논리성 · 전공(경제, 경영 관련) · 경제 관련 경력, 지식 및 자격증 · 경제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경제 관련 지식 · 기본소양 및 태도 등 종합 평가

구분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재외공관 경제외교 현장실습원 파견
지원내역	왕복항공료, 체재비, 비자발급비, 여행자보험, 의료지원비, '국·영문 수료증'	왕복항공료, 체재비, 비자발급비, 여행자보험, 의료지원비, '재외공관 경력증명서'
주요 활동내용	· 재외공관 공공외교 활동 업무 지원 - 재외공관 주관 문화행사, 한국주간 행사, 한국어·한국학 사업, 세미나 등 정책 공공외교 활동 등 - SNS, 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뉴미디어 외교)	· 재외공관 홈페이지 게시용 경제 자료 작성 보조 · 기업지원협의회 개최, 우리기업 지원 현장 방문 등 공관 기업지원 활동 업무 보조
2025년 예산안 산출내역	· 체재비 16억 2,000만원 · 홍보물 제작 1,000만원 · 임차료 500만원 · 선발 및 관리비용 1억원 · 항공임 2억원 · 계 19억 3,500만원	· 체재비 9억 7,200만원 · 홍보물 제작 1,000만원 · 임차료 500만원 · 선발 및 관리비용 6,000만원 · 항공임 1억 2,000만원 · 계 11억 6,700만원
1인당 투입되는 예산	약 1,900만원	약 2,900만원

주) 청년기본법 준용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 2024년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모집공고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첫째, 외교부는 타 기관의 사례를 분석하여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에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파견된 인원은 총 487명이고, 2025년에는 전년 대비 40명을 증원하여 100명을 파견할 계획임.

[2013~2024년도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 파견인원 현황]

(단위: 명)

연도	파견인원	연도	파견인원	연도	파견인원
2013	35	2018	34	2023	38
2014	34	2019	30	2024	60
2015	51	2020	8	계	487
2016	95	2021	-		
2017	72	2022	30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세부사업 ‘공공외교 역량강화’의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에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 관련 지표를 작성하고 있지 않으나, 사업 종료 후 현장실습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취업현황을 관리하고 있음.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파견된 총 427명 중 166명이 응답한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66명 중 156명(94%)이 취업을 하였고, 5명(3%)은 대학원에 진학하였으며, 5명(3%)은 대학교에 재학 중임.

외교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이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파견연도별 취업현황 설문조사 결과]

(단위: 명, %)

연도	파견인원(A)	응답인원(B)				응답률 (B/A)
		취업	대학원 진학	대학 재학	계	
2013	35	11	-	-	11	31.4
2014	34	19	-	-	19	55.9
2015	51	30	-	-	30	58.8
2016	95	27	-	-	27	28.4
2017	72	36	1	-	37	51.4
2018	34	11	1	-	12	35.3
2019	30	15	-	-	15	50.0
2020	8	-	-	-	-	-
2021	-	-	-	-	-	-
2022	30	5	1	2	8	26.7
2023	38	2	2	3	7	18.4
계	427	156	5	5	166	38.9

자료: 외교부

그러나 외교부의 설문조사 결과는 전체 응답률이 38.9%에 그쳐 정확한 성과 파악이 곤란함. 또한 당초 사업의 목적인 해외진출 및 진로 모색의 기회 제공과 해당 취업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판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외교부가 제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는 사업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기에 성급한 측면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K-move 스쿨 사업[13]의 연수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취업 여부를 조사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13)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구인기업이 요구하는 어학 및 직무능력, 생활문화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연수) 과정 제공 후 해외취업을 연계하는 사업

[고용노동부 K-move 스쿨 사업 연수인원 및 취업률]

(단위: 명,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수인원(A)	3,577	2,905	2,979	3,239	2,188
취업자 수(B)	2,636	1,241	1,020	1,700	1,707
취업률(B/A)	73.7	42.7	34.2	55.5	78.0
해외소재 한국기업 제외 취업인원	1,794	751	708	1,251	1,297

주) 해외취업지원(1051-304) - K-move 스쿨 사업
자료: 고용노동부

둘째, 2025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경제외교 현장실습원 파견 사업은 사업계획이 목적 달성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제외교 현장실습원 파견 사업은 현장실습원 파견 대상국가를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정하고 있음.

이 사업의 목적은 현지의 경제동향조사를 지원하여 우리기업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와 교역이 많은 국가에서 추진해야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대상국가를 개도국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재외공관의 경제동향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제 관련 지표·통계 등 조사 분석을 위한 자료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거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인터넷 또는 대학·연구소 자료실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이러한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의 확보라는 효과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경제외교 현장실습원 파견 사업계획은 설정한 사업목적 달성에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5.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신규): 면밀한 준비일정 수립 필요

가. 개 요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는 우리 정부 최초 중앙아시아와의 정상급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전략적 중요성이 큰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68억 5,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4)]

[2025년도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	6,854	6,854	-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사업계획안 세부내역]

○ 회의명 :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 시기 및 장소 : 2025년, 한국

○ 주요 일정(안)
- (1일차) 환영 만찬
- (2일차) ▲정상회의 ▲공식 오찬 ▲양자회담 등
- 부대행사 : ▲시민 참여 문화 행사
  ▲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 등 관계부처 부대행사 개최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 관계부처 분야별 약 13개 행사 개최

○ 예산(정부안 기준) : 약 68억 5,400만원

○ 홍보 : 대국민 홍보를 통해 중앙아시아에 대한 인식 제고
- 방송, 유튜브, 인플루언서 등 활용

○ 기대효과
- 에너지·자원 부국으로 최근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와의 호혜적·미래지향적 파트너십 심화
- 2023년 5월 한-태도국 정상회의 및 2024년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이어 중앙아시아와의 정상급 협의체 가동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 강화.

자료: 외교부

14) 일반회계-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1134-402)(동북·중앙아시아국)

나. 검토의견

현재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구체적인 개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지연이 우려되므로, 준비계획을 조속히 수립 완료하여 정상회의 개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입찰공고 유찰 등 지연요인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중앙아시아는 천연가스, 희귀금속 등 부존자원과 성장 잠재력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임. 최근 정부는 2024년 6월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하였고,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는 이 협력 구상의 중점 과제 중 하나임.

외교부에 따르면 2024년 10월 현재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관련 5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참석이 확정되었으나, 개최 일시·장소 및 의제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기획단의 설치·운영은 행안부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후, 2024년 12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는 2025년도 예산을 감안하여 2025년 1월 중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임.

[2024년 6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발표 이후 추진 현황]

일자	내용
2024. 6. 18.	제27회 국무회의「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결과」의결
2024. 7. 10.	동북·중앙아시아국장 주재 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예산 관련 관계부처회의 개최
2024. 8. 27.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예산(68억 5,400만원)이 반영된「2025년도 예산안」국무회의 의결
2024. 11.	제17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2024년 11월) 계기 관계부처 및 중앙아측과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의제·성과사업 등 발굴 및 협의 진행 예정

자료: 외교부

한편 2025년 11월에 있을 APEC 정상회의를 고려하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는 그 이전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준비기획단 출범 후 약 6~8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

2019년 이후 정상회의 개최 관련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된 행사대행용역 및 홍보대행용역 현황을 보면 입찰공고는 통상 12~44일 정도 진행하였고, 행사대행용역 계약은 대체로 행사일의 2~4개월 전에 체결되었음. 이를 고려하면 2025년 1~2월 중에 행사대행용역 등의 계약체결이 진행되어야 6~8월 중에 회의를 개최하더라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임.

[2019년 이후 행사대행용역 및 홍보대행용역 입찰공고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입찰명	예정가격 (계약금액)	공고기간	실제개찰일 (계약체결일)	계약기간	비고
행사 대행 용역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운영 대행 용역	3,300 (2,970)	2023-12-28 2024-01-11 (15일)	2024-01-16 (2024-02-01)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6월 5일 까지	2024-03-18 ~03-20 / 코엑스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행사대행 PCO 용역	21,000 (19,530)	2023-12-04 2024-01-16 (44일)	2024-01-22 (2024-02-16)	계약체결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2024-06-04 ~06-05 / 킨텍스 및 서울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행사대행용역	6,000 (5,550)	2023-01-27 2023-02-14 (19일)	2023-02-19 (2023-03-14)	계약체결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023-05-29 ~05-30 / 청와대 영빈관
	2020년 P4G 정상회의 행사준비대행	5,500 (6,349)*	2020-02-06 2020-02-19 (14일)	2020-02-24 (2020-02-28)	계약체결일로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2021-05-30 ~05-31 / DDP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행사준비대행	3,900 (3,510)	2019-05-30 2019-07-10 (42일)	2019-07-18 (2019-08-22)	계약체결일로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2019-11-25 ~11-26 / 부산 벡스코
홍보 대행 용역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홍보 및 광고 지원 용역(재공고)	800 (792)	2023-12-22 2024-01-09 (19일)	2024-01-12 (2024-02-07)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홍보 및 광고 지원 용역	800	2023-12-06 2023-12-19 (14일)	2023-12-19	-	유찰
	2021 P4G 정상회의 종합홍보 대행 (수의시담)	3,565 (3,458)	2021-03-18 2021-03-22 (5일)	2021-03-22 (2021-03-24)	계약체결일로부터 2021년 7월 31일 까지	
	2021 P4G 정상회의 종합홍보 대행 (재공고)	3,565	2021-01-15 2021-01-26 (12일)	2021-01-26	-	유찰
	2021 P4G 정상회의 종합홍보 대행	3,565	2020-12-31 2021-01-14 (15일)	2021-01-14	-	유찰

주) *코로나19로 행사일정이 지연되어 1차례 수정계약이 진행되었으며, 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도 기존 47억 8,500만원에서 63억 4,900만원으로 증가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 검색 결과를 재구성

그러나 현재 준비기획단은 2025년 1월 중 출범 예정이므로, 외교부는 준비기획단의 출범과 함께 입찰을 진행하는 등 신속하게 일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상회의 개최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음.

6.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대체 매커니즘 운영 사업(신규): 향후 전문가 패널 대체 매커니즘의 공신력 제고 방안 모색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대체 매커니즘 운영’** 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활동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발간을 위한 것으로, 2025년 예산안은 2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5)]

[2025년도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대체 매커니즘 운영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1,115	3,005	1,890	169.5
안보리 결의 이행 및 수출통제체제 강화	399	2,361	1,962	491.7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대체 매커니즘 운영	-	2,000	2,000	순증

나. 검토의견

외교부는 장기적으로 전문가 패널 대체 매커니즘의 공신력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며, 유엔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주요 기능 및 권한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경제적·군사적 강제 조치 집행 등이 있음.

유엔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는 2023년 6월 6일에 치러진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192개 회원국 중 180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하여 2024~2025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이 되었음.

15) 일반회계-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2331-401)(국제안보국)

[유엔안보리 구성 국가 현황]

구분		국가
상임이사국(5)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비상임이사국(10)	임기 2024년 말	에콰도르, 일본, 몰타, 모잠비크, 스위스
	임기 2025년 말	대한민국, 알제리, 가이아나,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주)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 행사하는 경우 안건 통과 불가
자료: 유엔안보리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유엔안보리는 만장일치로 비군사적 제재를 담은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를 통과시키고, 1718호 대북제재위원회(이하 '대북제재위')를 조직하여 제재의 집행을 감독하게 되었음. 대북제재위의 주요 임무는 회원국들에게 제재 및 위반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며, 90일마다 대북제재 활동 관련 보고서를 유엔안보리에 제출하는 것이었음.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따라 대북 결의안 1874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이와 함께 제재의 범위와 분야가 복잡해지면서 대북제재위의 보고를 위해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제재 위반 사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하기 시작하였음. 전문가 패널은 매년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공개하였는데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유일한 국제기구 자료로서 회원국 단독 보고보다 비교적 신뢰수준이 높았다는 평가임.

그러나 2024년 4월, 15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며 관련 동향을 회원국에게 보고해오던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무가 종료되었음. 이에 따라 러·북 밀착관계가 심화되고 제재 회피 활동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북제재 이행 감시 메커니즘 보완 및 새로운 대체 매커니즘 창설이 필요해진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대북제재 이행 감시 대체 매커니즘 구축을 위해 2025년도 예산안에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대북재제위는 전문가 패널 없이도 유엔안보리에 보고 의무가 있으므로, 회원국으로부터 받는 정보는 유엔안보리에 보고하는 데 쓰일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임. 외교부는 국제정보분석기관과의 협력(용역계약 체결 등)을 통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견인해 나간다는 계획임.

다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교부는 장기적으로 전문가 패널 대체 매커니즘 운영의 공신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 패널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 안에 설치된 기구로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전체의 참여로 이루어졌기에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감시 및 보고에 공신력을 가지고 있었음. 그러나 외교부가 추진하는 전문가 패널 대체 매커니즘은 개별국가의 지위에서 국제정보분석기관을 통해 조사 및 감시를 진행하는 것으로 기존 패널과 같은 공신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장기적으로 다국적 협력하에 대북제재 이행 위반 감시 및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방안이나, 대북제재 기구를 공동으로 설립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7. 2025 APEC 의장국 운영: 회의시설 적시 구축을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 및 외교타운 활용 검토 등 필요

가. 개 요

‘2025 APEC 의장국 운영’ 은 2025년에 우리나라가 의장국 자격으로 개최하는 제32차 APEC 정상회의 및 공식 제반회의와 관련 행사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83억 7,000만원(3,998.8%)이 증액된 1,008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16)]

[2025년도 2025 APEC 의장국 운영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2025 APEC 의장국 운영	2,460	100,830	98,370	3998.8

[2025 APEC 의장국 운영 내역사업별 예산액]

○ 2025 APEC 의장국 운영: 1,008억 3,000만원
- 기획단 운영: 42억 7,900만원
- 정상회의 주간 회의 개최: 274억 9,200만원
- 공식 제반회의 개최: 210억 9,600만원
- 대국민 행사 등 홍보: 48억 9,500만원
- APEC 지자체 지원: 430억 6,800만원

자료: 외교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는 2015년 11월 제23차 마닐라 APEC 정상회의에서 결정되었고, 2022년 7월에 제131차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타당성조사 면제 및 개최계획 승인을 거쳤으며, 2023년 12월에 준비기획단이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음. 이어서 2024년 6월에 경주가 개최도시로 선정되었음.

이에 따라 개최도시에 대한 지원예산이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었고, 미디어센터 건립(2024년 10~12월 설계공모 및 설계, 2025년 1~6월 공사 발주 및 완료 예정)을 제외한 행사장 조성 설계용역 및 공사가 2025년부터 진행될 예정임.

16) 일반회계 - 2025 APEC 의장국 운영(3031-403)(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관련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

일자	내용
2015. 11. 19.	제23차 마닐라 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상의 정상회의 개최 의향 공식 발표 및 회원국 동의로 2025 APEC 의장국 수임 확정
2015. 11. 24.	제51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APEC 정상회의 참석 결과 및 후속조치”로 2025 APEC 의장국 수임 보고
2022. 7. 29.	제131차 국제행사심사위원회 타당성조사 면제 및 개최계획 승인
2023. 12. 13.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발족
2024. 3. 18.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설치
2024. 5. 20.-22.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유치후보지 현장실사
2024. 6. 27.	제2차「2025 APEC 준비위원회」정상회의 개최도시 최종 의결(경주)
2024. 7. 31.	제1차「APEC 정상회의 준비 TF」회의 개최
2024. 8. 7.-9.	정상회의 개최도시 정부합동실사
2025. 2.-8.	고위관리회의(SOM1~3) 개최 예정
2025. 11.	APEC 정상회의 개최 예정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검토의견

첫째, 외교부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관련 시설물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먼저 회의장 조성과 관련하여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의 사례를 살펴보면 2004년 4월 27일에 부산이 개최도시로 선정되었고, 2004년 10월 1일부터 회의장인 BEXCO의 회의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05년 1월부터 3월까지 1차 공사(회의장, 다목적홀 로비벽면 및 천장 개·보수공사 등), 2005년 7월부터 10월까지 2차 공사(회의장 내부공사 등)로 나누어 회의장 조성공사를 진행하였음.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일정은 2005년 사례에 비해 개최도시 선정은 약 2개월 정도 지연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025년부터 시작될 회의장 설계 및 착공은 2005년 대비 각각 3개월, 6개월 정도 늦게 시작될 것으로 보임.

[2005·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및 회의장 공사 추진일정 비교]

구분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2004. 4. 27. 부산 확정	2024. 6. 27. 경주 확정
회의장 설계 착수	2004. 10. 1.	2025. 1.
회의장 착공	2005. 1.	2025. 6.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설계용역의 경우 입찰공고를 최소한의 기간으로 잡더라도 최소 7~10일[17]의 공고기간을 거치게 되고, 통상적인 경우 계약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공사의 경우 공고기간 7~10일과 공종 및 규모에 따라 5~6개월 정도의 공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외교부가 제출한 인프라 구축 일정에 따르면 외교부는 업무협의를 통한 계획안 확정 이후 입찰공고를 포함한 실시설계에 약 2개월, 착공 및 준공에 5~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였으므로 계획한 기간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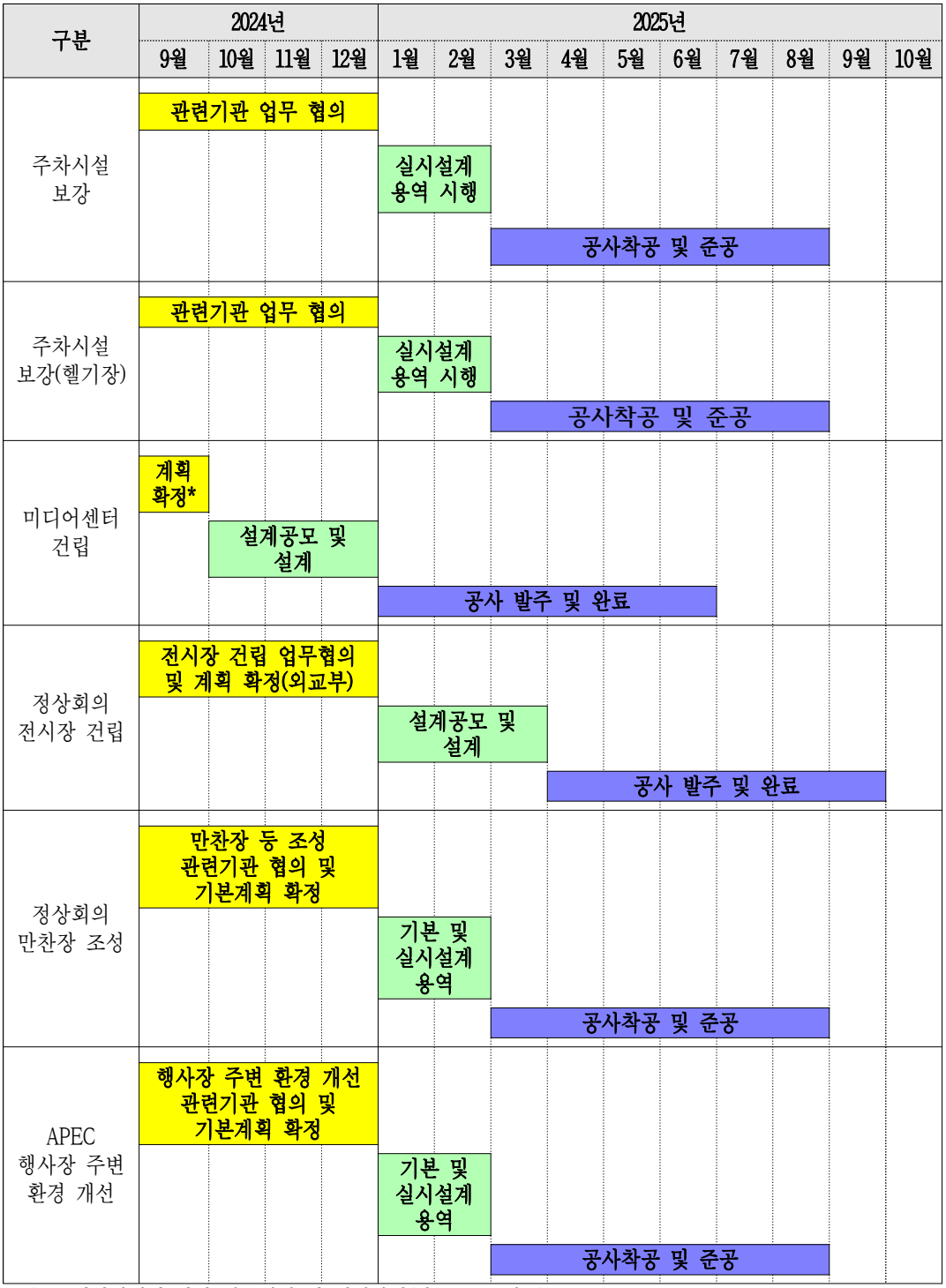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무응찰 및 단독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되어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면, 외교부와 경주시는 입찰공고와 관련된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사전에 추진일정을 긴밀하게 협의하여 지연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11월로 계획된 정상회의 전까지 회의장 등 시설물 공사가 적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APEC 정상회의 관련 경주 인프라 구축 일정]



17) 통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의 기간을 따르더라도 실무적으로 공고일과 입찰마감일 사이에 5일이 산입되도록 공고기간 설정



주) *: 미디어센터 건립 업무협의 및 계획확정(외교부, 문체부)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APEC 정상회의 관련 경주 인프라 구축 사업비 및 사업내용]

(단위: 백만원, %)

구분	총사업비		위치	사업내용
	국비	지방비		
정상회의장 조성	13,688	13,688	화백컨벤션센터 일원	• 화백컨벤션센터 리모델링 (273.76억원) - 정상회의장(HICO 1-3층) 인테리어 및 VIP 라운지 조성(153.76억원) - HICO 내외부 노후 시설 보수보강(70억원) - 회의장 내부 각종 설비 교체(50억원)
주차시설 보강	2,900	2,900	보문관광단지 일원	• APEC 정상회의장 인근 주차장(모터풀) 조성(40억원) - 회의장 인근 반경 1km 이내: 4~6개소 - 주차면: 약 4,000면 - 사유지 사용에 따른 부지 임차 • 대형 환승 임시주차장 조성 : 1개소 400면(18억원) - 임시 주차장(잔디블럭포장) 조성 - 주차면수 400면 정도, A=16,350㎡
주차시설 보강(헬기장)	1,000	1,000	보문관광단지 일원	• 헬기장 접근도로(청단로) 시설 개선 - 헬기장 접근도로 L=0.3km, B=12.0m - 상가도로 L=0.3km, B=8.0m [재포장, 차선도색, 인도 및 가로등(약30주) 신설] -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 - 헬기장 및 주기장 안전시설 설치
미디어센터 건립	6,900	6,900	화백컨벤션센터 야외	• 지상 2층/연면적 6,000㎡ 규모 미디어센터 건립 - 메인 브리핑룸, 주조정실, 영상/사진기자실, 인터뷰룸, 비지니스 라운지, 행정실, 운영요원 대기실 등
정상회의 전시장 건립	10,950	10,950	경주 엑스포대공원 내	• 지상 1층/연면적 5,000㎡ 규모 전시장 건립 (115억) - 엑스포공원 공연장 개보수(44억) - 공동번영의 숲 조성(60억)
정상회의 만찬장 조성	4,000	-	국립경주박물관	• 특별전시관 리모델링, 문화공연장 건립 - 신라역사관 또는 특별전시관 리모델링(10억원) - 야외만찬장 및 문화공연장(30억원)
APEC 행사장 주변 환경 개선	3,630	3,630	불국사, 월성, 동궁과 월지, 경주국립박물관, 월정교 등	• 경주박물관 주차장 정비(25억원) • 동궁과 월지 주차장 정비(16억원) • 불국사 화장실 개선(10억원) • 불국사 도로정비(3억원) • 불국사 및 대릉원 주차공간 정비(17.6억원) • 월정교 및 대릉원 등 화장실(1억원)
계	43,068	39,068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둘째, 외교부는 세출예산의 절약을 위해 외교타운의 공실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4년 10월 현재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광화문에 675.99㎡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월 3,700만원의 임차료를 집행하고 있음. 2025년도 예산안에는 현재 임차료의 약 2배인 월 7,000만원씩, 총 8억 4,000만원의 기획단 사무실 임차료가 편성되어 있음.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사무실 임차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임시조직명	활동기간	인원	주요업무	임차사무실 규모	월 임차료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2023.8.~	27*	2025 정상회의 준비 및 개최	675.99㎡	37

주) * 2024. 9. 25. 기준 현원(2024. 9. 20. 훈령 개정에 따라 행안부 승인 총원은 44명으로 관계부처 등 협의를 거쳐 발령 절차 진행)
자료: 외교부

한편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외교타운은 외교부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으로, 현재 일부 사무실이 2019년 이후 현재까지 공실로 남아있는 상황임. 2024년 10월 현재 외교타운에 남아있는 공실의 총 면적은 768.11㎡이나, 이 중 2025년 1월 중 공실로 예상되는 공간은 243㎡(201호 36㎡, 306호 207㎡)임.

[외교타운 내 민간임대 예정공간 중 2025년 1월 공실(예상)]

호수	층	면적	비고
201호	2층	36㎡	아포스티유 번역공증 유상사용허가 취소(2023. 7. 29.) 이후 공실
306호	3층	207㎡	민간임대 예정공간(2020년 이후 공실)
면적 합계			243㎡

주) 102·305호 무상사용허가(2024. 10월 중), 202호 유상사용허가(2024년 11월 중 예정)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임차하고 있는 준비기획단 사무실은 2024년 12월 말까지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2025년 1월에 새로운 사무실을 임차하여 이전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준비기획단 사무실 일부를 외교타운으로 옮기는 경우 공실로 인한 국유재산 사용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세출예산의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외교센터 사무실 임차 방안과 관련하여, 외교부는 준비기획단 사무실 임차를 위해 외교타운 등을 포함하여 입지조건·보안성·임차료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조직 특성상 의사결정권자[18]와의 긴밀한 보고체계 구축, 수시 대면회의

18) 준비위원장: 국무총리 / 단장: 외교부장관 / 부단장: 외교부 제2차관

개최, APEC 의제 담당국(외교부 국제경제국)과의 빈번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 등이 필요하므로, 외교부(본부)와의 인접한 입지조건은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물리적으로 이격된 사무실에 따른 대면보고의 곤란함은 코로나19 기간 정부에서 추진했던 비대면 보고체계를 활용하여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므로, 외교타운 공실을 이용하여 세출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셋째, 외교부는 회의장 조성을 위해 편성한 자치단체 경상보조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외교부는 경주시에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개선을 위해 430억 6,800만원의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를 편성하였으나, 회의장 등을 리모델링 또는 건설하는 사업은 자본의 가치를 제고하는 성격(자본형성적 성격)이므로 자치단체의 자본형성을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인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가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임.[19)]

19)「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1.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2.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경상적지원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2.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자치단체에대한 자본형성적 지원
  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보조금

8. 동북아 정세분석, 신시장 정세분석: 상용임금 편성을 통한 직제상 사무 수행 재검토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동북아 정세분석’, ‘신시장 정세분석’**은 재외공관 및 각 부처와 협업하여 정책·제도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고, 양질의 국내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동북아 및 신시장 정세분석 연구원을 채용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각각 2억 5,600만원, 1억 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0]

[2025년도 동북아 정세분석 및 신시장 정세분석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	1,000	1,390	390	39.0
글로벌 정책 사례 조사·분석	333	723	390	117.1
동북아 정세분석	-	256	256	순증
신시장 정세분석	-	101	101	순증

나. 검토의견

외교부는 현재 공무직근로자인 연구원을 향후 전문임기제공무원 등 공무원 제도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내내역사업인 ‘동북아 정세분석’과 ‘신시장 정세분석’은 동북아 및 신시장 정세분석을 위한 연구원 6명의 인건비(상용임금, 고용부담금)로서 3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

동북아 정세분석 연구원(4명)의 경우, 2024년 5월 외교정보기획국 신설 전 동북중앙아시아국(前 동북아국)에서 채용되었던 인원으로서 외교부 조직개편에 따라 외교정보국으로 재배치된 인원이고, 신시장 정세분석 연구원(2인)은 2025년도에 채용 예정인 인원임.

연구원 6인은 모두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20) 일반회계-외교정보 역량 선진화(3532-403)(외교정보기획국)

공무직근로자이고, 해외 공관 및 각 부처와 협업하여 정세분석 및 보고서 작성 업무를 수행함.

[동북아 및 신시장 정세분석 인건비 산출내역]

구분	동북아 정세분석	신시장 정세분석
산출내역	· 2억 5,600만원 = 6,400만원 × 연구원 4인	· 1억 100만원 = 5,050만원(10개월분) × 연구원 4인

자료: 외교부

한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3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외교정보기획국장은 외교정보사무의 총괄 및 조정, 외교정보의 수집 및 분석, 외교정보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외교정보 관련 국내외 정보 관계기관과의 협력, 외교정보 관련 민간과의 교류 및 협력 사무를 분장하고 있음.[21)]

외교부가 연구원에게 부여한 업무는 정세분석 및 보고서 작성으로 외교정보기획국에 배분된 고유한 사무로 볼 수 있음. 통상 직제에 따른 기관의 사무는 직제로 편성되는 공무원이 수행하거나, 특정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 수행하고, 특정사안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수행함에도 외교부는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여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해 외교부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외무공무원임용령」제11조의3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연구용역 발주의 경우 계약서상 특정기관에 의한 특정 분야 주제에 대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사회에 대응해 경제·사회·과학 등 제분야를 조사·분석할 수 있는 연구원(공무직근로자)의 채용을 추진한다고 설명하고 있음.[22)]

---

21)「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외교전략정보본부) ① 외교전략정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영문 명칭은 "Vice Minister for Strategy and Intelligence"로 표기한다.
④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외교정보사무의 총괄 및 조정
7. 외교정보의 수집 및 분석
8. 외교정보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9. 외교정보 관련 국내외 정보 관계 기관과의 협력
10. 외교정보 관련 민간과의 교류 및 협력
⑥ 외교정보기획국장은 제4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22)「외무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③ 외교부장관은 전문임기제 외무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

그러나 직제에 규정된 사무를 부처 간 협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직근로자 채용을 통해 수행하는 것은 직제 개정을 우회하여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따라서 외교부는 공무직근로자 신분의 연구원을 향후 전문임기제공무원 등 공무원 제도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 임용 인원 · 등급 및 기간

9. 국가별 협력사업(ODA): 취소·중단사업 조정 및 집행부진 사업 적정 소요액 검토 필요

가. 개 요

외교부의 2025년도 ODA 예산안은 전년 대비 403억 7,600만원(2.0%)이 증액된 2조 225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국가별 협력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694억 4,600만원(8.8%)이 증액된 8,586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외교부 공적개발원조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A)	예산현액	집행액			(B-A)/A
공적개발원조(ODA)	1,982,150	1,982,150	1,492,538	2,022,526	40,376	2.0
국가별 협력사업	789,200	789,200	651,015	858,646	69,446	8.8
국제기구초급전문가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	14,115	14,115	100	16,072	1,957	13.9
글로벌 프로그램	313,652	313,652	260,893	336,244	22,592	7.2
협력사업 지원	59,260	59,260	44,512	61,390	2,130	3.6
전략적 협력강화	8,000	8,000	4,391	6,400	△1,600	△20.0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797,923	797,923	531,627	743,774	△54,149	△6.7

주) 2024년 8월 말 기준, 국제기구 분담금 중 ODA로 계상되는 분담금과 국제질병퇴치기금의 ODA 예산 제외

나. 검토의견

첫째, 국가별 협력사업 중 2024년 10월 현재 수원국 사정에 의해 사업 취소를 검토 중인 3건의 경우, 편성된 2025년도 예산안의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인도네시아 국가데이터센터 통합 운영지원 및 역량 강화 사업’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본사업 지연과 2024년 6월 랜섬웨어 공격에 따른 국가데이터센터 서비스 중단 및 복구 지연 등 수원국 사정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 사업 취소 예정임.

‘동티모르 딜리 지역 모자보건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 사업은 수원기관

행정지연에 의한 현지 사업환경 변화로 수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차년도 사업취소를 검토 중임.

‘아제르바이잔 숨가이트시 및 해방 지역 스마트 시티 개발 사업’은 기획조사 과정에서 수원국의 과업변경 요청이 있었고, 과업변경 요청내용을 검토하여 주재국 공관이 사업 취소를 결정하고 현재 후속조치를 진행 중인 상황임.

[국가별 협력사업 중 취소 검토 중인 사업]

(단위: 백만원, %, 2024년 9월 말 기준)

연번	세부 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2025 예산안 (B)	증 감 (B-A)		집행가능성 저하 사유 등
			본예산 (A)	예산 현액	KOICA 집행액			(B-A)/A	
1	인도네시아 (ODA)	인도네시아 국가데이터센터 통합 운영지원 및 역량 강화 사업 ('24-'28/550만불)	347	95	-	3	△344	△99.1	· EDCF 본사업 지연 및 인니 랜섬웨어 공격 등으로 수원국 사정에 의한 사업 취소 예정
2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 (ODA)	동티모르 딜리 지역 모자보건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 ('24-'30/1,120만불)	346	16	-	300	△46	△13.3	· 수원기관 행정지연에 의한 현지 사업환경 변화로 수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차년도 사업취소 검토
3	중동 CIS 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 (ODA)	아제르바이잔 숨가이트시 및 해방 지역 스마트 시티 개발 사업 ('24-'28/1,000만불)	346	-	-	10	△336	△97.1	· 기획조사 과정에서 수원국 과업변경 요청 발생, 과업변경 요청내용 검토 진행 검토 결과, 아국 공관의 사업취소 전문 접수 완료, 사업 취소 결정

자료: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아프가니스탄·미얀마 및 우크라이나 사업은 현지 정세 및 국제사회 동향을 감안하여 예산안의 집행가능성을 검토하고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 내전 발생으로 주아프가니스탄대사관은 잠정 폐쇄하고 주카타르대사관에 임시 공관을 마련하였음. 이후 정세가 안정되지 않아 '아프가니스탄 카불시 바르치 지역 식수개발사업'은 추진이 잠정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사업 중지상태를 유지 중임.

미얀마는 2021년 2월 국가비상사태 발생 이후 사업 추진이 정지된 상태이고, 2024년 8월에는 국가비상사태가 6개월 연장됨에 따라 '미얀마 직업기술교사교육원 설립사업' 등 3개 사업의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임.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생으로 현지 정세가 불안정하여 '우크라이나 키이우주 재활의료 역량강화 사업' 등 6개 사업의 2024년 중 실집행이 전무하고,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임.

[국가별 협력사업 중 현지 정세 불안정으로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

(단위: 백만원, %, 2024년 9월 말 기준)

연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202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집행가능성 저하 사유 등
			본예산 (A)	예산 현액	KOICA 집행액				
1	아시아태평양 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 (ODA)	아프가니스탄 카불시 바르치 지역 식수개발사업 ('14-'25/650만불)	50	50	-	100	50	100.0	· 수원국 정세 악화로 공관 및 사무소 철수('21.8.~) 이후 사업 추진 잠정 중단되었으며, 외교부, 수행기관(UNOPS)와 협의하여 금년도 사업 현장 유지 관리 등 최소한의 사업비로 사업 중지 상태 유지중
2	미얀마 (ODA)	미얀마 직업기술교사교육원 설립사업 ('15-'25/1,305만불)	200	200	5	100	△100	△50.0	· 2021.2월 미얀마 사태 이후 우리 정부 지침에 따라 사업추진 정지 상태 · 국가비상사태 상황이 2025년 초까지 연장됨에 따라 연내 사업재개 불가, 사업장 유지관리용역(소액) 추진 중
3		미얀마 농산물 유통센터 설립사업 ('16-'25/837만불)	600	600	115	1,354	754	125.7	·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국가비상사태 상황이 현재까지 유지됨에 따라 사업활동 제한
4		한-메콩 생물다양성센터 건립 및 역량강화 사업 ('21-'26/1,000만불)	100	100	-	100	-	-	·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국가비상사태 상황이 현재까지 유지됨에 따라 사업활동 제한 (기획조사 미실시)

(단위: 백만원, %, 2024년 9월 말 기준)

연번	세부 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2025 예산안 (B)	증 감 (B-A)		집행가능성 저하 사유 등
			본예산 (A)	예산 현액	KOICA 집행액			(B-A)/A	
5	우크라이나 (ODA)	우크라이나 키이우주 재활의료 역량강화 사업 ('23-'27/500만불)	450	450	-	1,000	550	122.2	· 수원국 내 정세불안(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업 형성기획 및 추진 전반 지연, 2024년 6월 한국전문가 포함한 기획조사단 우크라이나 현지파견 기획조사(2차) 완료하였으며, 집행계획 수립 중
6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주 전력계통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력공급 효율성 개선 사업 ('24-'28/1,450만불)	50	50	-	500	450	900.0	· 수원국 내 정세불안(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업 형성기획 및 추진 전반 지연 · 격전지 인근지역 대상사업으로, 예외적여권사용허가 승인 불가한바, 한국전문가 현지파견조사 불가 및 사업추진 전반 순연 불가피
7		우크라이나 정부 효율성 및 책무성 개선을 위한 디지털 거버넌스 강화 사업 ('24-'28/630만불)	50	50	-	500	450	900.0	· 수원국 내 정세불안(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업 형성기획 및 추진 전반 지연
8		우크라이나 항공운송 안전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보리스필공항 현대화 사업 ('24-'28/1,400만불)	50	50	-	1,000	950	1,900.0	· 수원국 내 정세불안(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업 형성기획 및 추진 전반 지연 · 2024년 6월 한국전문가 포함한 기획조사단 우크라이나 현지파견 기획조사 완료하였으며, 집행계획 수립 중
9		우크라이나 오데사-이즈마일-레니 구간 철도용량 증대를 위한 타당성조사 사업 ('24-'26/600만불)	50	50	-	500	450	900.0	· 수원국 내 정세불안(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업 형성기획 및 추진 전반 지연, 격전지 인근지역 대상사업으로, 예외적여권사용허가 승인 불가한바, 한국전문가 현지파견조사 불가 및 사업추진 전반 순연 불가피
10		우크라이나 키이우-국경구간 고속철도 구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사업 ('24-'27/800만불)	50	50	-	500	450	900.0	· 수원국 내 정세불안(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업 형성기획 및 추진 전반 지연 · 2024년 7월 한국전문가 포함한 기획조사단 우크라이나 현지파견 기획조사 완료하였으며, 집행계획 수립 중

자료: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셋째, 2024년 신규 국가별 협력사업 중 협의의사록(R/D) 체결 및 사업총괄관리사(PMC) 선정 등이 지연됨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의 전액 집행 가능성이 낮아진 사업 14건의 경우 2024년 4분기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2025년 실제 과업수행이 가능한 범위로 예산안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업 지연 등 사업 추진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을 감액조정한 사업의 경우에는 2024년 4분기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2025년도 실제 수행가능한 과업 일정 및 집행범위를 재산출할 필요성이 보다 크다고 볼 수 있음.

[2024년 신규사업 중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

(단위: 백만원, %, 2024년 9월 말 기준)

연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202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집행가능성 저하 사유 등
			본예산 (A)	예산 현액	KOICA 집행액				
1	몽골 (ODA)	몽골 날라흐구 폐광산지역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을 통한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사업 ('24-'29/1,000만불)	346	346	-	1,997	1,651	477.2	· 수원국 협의의사록(R/D) 체결 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지연
2		몽골 울란바토르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스쿨존 시범설치 및 역량강화사업 ('24-'28/1,000만불)	346	346	-	1,010	664	191.9	· 수원국 협의의사록(R/D) 체결 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지연
3	스리랑카 (ODA)	스리랑카 북부 및 우바주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구축 사업 ('24-'28/1,100만불)	346	1	-	812	466	134.7	· 수원국과 협의의사록(R/D) 체결 지연에 따른 사업 지연
4		스리랑카 콜롬보시 세무행정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4-'28/850만불)	346	1	-	1,050	704	203.5	· 수원기관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으로 인해 사업자 선정 입찰 지연
5	네팔 (ODA)	네팔 간다키 지역 기술교육학교 건립사업 ('24-'28/900만불)	346	346	-	850	504	145.7	· 수원국 협의의사록(R/D) 체결 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지연
6		네팔 버르디야 지역 포용적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24-'29/800만불)	346	346	-	754	408	117.9	· 수원국 협의의사록(R/D) 체결 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지연

(단위: 백만원, %, 2024년 9월 말 기준)

연번	세부 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2025 예산안 (B)	증 감 (B-A)		집행가능성 저하 사유 등
			본예산 (A)	예산 현액	KOICA 집행액			(B-A)/A	
7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 (ODA)	동티모르 영유아 교육사업(UNICEF) ('24-'27/600만불)	1,417	1,255	-	2,776	1,359	95.9	· 수원총괄기관의 R/D 검토 기간 소요 및 협의 지연으로 인한 국제기구 약정 체결 및 약정금 집행 지연
8	가나 (ODA)	가나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농산업 가치사슬 강화사업 ('24-'28/950만불)	346	346	24	1,100	754	217.9	· 수원기관 측 사업지 및 사업요소 변경 요청에 따른 R/D 체결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등 지연
9	아프리카 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 (ODA)	DR콩고 북카탕가주 감염병 감시 역량 강화사업 ('24-'27/600만불)	500	60	-	500	-	-	· 협력국 내 정세 불안 및 항공편 축소 등으로 사업대상지 접근성 저하됨에 따라 기획조사 및 사업 착수 순연
10		케냐 청년 생산적 고용 및 소득 증대를 위한 국가산업훈련청 아띠리버 센터 역량강화사업 ('24-'28/700만불)	346	-	-	100	△246	△71.1	· 수원국 사업 관련 협의 지연
11	세네갈 (ODA)	세네갈 중부지역 모자보건체계 강화사업 2단계 ('24-'28/1250만불)	800	100	-	500	△300	△37.5	· 2024년 수원국 정부 교체에 따른 기획조사 순연
12	콜롬비아 (ODA)	콜롬비아 남부지역 기후변화 복원력 모델 구축 사업(FAO) ('24-'27/400만불)	563	153	-	3,040	2,477	440.0	· 2024년 신규사업의 기획을 아직 기구측과 진행 중
13	중남미 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 (ODA)	과테말라 경찰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고등교육원 개선 사업 ('24-'29/800만불)	200	110	-	2,000	1,800	900.0	· 수원국과의 R/D 체결 협의 지연으로 PMC 발주가 순연
14		엘살바도르 원격협진을 통한 소아보건 개선사업 ('24-'27/760만불)	400	-	-	900	500	125.0	· 2024년 신규사업의 기획을 아직 수원기관 측과 진행 중

자료: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넷째, 2024년 계속사업 중 수원국 또는 수원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 현지 여건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 2024년 4분기 사업 추진상황 등을 바탕으로 2025년도 실제 수행가능한 과업 일정 및 집행범위를 재산출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베트남 부동산 가격 DB 구축 및 가격정보종합시스템 개발 사업(연번 1번)’의 경우 수원국 사정에 따라 협의의사록 체결이 지연되어 관련 사업비 집행이 부진한 상황으로, 2024년에는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으나 9월 말 현재 실집행액(코이카 집행액)은 100만원(본예산 대비 0.13%, 예산현액 대비 0.25%)으로 집행이 부진함. 2025년도 예산안은 4억 5,000만원으로 집행계획 상의 1차년도 배정액 5억 3,400만원보다 적은 규모이나, 사업총괄관리사 선정이 늦어지는 경우 집행가능예산을 재산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세네갈 콜다 주 통합적 접근을 통한 미곡가치사슬 강화사업(연번 13번)’은 2024년 4월 집행계획 수립에 따라 2024년 9월 말 현재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를 진행 중임.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대비 13억 1,000만원이 증액된 35억 1,600만원으로, 2024년 4분기 중 사업총괄관리사 선정 경과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액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4년 계속사업 중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

(단위: 백만원, %, 2024년 9월 말 기준)

연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202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집행가능성 저하 사유 등
			본예산 (A)	예산 현액	KOICA 집행액				
1	베트남 (ODA)	베트남 부동산 가격 DB 구축 및 가격정보 종합시스템 개발 사업 ('22-'29/736만불)	773	393	1	450	△323	△41.8	· 수원국 사정에 따른 협의의사록(R/D) 체결 지연으로 관련 사업비 집행 부진 발생
2		베트남 국가계획 집행 모니터링·평가(M&E) 개선 컨설팅 및 IT 시스템 구축사업 ('22-'27/300만불)	1,219	419	1	442	△777	△63.7	· 금년도 상반기 R/D 체결, 국내법에 따른 사업추진 절차 이행(SW 과업 심의위 조건부 통과)후 보완 필요하여 추가 조사 진행(7월)
3	몽골 (ODA)	몽골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역량강화사업 ('19-'25/600만불)	727	727	54	200	△527	△72.5	· 수원국 협의의사록(R/D) 체결 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지연
4		몽골 초중고등학교 급식환경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22-'26/800만불)	1,554	1,554	408	4,981	3,427	220.5	· 현지 설계 업체의 시공 도면 제출 지연으로 당초 계획 대비 기자재 입찰 및 시공 착수 활동 지연에 따른 예산 집행 부진

(단위: 백만원, %, 2024년 9월 말 기준)

연번	세부 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202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집행가능성 저하 사유 등
			본예산 (A)	예산 현액	KOICA 집행액				
5		몽골 울란바토르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국토 균형개발 지원사업 ('23-'26/570만불)	1,000	1,000	3	1,759	759	75.9	· 수원기관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으로 인해 사업자 선정 입찰 지연
6	라오스 (ODA)	라오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디지털 농지정보관리 플랫폼 구축사업 ('23-'26/880만불)	1,486	286	-	300	△1,186	△79.8	· 수원기관의 과업변경 요청에 따라 8월 현지 추가 기획조사 실시 후 사업계획 재검토 진행
7	네팔 (ODA)	네팔 박타푸르 취약지역의 빈곤층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및 의료인프라 개선사업 ('22-'27/950만불)	1,550	1,550	237	2,800	1,250	80.6	· 수원국 협의의사록(R/D) 체결 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지연
8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 (ODA)	피지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역량강화사업 ('23-'26/700만불)	980	805	2	4,424	3,444	351.4	· 수원국 정부 내부 승인절차 지연으로 R/D 체결 지연 ('24.2월 완료)되었으나, 현재 사업수행기관 입찰 및 계약 체결 완료(9.2)
9	인도 (ODA)	인도 직업기술교육 역량강화사업 ('21-'25/200만불)	670	663	-	500	△170	△25.4	· 교환각서 및 R/D체결 지연으로 PMC입찰 등 사업착수 지연됨
10	가나 (ODA)	가나 세무행정 현대화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22-'25/220만불)	800	800	-	800	-	-	· 수원기관(가나 재무부) 사정에 따른 사업 협의 지연으로 전문가 파견 및 일부활동 (고위급 초청연수 등) 지연
11	에티오피아 (ODA)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강변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및 Sheger강 상류 수질 및 수변정화 사업 ('21-'26/1,000만불)	4,460	3,971	275	2,900	△1,560	△35.0	· 수원국 협의 지연으로 시공업체 선정 지연

(단위: 백만원, %, 2024년 9월 말 기준)

연번	세부 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202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집행가능성 저하 사유 등
			본예산 (A)	예산 현액	KOICA 집행액				
12	탄자니아 (ODA)	탄자니아 도도마시 및 아루샤 농촌지역 상수도시설 모델구축 시범사업 ('23-'26/382만불)	3,061	814	421	1,572	△1,489	△48.6	· 수원국 사업 관련 협의지연으로 인한 PMC 선정 지연
13	세네갈 (ODA)	세네갈 콜다 주 통합적 접근을 통한 미곡가치사슬 강화사업 ('23-'28/1,450만불)	2,206	1,596	2	3,516	1,310	59.4	· 2024.4월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2024.9월 현재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진행 중
14	콜롬비아 (ODA)	콜롬비아 2개 분쟁피해지역(PDET)의 가치사슬 강화를 통한 소농 소득 증대 사업(UNDP) ('22-'27/940만불)	2,155	1,475	30	2,620	465	21.6	· 금년도 기구 측 약정금 지급 시점이 도래하지 않음
15	볼리비아 (ODA)	볼리비아 엘알또시 모성보건역량 개선사업 ('23-'27/900만불)	1,400	1,000	20	2,500	1,100	78.6	· 수원기관(볼리비아 보건부)의 R/D문안검토 및 서명지연으로 인해 사업착수일정 순연 발생
16	파라과이 (ODA)	파라과이 멀티미디어 교육 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교육접근성 향상사업 ('21-'27/990만불)	2,270	1,970	571	400	△1,870	△82.4	· 수원국의 신정부 수립 이후 사업내용 변경 요청으로 인해 과업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진행 지연
17	중남미 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 (ODA)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및 버스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1-'26/590만불)	1,026	326	165	422	△604	△58.9	· 수원국 분담사항(건축) 미이행으로 우리측 시스템 구축 과업 추진 지연
18	우즈베키스탄 (ODA)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소아의과대학교 교육 연구 역량강화 사업 ('22-'27/500만불)	1,476	1,206	2	1,159	△317	△21.5	· 수원국의 일정변경 요청으로 인한 사업추진 일정 변동 발생, 이로 인해 약정변경 검토 사항 발생 불가피
19	중동 CIS 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 (ODA)	요르단 카락주 파쿠오 지역 노후 상수도 관망 개선 사업 ('20-'26/927만불)	2,197	1,643	367	2,193	△4	△0.2	· 수원기관현지시공사 간 계약 연장검토 시간 소요에 따라 집행부진

(단위: 백만원, %, 2024년 9월 말 기준)

연번	세부 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202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집행가능성 저하 사유 등
			본예산 (A)	예산 현액	KOICA 집행액				
20		이라크 변압기 정비소 현대화 및 기술인력 역량강화 사업 ('22-'26/500만불)	2,940	649	-	1,610	△1,330	△45.2	· 수원기관과의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에 따른 착수 지연
21		이라크 쿠르드 지역학교 내 난민통합교육 강화사업 ('23-'28/1,200만불)	2,000	724	-	3,183	1,183	59.2	· 수원기관과의 수정 약정 체결 지연에 따른 착수 지연
22	타지키스탄 (ODA)	타지키스탄 전력소외 지역 전력망 구축 2차 사업 ('23-'26/1,400만불)	6,131	3,131	280	3,549	△2,582	△42.1	· '23년도 사업 착수 과정에서 PMC 유찰(4회) 발생으로 사업절차 지연 발생, '24년 상반기 PMC 계약 체결 ('24.4.) 완료 및 선금(279백만원) 집행 완료 · 금년 수원기관의 현지 설계업체 선정과정 지연발생 ('24.9.기준)

자료: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0.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1단계)(신규):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사업과 연계 추진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1단계)’**은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기반한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외교수행 체제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추진을 위한 것으로, 2025년 예산안은 106억 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3)]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1단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외교업무 디지털 혁신	2,666	13,254	10,588	397.1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1단계)	-	10,605	10,605	순증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1단계) 산출내역]

○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1단계): 106억 500만원
- 정보보안 강화 인프라 구축: 33억 4,900만원
  · H/W 22억 1,900만원 / S/W 구매비 11억 3,000만원
- 시스템 구축 및 개발: 60억 300만원
  · S/W 구매비 27억 9,200만원 / 개발비 32억 1,100만원
- 사업관리 및 수행: 11억 9,400만원
  · PMO 용역비, 감리용역비 11억 9,400만원
- 조달수수료 및 평가수당: 5,900만원

자료: 외교부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연도별 투자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 (1차)	2026년 (2차)	2027년 (3차)	계
예산액	10,605	12,661	8,712	31,978

자료: 외교부

23) 일반회계-외교업무 디지털 혁신(7031-505)(기획조정실)

나. 검토의견

외교부는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중 대국민 서비스 관련 사항을 범정부 인공지능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고, 데이터센터 대사관 구축 계획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022년 11월 대화형 인공지능인 ChatGPT가 공개되면서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외교부는 자료의 유통·보관·검색 기능 중심으로 구축되었던 기존 외교통신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라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기반한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2023년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활용전략 수립(BPR/ISP)’ 용역을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2025년도 예산안에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1단계) 예산을 편성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인공지능 도입과 관련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는 연방기관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아동 성학대 조사 및 재난 구호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일본은 경제안보와 인공 지능(AI), 기후 위기 등 국제사회의 새로운 외교 의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담당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 예정인 것으로 보도되어, 해외 주요국에서도 인공지능의 정부 도입을 검토 및 추진 중임을 알 수 있음.[24)]

외교부는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재외공관 수집정보와 해외 오픈데이터를 융합·분석하여 정책결정자, 정부, 국민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정책결정자 및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재외공관 현안보고 분석, 해외 허위정보 사전 식별, 주요 이슈 관련 자료 및 데이터 자동수집 및 분류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해외안전·비즈니스 정보 제공, 챗봇을 통한 1인 1영사 돌보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임.

또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혁신에 유연하고 안전한 외교안보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데이터 활용기반 비밀 외교문서시스템 및 자료관리 시스템 개선’, ‘AI 학습 데이터 구축 및 LLM 모델 개발’, ‘AI기반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데이터센터(Disaster Recovery) 대사관 구축(2026년부터 추진)’의 6대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음.

---

24) “美 국토안보부, 연방기관 최초 생성형 AI 기술 도입…아동 성학대 조사・재난 구호 등 활용” / 2024. 3. 19. 전자신문
“일본, 외무성 내 ‘경제안보・AI’ 담당 조직 만든다” / 2024. 8. 5. 한겨레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6대 이행과제]

1. 혁신에 유연하고 안전한 외교안보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 SDDC기반 Private 클라우드 구축

·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환경 조성

· 주요공관 인프라 일원화

2. 데이터 활용기반 비밀 외교문서시스템 및 자료관리 시스템 개선

· 외교문서시스템 재구축

· 내부 보고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3. AI 학습데이터 구축 및 LLM 모델 개발

· 외교안보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부내 축적정보 및 재외공관 수집정보 등 벡터 DB전환 및 학습데이터 구축

· 모델 학습 및 고도화

- 부내 일반문서 및 자료 학습, 외교 특화 AI 모델 구축

4. AI기반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

· 외교안보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플랫폼 구축

· 시범 분석 서비스 구축

- AI 기반 자료 검색·큐레이션

· AI기반 서비스 구축 확대

- 정책결정자, 정부부처 대상 서비스
- 대국민 서비스

5.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데이터 분석 조직 및 관리/운영 프로세스 수립

· 정보 기반의 직위별 권한 체계 수립 및 단계적 확대

6. 데이터센터(DR) 대사관 구축

※ 데이터센터 대사관: 우방국에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여 유사시 행정기능 유지(2026년부터 추진)

자료: 외교부

한편 행정안전부는 범정부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각 기관이 특화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서비스를 신속히 구현 및 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사업을 2025년부터 추진할 예정임.

이 사업은 인공지능 관련 중복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민간의 인공지능 모델을 도입하여 공통기반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효율 향상 및 대민서비스 품질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음.

범정부 인공지능 공동기반 구현 사업은 민간의 인공지능 모델을 기반으로 정부데이터를 학습시킨 인공지능 모델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자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외교부 사업과 차별점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플랫폼 구축 사업의 핵심자료가 외교·안보 관련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보안 유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사업과 별도로 자체 플랫폼 구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사업 비교]

구분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사업개요	·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기반하여 외교 수행 체제 및 대국민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추진	· 범정부적으로 초거대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각 기관이 특화 데이터를 활용하여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를 신속히 구현·운영할 수 있게 지원
2025년 예산안	·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 (1단계): **106억 500만원** - 정보보안 강화 인프라 구축 (33억 4,900만원) : H/W 22억 1900만원, S/W 구매비 11억 3,000만원 - 시스템 구축 및 개발 (60억 300만원) : S/W 구매비 27억 9200만원 개발비 32억 1,100만원 - 사업관리 및 수행(11억 9,400만원) : PMO 용역비, 감리용역비 - 조달수수료 및 평가수당 (5,900만원)	·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 **53억 9,200만원** - 범정부 초거대 AI 플랫폼 개발 (42억 3,500만원) : 공통기반 포털 개발 7억 7,300만원, 초거대 AI 공통서비스 구현 34억 6,200만원 - 공용 학습데이터 구축 (10억 3,700만원) : 학습데이터 구축 10억 3,700만원 - 플랫폼 구축 관련 하드웨어 구매 (1억 2,000만원)
연도별 투자계획(안)	· **총 319억 7,800만원** - 2025년 106억 500만원 - 2026년 126억 6,100만원 - 2027년 87억 1,200만원	· **총 204억 1,600만원** - 2025년 53억 9,200만원 - 2026년 100억 800만원 - 2027년 50억 800만원 - 2028년 800만원
비고	· 비밀자료로 인해 **자체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하고 그 외 부분은 범정부 인공지능과 연계하여 추진	· **민간의 인공지능 모델을 기반**으로 각 정부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부데이터를 추가학습시킨 인공지능 모델 도입

자료: 외교부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외교부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각각의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외교부는 정보제공 및 영사서비스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인공지능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두 사업은 모두 내부 업무의 개선과 함께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음. 외교부는 핵심자료의 보안을 이유로 행정안전부 사업과 별도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국민 서비스 관련 부분은 두 플랫폼의 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특히 해외 안전 · 비즈니스 정보 제공 및 영사서비스 관련 내용은 각 플랫폼 간 연계가 불가피할 것이므로, 기관간 협의를 통해 유기적인 연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둘째, 외교부는 데이터센터 대사관 구축 계획(2026년부터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외교부는 2026년부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유사시에도 플랫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데이터센터(Disaster Recovery)를 우방국 재외공관에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우방국의 대사관에 데이터센터를 만드는 경우 국내의 재난 등 상황 발생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해외 구축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우려되고, 공관 주재국의 유사시 보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정부 통합 데이터센터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대전센터와 광주센터의 동시 기능 마비를 대비하여 재해복구 전용기능을 수행하는 공주센터를 2025년 상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임.

통일부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통일부 소관 총수입은 454억원으로, 전년 대비 3억원(0.6%) 증가함. 예산은 15억원으로 전년 대비 6,000만원(4.1%) 증가하고, 기금은 439억원으로 전년 대비 3억원(0.6%) 증가함.[1)]

[2025년도 통일부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15	15	0.6	4.1
기 금	436	439	3	0.6
총수입	451	454	3	0.6

문의 : 손재일 예산결산조사관 sonjaeil@assembly.go.kr (02-6788-5676)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통일부 소관 총지출은 1조 554억원으로 전년 대비 411억원(△3.7%) 감소함. 예산은 2,293억원으로 전년 대비 73억원(3.3%) 증가하고, 기금은 8,261억원으로 전년 대비 484억원(△5.5%) 감소함.

[2025년도 통일부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2,220	2,293	73	3.3
기 금	8,745	8,261	△484	△5.5
총지출	10,965	10,554	△411	△3.7

나. 예산안

2025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 15억원으로 전년 대비 6,000만원(4.1%) 증가함.

[2025년도 통일부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5	15	0.6	4.1
합 계	15	15	0.6	4.1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통일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3,293억원으로 전년 대비 73억원(2.3%) 증가함.

[2025년도 통일부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3,220	3,293	73	2.3
합 계	3,220	3,293	73	2.3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통일부 소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1조 4,69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0억원(△7.3%) 감소함.

[2025년도 통일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남북협력기금	15,841	15,841	14,692	△1,150	△7.3
합 계	15,841	15,841	14,692	△1,150	△7.3

주)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통일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1개(3억 4,0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일반회계 신규사업인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사업은 북한의 경제·사회·주민의식 관련 정보 수집·분석(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실시) 및 공개보고서 발간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3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통일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계획안)
[일반회계]		
1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340
총지출		340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통일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정보화)’,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정책연구개발’, ‘구호지원’ 등 총 7개임.[3)]

구호지원 사업 증액은 남북 간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원칙 하에 구호 물품 지원 예산을 늘린 것임.

[2025년도 통일부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정보화)	1,877	2,785	908	48.4
2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8,828	12,937	4,109	46.5
3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406	601	195	48.0
4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5,794	12,442	6,648	114.7
5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2,749	3,813	1,064	38.7
6	정책연구개발	271	438	167	61.6
[남북협력기금]					
7	구호지원	96,307	112,230	15,923	16.5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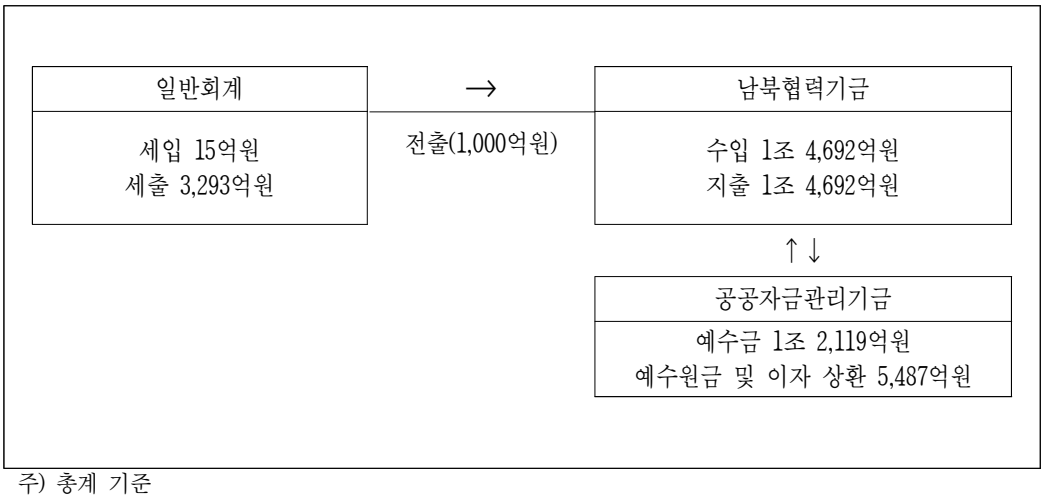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통일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남북협력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1,000억원이 전출되었음.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1조 2,119억원이 예수되고, 남북협력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5,487억원의 예수원금과 이자가 상환되는 구조임.

[통일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8.15 통일 독트린> 7대 추진방안 이행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종합 보호·지원체계 강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북한의 정확한 실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 조사 사업을 신규 편성한 것을 들 수 있음.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 상황과 사업 추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 편성함. 사업비는 축소되었으나 앞서 언급한 <8.15 통일 독트린>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구호지원 및 민생협력 등 인도적 협력 분야 예산은 규모를 확대함.

2025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글로벌 통일체험’의 경우 방문지가 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방송·유튜브 송출의 파급효과가 낮을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 배포 사업’의 경우 재외공관의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에 대한 수요와 서적 배포의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평화경제특구 운영 지원’의 경우 통일부는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 수립의 지연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에 입찰공고 준비를 마무리하고 2025년 내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넷째,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의 건립 지연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건립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일반회계전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사업’의 경우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금 사업계획 및 남북관계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여유자금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글로벌 통일체험 사업(신규): 사업 효과성에 대한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글로벌 통일체험’** 사업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탈북청년들과 2030 세대들이 체제전환국인 폴란드와 통일국가인 독일의 역사적 현장을 방문하여 공산주의 실체를 체험함으로써 통일 필요성을 체감하고 통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

[2025년도 글로벌 통일체험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2,521	2,490	△31	△1.2
글로벌 통일체험	-	250	250	순증

[글로벌 통일체험 사업 산출내역]

○ 글로벌 통일체험: 2억 5,000만원 (’25년도 신규)
- 체험운영비(210-01): 900만원 = 600천원×15명
- 체험운영 용역비(210-14): 2억 4,100만원 = 241백만원×1식
  · (장소·차량 임차료) 9,000천원× 3회 = 27백만원
  · (항공료) 4,000천원×15명 = 60백만원
  · (숙박 등 체재비) 2,400천원×15명 = 36백만원
  · (인건비) 2,250천원× 4명 = 9백만원
  · (방송제작 등 기타 부대비용) 109백만원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4) 일반회계-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5031-304)(국립통일교육원)

나. 검토의견

글로벌 통일체험 사업의 방문지가 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방송·유튜브 송출의 파급효과가 낮을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2023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2007년 63.8% → 2023년 43.8%), 부정적인 답변의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음(2007년 15.1% → 2023년 29.8%).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2007~2023년)]

(단위: %)

연도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약간 필요하다	①+②	③ 반반/ 그저 그렇다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④+⑤
2007	34.4	29.4	**63.8**	21.1	12.7	2.4	**15.1**
2008	26.1	25.4	51.5	23.1	20.0	5.4	25.4
2009	24.7	31.2	55.9	23.6	16.1	4.4	20.5
2010	27.3	31.8	59.0	20.4	16.6	4.0	20.6
2011	28.8	24.9	53.7	25.0	16.8	4.5	21.3
2012	26.8	30.3	57.0	21.6	17.2	4.3	21.4
2013	23.6	31.3	54.8	21.5	18.5	5.2	23.7
2014	26.9	28.9	55.8	22.5	18.1	3.6	21.7
2015	21.6	30.4	52.0	24.5	17.8	5.8	23.5
2016	21.0	32.7	53.7	22.5	18.3	5.6	23.8
2017	18.0	36.1	54.1	24.5	17.3	4.1	21.4
2018	21.9	37.8	59.8	24.2	13.5	2.6	16.1
2019	20.5	33.1	53.6	26.4	15.3	4.7	20.0
2020	20.9	31.9	52.8	22.5	19.8	4.9	24.7
2021	13.8	30.8	44.6	26.0	24.6	4.8	29.4
2022	14.8	31.1	45.9	28.1	20.8	5.3	26.1
2023	15.3	28.6	**43.8**	26.3	24.2	5.7	**29.8**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3 통일의식조사

글로벌 통일체험 사업은 2030세대와 탈북청년이 함께 폴란드와 독일의 체제 전환과 통일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체험하고, 한류와 연계한 문화활동을 통해 현지 주민과 직접 소통(1주 내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통일부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이 전체주의의 폐해와 통일의 필요성을 직접 느끼고, 통일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설명하고 있음. 또한 방송 및 유튜브 등으로 이들의 활동내역을 송출하여 국민들이 현장의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대국민 통일의식 고취에 활용한다는 계획임.

이를 위해 통일부는 2025년 중 기본계획 수립 후 용역사 선정 및 세부 기획 절차를 거쳐 사업참가자를 모집(15명 내외)하고, 글로벌 통일체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글로벌 통일체험 사업 개요]

구분	내용
필요성	· 북한이 '통일 지우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사회 또한 2030세대들의 통일 의식이 갈수록 낮아지고, 무관심도 증대 · 광복 80년을 맞아 탈북청년들과 2030세대들이 체제전환국인 폴란드와 통일국가인 독일의 역사적 현장을 방문하여 공산주의 실체를 체험하고 한반도의 역사를 돌아보며 향후 80년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계기 마련
사업내용	· 분단·통일 현장 체험 및 한류와 연계한 문화활동을 통해 현지 주민과 소통**(1주 내외)** - 대상: **2030과 탈북청년**이 함께하는 글로벌 통일 체험단 구성**(15명 내외)** ※ 통일부·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 ※ 통일부 사업 참여자 가점 부여 및 필요시 하나센터 등 협조 - 장소: 폴란드[국립기억원(과거청산), 공산주의박물관 등]와 독일(슈타지형무소, 독재청산재단, 할레 경제연구소 등)의 체제 전환과 통일 현장
기대효과	· 참여자들이 전체주의의 폐해와 생생한 '통일'의 감동을 느낌으로써 통일 필요성을 직접 느끼고, 통일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 - 리얼리티 방송과 연계하여 일반 주민들도 현장의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함으로써 대국민 통일의식 고취에 활용
추진체계	① 사업계획 수립(2월) ⇒ ② 용역사 선정 및 참여자 선발(3~4월) ⇒ ③ 사전교육 후 글로벌 통일체험 실시(7월) ⇒ ④ 사후 연계 프로그램 진행 및 영상 송출(8월)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글로벌 통일체험 사업의 세부내용 중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일부 있어 보임.

먼저 방문국을 보면 폴란드는 1989년에 체제 전환을 하였고, 독일은 1990년에 동·서독이 통일하였음. 참가자들은 이미 30년 이상 지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므로 공산주의 실체와 전체주의의 폐해를 체험하고 생생한 통일의 감동을 체험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방문지의 현장보존성이 낮을 우려가 있음.

다음으로 글로벌 통일체험 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을 방송 및 유튜브로 송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 효과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매체로는 조사대상의 70%가 스마트폰을, 27.2%가 TV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최근 유튜브 등 OTT[5] 서비스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TV의 영향력은 낮아지고 있기에 TV방송만을 통해 파급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5) 'TV 보는 20대 확 줄었다…가장 많이 보는 OTT는 유튜브' / 동아일보 / 2023. 12. 28.

[2023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중 매체중요도 조사 결과]

(단위: %)

구분	스마트폰	TV	데스크톱/노트북	태블릿PC	라디오	서적	신문
비율	70.0	27.2	1.7	0.4	0.3	0.2	0.1

자료: 2023년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한편 통일부의 유튜브 계정 '통일부UNITV'는 2024년 10월 현재 구독자수가 53,700명이고, 게시된 영상은 3,500개임. 그러나 대부분의 영상이 구독자수 대비 낮은 조회수를 보이고 있으므로 유튜브 계정을 통한 파급효과를 위해서 제작한 영상물의 적절한 편집 및 다양한 홍보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는 홈페이지의 '통일부 영상' 게시판에 유튜브 영상을 연결하여 소식을 알리고 있으나, 2024년 5월 이후 게시된 80여 개의 영상 중 조회수 1,000회를 넘는 영상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파급효과의 확대를 위해서는 홈페이지 외에 영상물을 통일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이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글로벌 통일체험 사업의 방문지가 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방송·유튜브 송출의 파급효과가 낮을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 배포 사업(신규): 사업수요 및 기대효과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 배포’** 사업은 인류 보편적 권리로서의 북한 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산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억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6)]

[2025년도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 배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북한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5,794	12,442	6,648	114.7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1,029	1,634	605	58.8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 배포	-	260	260	순증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 배포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 배포: 2억 6,000만원
- 도서구입: 40,000원 × 50부 × 100개 공관 = 2억원
- 운 송 료: 15,000원 × 5,000부 × 0.8kg = 6,000만원

자료: 통일부

나. 검토의견

재외공관의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에 대한 수요와 서적 배포의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 배포 사업은 북한인권 보호·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산 및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100곳의 재외공관에 북한 관련 영문 서적을 보내는 사업임.

통일부의 계획을 보면 2025년 1분기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북한 관련 외국어

6) 일반회계-북한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2135-302)(인권인도실)

서적 리스트를 작성하여 재외공관에 배포하고, 2~3분기에 재외공관으로부터 신청받은 서적을 구매하여 외교행낭으로 발송하며, 4분기에는 재외공관이 주재국 유력인사 등에게 서적을 증정한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함.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 선정 및 배포 계획(안)]

○ 사업목적: 북한 인권을 보호·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산 및 인식 제고

○ 서적선정: ‘선정위원회 구성’, 가칭 ‘통일 우수 영문 서적’ 30선 선정
- 선정위원회는 외부인사 포함하여 구성
- 탈북민 수기, 북한 관련 전문서적(정부 발간물 포함) 등 분야별 선정

○ 배포경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 해당 공관장이 선택한 서적을 통일부가 구매하여 외교행낭편으로 송부
- 지역별 안배 등 고려 1차년도 사업 대상 공관 100개 선정
- 서적을 수령한 공관장은 주재국 외교고위인사, 유력인사 등에게 증정하고 결과 공유(연 1회)

〈 사업 추진 체계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선정위원회 구성 · 서적리스트 마련, 재외공관 제공		· 상반기 서적 신청 (100개 공관, 각 50부) · 서적 발송(외교행낭)		· 하반기 서적 신청 (잔여 수량 있을 시) · 서적 발송(외교행낭)		· 재외공관, 배포 결과 공유

○ 기대효과
- 북한인권 국내외 전문가의 북한인권에 대한 깊이있는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영리더로 성장
-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북한 실상을 알리고 우리 정부의 정책 홍보를 강화하여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 확보 가능
- 북한인권 관련 부처간 협력(통일부-외교부) 사업으로 상징적 의미

자료: 통일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먼저 통일부는 탈북민 수기, 정부 발간물 및 외국인 저자 작품을 포함한 북한 관련 전문서적 등을 분야별로 ‘통일 우수 영문서적’으로 선정한다고 계획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으로 선정 대상이 되는 북한 관련 영문 서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문학·경제 등 어떠한 분야로 선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다음으로 사업수요와 관련하여 통일부는 공관의 신청을 통해 100개의 공관을 선정하고 서적을 발송한다는 계획임. 그러나 예산안 편성 이전에 재외공관 대상 수요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5년 2~3분기 중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예산안 편성 당시 사업수요가 파악되지 못하였음.[7)]

7) 2024년 7월 현재 재외공관 총 171개소(아주지역 47, 미주지역 36, 유럽지역 51, 중동지역 19, 아프리카지역 18)

또한 영어를 국어 또는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가 아닌 경우, 영문으로 제작·번역된 서적 배포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통일부는 2024년 4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47개국 195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외국인의 북한인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영어 영상콘텐츠가 가장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음.[8)]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어 영상콘텐츠(31%)'의 다음으로는 '토론회 및 포럼개최(26%)', '견학기회 확대(22%)', '정책설명자료 발간(20%)'의 순서로 답변이 많아, 영상 및 체험콘텐츠가 인쇄물에 비해 선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 배포사업이 홈페이지, 방송 또는 SNS를 통한 영상자료 배포에 비하면 그 파급효과가 낮을 수 있음.

결국 이 사업의 추진방식(서적 배포)은 영상 및 체험 등 다른 유형의 콘텐츠에 비해 주재국 유력인사에게 선호될지 불확실하고 파급효과도 크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방식인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8)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2024.4.2.~4.12. 47개국 195명 참여), 외국인의 북한인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영어 영상콘텐츠'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
※ 영어 영상콘텐츠(31%) > 토론회 및 포럼 개최(26%) > 견학기회 확대(22%) > 정책설명자료 발간(20%)

3. 평화경제특구 운영 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입찰 준비 및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평화경제특구 운영 지원’** 사업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2023. 12. 14.)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원(200.0%)이 증액된 3억원이 편성되었음.[9)]

[2025년도 평화경제특구 운영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남북경제협력지구 운영·관리	453	563	110	24.3
평화경제특구 운영 지원	100	300	200	200.0

[평화경제특구 운영 지원 예산안 세부내역]

○ 평화경제특구 운영 지원: 3억원 (’24년도 1억원 → ’25년도 3억원)
- 평화경제특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 400만원
- 평화경제특구 합동 국내외 현장조사: 1,600만원
-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 2억 8,000만원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나. 검토의견

통일부는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 수립의 지연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에 입찰공고 준비를 마무리하고 2025년 내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3년 6월 13일,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12월 14일에 시행

9) 일반회계-남북경제협력지구 운영·관리(3032-303)(남북관계관리단)

되었음.

이 법 제6조제1항[10]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이에 따라 통일부는 2024년도 예산에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1억원의 정책연구비를 편성하였으나, 방대한 사업규모와 파급효과, 유사사례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에 맞는 예산확보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용역'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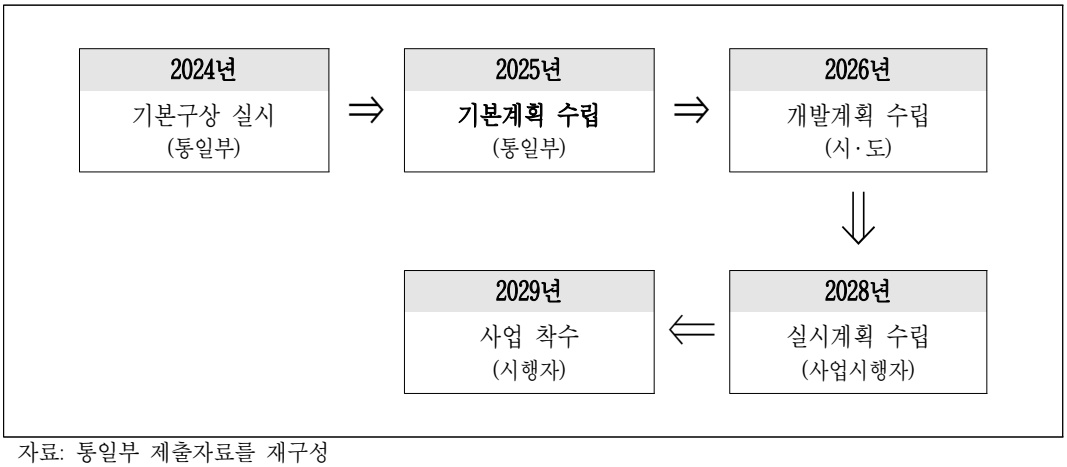
2024년 10월 현재 국토연구원과 계약을 체결(2024. 5. 8.)하여 '평화경제특구법 시행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고, 이 결과물을 바탕으로 2025년에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는 계획임.

[2024년도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용역 계약 현황]

계약명	계약일	계약기간	업체명	계약금액
평화경제특구법 시행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용역	2024. 5. 8.	2024. 5. 8. ~ 11. 29.	국토연구원	89,090,910원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평화경제특구 운영지원 사업프로세스(안)]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10)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이하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무는 법 시행일인 2023년 12월 14일에 발생하였으나,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2025년 연말이 되어야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만약 불가피하게 사업 추진에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2년 이상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통일부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기본계획 수립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과 타 부처의 연구용역 사업이 유찰되었던 사례를 고려하여, 용역 입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충실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계약 체결 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2025년 내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종합발전계획 수립 관련 타부처 용역 발주 사례]

입찰공고명	수요기관	입찰개시일	사업기간	사업금액	비고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11]	행정안전부	2024. 1. 16.	8개월	5억원	1회 유찰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12]	행정안전부	2024. 1. 16.	8개월	5억원	2회 유찰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13]	국토교통부	2022. 11. 11.	11개월	3억 5,000만원	1회 유찰

자료: 나라장터(G2B) 검색 결과를 재구성

11)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5조(종합발전계획의 수립)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12) 「울릉도 ·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5조(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1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4.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 건립 지연 상황을 고려하여 철저한 공정별 사업관리 필요

가. 개 요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공간을 임차하고 있는 북한 자료센터의 장서 확충 및 열람공간 확대를 위해 통일·북한 전문도서관 기능의 자료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1억 900만원(46.5%)이 증액된 129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음.[14)]

[2025년도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4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8,828	12,937	4,109	46.5

2025년도 예산안에는 토지매입비 3차 분납금 46억 1,100만원과 건설비(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83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음.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건설보상비(410-00): 4,611백만원
  가. 3차 분납금: (18,643백만원-1,948백만원-4,126백만원-4,333백만원) × 0.5231
  나. 분납이자: (18,643백만원-1,948백만원-4,126백만원-4,333백만원) × 0.035
○ 공사비(420-03): 7,552백만원(= 총공사비 25,172백만원 × 2차년도 예상공정률 0.3)
○ 감리비(420-04): 747백만원(= 총감리비 2,489백만원 × 2차년도 예상공정률 0.3)
○ 시설부대비(420-05): 27백만원(= 총시설부대비 58백만원 × 0.466)

자료: 통일부

14) 일반회계-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1535-310)(정보분석국)

[통일정보자료센터 연차별 건립공정(공사비 집행/편성) 계획]

(단위 : 백만원, %, 2024년 8월 말 기준)

총사업비	건립기간	설계기간	총공사비	연도별 공사비 집행/편성 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48,356	'22~'26	2023.12 ~2024.6	25,721	-	-	3,776 (15%)	7,552 (30%)	14,393 (55%)

자료: 통일부

이 사업은 2021년 11월 경기 고양시(현 고양특례시)로 부지를 확정하고 총사업비 445억원, 연면적 9,900㎡ 규모(사업기간 2022~2025년)로 계획하였으나, 공공건축 사전검토 결과[15]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상 연면적을 8,463㎡로 축소 조정하였음.

나. 검토의견

통일부는 현재까지의 건립 지연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건립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통일부는 2022년 중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초 착공한다는 계획이었으나, 2023년 11월 10일 고양시의 부지변경 요구에 대한 변경부지 수용[16]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음. 이에 따라 2024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24년 9월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조달청과 협의 중임.

[부지 변경 현황]

구분	부지	위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면적	
기존	E4	대화동 2707-1	문화시설・공공청사	50%	200%	6,600㎡	2,000평
변경	J2	대화동 2706	(현 주차장 →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기존과 동일하게 변경 예정)			4,120.6㎡	1,246평

자료: 통일부

15) 2022년 5월 완료된 공공건축 사전검토에서는 물가상승률 및 노임단가 등으로 공사비 증가가 예상되어, 적정 예산을 추가 확보하거나 예산여건에 부합하는 적정 사업규모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16) 통일부와 고양시는 2022년 3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동년 9월 2일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런데 부지매입계약 직후인 2022년 9월 13일 고양시가 통일부에 이미 선정된 부지(킨텍스 전시장 인근)를 다른 부지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함.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부지 변경은 불가능하고 원안대로 계획된 부지에 건립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2023년 11월 고양시의 부지변경 요구 이후 건립 사업의 장기 표류를 방지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변경 부지의 접근성과 주변 환경이 양호한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지변경에 합의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통일부에 따르면 2024년 10월 중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하고 조속히 시공사를 선정하여 12월 내 착공한다는 계획으로, 2026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설명임.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일정(안)]

구분	실시설계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조정 협의	공사업체 공모	공사
시기	'24. 5.~'24. 6. (2개월)	'24. 6.~'24. 8. (3개월)	'24. 7.~'24. 8. (2개월)	'24. 9.~'24. 12. (3개월)	'24. 12.~'26. 11. (23개월)

주) 2026년 11월 준공, 2027년 상반기 개관 예정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현재까지의 건립 지연 상황을 고려하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및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연 요소가 발생되어 당초 2025년 완공 예정이었던 건립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사업: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별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사업은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NGO·국제기구 등과의 인권 협력을 위한 공공 인프라로서의 국립북한인권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0억 5,300만원이 증액된 106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음.[17)]

[2025년도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북한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5,794	12,442	6,648	114.7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4,629	10,682	6,053	130.8

이 사업은 총사업비 약 260억원, 연면적 2,400㎡ 규모, 사업기간 2024~2026년(3개년)으로 계획되었으며, 2025년도 예산안에는 토지매입비 54억 2,400만원, 공사비 46억 8,000만원 등 총 106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음.[18)]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 10,682백만원
- 토지매입비 5,424백만원, 공사비 4,680백만원, 감리비 560백만원, 시설부대비 18백만원

자료: 통일부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사업 총사업비 내역]

(단위: 백만원)

토지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경비	전시시설비	계
13,440	498	9,360	1,119	65	1,485	25,967

자료: 통일부

17) 일반회계-북한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2135-302)(인권인도실)

18) 공간 구성(안) : 지하 1층 및 지상 3층 건물(전시실, 회의실, 대강당, 사무실, 커뮤니티 시설 등)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사업 총사업비 연차별 비목별 소요액]

(단위: 백만원)

비목별 예산		2024년	2025년	2026년
토지매입비(410-00)	13,440	4,082	5,424	3,934
설계비(420-02)	498	498	-	-
일반수용비(210-01)	5	5	-	-
일반용역비(210-14)	30	-	-	30
임차료(210-07)	5	5	-	-
공사비(420-03)	9,360	-	4,680	4,680
감리비(420-04)	1,119	39	560	520
시설부대비(420-05)	25	-	18	7
전시시설비(420-03)	1,485	-	-	1,485
합계	25,967	4,629	10,682	10,656

자료: 통일부

나. 검토의견

통일부는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사업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별 철저한 사업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통일부는 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위해 2024년 1월 29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49-7번지(2,644.1㎡)에 대한 부지매매계약을 체결(95억 600만원)하고, 설계공모를 거쳐 2024년 5월 29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19)]

통일부에 따르면 총사업비에 반영된 건설보상비는 134억 4,000만원으로, 부지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발생한 차액 39억 3,400만원은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거쳐 공사비 및 전시시설비 등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는 설명임.

[연도별 건설보상비 집행/편성 계획]

(단위: 백만원)

총 건설보상비	연도별 건설보상비 집행/편성 계획		
	2024년	2025년	2026년
13,440	4,082 (31%)	5,424 (40%)	3,934 (29%)

주) 2024. 1. 29.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49-7(2,644.1㎡) 대상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부지매매계약 체결 (9,506백만원)

자료: 통일부

19)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3(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에 따라 전기설계용역은 별도 계약 체결 (2024. 6. 11.)

2024년 10월 현재는 중간설계 진행 중으로, 10월 중 중간설계를 마치고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거칠 예정이며, 2025년 2월까지 실시설계, 실시설계에 대한 조달청 적정성 검토,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마친다는 계획임. 이후 2025년 3월부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여 2025년 4월 중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함.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일정(안) 및 고려사항]

구분	통일부 안	추가 고려사항
중간설계	2024. 10.	
조달성 적정성 검토	2024. 10.	약 15일
총사업비 조정 협의	2024. 11.	특정 곤란
실시설계	2024. 11.~2025. 2.	약 3~4개월
조달성 적정성 검토		약 15일
총사업비 조정 협의		특정 곤란
시공업체 공모	2025. 3.~2025. 4.	약 2~3개월 또는 그 이상
공사	2025. 4.~2026. 9.	

주) 2026년 9월 준공(계획)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통일부는 설계 단계에 따른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 과정, 입찰공고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지연 요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건립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남북협력기금】

<총 괄>

6. 일반회계전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사업: 적정 여유자금 규모 검토 필요

가. 개 요

‘일반회계전입금’ 은「남북협력기금법」제4조에 근거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부 출연금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과 동일한 1,000억원이 편성되었음.[2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사업은 공자기금 예수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71억 2,800만원(22.5%)이 증액된 933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음.[21]

[2025년도 일반회계전입금 및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일반회계전입금	100,000	100,000	100,000	-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76,209	76,209	93,337	17,128	22.5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

일반회계 전입금 1,000억원 중 933억 3,700만원은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용도이며, 나머지 66억 6,300만원은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충당을 위한 예비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은 과거 대북 경수로 사업과 관련한 차입비용 상환분(경수로 계정)과 남북협력기금 사업 추진 시 차입되는 공자기금에 대한 이자 상환분(남북협력 계정)으로 구분됨.

---

20) 남북협력기금-일반회계전입금(91-911)(기획조정실)

21) 남북협력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9110-920)(기획조정실)

[일반회계전입금 및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구 성	내 용		2025년도 계획안
일반회계전입금	·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933억원) 및 기금사업비 충당(67억원)		1,000억원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 경수로계정 및 남북협력계정 예수이자 상환		933억원
	경수로	· 경수로 사업 관련 기존 공자기금 예수금에 대한 이자 · 공자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을 위한 당해연도 신규 예수에 따른 이자	691억원
	남북협력	·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당해연도 공자기금 신규 예수에 따른 이자	242억원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금 사업계획 및 남북관계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여유자금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5년도 남북협력계정 이자상환액 242억원은 남북협력기금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사업비 부족분 7,565억원을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이자 비용임.

그러나 최근 남북협력계정의 이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는 남북관계 상황 및 대북제재 등으로 남북협력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사업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공자기금 신규 예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임.

[계정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계획 및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총 계획현액 (A)	경수로 계정		남북협력 계정		지출잔액 (A-B-C)
		계획현액	지출액(B)	계획현액	지출액(C)	
2019	100,873	100,873	58,013	-[1]	-	41,987
2020	98,898	63,238	57,032	35,660	-	41,866
2021	88,256	57,640	46,074	30,616	-	42,182
2022	90,000	46,213	43,087	43,787	-	46,913
2023	73,914	45,054	44,873	28,860	-	29,041
2024	76,209	51,714	24,527	24,495	-	51,682

주) 2020년 계획 수립부터 계정에 따른 추계금액 분리 산정 / 2024년 8월 현재
자료: 통일부

이와 같이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에서 2023년을 제외하면 연례적으로 400억원이 넘는 불용액이 발생함에 따라, 2019년 이후 일반회계전입금의 지출잔액이 계획 대비 크게 발생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적립되고 있음.

2024년에도 10월 현재 남북협력계정의 이자상환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연도말까지 이자상환이 없고 일반회계전입금 1,000억원이 모두 집행될 경우, 예비재원 238억원과 남북협력계정 이자상환액 245억원 등 약 483억원 중 상당 부분이 여유자금으로 적립될 것으로 보임.

[연도별 일반회계전입금 및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액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일반회계 → 남북협력기금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액		집행잔액 (A-B)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A)	계획현액	지출액(B)	
2019	100,000	100,000	100,000	100,873	58,013	41,987
2020	150,000	150,000	150,000	98,898	57,032	92,968
2021	100,000	100,000	100,000	88,256	46,074	53,926
2022	100,000	100,000	100,000	90,000	43,087	56,913
2023	100,000	100,000	57,200	73,914	44,873	12,327
2024(예상)	100,000	100,000	100,000	76,209	51,714	48,286주)

주) 2024년 집행잔액은 일반회계전입금 1,000억원이 전액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입되고, 남북협력계정 이자상환액 245억원이 지출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금액임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 경우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은 2019년 말 624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말에는 2,0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22)]

[연도별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8.
여유자금회수(연초)	84,568	62,407	141,903	176,342	162,545	163,361
일반회계전입금(사업비 충당)	41,987	92,968	53,926	56,913	12,327	48,756
사업비 및 운영비	77,369	46,559	33,517	80,201	24,690	19,569
여유자금운용(연말)	62,407	141,903	176,342	162,545	163,361	176,753

자료: 통일부

22) 2022년 말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의 경우 1,625억원으로 2021년의 1,763억원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일회성으로 지출된 사업비(경협·교역·금강산 및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추가 특별대출 및 기업운영 관리경비 지원) 425억원이 있었기 때문으로, 이러한 지출이 없었다면 2022년 말 여유자금 규모가 이미 2,000억원을 초과하였을 것임.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남북관계 진전을 대비한 예비적 재원의 성격도 가지므로 일정 규모의 여유자금을 보유할 필요는 있으나, 2024년 8월 현재 여유자금 1,767억원은 최근 3년 주요지출 평균 461억원의 4배에 가까운 규모이므로, 기금 사업계획 및 남북관계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여유자금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총수입은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00만원(160%) 증가함.[1)]

[2025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0.05	0.13	0.08	160
총수입	0.05	0.13	0.08	160

2025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총지출은 358억원으로 전년 대비 8억원(2.3%) 증가함.

[2025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350	358	8	2.3
총지출	350	358	8	2.3

문의 : 손재일 예산결산조사관 sonjaeil@assembly.go.kr (02-6788-5676)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나. 예산안

2025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00만원(160%) 증가함.

[2025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0.05	0.13	0.08	160
합 계	0.05	0.13	0.08	160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예산안은 358억원으로 전년 대비 8억원(2.3%) 증가함.

[2025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350	358	8	2.3
합 계	350	358	8	2.3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5년도 예산안에는 신규사업[2] 및 주요 증액사업이 없음.[3]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음.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제22기 자문회의 구성을 위한 예산 편성, 국내·해외 출범회의 사업의 격년 시행에 따른 예산변동이 반영되었으나 일부 삭감(1억 700만원)된 것을 들 수 있음.

2025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문회의 운영’ 사업의 경우 제21기 자문위원 구성 당시(2023년) 위촉되는 위원 수는 증가하였으나 여성 부의장 비율 및 여성·청년 자문위원 비율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제22기 자문위원 구성 시(2025년) 여성 부의장 및 여성·청년 자문위원 비율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자문회의 운영 사업: 여성 부의장 및 여성·청년 자문위원 비율 확대 노력 필요

가. 개 요

‘자문회의 운영’ 사업은 다양한 여론 수렴을 통한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통일정책을 건의하기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구성하고 국내 및 해외 지역회의·운영위원회·상임위원회 등 법정회의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7,600만원(△10.5%)이 감액된 40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5년도 자문회의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자문회의 운영	4,530	4,054	△476	△10.5

[자문회의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자문회의 운영 : 40억 5,400만원
-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578백만원
- 국내·해외 지역회의 2,041백만원
- 자문위원 일반지원 157백만원
- 직능별 정책회의 182백만원
- 평화통일여론 수렴·분석 242백만원
- 자문회의 구성 304백만원
- 간부위원 활동지원 250백만원
- 지역 운영위원회 300백만원

주) 자문위원(임기 2년)은 무보수·명예직이고, 법정회의 참석 시 회의출석 수당 및 여비 지급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 일반회계-자문회의 운영(1031-300)(자문건의국)

나. 검토의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위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 부의장 비율 및 여성·청년 자문위원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제22기 자문위원 구성 시 여성 부의장 및 여성·청년 자문위원 비율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평화통일정책 관련 자문 및 건의,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수렴 및 국민적 합의 도출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 인사들을 2년마다 자문위원[5]으로 위촉하고 있음.

2023년 9월 1일에 총 21,984명이 제21기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고, 2년(2023. 9. 1. ~2025. 8. 31.)의 임기로 활동하고 있음. 2025년에 위촉되는 제22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025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임.[6]

[제19~21기 자문위원 구성 현황]

(단위: 명)

구분		제19기 자문회의 (2019. 9. 1.~2021. 8. 31.)	제20기 자문회의 (2021. 9. 1.~2023. 8. 31.)	제21기 자문회의 (2023. 9. 1.~2025. 8. 31.)
국내	지역대표	3,118명	2,944명	3,288명
	지역부의장	25명	25명	25명
	지역협의회장	271명	273명	273명
	직능대표	12,282명	13,156명	14,658명
	소계	15,400명	16,100명	17,946명
해외	재외동포대표	3,600명	3,900명	4,038명
총계		19,000명	20,000명	21,984명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 무보수 명예직으로 법정회의 참석 시 예산 범위에서 회의출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2.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3.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4.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 · 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 · 직능단체 · 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명 이상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첫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성이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6조제2항은 의장이 부의장 임명 시, 여성이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7)]

부의장은 동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각자의 출신지역 민주평통 지역회의를 주재하여 지역회의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됨을 고려하면, 제6조제2항은 부의장 중에서 일정 비율을 여성 자문위원에게 할당하는 방식을 통해 여성 자문위원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따르면 제19기(2019. 9. 1.~2021. 8. 31.) 및 제20기(2021. 9. 1.~2023. 8. 31.) 자문회의 부의장 25명 중 여성은 각각 8명(32%)과 7명(28%)으로 25%를 초과한 비율이었음. 그러나 현재 제21기(2023. 9. 1.~2025. 8. 31.) 자문회의의 경우 부의장 25명 중 여성은 총 2명으로 8%를 차지하는데 그쳐, 법 규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상황임.

[제19~21기 자문회의 부의장 현황]

(단위: 명)

구분		제19기 자문회의 (2019. 9. 1.~2021. 8. 31.)	제20기 자문회의 (2021. 9. 1.~2023. 8. 31.)	제21기 자문회의 (2023. 9. 1.~2025. 8. 31.)
부의장	남성	17 (68%)	18 (72%)	23 (92%)
	여성	8 (32%)	7 (28%)	2 (8%)
	계	25 (100%)	25 (100%)	25 (10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제22기 자문회의(2025. 9. 1.~2027. 8. 31.) 구성 시 여성 자문위원의 역할 증대라는 법 제6조제2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여성이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여성 및 청년 자문위원 비율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6조(의장 · 부의장) ① 대통령은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이 중에서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0. 5. 20., 2013. 5. 22>
③ 의장은 제2항의 부의장 중에서 수석부의장 1명을 지명한다.
제29조(지역회의 등) ② 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2019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자문위원 중 여성 자문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 청년 자문위원(45세 이하)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성별·세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음.[8)]

이에 따라 제19기와 제20기 여성 자문위원과 청년 자문위원은 각각 전체 자문위원의 40%, 30% 비율로 위촉되어 이전 기수보다 10%p 내외로 증가하였으나, 제21기 자문위원 구성 시에는 여성 자문위원과 청년 자문위원은 각각 전체 자문위원의 34.3%, 26.5% 비율로 위촉되어 시행령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음.

사무처장 제청으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수와 비율이 점차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9)] 다른 제청권자의 여성·청년 자문위원 비율이 각각의 비율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무처장 제청의 여성·청년 자문위원의 비율을 높게 함으로써 일부 조정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 제21기 자문위원 중 여성·청년 자문위원의 비율이 줄어든 것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음.

[제17기~제21기 자문위원 중 여성 및 청년 자문위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18기(2017년)	19기(2019년)	20기(2021년)	21기(2023년)
여성위원	직능대표	4,063(31.0%)	4,955(40.3%)	5,352(40.7%)	5,013(34.2%)
	재외동포대표	886(24.4%)	1,442(40.1%)	1,577(40.4%)	1,401(34.7%)
	계	**4,949(29.6%)**	**6,397(40.3%)**	**6,929(40.6%)**	**6,414(34.3%)**
청년위원	직능대표	2,797(21.4%)	3,690(30.0%)	3,973(30.2%)	3,986(27.2%)
	재외동포대표	610(16.8%)	1,087(30.2%)	1,191(30.5%)	966(23.9%)
	계	**3,407(20.4%)**	**4,777(30.1%)**	**5,164(30.3%)**	**4,952(26.5%)**
전체 자문위원	직능대표	13,100	12,282	13,156	14,658
	재외동포대표	3,630	3,600	3,900	4,038
	계	16,730	15,882	17,056	18,696

주) 선출직인 지역대표 위원은 통계산출 대상에서 제외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8)「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위원의 위촉) ② 사무처장이 위원의 위촉을 제청하거나 법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추천하는 자가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여성인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 청년(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인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 성별, 세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9) <제20·21기 전체 자문위원 수 및 사무처장 제청 자문위원 수(비율) 비교>

구분	제20기(A)	제21기(B)	증감(B-A)
전체 자문위원 수	20,000명	21,984명	1,984명
사무처장 제청 자문위원 수 (비율)	6,317명 (31.6%)	8,977명 (40.8%)	2,660명 (9.2%p)

[제19기~제21기 추천권자별 자문위원 구성 현황]

(단위: 명)

구분	추천기관	제19기	제20기	제21기
지역 대표	지방의회 의원	3,118 (16.4%)	2,944 (14.7%)	3,288 (15.0%)
직능 대표	지방자치단체장	3,336 (17.6%)	3,421 (17.1%)	3,366 (15.3%)
	정당대표	267 (1.4%)	263 (1.3%)	261 (1.2%)
	국회의원	1,242 (6.5%)	1,274 (6.4%)	1,281 (5.8%)
	주무관청의 장	355 (1.9%)	326 (1.6%)	308 (1.4%)
	이북5도지사	293 (1.5%)	268 (1.4%)	322 (1.5%)
	국민 참여공모	1,600 (8.4%)	2,000 (10%)	1,000 (4.5%)
	사무처장 제청	**5,189 (27.3%)**	**5,604 (28%)**	**8,120 (36.9%)**
	소 계	12,282 (64.6%)	13,156 (65.8%)	14,658 (66.7%)
재외 동포 대표	관할 공관장	2,866 (15.1%)	2,897 (14.5%)	3,181 (14.5%)
	재외동포 참여공모	300 (1.6%)	290 (1.4%)	-
	사무처장 제청	**434 (2.3%)**	**713 (3.6%)**	**857 (3.9%)**
	소 계	3,600 (19.0%)	3,900 (19.5%)	4,038 (18.4%)
합 계		**19,000**	**20,000**	**21,984**

주) 제21기 자문위원 구성시 '국민 참여공모'에서 '청년 참여공모'로 변경하고, 지원 자격을 45세 이하로 제한함. 공모인원은 제20기 2,000명(국내 기준)에서 1,000명으로 하였으며, 내국인 대상으로 변경함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향후 제22기 자문위원 위촉 시 여성·청년 자문위원 비율을 높여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국민의 대표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재외동포청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총수입은 10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1,700만원(11,300.0%) 증가함.[1)]

[2025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0.09	10.26	10.17	11,300.0
총수입	0.09	10.26	10.17	11,300.0

2025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총지출은 1,071억원으로 전년 대비 4억원(0.4%) 증가함.

[2025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1,067	1,071	4	0.4
총지출	1,067	1,071	4	0.4

문의 : 손재일 예산결산조사관 sonjaeil@assembly.go.kr (02-6788-5676)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나. 예산안

2025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10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1,700만원(11,300.0%) 증가함.

[2025년도 재외동포청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0.09	10.26	10.17	11,300.0
합 계	0.09	10.26	10.17	11,300.0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1,071억원으로 전년 대비 4억원(0.4%) 증가함.

[2025년도 재외동포청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067	1,071	4.0	0.4
합 계	1,067	1,071	4.0	0.4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재외동포청 2025년도 예산안에는 총 1개(17억 5,0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동포간담회 개최’ 사업은 정상 및 총리의 해외 방문 계기에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분야·세대별 동포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동포사회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외교부의 ‘정상·총리 외교’ 사업 중 일부를 이관받아 2025년 17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5년도 재외동포청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	동포간담회 개최	1,750
총지출		1,750

한편, 재외동포청의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업은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공보·홍보 역량 강화’ 사업으로 총 2개임[3)].

[2025년도 재외동포청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551	1,096	545	98.9
2	공보·홍보 역량 강화	1,687	4,209	2,522	149.5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재외동포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음.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① 재외동포사회의 세대교체기를 맞아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② 동포간담회 사업 전담, 공보·홍보 역량 강화를 통해 동포사회 및 국민과 소통하며, ③ 국내 체류 동포, 역사적 배경의 동포 등 그동안 소외되거나 특수한 배경을 지닌 동포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한 것을 들 수 있음.

2025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사업은 2025년도 사업 추진 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재외동포와의 소통 플랫폼 구축’ 사업은 제작한 콘텐츠의 관리 및 송출을 위하여 기존 국제방송국, 홈페이지·SNS 계정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신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 철저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은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공간적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대한민국 해외 이민 역사 기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상징적 건물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예산안은 72억 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5)]

[2025년도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23,754	27,757	4,003	16.9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	7,203	7,203	순증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 7,203,000천원 - 공사비 7,203,000천원 ※ 기투자금 8,456,000천원

자료: 재외동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일반회계-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5032-303)(교류협력국)

5) 2021·2022년에는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건립부지 계획 차질로 전액 이월 및 2023·2024년 예산 미편성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공사비	22,241	· 건축비: 2,325,565원/㎡ x 7,800㎡ (유사 시설물 평균 공사비 x 면적) = 18,139,410천원 · 전시시설 설치비: 3,181,162천원 · 유물수집비: 920,625천원
건설보상비	4,721	· 3,240,387원/㎡ x 1,457㎡ (마곡부지 부지매입 조성원가 x 면적) = 4,721,244천원
설계비	1,483	· 설계비: 16,490,373천원(적용공사비) x 4.90%(요율) = 889,311천원 · 추가 인증 설계비 138,584천원 · 공모보상비 100,000천원 · 측량 및 조사비 181,394천원 · 녹색건축 예비인증수수료 6,393천원 · 녹색건축 본인증수수료 8,737천원 · BF 예비인증수수료 2,719천원 · BF 본인증수수료 5,320천원 · 전시실 설계비 150,306천원
감리비	1,486	· 16,490,373천원(적용공사비) x 8.19%(요율) = 1,485,871천원
시설부대비	43	· 16,490,373천원(적용공사비) x 0.24%(요율) = 42,994천원
계	29,974	

자료: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

나. 검토의견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당초 검토 중이던 부지(서울 마곡지구)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며 2021·2022년도 예산이 전액 이월되었고, 2023년 예산현액 84억 5,600만원 중 설계용역 선금 6억 4,700만원만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 78억 900만원이 다시 2024년도로 이월됨에 따라, 3년 연속 이월이 발생하였음.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2021년	1,270	1,270	1,270	-	1,270
2022년	7,186	7,186	8,456	-	8,456
2023년	-	-	8,456	647	7,809
2024년	-	-	7,809	50(예상)	7,759(예상)
2025년	7,203	-	-	-	-

주) 2024년 재외동포협력센터 집행액(실집행액) 및 이월액은 2024년 10월 기준 예상액
자료: 재외동포청

주요 건립 추진 경과를 보면, 2022년 9월 재외동포재단과 서울대학교 간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부속 합의를 체결함에 따라 건립 부지(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173,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가 확정되었고, 이에 재외동포협력센터는 2023년에 설계용역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6]에 착수하였음.

그러나 서울대학교 캠퍼스위원회의 시설사업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7] 진행 중이던 설계용역이 2024년 1월 19일부터 일시정지 되었고, 교통영향평가 용역 계약기간 종료일도 계획설계 이후로 변경될 예정임.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건축 협의는 2024년 5월에 완료되어[8] 10월 현재 조달청이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 중이고, 적정성 검토 및 건축심의가 끝나는 대로 11월부터 중간설계와 조달청 적정성 검토,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함.

이후 실시설계와 이에 대한 조달청 적정성 검토,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을 거쳐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공사입찰이 계획되어 있음.

---

6) 2023년 당초 계약현황
- 설계용역: 주식회사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 2023. 1. 25.~2024. 4. 29. / 계약금액 10억 5,200만원
- 교통영향평가용역: 주식회사 이원알앤디 / 2023. 6. 1.~2024. 3. 26. / 계약금액 4,950만원
-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조달청 / 2023. 2. 1.~공사계약 체결일 / 계약금액 1억 684만원

7) ㅇ **2023. 11. 29. 서울대학교 캠퍼스위원회 시설사업 심의 안건 상정 결과: 재심의**
- 시흥캠퍼스 내 인프라 설비(기계설비, 전기, 배관 등)와 연계
- 지하에 조성된 통합주차장을 사용하는 마스터플랜 반영을 검토
- 소방 관련법 및 사이니지 계획을 검토

ㅇ **2024. 2. 20. 서울대학교 캠퍼스위원회 시설사업 심의 안건 상정 결과: 원안보류**
- 통합주차장 활용 및 공동구 연결 방안을 협의, 합리적 계획안을 마련
- 지난 위원회 심의 의견 반영으로 변경된 입면도를 제시
- 서울대학교 공식 UI가이드 라인을 준용

8) ㅇ **2024. 5. 24. 서울대학교 캠퍼스위원회 시설사업 심의 안건 상정 결과: 의결**
- 심의 중 의논되었던 사항들에 대한 추후 지속적 점검을 조건으로 의결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추진 현황]

시기	추진내역
2022. 9.	· 재외동포재단과 서울대학교 간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부속 합의 체결(부지: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173)
2023. 1.	· 설계용역 시작
2023. 6.	· 교통영향평가용역 시작
2023. 10.	· 설계용역 선금 지급(6억 4,700만원)
2023. 11.~ 2024. 5.	· 서울대학교 건축 협의
2024. 1.	· 설계용역 일시정지(계획설계 적정성 검토 및 건축심의 완료 후 재개)
2024. 6.	·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협의
2024. 7.	·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시흥배곧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부설주차장 관련 시흥시 주차관리팀 협의
2024. 8.	· 조달청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 접수 요청
2024. 9.	·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보고서 제출(경기경제자유구역청)
2024. 11.	·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건축심의 시행(예정)

자료: 재외동포협력센터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중간설계와 실시설계 각각의 단계에서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지연될 경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등 이어지는 일정의 순연이 불가피하고, 2025년 예산안에 편성된 공사비의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일정(안) 및 고려사항]

구분	재외동포협력센터 안	고려사항
조달청 적정성 검토	2024. 11.	
중간설계	2024. 11. ~ 2025. 2.	약 3개월
조달성 적정성 검토		약 15일
총사업비 조정 협의		특정 곤란
실시설계	2025. 2. ~ 2025. 7.	약 5개월
조달성 적정성 검토		약 15일
총사업비 조정 협의		특정 곤란
공사업체 공모	2025 8. 공사 발주	약 2~3개월 또는 그 이상

주) 2025년도 공정률 30%, 2026년도 공정률 70%, 2026년 12월 완공(계획)
자료: 재외동포협력센터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건립 일정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사업: 사업 추진 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사업은 차세대 동포의 모국 방문 체험을 통해 한인 정체성 함양과 한국의 발전상을 이해하고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며 한인 정체성을 보유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억 9,700만원(23.8%)이 증액된 88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음.[9)]

[2025년도 차세대 육성사업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23,754	27,757	4,003	16.9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7,129	8,826	1,697	23.8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안 산출근거]

구분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안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237억 5,400만원	277억 5,700만원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 2,100명×3,395천원 = 7,129,000천원	· 2,600명×3,395천원 = 8,826,000천원

자료: 재외동포청

나. 검토의견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는 2025년도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사업 추진 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사업은 모국 방문 체험을 통한 한인 정체성 함양 등을 목적으로, 하계·동계로 구분하여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을 초청하고 한국 정치·경제 발전상 체험, 한국 역사 시설 방문, 토론·발표를 통한 타지역 동포사회 이해 등의 프로

9) 일반회계-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5032-303)(교류협력국)

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임.

2025년도 계획을 살펴보면 재외동포 2,600명(국내 900명 별도)의 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8차에 나누어 초청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1~6차는 하계, 7~8차는 동계에 각 6박 7일의 일정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그런데 연수기간을 보면 동계연수는 2026년도 1월로 계획되어 있음.

[2025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사업 개요]

ㅇ **개 요**
- 사업명: 2025년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 기 간: 7~8월 중(1~6차), 2026년 1월 중(7, 8차), 각 6박 7일
- 장 소: 서울 및 지방
- 인 원: 재외동포 2,600명, 국내 900명

ㅇ **연수목적**
- 한국의 역사·문화적 우수성과 사회·경제적 발전상을 체험하게 하여,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과 자긍심 고취
- 재외동포-국내 차세대간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유대감 증진
-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인류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

ㅇ **주요 프로그램**
- 모국체험, 한국 발전상 체험, 한국어 및 문화교육, 리더십 교육,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OKFriends 봉사단 운영 등

자료: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

이와 관련하여 2019년 이후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9~2021년에는 하계연수만 실시하여 사업을 당해연도 내에 마쳤으나, 2022년 이후에는 동계연수를 추가로 실시하면서 이를 다음연도 1월에 진행하였음.

재외동포협력센터에 따르면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학업일정 및 방학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이후에는 하계연수 기간에 참여할 수 없는 재외동포 청소년을 위해 동계연수를 마련하면서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예산을 이월하여 집행하게 되었다는 입장임.

[2019~2024년도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일정]

구분		기간	인원	비고
2019년	1차	2019. 7. 9.(화)~7. 16.(화)	435명(국내 포함)	대학생
	2차	2019. 7. 17.(수)~7. 23.(화)	584명(국내 포함)	청소년
	3차	2019. 7. 31.(수)~8. 6.(화)	414명(국내 포함)	청소년
2021년 (온라인)	청소년	[체험연수] 2021. 8. 15.(일)~9. 17.(목), 2021. 9. 26.(일)~11. 11.(목), [집중연수] 2021. 9. 26.(일)~10. 3.(일), 2021. 10. 10.(일)~10. 17.(일), 2021. 10 31.(일)~11. 7.(일)	911명(국내 포함)	청소년
	대학생	[체험연수] 2021. 9. 26.(일)~11. 11.(목), [집중연수] 2021. 9. 26.(일)~10. 3.(일), 2021. 10. 10.(일)~10. 17.(일), 2021. 10 31.(일)~11. 7.(일)	739명(국내 포함)	대학생
2021년 (오프라인)	1차	2021. 11. 11.(목)~11. 15.(월)	52명(국내거주 재외동포 및 국내)	대학생
	2차	2021. 11. 18.(목)~11. 22.(월)	46명(국내거주 재외동포 및 국내)	대학생
	3차	2021. 11. 25.(목)~11. 28.(일)	142명(국내거주 재외동포 및 국내)	청소년
	4차	2021. 12. 2.(목)~12. 5.(일)	175명(국내거주 재외동포 및 국내)	청소년
2022년	1차	2022. 7. 14.(목)~7. 19.(화)	378명(국내 포함)	청소년
	2차	2022. 7. 20.(수)~7. 27.(수)	208명(국내 포함)	대학생
	3차	2022. 7. 28.(목)~8. 2.(화)	278명(국내 포함)	청소년
	4차	2022. 8. 3.(수)~8. 10.(수)	202명(국내 포함)	대학생
	5차	**2023. 1. 12.(목)~1. 17.(화)**	**259명(국내 포함)**	**청소년**
2023년	1차	2023. 7. 10.(월)~7. 16.(일)	435명(국내 포함)	청소년
	2차	2023. 7. 18.(화)~7. 25.(화)	265명(국내 포함)	대학생
	3차	2023. 8. 1.(화)~8. 8.(화)	283명(국내 포함)	대학생
	4차	2023. 8. 7.(월)~8. 13.(일)	426명(국내 포함)	청소년
	5차	**2024. 1. 18.(목)~1. 24.(수)**	**255명**(국내 포함)	**청소년**
2024년	1차	2024. 7. 15.(월)~7. 21.(일)	300명(국내 별도)	청소년
	2차	2024. 7. 22.(월)~7. 28.(일)	300명(국내 별도)	청소년
	3차	2024. 7. 23.(화)~7. 30.(화)	300명(국내 별도)	대학생
	4차	2024. 7. 29.(월)~8. 4.(일)	300명(국내 별도)	청소년
	5차	2024. 8. 5.(월)~8. 11.(일)	300명(국내 별도)	청소년
	6차	2024. 8. 6.(화)~8. 13.(화)	300명(국내 별도)	대학생
	7차	**2025. 1. 13.(월)~1. 19.(일)**	**100명(국내 별도)**	**청소년**
	8차	**2025. 1. 14.(화)~1. 21.(화)**	**100명(국내 별도)**	**대학생**

주) 2021년도 오프라인 연수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초청이 불가하여 국내 거주 재외동포 또는 국내 청소년 대상으로 사업 시행

자료: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

[2019~2025년도 예산 및 사업 집행(계획) 시기]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분기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예산	2019 예산				사업예산 반납				2021 예산				2022 예산				2023 예산				2024 예산				2025 예산					
사업	2019 사업								2021 사업				**2022 사업**					**2023 사업**				**2024 사업**				**2025 사업**				

주) 2020년도 연수: 코로나19 대응, 2차 추경 등으로 관련 예산 반납(△37억 8,500만원)
자료: 재외동포청 및 제외동포협력센터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2024년에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026년도에 집행할 예산까지 편성하는 것은「국가재정법」제3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던 순서를 바꾸어 1~2월 중 동계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7~8월 중 하계사업을 실시하는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회계연도 내(2025. 1. 1. ~2025. 12. 31.)에 사업을 마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재외동포 국내정착 지원 사업(신규): 교육프로그램 개발 후 사업 진행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재외동포 국내정착 지원’**은 국내체류 재외동포 대상 맞춤형 적응 교육 개발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사업 수행을 통해 재외동포청 주도의 체계적인 정착지원 추진 및 국내동포의 안정적인 사회적응·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예산안은 10억 4,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0)]

[2025년도 재외동포 국내정착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551	1,096	545	98.9
재외동포 국내정착 지원	-	1,045	1,045	순증

[2025년도 재외동포 국내정착 지원 사업 산출내역]

○ **재외동포 국내정착 지원**: (’24) 0 → (’25요구) 1,045백만원, 순증

-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24) 0 → (’25요구) 690백만원, 순증
  - (요구)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안정적인 국내동포 지원을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연계가 필수인 점을 감안, 지자체 보조금 신규 예산 요구
  - (산출) 상반기 지자체 보조 10개소×92백만원×보조율 50%=460백만원
    하반기 지자체 보조 8개소×56.5백만원×보조율 50%=226백만원
    심의위원 수고료 등 기타비용 4회×1백만원=4백만원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4) 0 → (’25요구) 355백만원, 순증
  - (요구) 연령별 동포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개발을 위한 신규 예산 요구
  - (산출) 교육프로그램 개발 1식×200백만원=200백만원
    교육프로그램 시범운영 3회×50백만원=150백만원
    조달수수료 등 기타비용 5회×1백만원=5백만원

자료: 재외동포협력센터

10) 일반회계-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5036-304)(교류협력국)

재외동포 국내정착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과 연령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의 경우, 지역별 동포사회 특성을 고려한 사업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임. 2024년 4분기 중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사업을 공모·선정하여 2025년 1월 중에 1차 보조금 교부 및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은 국내 입국한 재외동포들의 원만한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연령별 교육프로그램을 2025년 상반기 중 개발하여 시범 운영하고, 하반기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재외동포 국내정착 지원 사업 내용]

구분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목표	·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내 재외동포 적응지원 사업 수행**	· **연령별 적응교육을 통한 동포들의 장기적 생활역량 강화 도모**
예산규모	· **6억 9,000만원**(국고보조율 50%) - 일반수용비(210-01): 400만원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 6억 8,600만원	· **3억 5,500만원** - 일반수용비(210-01): 500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3억 5,000만원
추진방식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10~15개 지자체 지원, 사업당 1억원 이내)	· (개발) 교육 전문기관 위탁 → 시범운영 통한 교육과정 검증 · (운영) 보조금 지급을 통한 지역별 운영
추진계획 (추진일정)	· 지자체 정책수요 파악('24.10.) → 사업설명회 개최('24.10.) → 보조사업 공모('24.11.) → 보조사업 조정·심의·선정('24.12.) → 1차 보조금 교부 및 사업착수('25.1.) → 집행점검 및 2차 보조금 교부('25.7.)	· 교육수요 파악('24 하반기) → 교육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24.12.) → 연구용역 실시('25.1~4월) → 교육프로그램 시범운영 및 교육과정 검증('25.4~6월) → 교육프로그램 운영('25 하반기)
사업(교육) 예시	· 생활역량 강화: 자격증 취득지원 등 · 산업 및 생활안전 : 산업안전·노무 관련 교육 · 한국사회 적응 : 한국어 회화, 동포인식 개선 등 · 초기 체류 지원 : 생활기반 마련 지원 등	· 전연령 : 실용 한국어 · 청소년 대상 : 한인 정체성 함양 및 자긍심 고취 · 성인 대상 : 자격증 취득, 사업장 안전·납세제도 등 교육 · 노년 대상 : 한국사회 변화 및 사회기여 등

자료: 재외동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첫째,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시 사업수요 예측이 면밀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사업대상인 국내체류 재외동포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6월 말 기준 국내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는 총 54만 4,932명이고, 경기도에 가장 많은 거소신고가 있음.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광역자치단체 기준)]

(2024. 6. 30. 기준, 단위: 명)

구분	남성	여성	계	구분	남성	여성	계
서울특별시(25)	70,438	76,042	146,480	강원특별자치도(18)	1,815	2,308	4,123
부산광역시(16)	3,267	4,062	7,329	충청북도(11)	8,706	7,521	16,227
대구광역시(8)	2,594	2,881	5,475	충청남도(15)	18,124	15,365	33,489
인천광역시(10)	20,049	22,447	42,496	전북특별자치도(14)	2,091	2,152	4,243
광주광역시(5)	3,113	3,099	6,212	전라남도(22)	2,051	1,990	4,041
대전광역시(5)	1,503	1,815	3,318	경상북도(23)	5,418	5,044	10,462
울산광역시(5)	3,735	2,860	6,595	경상남도(18)	7,869	6,832	14,701
세종특별자치시(0)	724	708	1,432	제주특별자치도(0)	1,628	1,893	3,521
경기도(31)	**118,058**	**116,730**	**234,788**	**계**	**271,183**	**273,749**	**544,932**

주) 괄호 안은 기초자치단체 수(총 226개)
자료: 법무부 통계월보 중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2024년 6월 말 기준)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2024년 10월초 현재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가 진행 중이고, 11월 중 사업설명회를 거쳐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모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함.

그런데 2025년도 예산안 산출내역을 보면 18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사업수요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 없이 산출된 것으로 보임.

둘째, 지역별 동포사회 특성과 연령별 특성에 맞춘 사업 진행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연령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은 2025년 상반기에 개발이 완료되어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이고,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은 2025년 1월부터 바로 진행될 예정임.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의 사업 예시 중 자격증 취득지원, 산업안전·노무

관련 교육, 한국어 회화 등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의 교육 예시 중 자격증 취득, 기초안전 및 산업안전, 실용한국어 등과 중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을 배포함으로써 지역별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상반기에 시작되는 지역별 정착지원 사업 내용이 하반기에 배포하는 교육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경우, 기존 사업에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적용으로 혼선이 있을 수 있고, 기존 사업과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별도로 추진하는 경우 중복사업 추진으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재외동포청은 지역별 정착지원 사업의 효과를 개선하고 사업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재외동포와의 소통 플랫폼 구축 사업(신규): 기존 송출 인프라 활용방안 강구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재외동포와의 소통 플랫폼 구축’**은 우리 동포들의 재외동포정책 및 국정 이해도 제고,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 간 소통 확대, 재외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 및 자긍심 고취, 재외동포청 운영 웹사이트 연계 및 통합관리를 위한 것으로, 2025년 예산안은 23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1)]

[2025년도 재외동포와의 소통 플랫폼 구축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공보·홍보 역량강화	1,687	4,209	2,522	149.5
기획홍보	1,033	3,937	2,904	281.1
재외동포와의 소통 플랫폼 구축	-	2,350	2,350	순증

[재외동포와의 소통 플랫폼 구축 사업 계획]

□ **목 적**

○ ‘재외동포와의 소통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 ▲우리 동포들의 재외동포정책 및 국정 이해도 제고,
- ▲재외동포청↔재외동포 간 소통 확대,
- ▲재외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 및 자긍심 고취,
- ▲청 운영 웹사이트(코리안넷, 한상넷, 스터디코리안) 연계 및 통합관리

□ **추진 방향**

○ 국정 및 재외동포정책 홍보 강화
- 국정 및 재외동포정책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
-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한국 발전상 알리기 프로젝트’ 관련 콘텐츠 제작 등

○ 재외동포 맞춤형 프로그램 제작
- 재외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 제고를 위한 다양한 K-콘텐츠 제작

○ 홍보 플랫폼 통합 운영
- 홍보 플랫폼 구축(인터넷 기반 뉴미디어) 및 기존의 플랫폼(SNS) 통합 운영을 통한 재외동포의 접근성 강화

11) 일반회계-공보·홍보 역량강화(7121-301)(대변인실)

□ 기대효과
ㅇ 재외동포 대상 교육용 자료 개발 및 정보 제공을 통해 국정 이해도 제고
ㅇ 플랫폼 통합·운영을 통한 콘텐츠 관리 및 활용도 향상

자료: 재외동포청

나. 검토의견

제작한 콘텐츠의 관리 및 송출을 위하여 기존 국제방송국, 홈페이지·SNS 계정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재외동포와의 소통 플랫폼 구축’ 사업은 맞춤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재외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을 제고하고, 홍보플랫폼 통합 운영을 통해 재외동포의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음. 이를 위해 ‘TV 콘텐츠 제작’과, ‘24시간 관리·편성·송출·관제·분석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 하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먼저 ‘TV 콘텐츠 제작 사업’은 일반용역비[12] 12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동포사회 소개, 한류 확산 관련 공공외교, 정부와 재외동포청 주요정책 소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작을 계획하고 있음.

‘24시간 관리·송출·관제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은 일반용역비 11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용역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재외동포청의 영상콘텐츠를 TV채널과 SNS계정 등으로 송출하고 영상콘텐츠를 관리·편성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2025년도 재외동포와의 소통 플랫폼 구축 사업 산출내역]

□ TV 콘텐츠 제작 (방송 편성 및 SNS 채널 공유) (12억 5,000만원, 일반용역비)
ㅇ 동포사회 소개 콘텐츠 (20분물 x 월 4회 = 연 52회) (4억원)
- 전 세계 동포사회 주요 소식과 주류사회 진출 한인 조명
- 소외 동포(입양 동포, 사할린 동포 등) 주제 전용 코너 운영
ㅇ 공공외교 관련 콘텐츠 (20분물 x 월 4회 = 연 52회) (4억원)
- 한국어, K-팝 소식과 한류 확산에 기여하는 동포 역할 조명(공공외교)
ㅇ 재외동포 정책 게시판 (5분물 x 월4회 = 연52회) (1.2억원)
- 정부와 동포청 추진 연중 주요 정책 소개와 기관장 주요 동정
- 동포청 관계자 및 유관 기관 관계자 방송 출연

12)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조사연구 관련 용역은 일반연구비(260-01목)로 집행

ㅇ **특집 프로그램 (3.3억원)**
- ‘아르헨티나 한인 이주 60주년’ 기획 (3부작)
-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획 (3부작)
- ‘국내 사할린 동포 가족 영주 귀국’ 기획 (2부작)

□ **24시간 관리/편성/송출/관제/분석을 위한 인프라 구축 (11억원, 일반용역비)**

ㅇ **1 단계 : 콘텐츠 제작 & 관리**
- 예상 비용 : 1.1억 원 (CMS 개발 및 스토리지 시스템 구축)
- 예상 기간 : 3개월
  · 콘텐츠 관리시스템(CMS) : 관리자 페이지 및 콘텐츠 검색 시스템 개발
  · 콘텐츠 편집 :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그래픽 작업용 컴퓨터
  · 콘텐츠 저장 : 고용량 스토리지 시스템 구축

ㅇ **2 단계 : 프로그램 편성 시스템**
- 예상 비용 : 1.1억 원 (APC 서버 2대)
- 예상 기간 : 3개월
  · 편성 소프트웨어 : 방송 운영표(스케줄)를 수신하거나 직접 작성
  · 자동 스케쥴 시스템 : 정해진 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프로그램 송출

ㅇ **3 단계 : 송출 인프라 구축 (스트리밍 서비스)**
- 예상 비용 : 2.7억 원 (AWS Elemental : 2.2억 / Customization : 0.5억)
- 예상 기간 : 6개월
  · 라이브 방송 시스템 : 라이브 방송 송출을 위한 시스템
  · 멀티 채널 / 스트리밍 송출 : 여러 채널의 동시 송출을 위한 시스템
  · CDN : 전 세계 시청자에게 안정적인 스트리밍을 제공

ㅇ **4 단계 : 관제 및 분석**
- 예상 비용 : 6.1억 원 (관제시스템 : 2.2억 / 통계 및 분석 : 2.2억 / 운영 : 1.7억)
- 예상 기간 : 6개월
  · 실시간 및 통합 모니터링 : 방송 상태 및 네트워크 트래픽 실시간 모니터링
  · 알람 및 분석, 통계 시스템 : 장애 발생 시 즉시 알람, 프로그램별 통계 분석

자료: 재외동포청

그런데 영상콘텐츠의 TV채널 송출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재외동포가 시청할 수 있는 TV채널로는 한국방송공사의 ‘KBS 코리아’,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아리랑TV(아리랑 국제방송)’, YTN의 ‘YTN world’ 등 여러 채널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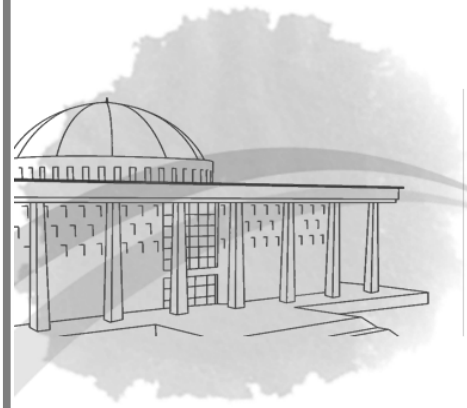
또한 재외동포청은 청 홈페이지와 별도로 유튜브 채널[13]과 인스타그램 계정[14], 페이스북 계정,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므로, 이미 개설되어있는 홈페이지 및 각종 SNS 계정에 재외동포청이 제작하는 영상콘텐츠를 연계하여 게시하면, 영상콘텐츠에 대한 홍보 및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13) 2024년 10월 현재, 영상 92개, 구독자 3,730명, www.youtube.com/@OKAKOREA

14) 2024년 10월 현재, 게시물 148개, 구독자 8,745명, www.instagram.com/overseas_koreans_agency

따라서 제작한 콘텐츠의 관리 및 송출을 위하여 기존 국제방송국, 홈페이지·SNS 계정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국방위원회



국방부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국방부 소관 총수입은 2조 9,736억원으로, 전년 대비 7,213억원(32.0%) 증가함. 예산은 1조 5,879억원으로 전년 대비 7,464억원(88.7%) 증가한 반면, 기금은 1조 3,857억원으로 전년 대비 251억원(△1.8%) 감소함.[1)]

[2025년도 국방부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8,415	15,879	7,464	88.7
기 금	14,108	13,857	△251	△1.8
총수입	22,523	29,736	7,213	32.0

문의 : 김석룡 예산결산조사관 dragon@assembly.go.kr (02-6788-567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국방부 소관 총지출은 45조 1,769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8,248억원(4.2%) 증가함. 예산은 40조 2,2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5,199억원(3.9%) 증가하고, 기금은 4조 9,51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49억원(6.6%) 증가함.

[2025년도 국방부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387,060	402,259	15,199	3.9
기 금	46,461	49,510	3,049	6.6
총지출	433,521	451,769	18,248	4.2

나. 예산안

2025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은 총 3개 회계(일반회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3개 회계(일반회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2조 4,018억원으로 전년 대비 9,407억원(64.4%) 증가함.

[2025년도 국방부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2,418	3,294	876	36.2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5,767	15,003	9,236	160.2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6,426	5,721	△705	△11.0
합 계	14,611	24,018	9,407	64.4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국방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3개 회계(일반회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45조 5,89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5,985억원(6.0%) 증가함.

[2025년도 국방부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417,712	435,166	17,454	4.2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5,767	15,003	9,236	160.2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6,426	5,721	△705	△11.0
합 계	429,905	455,890	25,985	6.0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국방부 소관 2개 기금(군인복지기금, 군인연금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5조 6,17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60억원(9.9%) 증가함.

[2025년도 국방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군인복지기금	8,518	8,518	10,118	1,600	18.8
군인연금기금	42,592	42,592	46,052	3,460	8.1
합 계	51,110	51,110	56,170	5,060	9.9

주)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국방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7개(3,207억 4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국방ICT혁신기술’ 사업은 ’22년부터 국방부-과기부간 협업으로 ICT첨단기술을 개발하여 국방에 적용하는 “국방ICT R&D사업” 중 ’25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방운용에 활용 가능한 AI의사결정 지원 기술개발을 위한 요소기술로서 지능형 네트워크 기술개발 과제에 10억원 편성되었음.

‘전력지원체계지원’ 사업은 군 전투력 보장 및 장병 복지향상을 위한 각 군 주도의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수행 및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기획, 연구개발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금 사업으로 국방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군수정책지원(2341-301) 내 내역사업 2건을 분리하여 신설하여 2025년 예산안은 84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음.

‘경계 및 작전시설’ 사업은 전·평시 경계 및 작전 수행여건 보장을 위해 노후하고 부족한 경계시설과 작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군 본연의 작전임무와 연관성이 높은 시설에 해당되어 그 중요도를 고려하여 별도 관리하기 위해 기존 일반지원시설 세부사업에서 예산 코드를 분리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416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해군잠수함수리창 기본경비’와 ‘해군잠수함수리창 사업 및 지원비’ 사업은 해군잠수함수리창이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일반회계의 예산을 신규 세부사업으로 신설하여 이관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0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음.

관사 부족으로 인해 관사에 입주하지 못하는 군 간부에게 지원하는 군 간부 전세자금 이자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군인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으로의 전출금 670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서 ‘36사단 공병대대 이전’ 사업은 원주권 군부지 토지위탁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36사단 공병대대를 153공병대대로 통합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5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2025년도 국방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계획안)
[일반회계]		
1	국방 ICT 혁신기술	1,000
2	전력지원체계지원	8,419
3	경계및작전시설	241,615
4	해군잠수함수리창기본경비	95
5	해군잠수함수리창사업및지원비	923
6	군인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전출	67,055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7	36사단 공병대대 이전	1,597
총지출		320,704

한편, 국방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병인건비’ 사업, ‘병내일준비지원’ 사업,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 등 총 37개임.[3)]

[2025년도 국방부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장교인건비	4,755,600	4,865,905	110,305	2.3
2	부사관인건비	6,856,750	7,018,290	161,540	2.4
3	병인건비	3,265,526	3,773,774	508,248	15.6
4	군무원인건비	2,563,118	2,674,491	111,373	4.3
5	국방광대역통합망(BTL)정부지급금	17,730	114,334	96,604	544.8
6	병내일준비지원	1,019,109	1,327,660	308,551	30.3
7	기동장비(유지)	844,970	920,156	75,186	8.9
8	항공장비(유지)	1,837,207	2,072,722	235,515	12.8
9	함정장비(유지)	486,767	513,586	26,819	5.5
10	통신전자장비(유지)	231,867	249,775	17,908	7.7
11	주요기관교육용탄약	386	8,383	7,997	2071.7
12	탄약정비	124,556	146,952	22,396	18.0
13	관사및간부숙소	525,977	786,292	260,315	49.5
14	BTL정부지급금	599,294	619,285	19,991	3.3
15	정비및보급시설	313,356	394,076	80,720	25.8
16	시설정책지원	170,006	183,611	13,605	8.0
17	부지매입	10,462	14,049	3,587	34.3
18	공공요금	538,110	580,668	42,558	7.9
19	일반훈련	56,356	73,860	17,504	31.0
20	해군2수리창사업및지원비	1,204	4,020	2,816	233.9
21	인건비	516,632	553,835	37,203	7.2
22	군사시설개선	563,204	596,377	33,173	5.9
23	정책연구활동	376	500	124	33.0
24	부대운영지원	101,034	220,174	119,140	117.9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25	1군지사이전	10,176	64,810	54,634	536.9
26	행정지원및기타	36,495	65,224	28,729	78.7
27	부대개편4차	20,966	41,577	20,611	98.3
28	부대개편7차	153,024	289,688	136,664	89.3
29	군사안보지원학교이전	178	8,352	8,174	4592.1
30	부대개편8차	14,539	52,593	38,054	261.7
[군인복지기금]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31	복지시설운영	342,784	374,133	31,349	9.1
32	복지시설확보	26,733	40,366	13,633	51.0
33	장병격려사업	22,033	40,427	18,394	83.5
34	군간부전세자금이자지원	52,107	67,055	14,948	28.7
35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35,476	179,568	144,092	406.2
[군인연금기금]					
36	퇴직급여	3,594,037	3,908,823	314,786	8.8
37	퇴직수당	308,483	334,739	26,256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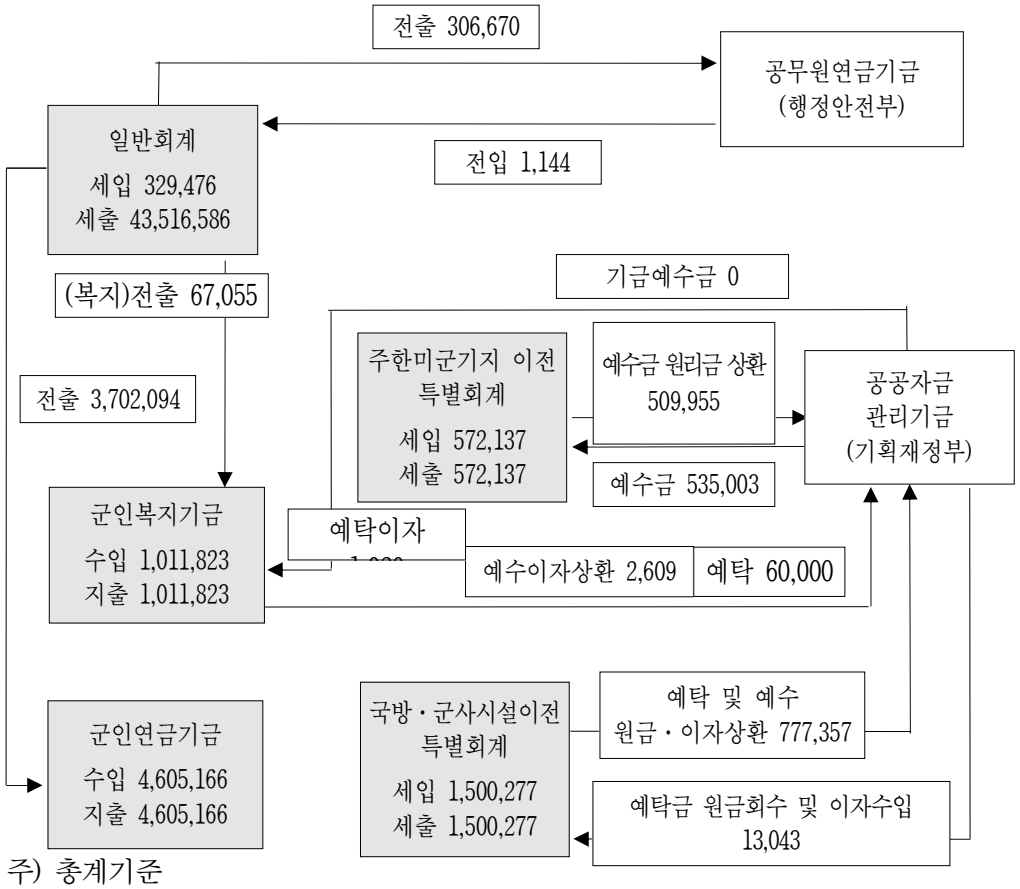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국방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 군인복지기금·군인연금기금 등 2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군인복지기금으로 671억원, 군인연금기금으로 3조 7,021억원, 공무원연금기금으로 3,067억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또한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7,774억원이 예탁되었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군인복지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600억원이 예탁되었음.

[국방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주) 총계기준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강화 및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위한 국정과제 소요를 집중 투자하는 데 있음. 특히,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하여 2025년까지 병장 기준 20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였으며, 간부주거시설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군인가족 및 초급간부 주거 여건 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들 수 있음.

2025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미수납채권의 경우 채권추심이 가능한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채권확보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징계처분의 실효성 제고 및 세입예산의 증액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장기계속계약[4] 사업 중에 낙찰차액 및 계약불능이 발생된 사업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2025년도 장비획득 단위사업 예산은 조정될 필요가 있음.

셋째, 국방부가 편성한 ‘장병 마약류 검사키트’ 사업의 마약류 검사키트 당 편성단가는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병무청의 편성단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국방부의 마약류 검사키트 단가가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 ‘3군단 마좌리 실전적 과학화 훈련장’ 사업은 「방위사업법」과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산편성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채 2025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바, 예산심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4) 장기계속계약: 정부 기관에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당해 연도 내에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사업의 이행에 수년을 필요로 할 때 체결되는 계약으로 한 번의 계약으로 전체 사업을 수행함.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징계부과금: 수납액 증대 노력 필요

가. 개 요

‘징계부과금’ 은 공무원(군인, 군무원 포함)의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유용의 비위일 경우 징계처분 외에 금품수수액의 5배 내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수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같은 1,600만원이 편성되었음.[5)]

[2025년도 징계부과금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징계부과금	16	16	-	-

[징계부과금 예산안 세부내역]

○ (13+0+31)/3 = 14백만원*기재부 조정치 = 16백만원

자료: 국방부

5) 세입목명: 징계부과금(56-564)(법무관리관실)

나. 검토의견

미수납채권의 경우 채권추심이 가능한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채권확보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징계처분의 실효성 제고 및 수납액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징계부과금’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6]에 따라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의 비위일 경우 징계처분 외에 금품수수액의 5배 내에서 추가로 부과된 금액을 수납하는 과목임.

‘징계부과금’의 2025년 예산안 편성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국방부는 최근 3년간의 수납실적을 평균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징계부과금 세부 산출내역]

○ 최근 3년('21년~'23년) 평균 수납액 - (13+0+31)/3 = 14백만원*기재부 조정치 = 16백만원

자료: 국방부

그런데 징계부과금의 연도별 징수결정액 현황을 보면, 2022년도 수입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나 징수결정액은 2억 7,500만원이었고, 2023년도는 1,600만원의 수입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징수결정액은 3억 1,100만원이었으며, 2024년도 역시 1,600만원의 수입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징수결정액은 130억 9,000만원으로 크게 상승[7]하였음.

---

6)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징계부과금은 금품비위금액의 5배 이내에서 비위의 정도에 따라 부과 의결(「군인 징계령」 제13조의2,

[최근 3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A)						
'22	-	-	-	275	-	-	-	275
'23	16	16	9	311	31	191.9	9.9	281
'24.8	16	16	16	13,153	14	87.5	0.1	13,139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2024년도 징수결정액이 크게 상승한 이유에 대해 2024년 징계부과금 부과의결 대상자의 금품 비위금액이 다액이고, 비위 정도가 중하여 전년 대비 징수결정액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2024년도 미수납 주요 세부내역(5천만원 이상)]

(단위: 원)

납부자	금품비위금액	배수	의결금액	비고
정○	20,649,570	3	61,948,710	공금횡령
정○대	2,937,134,500	4	11,748,538,000	금품수수
김○배	210,300,000	4	841,200,000	금품수수
이○호	59,100,000	1	59,100,000	금품수수

자료: 국방부

그러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2023년 3,100만원(9.9%), 2024년 8월 현재 1,400만원(0.1%) 등 수납금액 및 수납률이 징수결정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연도별 대부분의 금액이 채권확보가 되지 않아 미수납금액으로 잡히고 있음.

따라서 국방부는 미수납채권의 경우 채권추심이 가능한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채권확보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징계처분의 실효성 제고 및 수납액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3)

<세 출>

2. 장비획득 사업: 장기계속사업의 낙찰차액 감액 필요

가. 개 요

‘장비획득’ 단위사업(2331)은 「군수품 관리훈령」상 7종(장비류)에 해당하는 장비[8]를 획득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93억 3,800만원(△13.7%) 감소한 4,957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음.[9]

[2025년도 장비획득 단위사업(2331)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장비획득	575,107	495,769	△79,338	△13.7
기동장비 (2331-301)	249,410	204,848	△44,562	△17.9
화력장비 (2331-302)	23,356	20,919	△2,437	△10.4
항공장비 (2331-303)	38,255	32,939	△5,316	△13.9
함정장비 (2331-304)	36,125	32,476	△3,649	△10.1
통신전자장비 (2331-305)	58,448	63,206	4,758	8.1
일반장비 (2331-306)	84,339	67,286	△17,053	△20.2
특수장비 (2331-307)	27,789	31,835	4,046	14.6
정밀측정장비 (2331-308)	13,239	12,674	△565	△4.3
정비장비 (2331-309)	44,146	29,586	△14,560	△32.9

자료: 국방부

8) 「군수품 관리훈령」
제8조 (기본 분류: 장비 · 물자 · 탄약 분류) 군수품은 성질 및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장비, 물자, 탄약으로 기본 분류한다.
1. 장비 : 전차, 함정, 항공기 등과 같이 동력원(엔진, 전지, 전기 등)에 의해 작동되고, 비소모품이며, 주요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정해진 수명기간 동안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완제품으로서 구조적으로 부분품, 결합체 및 구성품으로 구성된 물품
제9조 (종별 분류) 군수품은 용도, 성질, 보급방법 등이 유사한 품목별로 1종(식량류), 2종(일반물자류), 3종(유류), 4종(건설자재류), 5종(탄약류), 6종(복지매장판매품), **7종(장비류)**, 8종(의무장비/물자류), 9종(수리부속/공구류), 10종(기타 물자류)으로 분류한다. 이 때, 종별 세부분류는 별표2(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9) 일반회계-장비획득(2331)(군수관리관실)

나. 검토의견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장기계속계약[10] 사업 중에 낙찰차액 및 계약불능이 발생된 사업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2025년도 장비획득 단위사업 예산은 조정될 필요가 있음.

2025년도에 편성된 장비획득 단위사업에서 2024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된 장기계속계약 대상 장비 수는 총 244개이며, 총사업비는 약 1,698억 3,400만원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장기계속계약 대상 사업]

(단위: 종, 백만원)

세부사업명	장비종류	연부액				
		'24년	'25년	'26년	'27년	계
기동장비	12	14,804	36,252	0		51,057
화력장비	24	1,232	17,060	0		18,293
항공장비	115	8,071	27,272	101		35,444
함정장비	27	7,107	20,707	6,298	0	34,112
통신전자장비	24	7,078	31,858	5,198		44,133
일반장비	28	856	30,290	0		31,145
특수장비	4	660	1,060	0		1,720
정밀측정장비	3	2,076	1,189	975	986	5,226
정비장비	7	1	4,146	1,778		5,925
계	244	41,885	169,834	14,350	986	227,055

주) 2024.10.15. 기준
자료: 국방부

이러한 사업들은 2024년도에 계약이 체결될 경우, 2025년도 낙찰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이 2025년도에 불용될 예정이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낙찰차액 만큼 2025년도 예산은 조정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 중 2024년 10월 15일 기준 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장비 종류는 20종이고, 낙찰차액에 따른 감액 규모는 37억 200만원으로 파악됨.

10) 장기계속계약: 정부 기관에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당해 연도 내에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사업의 이행에 수년을 필요로 할 때 체결되는 계약으로 한 번의 계약으로 전체 사업을 수행함.

[장기계속계약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2025년도 예산 조정 가능액]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계약일자	연부액				
					구분	'24년	'25년	계	조정가능액
기동장비(2331-301)	CRRT작전밴	'24~'25	94	'24.5.	예산	1	104	105	401
					계약	1	93	94	
	EOD작전차량	'24~'25	1,186	'24.6.	예산	1	1,457	1,458	
					계약	1	1,185	1,186	
	군 전용 표준화차 획득	'24~'25	2,155	'24.9.	예산	1,536	737	2,273	
					계약	1,536	619	2,155	
화력장비(2331-302)	[대태러] 사거리측정기, 레이저용	'24~'25	124	'24.8.	예산	1	164	165	148
					계약	3만원	124	124	
	[33군사경찰]사거리측정기, 레이저용	'24~'25	124	'24.8.	예산	1	164	165	
					계약	3만원	124	124	
	[33군사경찰]저격소총 표적획득장비	'24~'25	251	'24.9.	예산	1	318	319	
					계약	1	250	251	
항공장비(2331-303)	시동용발전기(DC GEN')	'24~'25	93	'24.10.	예산	1	121	122	163
					계약	1	92	93	
	시험세트, 응답기세트용	'24~'25	161	'24.8.	예산	1	223	224	
					계약	1	160	161	
	필터 유닛,액체용,압력식	'24~'25	188	'24.8.	예산	1	259	260	
					계약	1천원	188	188	
함정장비(2331-304)	고속단정 15인승	'24~'25	1,731	'24.8.	예산	1	1,999	2,000	1,181
					계약	1	1,730	1,731	
	대잠작전용 고속단정	'24~'25	3,245	'24.9.	예산	1,800	1,800	3,600	
					계약	1,800	1,445	3,245	
	특수작전용 고속단정	'24~'25	4,315	'24.9.	예산	2,400	2,400	4,800	
					계약	2,400	1,915	4,315	
	15인승 고속단정	'24~'25	860	'24.8.	예산	5천원	932	932	
					계약	5천원	860	860	
통신전자(2331-305)	전파환경측정분석기	'24~'25	4,367	'24.10.	예산	1,107	3,985	5,092	878
					계약	1,107	3,259	4,366	
	혼합 스테이지,주파수용	'24~'25	660	'24.8.	예산	1천원	812	812	
					계약	1천원	660	660	
일반장비(2331-306)	구레이다	'24~'25	2,753	'24.9.	예산	1	3,155	3,156	931
					계약	1	2,752	2,753	
	굴착기,다목적용,차륜차량 탑재식(중형굴삭기)	'24~'25	1,994	'24.8.	예산	1	2,282	2,283	
					계약	1	1,993	1,994	
	진동식롤러	'24~'25	288	'24.9.	예산	3	346	349	
					계약	3	285	288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계약일자	연부액				
					구분	'24년	'25년	계	조정 가능액
	습식도쟈	'24~'25	721	'24.7.	예산	88	799	887	
					계약	88	633	721	
	집단보호시설 여과기	'24~'25	103	'24.6.	예산	1천원	115	115	
					계약	1천원	103	103	

주) 2024.10.15. 기준
자료: 국방부

또한 2024년 9월 초에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 사업이 취소되거나 계약 불능이 확인된 사업은 3건으로, 해당 사업들의 경우에는 2025년도 집행가능성이 없으므로 전액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예산안 중 사업이 취소되거나 계약불능이 발생한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장비명/계약명	사업 기간	예산 연부액			계약체결 예정일
			합계	~2024	2025	
항공장비 (2331-303)	제거기, 공기타이어용	'24~'25	303	1	302	유찰 2회로 연내 계약불가 사업취소 예정
	KC-330 카메라 조절 장비	'24~'25	842	400	442	연내 계약불가로 사업취소 예정
통신전자 (2331-305)	잠수함용 수온음속측정기	'24~'25	638	71	567	연내 계약불가로 사업취소 예정
계			1,783	472	1,311	

주) 2024.10.15. 기준
자료: 국방부

3. 장병 마약류 검사키트 사업(신규):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 마약류검사비 조정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장병 마약류 검사키트’** 사업은 군 내 마약범죄 증가에 따른 「군 마약류 관리대책 개선방안」에 따라, 장병 대상 마약류 검사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30억 4,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11]

[2025년도 장병 마약류 검사키트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의무물자확보	111,214	103,298	△7,916	△7.1
장병 마약류 검사키트 사업	-	3,042	3,042	순증

[장병 마약류 검사키트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장병 마약류 검사키트 : (’24) 신규 → (’25) 3,042백만원, 순증

자료: 국방부

11) 일반회계-의무물자확보(2231-304)(보건복지관실)

나. 검토의견

국방부가 편성한 ‘장병 마약류 검사키트’ 사업의 마약류 검사키트 당 편성단가는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병무청의 편성단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국방부의 마약류 검사키트 단가가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장병 마약류 검사키트’ 사업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군 내 마약류 유입 우려가 높아지자 「병역법」 등을 개정[12]하여 2024년부터 마약류 검사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마약류 검사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각종 군 내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연도별 마약 적발 현황]

(단위: 명)

신분 \ 연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6월)
육군	장교	4	-	-	-	-	2	-	1	1	-	-
	부사관	18	4	-	1	1	2	1	2	2	4	1
	병	109	7	2	10	6	15	7	14	25	20	3
	기타	1	1	-	-	-	-	-	-	-	-	-
	소계	132	12	2	11	7	19	8	17	28	24	4
해군	장교	1	-	1	-	-	-	-	-	-	-	-
	부사관	2	1	-	-	1	-	-	-	-	-	-
	병	5	-	1	-	1	1	-	1	1	-	-
	군무원	1	-	-	-	-	-	-	1	-	-	-
	소계	9	1	2	-	2	1	-	2	1	-	-
공군	장교	1	1	-	-	-	-	-	-	-	-	-
	부사관	3	1	-	-	1	1	-	-	-	-	-
	병	2	-	-	-	-	-	-	-	1	1	-
	군무원	-	-	-	-	-	-	-	-	-	-	-
	소계	6	2	-	-	1	1	-	-	1	1	-
해병대	장교	1	-	-	-	-	-	-	-	1	-	-
	부사관	3	-	-	-	-	-	-	1	-	1	1
	병	5	-	-	-	-	-	1	-	1	3	-
	기타	-	-	-	-	-	-	-	-	-	-	-
	소계	9	-	-	-	-	-	1	1	2	4	1

자료: 국방부

12) 「병역법」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제1항제3호,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제2항제2의2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3(마약류 투약 등 검사)

2025년도 예산안은 입영병사, 임관간부 및 복무 중 장병을 대상으로 총 253,500명에 대해 검사가 실시될 계획이고, 검사키트 단가는 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음.

[마약류 검사 세부 산출내역]

구분	입영 병사	임관 간부	복무 중 장병
관련 법령	• 병역법 ('24. 7. 시행)	• 군인사법 ('24. 8. 시행)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24. 8. 시행)
검사시기 / 기관	• 입영신체검사(~'25.6.) • 입영판정검사('25.7.~) /병무청 시행	• 임관 신체검사 (군병원) * 장기복무 지원시에도 실시	• (병, 간부) 불시 * 30% 선별 검사 실시
검사 키트	• 6종 키트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활용 (단가 : 12천원)		
예산 추계	• (총) 253,500명 × 12천원 = 3,042백만원		

자료: 국방부

마약류 검사는 국방부 뿐만 아니라 유사한 키트를 사용하여 병무청도 실시하고 있는데, 병무청의 2025년도 예산 편성 단가는 마약류 검사키트 당 1만원으로 편성되어 국방부와 차이를 보이고 있음.

[2025년 예산안 병무청 마약류 검사 산출내역]

* 마약류검사 : 150,529명 * 단가(10,000원) = 1,505,290천원 - 단가 ('24) 12,000원 → ('25) 10,000원

자료: 병무청

따라서 국방부의 마약류 검사키트 단가가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3군단 마좌리 실전적 과학화 훈련장 사업(신규): 사전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 논의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3군단 마좌리 실전적 과학화 훈련장’** 사업은 과학화된 시설과 체계를 이용하여 실기동 · 실사격 능력과 전술훈련을 숙달하고 훈련결과의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과학화 훈련장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33억 2,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3)]

[2025년도 3군단 마좌리 실전적 과학화 훈련장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	259,409	255,516	△3,893	△1.50
3군단 마좌리 실전적 과학화 훈련장	-	3,327	3,327	순증

[3군단 마좌리 실전적 과학화 훈련장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3군단 마좌리 실전적 과학화 훈련장 33억 2,731만원*1식= 33억 2,731만원

자료: 국방부

13) 일반회계-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2436-302)(정책기획관실)

나. 검토의견

‘3군단 마좌리 실전적 과학화 훈련장’ 사업은 「방위사업법」과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산편성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채 2025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바, 예산심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3군단 마좌리 실전적 과학화 훈련장’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546억 6,800만원[14]을 투자하여 병력 및 복무기간 단축 등 작전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전차·기계화보병부대가 과학화된 시설 및 체계를 이용하여 실기동·실사격 능력과 전술훈련을 숙달하는 훈련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총사업비 편성 내역]

구 분	요구금액	산출근거
총사업비	54,668백만원	※ 공사비 : 47,784백만원(근거 : 선행연구 결과) •기본조사설계비(420-01) : 1,865,896천원 •실시설계비(420-02) : 2,233,004천원 •공사비(420-03) : 40,996,862천원 •감리비(420-04) : 2,565,057천원 •시설부대비(420-05) : 122,796천원 ※ 체계 구축비 : 6,621백만원(근거 : 계성리 예정원가 조사결과) •자산취득비, 비품비(430-01) : 81,560천원 •자산취득비, 체계구축비(430-01) : 6,539,690천원 ※ 기타 : 263백만원(근거 : 계성리 사업추진 결과) •일반수용비(210-01) : 26,400천원 •급식비(210-04) : 40,000천원 •재료비(210-11) : 30,000천원 •장비유지비(210-09) : 25,000천원 •여비(220-01) : 139,706천원 •사업추진비(240-01) : 1,894천원

자료: 국방부

과학화 훈련장은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하여 실제 전투와 유사한 환경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현대화된 시설로서 시뮬레이션, 레이저 교전 장비 등을 통해 병사들의 전투 능력과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14) 선행연구 결과 총사업비

[현재 운용중인 과학화훈련장]

군 구분	훈련장명	비 고
육군	1군단 무건리 과학화훈련장	군단급
육군	5군단 승진 과학화훈련장	군단급
육군	7군단 다락대 과학화훈련장	군단급
육군	21사단 백두 과학화훈련장	사단급
육군	28사단 태풍 과학화훈련장	사단급

자료: 국방부

당초 사업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314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선행연구결과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1년씩 늦춰지게 되었고, 총사업비도 당초 사업비에서 231억 7,400만원이 증가된 546억 6,800만으로 변경되었음.

[사업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목표 소요	대 상 기 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당초	24~28 계획	물량	1	-	-	-	1	-	1
		예산	31,494	926	8,295	19,428	2,845	-	31,494
변경	25~29 요구	물량	1	-	-	-	-	1	1
		예산	54,668	3,327	3,024	21,708	24,389	2,220	54,668
증감		물량	1	-	-	-	△1	1	-
		예산	23,174	2,401	△5,271	△2,280	21,544	2,220	23,174

자료: 국방부

이처럼 선행연구 결과에 의해 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방위사업법」 제14조의2[15]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가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실시 중에 있음.

15) 「방위사업법」

그런데 사업타당성조사는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어야 하나, 이 사업은 예산이 편성된 후 사업타당성조사가 실시되고 있어 법률에 규정된 예산편성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재정법」 제39조[16]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기본설계비 · 실시설계비 · 보상비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동시 계상되어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않고 있음.

[2025년 예산안 산출내역]

요구금액	산출근거	
3,327백만원	**•기본조사설계비(420-01) : 1,865,896천원** **•실시설계비(420-02) : 1,339,802천원** •일반수용비(210-01) : 5,280천원 •급식비(210-04) : 40,000천원	•장비유지비(210-09) : 25,000천원 •재료비(210-11) : 30,000천원 •여비(220-01) : 20,956천원 •사업추진비(240-01) : 378천원

자료: 국방부

따라서 ‘3군단 마좌리 실전적 과학화 훈련장’ 사업은 「방위사업법」과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산편성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채 2025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바, 예산 심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제14조의2(사업타당성조사)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 착수 이전에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사업
2.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구매사업
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16) 「국가재정법」
제39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 실시설계비 · 보상비(댐수몰지역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와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완공 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단계 이상의 예산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

5. 교육용 상용드론 구매 사업(신규): 사업목적에 맞는 드론 단가 책정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교육용 상용드론 구매’** 사업은 드론 운용자의 장비 숙달 능력을 향상시켜 전력화되고 있는 고가의 드론에 대한 분실 및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5억 4,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17)]

[2025년도 교육용 상용드론 구매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공통교보재지원 사업	29,812	28,426	△1,386	△4.7
교육용 상용드론 구매	-	545	545	순증

[교육용 상용드론 구매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315대*1,730,150원 = 545,000,000원
○ 드론 운용자의 장비 숙달 능력을 향상시켜 전력화되고 있는 고가의 드론에 대한 분실 및 파손 등을 방지하고 드론 운용자를 더욱 확보하기 위한 저가형의 교육용 상용드론 구매 예산 요구
- (구성): 비행체, 조종기, 배터리 2세트, 충전기, 프로펠러(예비), 매뉴얼 등

자료: 국방부

17) 일반회계-공통교보재지원(2438-303)(정책기획관실)

나. 검토의견

교육용 드론은 초보자가 쉽게 조종 인터페이스를 숙달하는데 목적이 있고, 운용 중 파손 및 망실의 부담이 없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저가형 드론 구입이 사업목적에 맞으므로, 2025년도에 편성된 교육용 드론 구입 예산은 조정될 필요가 있어 보임.

‘교육용 상용드론 구매’ 사업은 2025년 신규 사업으로서 감시·폭파·지원 등 다양한 드론을 전력화하고 있는 육군을 교육시키기 위한 장비로 저가용 상용드론 315대를 구매하기 위한 것임.

육군은 드론 교육을 통해 드론 운용 기술을 습득하여 실시간으로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위험 지역에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교육용 상용드론은 군단 예하 부대의 드론 운용성 강화를 위해 배치될 계획임.

그런데 국방부가 편성한 교육용 드론의 산출단가를 보면, 1대 당 약 17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같은 가격대의 시중 판매 제품의 사양을 보면 장애물 감지, 회피기능, 고화질 듀얼 카메라, 피사체 추적, 통신두절시 원위치 복귀 등 고가의 상용드론을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의 단가편성임.

시중 판매 드론 가격대(촬영용, 연습용)

가격		카메라	기본사양	최대비행시간	최대비행거리
저가	20만원대 ~ 49만원대	4K, 8K 전동식짐벌 등	FPV 흔들림 방지 장애물 회피 자동복귀 등	30분~50분	6KM~18KM
중가	50만원대 ~ 99만원대				
고가	100만원대 ~				

※ 시중 판매 드론 단가는 군의 요구사항과 다른 사양으로 교육용 및 촬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판매용 드론 가격임
자료: 판매용 드론 자료조사

교육용 드론 구입 사업의 경우 사용자의 장비 숙달에 목적이 있음을 감안하면 2025년도 편성 단가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임.

따라서 교육용 드론은 초보자가 쉽게 조종 인터페이스를 숙달하는 데 목적이 있고, 운용 중 파손 및 망실의 부담이 없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저가형 드론 구입이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므로, 교육용 드론 구입 예산은 조정될 필요가 있어 보임.

6. 국방 사이버보안 지원체계 구축 사업 : 장기계속사업의 낙찰차액 감액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국방 사이버보안 지원체계 구축’** 사업은 국방망 기반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원활한 자료 공유, 분석(통계) 및 안정적인 보안평가 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6억 6,100만원(393.7%) 증액된 45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음.[18)]

[2025년도 국방 사이버보안 지원체계 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정보보호	82,043	83,575	1,532	1.9
국방 사이버보안 지원체계 구축	930	4,591	3,661	393.7

[국방 사이버보안 지원체계 구축사업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사이버보안 지원체계 구축사업비 45억 9,100만원
- 개발비: 37억 2,100만원
- 감리비: 5억 1,000만원
- 상용SW: 2억 3,900만원
- HW: 1억 2,100만원

자료: 국방부

18) 일반회계-정보보호(2131-307)(지능정보화정책관)

나. 검토의견

2개년에 걸친 장기계속사업에서 낙찰차액이 발생되었으므로, 2025년에 편성된 개발비(37억 2,100만원) 중 계약 완료를 고려하여 낙찰차액 만큼 감액될 필요가 있음.

‘국방 사이버보안 지원체계 구축’ 사업은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개년에 걸쳐 집행되는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55억 2,100만원 임.

이중 개발비는 2024년 9억 3,000만원과 2025년 37억 2,100만원 등 총 46억 5,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2025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구분(307)	’24	’25	소계	비고
계	930	4,591	5,521	-
개 발	**930**	**3,721**	**4,651**	**’24.6월 계약완료**
감 리	0	510	510	’25년 계약 예정
상용SW	0	239	239	’25년 계약 예정
HW	0	121	121	’25년 계약 예정 임차료로 예산편성

자료: 국방부

장기계속사업의 특성상 2024년도에 2개년에 걸친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도는 2024년도에 체결된 계약 금액에 따라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이에 따라 2024년 6월 21일 계약이 체결(계약금액: 27억 2,300만원)되어 2024년도 예산액 9억 3,000만원 중 5억 6,7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25년도는 예산안 37억 2,100만원 중 21억 5,600만원 집행이 사실상 확정되어 나머지 금액(15억 6,500만원)은 2025년도에 집행 가능성이 없게 되었음.

[국방 사이버보안 지원체계 구축사업 계약현황 및 낙찰차액]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계약일자	연부액				
				구분	'24년	'25년	계	계약률
정보보호(2131-307) (국방 사이버보안 지원체계 구축사업)	'24.6.~ '25.11.	5,521	'24.6.21.	예산 (개발비)	930	**3,721**	4,651	58.6%
				계약	567	**2,156**	2,723	
				차액	363	**1,565**	1,928	

자료: 국방부

따라서 2025년 개발비 예산(37억 2,100만원) 중 낙찰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감액될 필요가 있음.

7. 주요기관 교육용 탄약 사업: 전력유지비 성격에 맞는 사업 추진 필요

가. 개 요

‘주요기관 교육용 탄약’ 사업은 실전적 교육훈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교육훈련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훈련용 탄약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9억 9,700만원(2,071.7%) 증액된 83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음.[19)]

[2025년도 주요기관 교육용 탄약 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주요기관 교육용 탄약	386	8,383	7,997	2071.7

[주요기관 교육용 탄약 세부산출 내역]

○ 국직부대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용탄약 예산(383백만원)

- 645,936발 X 평균단가 680원 = 383백만원

○ ○○사 소형자폭드론 확보를 위한 신규(8,000백만원)

· 소형자폭드론 : 7,999,998천원

- 2,666,666천원 x 3set = 7,999,998천원

* 1SET : 발사대, 지상통제장치, 지상통신장치, 비행모의시험장치, 운용지원장비 포함

· 총 50대 운영

자료: 국방부

19) 일반회계-주요기관 교육용 탄약(2339-304)(군수관리관실)

나. 검토의견

소형자폭드론과 같은 무인 무기체계는 방위사업청을 통해 방위력개선비로 구매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소형자폭드론 구매 사업은 신중히 추진될 필요가 있음.

‘주요기관 교육용탄약’ 사업은 적정수준의 교육훈련용 탄약을 확보하여 장병들의 실전적 사격훈련 여건을 보장하고 전투준비 태세를 완비하기 위한 것임.

교육용 탄약에는 사격 훈련, 전술 훈련,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훈련에서 사용하는 교육용 탄약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군의 전투 준비태세와 장병들의 전술 숙련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런데 이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에는 소형자폭드론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 80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1세트는 드론 동체, 발사대, 지상통제장치, 지상통신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주요기관 교육용 탄약 사업 산출내역(드론 관련)]

• ○○사 소형자폭드론 확보를 위한 증액 요구(8,000백만원)
・ 소형자폭드론 : 7,999,998천원
- 2,666,666천원 x 3set = 7,999,998천원
* 1SET : 발사대, 지상통제장치, 지상통신장치, 비행모의시험장치, 운용지원장비 포함
・ 총 50대 운영

자료: 국방부

이 소형자폭드론 구입 사업은 항속거리 000㎞이상, 크기 0M이하 및 항속시간 0시간 이상의 무기체계인 중거리 자폭드론을 구입하는 사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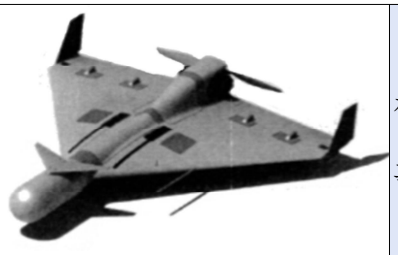
그러나 ‘주요기관 교육용 탄약’ 사업은 「국방 전력발전 업무훈령」 제7조[20]에 따라 전력지원체계로 분류된 교육훈련용 탄약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군수품 관리 훈령」 제9조[21]에 따른 전투용 탄약을 구입하는 사업과 차이가 있음. 또한 「국방 전력발전 업

20)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조(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세부분류) 영 제2조 각 호의 무기체계에 대한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고, 영 제2조의2 각 호의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세부분류는 별표 5와 같다

21) 「군수품 관리 훈령」
제9조(종별 분류) 군수품은 용도, 성질, 보급방법 등이 유사한 품목별로 1종(식량류), 2종(일반물자류), 3종

무훈령」에 따라 중거리 소형자폭드론과 같은 장비는 육상 등 항공전력의 무인 무기체계이므로, 중거리 소형자폭드론을 전력유지비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방위력개선비(방위사업청)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소형자폭드론 세부내역]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4">소형자폭드론</th></tr>
<tr><td rowspan="4">형상
(참고용)</td><td rowspan="4">  </td><td rowspan="4">제원
및
특성</td><td>항속거리</td><td>000Km 이상</td></tr>
<tr><td>크기</td><td>0m 이하</td></tr>
<tr><td>항속시간</td><td>0시간 이상</td></tr>
<tr><td>이륙중량
(MAX)</td><td>00Kg 미만</td></tr>
<tr><td>전력화시기</td><td colspan="4">2025년 內</td></tr>
<tr><td>소요기준</td><td colspan="4">50대</td></tr>
<tr><td>사업비</td><td colspan="4">80억</td></tr>
<tr><td>배치계획</td><td colspan="4">○○사</td></tr>
</table>

자료: 국방부

이와 더불어 2025년 예산안에 편성된 자폭드론 구입은 현재 방위사업청에서도 구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위사업청 구입 드론도 국방부 지급대상 기관과 같은 기관에 제공될 예정에 있음.

방위사업청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총 495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중거리 자폭드론 구매 사업[22]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안에는 착수금으로 50억원이 계상되어 있음.

(유류), 4종(건설자재류), 5종(탄약류), 6종(복지매장판매품), 7종(장비류), 8종(의무장비/물자류), 9종(수리부속/공구류), 10종(기타 물자류)으로 분류한다. 이 때, 종별 세부분류는 별표2(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22) 방위사업청 중거리자폭드론 구매 사업(2025년도 예산안 50억원): 2023년 소요결정, 2024년 4월 선행연구 완료, 2024년 7월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구매계획 수립, 2025년 및 2026년 전력화 예정

[방위사업청 구입 중거리 자폭드론]

	'25~'26년간 495.20억원을 투자하여, ○○사의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표적타격 능력을 구비하기위해 자폭드론을 확보하는 사업

자료: 방위사업청

한편, 국방부는 '주요기관 교육용 탄약' 사업에서 국회의 승인 없이 2024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소형자폭드론 구입 사업을 자체 내역변경을 통해 추진하고 있음.

[2024년 소형자폭드론 구입을 위한 내역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4.2.15.)	지상교육용탄약 (2339-301)	210-11	5,400	주요기관 교육용탄약 (2339-304)	210-11	○○사 소형자폭드론 구매를 위한 비용 충당
조정 ('24.2.6.)	함포교육용탄약 (2339-302)		1,900			
조정 ('24.2.6.)	항공교육용탄약 (2339-303)		700			

자료: 국방부

2024년 드론 구입 사업은 국회가 승인한 사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주요기관 교육용 탄약' 사업의 당초 예산인 3억 8,600만원에 80억원을 내역변경(증)하여 본예산을 크게 증액시키고 있음. 이와 같은 예산집행은「국가재정법」제45조[23]에 따른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되는 사업추진으로 볼 수 있음.

23)「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본예산(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1	1,067	-	-	1,058	1,058	99.1	99.1	-	9
2022	124	-	-	124	124	100	100	-	-
2023	192	-	-	192	149	77.6	77.6	43	-
2024	**386**	**43**	**8,000**	**8,429**	**380**	**98.4**	**4.5**		

자료: 국방부

결론적으로, 교육용 탄약 사업의 본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소형자폭드론 구입 사업은 방위사업청을 통해 방위력개선비로 구매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2025년도에 편성된 소형자폭드론 구입 예산안은 신중히 추진될 필요가 있음.

8. 해군 2함대사 스마트 군항 구축(통신시설) 사업: 장기계속사업의 낙찰차액 조정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해군 2함대사 스마트 군항 구축(통신시설)’** 사업은 AI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구축하는 스마트 군항에 필요한 통신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억 900만원(312.4%) 증액된 12억원이 편성되었음.[24)]

[2025년도 해군 2함대사 스마트 군항 구축(통신시설)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통시시설	56,674	51,856	△4,818	△8.5
해군 2함대사 스마트 군항 구축(통신시설)	291	1,200	909	312.4

[해군 2함대사 스마트 군항 구축 사업(통신시설) 예산안 세부내역]

○ 해군 2함대사 스마트 군항 구축 통신시설 사업

- 1식*1,200백만원 = 1,200백만원

자료: 국방부

24) 일반회계-통신시설(2131-305)(지능정보화정책관)

나. 검토의견

‘해군 2함대사 스마트 군항 구축(통신시설)’ 사업은 2개년에 걸친 장기계속사업으로서, 2024년도에 계약이 완료되어 2025년도 예산안은 사실상 집행금액이 확정되었으므로, 2025년도 예산안 중 계약금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조정될 필요가 있음.

‘해군 2함대사 스마트 군항 구축(통신시설)’ 사업은 2024. 6. 7.~2025.12.15.까지 총 사업비 14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스마트 군항에 필요한 통신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개년에 걸친 장기계속사업임.

2025년도 예산안은 스마트 군항 내 통합 광케이블 및 5G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통신케이블 공사, 무선·방송설비 공사, 전원설비 공사, 관로·지주 공사 등이 추진될 예정으로 12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해군 2함대사 스마트 군항 통신시설 구축 내역]

구 분	내 용	비 고
공사구간	• 부대 경계 외곽 울타리(약 11km) • 탄약고 주변(약 1km) • 기타 음영지역, 실내구간 등	’25년도 중
통신케이블 공사	• RU 전원공급용 전력케이블 포설 • RU 신호전송용 광케이블 포설 • 광단자함 설치 및 광접속 작업	’25년도 중
무선·방송 설비 공사	• 이음5G RU 설치 • 이음5G RU 연동시험	’25년도 중
전원설비 공사	• 전원 차단기(30AF 이하) 설치 • 접지선(35mm 이하) 및 접지봉(1~2m) 매설 • 접속 단자함 설치 • 피뢰침 및 피뢰기 설치 • 전원 정류기 설치	’25년도 중
관로·지주 공사	• RU 거치용 지주 및 Pole 설치 • 지주 지지선 설치 • 지주 설치를 위한 터파기 작업	’25년도 중
기 타	• 통신공사 간 안전시설(표지판, 라바콘 등) 구비	’25년도 중

자료: 국방부

그런데 장기계속사업의 특성상 2024년도에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도에는 2024년도에 체결된 계약 내용에 따라 통신시설을 구축할 예정임.

2024년도 및 2025년도 집행금액은 2024년 6월 7일 계약이 체결되어 집행금액이 확정되었고, 2024년도는 전액 집행, 2025년도는 10억 9,700만원이 집행될 예정에 있음. 이에 따라 2025년도 낙찰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집행 가능성이 없게 되었음.

따라서 낙찰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2025년도 예산안 중 조정될 필요가 있음.

[해군 2함대사 스마트 군항 통신시설 구축 연도별 집행가능액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비	계약일자	연부액				
		구분	'24년	'25년	계	비율
1,491	'24.6.7.	예산	291	1,200	1,491	93.1
		계약	291	1,097	1,388	
		차액	0	103	103	

자료: 국방부

9. 입소귀향여비 사업: 집행실적을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입소귀향여비’** 사업은 현역병 입소 후 신체검사 불합격자 등에 대한 귀향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000만원(△32.3%) 감액된 1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음.[25)]

[2025년도 입소귀향여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장비여비지원	56,394	56,394	-	-
입소귀향여비	186	126	△60	△32.3

[입소귀향여비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2025년 귀향 예상인원[(’ 25년 입소계획인원 x 최근 3개년 평균 입소귀향률(4%) x 0.5(상반기)]에 최근 3개년 급지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산출

* 204,590명 × 4% × 0.5(상반기) = 4,092명

자료: 국방부

국방부의 입영 신체검사 제도는 2025년 상반기까지만 시행되고, 이후에는「병역법」 제14조의3[26)]에 따라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 항목으로 전면시행될 예정에 있음.

25) 일반회계-장병여비지원(2233-301)(보건복지관실)

26)「병역법」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9.>
1. 신체검사
2. 심리검사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

[병무청의 입영판정검사 실시 계획]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7월)	2026년
부 대	2작사	2작사 + 지작사 (舊 1군)	2작사 + 지작사 (舊 1·3군)		전면시행 (육훈, 해·공군, 해병대 포함)	
인 원	1.3만명	3.7만명	8,7만명	8.9만명	17.1만명	23.7만명

자료: 병무청

나. 검토의견

연도별 입소귀향여비 집행실적이 매년 하락하고 있으므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적정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음.

‘입소귀향여비’ 사업은 「군인보수법」 제18조[27]에 따라 현역병 입소 후 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에 대하여 귀향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임.

지급방식은 퇴소 부대와 귀향지의 거리를 산출한 후 각 급지별로 교통비 및 식비에 대해 귀가 여비를 지급하고 있음.

[입소귀향여비 급지별 편성기준]

(단위: 원)

구 분	’24년			’25년		
	합계	교통비	식비	합계	교통비	식비
1급지(451㎞이상)	73,400	59,400	14,000(2식)	76,100	62,100	14,000(2식)
2급지(450㎞까지)	66,800	52,800	14,000(2식)	69,200	55,200	14,000(2식)
3급지(400㎞까지)	53,200	46,200	7,000(1식)	55,300	48,300	7,000(1식)
4급지(350㎞까지)	46,600	39,600	7,000(1식)	48,400	41,400	7,000(1식)
5급지(300㎞까지)	40,000	33,000	7,000(1식)	41,500	34,500	7,000(1식)
6급지(250㎞까지)	33,400	26,400	7,000(1식)	34,600	27,600	7,000(1식)
7급지(200㎞까지)	22,400	22,400	-	23,400	23,400	-
8급지(150㎞까지)	15,800	15,800	-	16,500	16,500	-
9급지(100㎞까지)	10,600	10,600	-	11,000	11,000	-
10급지(50㎞까지)	6,600	6,600	-	6,900	6,900	-

자료: 국방부

27) 「군인보수법」
제18조(여비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필요한 여비(旅費)를 지급한다.
1. 출장 · 전속 · 부임
2. 부대 안에 거주하는 자의 정규 휴가
3. 전역 · 귀가 등

연도별 집행실적을 보면, 2021년도는 3억 4,200만원 중 2억 8,700만원이 집행되어 83.9%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고, 2022년도는 3억 6,200만원 중 2억 9,000만원이 집행되어 73.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도 1억 6,9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이 집행되어 71.0%의 집행률을 보여 연도별 집행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음.

[입소귀향여비 연도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월액	전용	조정	예산현액	집행액 (비율)	이월	불용
'21	342	-	-	-	342	287 (83.9)	-	55
'22	362	-	33	-	395	290 (73.4)	-	105
'23	169	-	-	-	169	120 (71.0)	-	49
'24 7월	186	-	-	-	186	48 (25.8)	-	-

자료: 국방부

이와 같이 연도별 입소귀향여비 집행실적이 매년 하락하고 있으므로, 2025년도 예산액은 적정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음.

10. 국제관함식 사업(신규): 과거 해군창설 70주년 행사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국제관함식’** 사업은 해군 창설 80주년을 맞아 북한의 전략·전술적 도발에 대비한 해군력 현시와 방산 수출 및 대외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해양 전력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43억 8,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28)]

[2025년도 국제관함식 사업(신규)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국방행사지원	23,224	21,797	△1,427	△6.1
국제관함식	-	4,385	4,385	순증

[국제관함식 사업(신규) 예산안 세부내역]

○ 국제관함식 : (’24) 0백만원→ 4,385백만원, 증 4,385백만원(신규)

· 해군 창설 80주년을 맞아 북한의 전략 · 전술적 도발에 대비한 해군력 현시와 방산 수출 및 대외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해양 전력 홍보 등 대국민 참여 국제 행사

자료: 국방부

28) 일반회계-국방행사지원(7131-313)(계획예산관실)

나. 검토의견

2025년도에 개최되는 ‘해군창설 80주년’ 국제관함식 행사는 2015년에 개최된 ‘해군창설 70주년’ 행사(장관급) 규모를 고려해 보았을 때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2025년도 예산안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관함식은 국가원수가 군함의 전투태세와 장병의 군기를 검열하는 해상 사열의식으로 영국에서 유래되었으며, 최근에는 국력을 알리고 우방 해군과의 우호 증진을 위한 국제적 행사로 개최되고 있음.

우리나라 관함식은 1998년 건군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최초로 개최되었으며, 지금까지 네 번에 걸쳐 국제관함식이 개최되었음.

2025년도 예산안은 해군창설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43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5년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7일간 국·내외 함정들이 참가하는 관함식이 마덱스(MADEX)[29] 행사와 함께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에 있음.

과거 관함식 예산이 2008년 28억, 2015년 7.3억원, 2018년 36.3억원으로 편성된 것을 고려해 볼 때, 2025년에 편성된 관함식 예산안이 과거에 비해 높게 계상되었음을 알 수 있음.

[연도별 관함식 개최실적]

구분	1998년	2008년	2015년	2018년	2025년(예정)
목적	건군 50주년 경축	건군 60주년 경축	해군창설 70주년 경축	건군 70주년 경축	해군창설 80주년 경축
주빈	대통령	대통령	국방부장관	대통령	(미정[30])
기간	‘98.10.12. ~ 17.	‘08.10. 5. ~ 10.	‘15.10.17. ~ 23.	‘18.10.10.~14	’25. 5.26. ~ 6. 1.
장소	진해, 부산	부산	부산	제주	부산
참가국가	26개국	26개국	27개국	46개국	87개국
참가전력	(국내) 함정28척, 항공기 15대 (국외) 美항모 등 21척	(국내) 함정 35척, 항공기 26대 (국외) 美항모 등 22척	(국내) 함정 63척, 항공기 37대 (국외) 美항모 등 4척	(국내) 함정 54척, 항공기 24대 (국외) 美항모 등 29척	(국내) 함정 70척, 항공기 20대 예정 (국외) 美항모 등 30척 예정
예산	-	28.0억원	**7.3억원**	36.3억원	**43.8억원**

자료: 국방부

29) 마덱스(MADEX): 국제해양방위산업전, 2025년 5월 28일(수) - 31일(토), 운영조직: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해병대, 부산광역시, 한국무역협회, (사)대한민국해군협회,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경연전람, ㈜벡스코, 국방부 지원 예산 3억원

이에 대해 국방부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제행사일 뿐만 아니라 해양 방산 수출여건 조성 마련 등을 위해 과거보다 예산을 높게 편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10월 현재 주빈으로 누가 참석할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연도별 관함식 개최실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방부 장관 참석 행사와 대통령 참석 행사는 규모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그리고 과거 관함식 개최 현황을 보면 건군 50주년, 건군 60주년, 건군 70주년 행사에는 대통령이 참석하였고, 해군창설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것을 고려해 볼 때, 2025년도는 해군창설 80주년 행사로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행사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짐.

또한「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31]에 따르면 건군 행사가 개최되는 국군의 날은 기념일에 해당되는 행사이나, 해군창설을 기념하는 행사는 기념일에 해당되는 행사가 아니므로, 지금과 같이 국제관함식을 기념일에 버금가는 행사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따라서 2025년도에 개최되는 '해군창설 80주년' 국제관함식 행사는 2015년도에 개최된 '해군창설 70주년' 행사(장관급) 규모를 고려해 보았을 때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2025년도 예산안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30) 2024년 11월 대통령실 보고 예정.

31)「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11. F-35A 주미 군수연락장교 직위 신규편성 사업(신규): 신규 편성 사업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F-35A 주미 군수연락장교 직위 신규편성’** 사업은 F-35A 기술지원 업무와 후속 군수지원 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주미 군수연락장교를 파견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32)]

[2025년도 F-35A 주미 군수연락장교 직위 신규편성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작전상황연습	33,802	37,101	3,299	9.8
해외연락장교운영	1,696	1,801	105	6.2
F-35A 주미 군수연락장교 직위 신규편성	-	25	25	순증

[F-35A 주미 군수연락장교 직위 신규편성 사업(신규) 예산안 세부내역]

○ 임차료: 12개월*3,000불*1,380*0.5=2,484만원

자료: 국방부

32) 일반회계-작전상황습(2438-302)(정책기획관실)

나. 검토의견

‘F-35A 주미 군수연락장교 직위 신규편성’ 사업은 예산안 제출을 위한 선행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채 사업비가 국회에 제출되었고, 그동안 방위사업청이 F-35A 후속 군수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전례를 고려해 볼 때 국방부가 추가 예산을 들여 주미 군수연락장교를 파견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F-35A 주미 군수연락장교 직위 신규편성’ 사업은 미국 정부 F-35A 사업단의 요청[33]에 따라 F-35A 기술지원 업무, 후속군수지원 사업 관리, 운영유지 관련 정보획득, 양·다자간 회의체 참석, 미국 정부 사업단과 회의 등을 위해 연락장교를 파견하기 위한 것임.

2025년도 예산안에는 후반기부터 연락장교를 운영할 것을 고려하여 임차료 6개월분 2,500만원만 편성되었고, 나머지 체재비 등은 해외연락장교 운영 사업의 집행잔액이 활용될 예정에 있음.

그런데 F-35A 주미 군수연락장교 파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첫째, F-35A 주미 군수연락장교 직위는 2024년 10월 현재 국방부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음.

이에 대해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신규 반영된 만큼, 2025년도 전반기에 직제개정을 통해 관련 직위를 반영하겠는 입장임.

그러나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예산안 제출에 필요한 사전 이행 절차(직제개정)를 완료한 후 최종 선행조치가 완료된 사업비만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국방부는 이와같은 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예산안을 제출하였음.

둘째, F-35A 1차 도입 관련 군수연락장교는 방위사업청에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4명씩 파견되어 지원되었고, F-35A 1차 도입 완료 후 운용유지를 위한 후속군수지원[34]과 관련된 업무는 미국에 파견된 군수지원단(방위사업청)을 통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행 중에 있음.

또한 방위사업청은 향후 F-35A 2차 도입 사업과 F-35A 성능개량 사업[35]을 수행하

33) 미국 정부의 F-35A 주미 군수연락장교 요청은 방위사업청 연락장교가 2021년 복귀함에 따라 2022년 8월에 요청된 내용임.

34) 그동안 무기도입 후 후속군수지원은 국방부에서 실시하였으나, 방위사업법 시행령 28조를 개정하여 2022년부터는 무기도입 후 3년간 방위사업청에서 후속군수지원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2030년까지 매년 4명씩 파견할 예정에 있으며, 2024년 9월 현재 2명이 파견된 상태임.

[F-35A 2차 사업 관련 파견현황(방사청)]

○ F-35A 2차 사업 관련 방위사업청 파견현황 - 기간/장소: '24. 7월 ~ '30. 7월 / 워싱턴 D.C(美 JPO) * 개인별 파견기간: 2년(1년 추가 연장 가능) - 파견목적 : F-35A 2차 사업 국외 현장감독관 - 파견인원 : 소령 1명, 5급 1명 - 주요업무 · F-35A 2차사업 항공기/엔진 형상, 생산관리 및 구성품 개량계획 관리 · 자율군수정보체계(ALIS) 구축 및 암호장비 관리 * ALIS(Autonomic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F-35 무기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작전, 군수, 교육훈련관리 등을 지원하는 통합 정보체계 · 보안업무, 감항인증 및 항공기 수락 관리 등

자료: 국방부

이와 더불어 국방부에 대한 미국의 F-35A 주미 군수연락장교 요청은 2022년 8월에 요청된 내용을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당시에는 F-35A 1차 도입과 관련된 방위사업청 군수연락장교들이 복귀한 데에 따른 업무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이 요청한 것이므로 지금과는 사정이 다른 상황임.

따라서 'F-35A 주미 군수연락장교 직위 신규편성' 사업은 예산안 제출을 위한 선행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채 사업비가 국회에 제출되어 문제가 있고, 그동안 방위사업청이 F-35A 후속군수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전례를 고려해 볼 때 국방부가 추가 예산을 계상하여 주미 군수연락장교를 파견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적은 금액이 계상되었지만, 향후 직제개정에 따라 관련 직위가 확보되면, 2026년도부터는 추가적인 예산편성[36]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35) F-35A 성능개량 사업은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8,463.99억원을 투자하여 수행될 예정에 있음.

36) 해당 직위가 확정되면 2026년도부터는 체재비, 사업추진비, 국외여비, 임차료, 일반수용비 등이 신규편성 및 증액될 예정임.

12. 국방부장관배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 사업(신규): 행사성 예산의 신중한 추진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국방부장관배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 사업은 임무 위주의 실전적 전투기량을 종합평가하고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격훈련 및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3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37)]

[2025년도 국방부장관배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부대훈련 및 지원	55,669	58,760	3,091	5.5
국방부장관배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	-	300	300	순증

[국방부장관배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국방부장관배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 1식*3억=3억원(신규)
- 일반수용비 1억 4,529만원
- 급식비 1억 2,312만원
- 임차료 1,900만원
- 재료비 1,000만원
- 기타운영비 300만원

자료: 국방부

37) 일반회계-부대훈련 및 지원(2438-301)(정책기획관실)

나. 검토의견

‘국방부장관배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 사업은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채 2025년도 예산안에 계상되었고, 2024년도 저격수 대회 경비 집행은 국회의 승인이 없이 이루어졌으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행사성 예산의 추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국방부장관배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 사업은 최근 현대전의 전쟁양상을 고려한 한국군의 저격능력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각국의 우수한 저격 노하우(Know-how)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국제저격수 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 3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그런데 이 사업은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채 2025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음. 국방부 장관은 합리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해 「방위사업법」 제13조제1항[38]에 따라 전력운영분야 등에 대한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39]에 따라 ‘국방중기계획’에 근거하여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방부장관배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 사업은 ‘국방중기계획’ 수립 없이 2025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음.

또한 2024년도 ‘국방부장관배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 사업은 2024년도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채 훈련예산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24년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총 일주일간 49개팀 130명이 참여하는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2억 5,645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음.

즉 국방부의 2024년도 행사경비 집행은 국회의 승인 없이 추진된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

38) 「방위사업법」
제13조(국방중기계획 등) ①국방부장관은 합리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하여 방위력개선사업분야 및 전력운영분야 등에 관한 중기계획(이하 “국방중기계획”이라 한다)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다.

39)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 계속비 ·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4년도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 예산집행 내역]

(단위: 원)

구 분	세부 내용	금 액
계		256,452,880
210-01 (일반수용비)	· 행사준비 물품 및 평가용품 (상반신 타켓, 인공혈액, 깃발 등 15종) · 숙영시설 물품 및 경연대회 기념품 (소모성 생활용품, 메달, 코인, 기념패 등) · 경기용 사격 자재, 안전용품 (사격진지 장애물 구축, 장갑, 경광봉 등) · 국내외 홍보 팜플렛 및 초청장, 홍보 및 전시 부스, 기념앨범 제작 등	141,219,200
210-04 (급식비)	· 행사준비 요원, 방문자, 선수단 식사(리셉션, 도시락 등) · 대회 개최 준비 현장토의 및 위험성평가, 협조회의 중식 ※ 경연대회 준비 및 대회 기간 : 9. 2.(월) ~ 15.(일)	84,665,080
210-07 (임차료)	· 행사 대기장소 장비, 통역·음향장비 임차	18,986,000
210-11 (재료비)	· 경기장 및 사격장 구성 소모성 물품 (선수 목걸이 및 명찰, 경기장 간판, 통제관 패치, 통제깃발, 네임택 등)	9,767,400
210-16 (기타운영비)	· 외국군 문화탐방 및 대외기관 협조 등 준비비 (유관기관, 지자체, 행사업체, 협조회의 준비 등)	1,815,200

자료: 국방부

이와 더불어 국가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행사성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행사성 경비 예산 배정으로 인해 중요한 다른 분야의 재원이 배분되지 못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이와 같이 '국방부장관배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 사업은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채 2025년도 예산안에 계상되었고, 2024년도 저격수 대회 경비 집행은 국회의 승인이 없이 이루어졌으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행사성 예산의 추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국방·군사시설 이전특별회계】

<세 출>

13.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 사업: 의견 수렴을 통한 신중한 사업추진 필요

가. 개 요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 사업은 광주광역시 상무신도시 도심 및 도로확장에 따라 인근에 위치한 광주기지 영외탄약고를 광주 군공항 인접 부지로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5,200만원(△29.7%) 감액된 15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음.[40)]

[2025년도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	2,195	1,543	△652	△29.7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건설보상비 : (’24) 1,541백만원 → (’25요구) 1,541백만원, 증감없음
- (요구) 이주 대상자들에 대한 이주정착금 보상 가능성 고려하여 ‘24년과 동일 예산 요구
- (산출) 잔여 건설보상비(10,332)의 15% 반영

○ 공사비 : (’24) 92백만원 → (’25요구) 1백만원, 91백만원 감액
- (요구)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의 연계 추진 상황 고려하여 최소 공사비 반영
- (산출)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이전부지 선정 및 사업재개를 고려하여 최소 공사비 1백만원 반영

○ 시설부대비 : (’24) 5백만원 → (’25요구) 1백만원, 4백만원 감액
- (요구)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의 연계 추진 상황 고려하여 최소 시설부대비 반영
- (산출)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이전부지 선정 및 사업재개를 고려하여 최소 시설부대비 1백만원 반영

자료: 국방부

40) 일반회계-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4131-341)(군사시설기획관실)

나. 검토의견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지연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체되고 있으므로, 2025년도 예산안은 주민 및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중히 추진될 필요가 있음.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 사업은 2006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261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광주기지 영외 탄약고를 이전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총 2,681억 원이 기집행되었음.

그러나 ‘광주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지차체간 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지체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에 따라 총 사업비가 여러 해에 걸쳐 변경되었음.

[연도별 총사업비 변경내역]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09	2,396		2006	2014	-
(1)차 변경	2013		2,552	2006	2015	탄약고 및 정비고 물량 증가
(2)차 변경	2015		2,552	2006	2016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차 변경	2015		2,892	2006	2016	이주단지 조성, 지가 상승
(4)차 변경	2020		3,164	2006	2019	물가변동분 반영
(5)차 변경	2021		3,092	2006	2025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결과 반영
(6)차 변경	2022		3,262	2006	2025	물가변동분 반영

자료: 국방부

2025년 예산안은 이주 대상자들에 대한 이주정착금 보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건설보상비 15억 4,100만원[41],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의 연계 추진을 고려하여 최소 공사비 100만원, 기타 시설부대비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그런데 2024년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22억 1,500만원은 대부분 미집행되고 다음연도로 이월될 예정으로 사업집행이 부진한 상태임.

41) 건설보상비는 미이주 63세대에 대한 보상비

2024년 예산집행 현황 및 2025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24. 7월말)							2025 예산안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비목별 분류(합계)	2,195	2,215	96	2,195	-	2,119	-	1,543
·건설보상비(410-00)	1,541	1,541	0	1,541	-	1,541	-	1,541
·공사비(420-03)	92	112	96	92	76	16	-	1
·감리비(420-04)	557	557	0	557	-	557	-	0
·시설부대비(420-05)	5	5	0	5	-	5	-	1

자료: 국방부

따라서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지연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체되고 있으므로, 2025년도 예산안은 주민 및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중히 추진될 필요가 있음.

병무청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병무청 소관 총수입은 3억원으로, 전년도와 같음.[1)]

[2025년도 병무청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3	3	-	-
총수입	3	3	-	-

2025년도 병무청 소관 총지출은 4,732억원으로 전년 대비 613억원(14.9%) 증가됨.

[2025년도 병무청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4,119	4,732	613	14.9
총지출	4,119	4,732	613	14.9

문의 : 김석룡 예산결산조사관 dragon@assembly.go.kr (02-6788-567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나. 예산안

2025년도 병무청 소관 예산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세입예산안은 3억원으로 전년도와 같음.

[2025년도 병무청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3	3	-	-
합 계	3	3	-	-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병무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4,732억원으로 전년 대비 613억원(14.9%) 증가됨.

[2025년도 병무청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4,119	4,732	613	14.9
합 계	4,119	4,732	613	14.9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병무청 2025년도 예산안에는 신규사업[2]이 없음.

한편, 병무청의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병무행정안내’ 사업, ‘사회복무이행지원’ 사업, ‘청사확보 및 시설관리’ 사업, ‘병무행정정보화’ 사업으로 총 4개임.[3]

[2025년도 병무청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사회복무이행지원	167,773	212,733	44,960	26.8
2	병무행정정보화	7,648	12,918	5,270	68.9
3	청사확보 및 시설관리	2,491	3,452	961	38.6
4	병무행정안내	1,890	2,906	1,016	53.8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병무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개로 구성되어 있음.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병무청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전체 사업 중 사회복무이행지원 사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임. 총지출 4,732억원 중 사회복무이행지원 사업이 2,127억원으로 45.0%에 해당함.

2025년도 병무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국회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동일한 특별사법경찰들이 집행하는 예산이 '병역판정검사' 사업과 '병무행정 운영' 사업에 분리되어 편성되어 있으므로, 병무청은 성과측정의 명확성 등 프로그램 예산운영체계[4]를 확립하기 위해 각기 다른 프로그램 내에 편성되어 있는 병역면탈 예방 및 병역기피자 수사 관련 예산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병무청의 사회복귀준비금 연도별 집행실적이 낮게 나타나고 있고, 2024년 8월 기준 사회복무요원의 적금 가입률(91%)이 현역병 적금 가입률(99%)에 비해 저조하므로, 병무청은 더 많은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프로그램 예산운영체계: 정부나 조직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을 프로그램 단위로 편성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성과중심의 프로그램 예산체계에서 세부사업은 주된 사업 또는 프로그램 아래에 속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특정한 활동 단위를 의미하고, 명확한 사업목표와 성과 지표를 가지고 있어 성과 측정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병역판정검사·병무행정운영 사업: 병역면탈 예방·단속 및 병역기피자 수사 관련 예산의 통합 운영 검토 필요

가. 개 요

‘병역판정검사’ 사업은 공정하고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자원을 선발하고, 특별사법경찰 수사 활동을 통해 병역면탈 기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 전년대비 30억 1,800만원(15.4%) 증액된 225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병무행정운영’** 사업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와 병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소요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억 8,000만원(△4.3%) 감액된 84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5)]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 및 병무행정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병역판정검사	19,551	22,569	3,018	15.4
병역면탈 예방 및 특별사법경찰	994	707	△287	△28.9
병무행정운영	8,820	8,440	△380	△4.3
병역기피자 수사 등	240	256	16	6.7

5) 일반회계 - 병역판정검사(1131-301), 병무행정운영(7134-317)

나. 검토의견

동일한 특별사법경찰들이 집행하는 예산이 ‘병역판정검사’ 사업과 ‘병무행정 운영’ 사업에 분리되어 편성되어 있는바, 성과측정의 명확성 등 프로그램 예산운영체계[6]에 부합하도록 각기 다른 프로그램 내에 편성되어 있는 수사 관련 예산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병무청은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는 병역관련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병역법」을 개정하는 등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병역법」 개정 주요 내용('24.5.1.시행)]

「병역법」 제81조의3 신설 :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금지 「병역법」 제87조의2 신설 :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4년 7월 17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7]의 직무범위와 권한이 강화되었음

[병무청 특사경 직무범위(2024년 7월 17일 시행)]

현 재		추가(확대)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속임수(제86조), 대리수검(제87조제1항) * 병역판정검사 분야	⊕	신체검사·징·소집 등 기피(제87조3항, 제88조1항) 기피·감면 목적 도망·행불자(제86조) 기피·감면 등 관련정보 게시·유통자(제87조의2)

자료: 병무청

동 법률의 개정으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가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업무 외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까지 확대되었으며, 당초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던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 등 병역기피자 및 기피·감면목적 도망·행불자도 병무청

6) 프로그램 예산운영체계: 정부나 조직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을 프로그램 단위로 편성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성과중심의 프로그램 예산체계에서 세부사업은 주된 사업 또는 프로그램 아래에 속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특정한 활동 단위를 의미하고, 명확한 사업목표와 성과 지표를 가지고 있어 성과 측정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음.

7)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관은 본청 병역조사과 및 사이버조사과, 광역수사청(3개), 현장청(11개) 조직에 인원은 60명임.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런데 병역면탈 관련 예산은 ‘병역판정검사’ 세부사업(1131-301)에 편성되어 있고, 병역기피자 수사 관련 예산은 ‘병무행정 운영’ 세부사업(7134-317)에 편성되어 동일한 특별사법경찰관이 집행하는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각기 다른 프로그램 내의 세부사업에 편성됨으로 인해 성과평가 측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병역면탈 예방 및 기피자 수사 관련 예산 편성 내역]

프로그램	세부사업명	편성내역
병역자원선발 (1100)	병역판정검사 (1131-301)	- 병역면탈 단속 등 여비, 병역면탈예방 디지털포렌식 장비 자산취득비 등
병무행정지원 (7100)	병무행정운영 (7134-317)	- 병역기피자 공개위원회 운영, 기피자 수사 여비, 공정병역 위원회 운영비 등

자료: 병무청

따라서 성과측정의 명확성 등 프로그램 예산운영체계에 부합하도록 각기 다른 프로그램 내에 편성되어 있는 수사 관련 예산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이관 대상사업 간 예산 증감 내역]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세부사업	‘25 예산안(A)	증감(B)	최종(A+B)
병역자원선발 (1100)	병역판정검사(1131-301)	22,569	+256	22,825
병무행정지원 (7100)	병무행정운영(7134-317) (병역기피 수사, 공정병역 등)	8,440	△256	8,184

자료: 병무청

[병무행정운영 사업의 조정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5 예산안		
	기존(A)	변경(B)	증감(B-A)
- (세부) 병무행정운영(317)	**8,440**	**8,184**	**△256**
- (내역) ① 병역기피 공개업무, 병무사범 병역기피자 직접수사	157	0	△157
· 일반수용비	37	-	△37
· 공공요금및제세	8	-	△8
· 국내여비	109	-	△109
· 업무추진비	3	-	△3
- (내역) ② 공정병역 (전체)	99	0	△99
· 일반수용비	78	-	△78
· 국내여비	20	-	△20
· 업무추진비	1	-	△1

자료: 병무청

【일반회계】

<세 출>

2. 사회복귀준비금 사업: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사회복귀준비금’** 사업은 「병역법」 제79조의2[8]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67억 2,500만원(29.3%) 증액된 2,064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음.[9]

[2025년도 사회복귀준비금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사회복무이행지원	167,773	212,733	44,960	26.8
사회복귀준비금	159,740	206,465	46,725	29.3

[사회복귀준비금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사회복무요원 사회복귀준비금: (’ 24) 159,740백만원 → (’ 25) 206,465백만원, 46,725백만원 증액

- (산출) 27,317명(복무만료예상인원) × 90%(가입률) × 20.5개월(가입기간) × 409천원(지원단가)

자료: 병무청

---

8) 「병역법」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일반회계-사회복무이행지원(7135-326)-사회복귀준비금(사회복무국)

나. 검토의견

사회복귀준비금 연도별 집행실적이 낮게 나타나고 있고, 2024년 8월 기준 사회복무요원의 적금 가입률(91%)이 현역병 적금 가입률(99%)에 비해 저조하므로, 병무청은 더 많은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회복귀준비금은「병역법」에 따라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2022년 1월 납입 원리금부터 매칭 지원되고 있으며, 2022년도는 원리금의 33%인 14.1만원, 2023년도는 원리금의 71%인 30만원, 2024년도는 납입금액의 100%인 4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2025년도부터는 적금 납입 한도액이 55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임.

[연도별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액 및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예정)
보수(월액, 병장 기준)	67만원	100만원	125만원	150만원
적금 납입한도액	40만원	40만원	40만원	55만원
매칭비율	(원리금의) 33%	(원리금의) 71%	(입금액의) 100%	(입금액의) 100%
월 최대 지원금액	14.1만원	30만원	40만원	55만원

자료: 병무청

사회복귀준비금 지급절차는 21개월 소집해제 후 적금만기 해지 신청을 통해 일괄 개인별 계좌로 매칭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음.

[사회복귀준비금 지급절차]

사회복무요원	⇨	은 행	⇨	병무청
·21개월 소집해제 후 적금 만기 해지 신청		·병무청으로 개인별 매칭지원금 금액 및 계좌번호 통보		·복무기간 및 금액 등 확인 후 개인 계좌로 지급

자료: 병무청

병무청은 2025년도 사회복귀준비금 예산을 편성하며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예정자를 대상으로 가입률 90%와 1인당 월평균 지원금 40만 9천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또한, 병무청은 2024년 8월 현재 사회복귀준비금 지급대상자의 적금 가입률이 87.3%에서 92%로 상승하고 있고, 평균 납입금액도 39만원에서 39만 2천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2025년도 예상 납입액을 납입한도(55만원)의 96.4%인 53만원으로 편성하였음.

['25년도 사회복귀준비금 지급대상 기준 가입률 및 평균 납입액]

(단위: 명, %, 만원)

구 분	복무인원	가입인원	가입률	평균 납입금액
’24. 3월	27,317	23,860	87.3	39.0
’24. 6월	27,317	24,814	90.8	39.1
’24. 8월	27,317	25,120	92.0	39.2

자료: 병무청

그러나 연도별 사회복귀준비금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22년도의 경우 예산액 303억 1백만원 중 116억 7,300만원이 집행되어 38.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2023년도의 경우 예산액 865억 5,700만원 중 661억 6,100만원이 집행되어 76.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4년 9월 현재 집행률은 예산액 1,597억 4,000만원 중 845억 8,800만원이 집행되어 53.0%의 낮은 실적을 보여 집행률 제고가 필요해 보임.

[연도별 사회복귀준비금 예산집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구 분	예산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집행률
2022년	30,301	14,668	11,673	38.5
2023년	86,557	25,432	66,161	76.4
2024년 9월	159,740	17,885	84,588	53.0

자료: 병무청

이에 대해 병무청은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조건을 2024년 6월부터 완화(잔여 복무기간 6개월 이상 → 1개월 이상)하여 적금 미가입자의 추가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하였고, 적금 가입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비대면으로 적금을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을 확대[10]하였으며, 전년도에 대비하여 예산집행 실적 또한 상승하여 2024년도 연말 기준 87%(예측)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10) 2023년 1개 은행 → 2024년 9월 5개 은행

이와 같은 병무청의 불용액 감축을 위한 노력과는 별개로 2024년 8월 기준 전체 사회복무요원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률은 91%이며, 이는 현역병 가입률 99%에 비해 많이 저조한 실정임. 이는 24시간 병영 내 생활을 하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거주지에서 출퇴근 복무하며 봉급의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현역병에 비해 적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임.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률 비교(전체복무자 기준)]

(단위: %)

구 분	2022.12월	2023. 12월	2024. 8월
현역병	94	99	99
사회복무요원	75	87	91

자료: 병무청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병역의무이행자의 봉급이 점차 인상되고 있고, 지원금액도 2025년도에 크게 인상(40만원→55만원)되는 만큼 병무청은 더 많은 사회복무요원이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사회복귀준비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적금 가입률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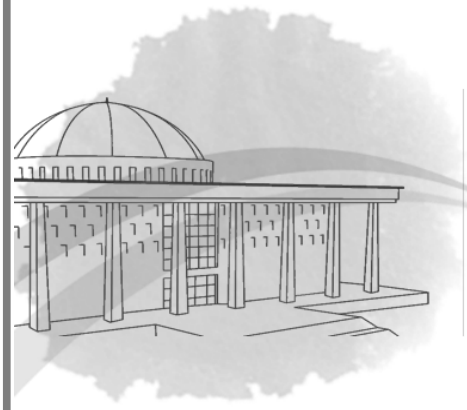
11) 군사교육소집(3주) 기간 중 적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현재는 군사교육소집 종료 후 적금 가입) 등

방위사업청

※ 비공개 (177 ~ 226쪽)

문의 : 김석룡 예산결산조사관 dragon@assembly.go.kr (02-6788-5677)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총수입은 1,631억원으로, 전년 대비 1,437억원(△46.8%) 감소함.[1)]

[2025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3,068	1,631	△1,437	△46.8
총수입	3,068	1,631	△1,437	△46.8

문의 : 박세경 예산결산조사관 sg.park@assembly.go.kr (02-6788-5698)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총지출은 72조 872억원으로 전년 대비 3,601억원(△0.5%) 감소함.

[2025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724,473	720,872	△3,601	△0.5
총지출	724,473	720,872	△3,601	△0.5

나. 예산안

2025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은 총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631억원으로 전년 대비 1,437억원(△46.8%) 감소함.

[2025년도 행정안전부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2,955	1,434	△1,521	△51.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3	197	84	74.3
합 계	3,068	1,631	△1,437	△46.8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2조 872억원으로 전년 대비 3,601억원(△0.5%) 감소함.

[2025년도 행정안전부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697,588	697,241	△347	△0.0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6,885	23,631	△3,254	△12.1
합 계	723,473	720,872	△3,601	△0.5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행정안전부 2025년도 예산안에는 총 9개(192억 2,9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그 중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은 노후화된 지방행정 공통시스템을 지능정보 기반의 차세대 시스템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9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고,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정보화)’ 사업은 민간의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범정부적으로 활용가능한 초거대 AI공통기반을 구현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53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 시설(보조)’ 사업은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침수가 우려되는 하상도로에 대한 자동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6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행정안전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계획안)
[일반회계]		
1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정보화)	929
2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정보화)	5,392
3	스마트정부청사 관리체계 구축(정보화)	380
4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 시설(보조)	6,000
5	도시지역강풍피해방지역량강화기술개발(R&D)	2,000
6	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 공동전문기관 기획평가관리(R&D)	1,270
7	드론SAR및 디지털트윈연계 급경사지 위험성분석 기술개발(R&D)	1,500
8	제4기단층정보를 활용한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설계기준 고도화(R&D)	1,491
9	잠재재난요소조사평가	267
총지출		19,229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전자문서소통시스템(정보화),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정보화)’, ‘제주4.3피해보상(보상금 등)’,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사업 등 총 36개임.[3)]

[2025년도 행정안전부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지자체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화	715	935	220	30.8
2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505	1,008	503	99.6
3	주민등록정보센터및전산망운영(정보화)	2,732	5,294	2,562	93.8
4	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	94	156	62	66.0
5	이북도민관련단체및행사지원	912	1,209	297	32.6
6	전자문서소통시스템(정보화)	6,290	10,530	4,240	67.4
7	지능형전자정부재설계및정책연구(정보화)	2,098	2,886	788	37.6
8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운영(정보화)	1,103	1,471	368	33.4
9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235,767	272,149	36,382	15.4
10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정보화)	151,814	173,334	21,520	14.2
11	정보자원관리지원(정보화)	4,790	6,347	1,557	32.5
12	디지털서비스 개방(정보화)	6,843	10,377	3,534	51.6
13	스마트폰기반의모바일전자정부구축(정보화)	800	1,339	539	67.4
14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화)	5,368	7,653	2,285	42.6
15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정보화)	16,251	24,999	8,748	53.8
16	국경일등정부행사	1,805	4,924	3,119	172.8
17	국가상징선양	147	776	629	427.9
18	국가기록서비스정보화추진(정보화)	193	302	109	56.5
19	기록정보서비스	1,244	1,746	502	40.4
20	제주4.3피해보상(보상금등)	226,198	241,877	15,679	6.9
21	국가기록관리 활용기술 연구개발(R&D)	200	400	200	100.0
22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기본경비	262	369	107	40.8
23	재난안전연구원기본경비(R&D)	54	73	19	35.2
24	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구축(정보화)	845	1,742	897	106.2
25	안전사고대책및재난현장종사자지원	450	600	150	33.3
26	풍수해・지진재해보험	38,045	48,994	10,949	28.8
27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94	545	451	479.8
28	도시침수 방어능력 강화를 위한 피해저감 실용화 기술개발(R&D)	1,600	2,650	1,050	65.6
29	과학기술기반 군중밀집관리 기술개발(R&D)	1,040	1,976	936	90.0
30	재난안전산업 기술사업화지원(R&D)	5,060	9,570	4,510	89.1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31	지진위험 분석 및 관리기술 개발(R&D)	4,100	8,100	4,000	97.6
32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사업(2단계)(R&D)	4,140	6,080	1,940	46.9
33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R&D)	4,500	6,500	2,000	44.4
34	비상대비정보화(정보화)	4,541	7,904	3,363	74.1
35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281	424	143	50.9
36	지능형 CCTV 관제체계 구축(정보화)	3,251	5,075	1,824	56.1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행정안전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행정안전부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민생안정을 위한 국민체감형 사업을 중심으로 일상 속 국민안전 강화, 지방시대 구현, 인공지능 활용 혁신촉진 등에 중점 투자하였다는 점임.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민생현장 속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여 빈집정비(50억원→100억원) 등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착한가격 업소 물품 지원(18억원→31억원)을 확대하였으며, 재난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복구지원 예산(600억원→1,200억원)을 늘리고 안전취약계층의 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태 조사(1억원→4억원) 및 교육홍보(4억원→13억원)를 강화하였음.

또한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 기금(1조원, 전년동) 지속 지원 및 신규(12개소) 청년마을(75억원, 전년동)을 조성하는 등 청년·지역의 상생모델을 구축하여 지방소멸 추세 반전계기를 마련하고, AI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챗GPT 등 최신기술의 범정부적 활용 기반 구축(54원억, 순증)과 행정업무 적용(13억원→42억원)을 추진하고자 함.

2025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사업 및 ‘AI 행정업무 적용’ 사업은 ISP 중간산출물에 근거하여 2025년도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나 이를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필수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는 등 사업 준비가 미흡해 보이므로 사업 준비를 보완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AI기반 안전신고 정보의 과학적 분석서비스 기술개발(R&D)’ 사업은 2024년 사업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어 연구수행기간의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의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사업은 이 사업과 유사한 과거 사업의 성과를 고려하여 면밀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넷째, ‘부내 정보시스템 통폐합 방안 수립’ 사업은 이 사업을 통해 시스템 통폐합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계획과 효율적인 통폐합 방안을 확정한 뒤 개별 사업의 시스템별 통폐합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은 2024년 사업의 집행부진,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정보화) 사업(신규), AI 행정업무 적용 사업: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개 요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정보화)’ 사업은 범정부적으로 활용 가능한 초거대 AI 플랫폼을 도입하여 기관별로 특화 데이터를 활용한 초거대 AI 서비스를 신속히 구현·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53억 9,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

다른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AI 행정업무 적용’** 사업은 AI, 웹오피스 등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행정업무에 적용하여 혁신적인 공무원 업무환경을 구현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9억 1,300만원(231.7%) 증액된 41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5)]

[2025년도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사업 및 AI 행정업무 적용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정보화)	-	5,392	5,392	순증
전자문서소통시스템(정보화)	6,290	10,530	4,240	67.4
AI 행정업무 적용	1,257	4,170	2,913	231.7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사업은 한국지능사회정보원에 출연(350-02목)하여 범정부 AI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 예산 사업에 해당함.

4) 일반회계-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정보화)(2039-506)(디지털정부혁신실)

5) 일반회계-전자문서소통시스템(정보화)(1932-501)(디지털정부혁신실)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범정부 초거대 AI 플랫폼 개발(4,235백만원)(350-02목) - 공통기반 포털 개발비 : 500FP × 1,546천원 = 773백만원 - 초거대 AI 공통서비스 구현 : 2개 × 1,731백 = 3,462백만원 ○ 공용 학습데이터 구축(1,037백만원)(350-02목) - 학습데이터 구축 : 42MM × 24.7백 = 1,037백만원 ○ 플랫폼 구축 관련 하드웨어 구매(120백만원)(350-02목) - 하드웨어 구매 : 6대 × 20백 = 120백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AI 행정업무 적용 사업 예산은 일반연구비(260-01목)으로 편성되어,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AI 행정업무 적용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AI 기반 지능형 업무플랫폼 응용 SW 개발 4,170백만원(260-01목) - [(3,610,919천원(3,295FP, 개발비)+180,545천원(이윤, 개발원가 5%)×1.1(VAT)) = 4,170,611천원

자료: 행정안전부

나. 검토의견

첫째,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사업 및 AI 행정업무 적용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ISP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ISP 중간산출물을 근거로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ISP 중간산출물이 갖추어야 할 필수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2024년 AI 행정업무 적용 사업 예산 12억 5,700만원을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사업 및 AI 행정업무 적용 사업의 ISP 수립을 위해 집행하였음.

그런데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사업 및 AI 행정업무 적용 사업은 ISP 중간산출물 검토 대상 필수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ISP 중간산출물을 기준으로 2025년도 예산안이 편성된 문제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2024년 2월 13일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현 및 디지털 행정혁신 체계 수립을 위한 BPR/ISP’ 계약 입찰공고를 하였고, 2024년 3월 6일 개찰하여 2024년 4월 26일~10월 31일 기간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음. 이후 2024년 6월 기준 중간산출물에 근거하여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즉 이 사업은 ISP 중간산출물을 근거로 2025년도 예산안이 편성된 것인데,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정보화 사업 편성 시 ISP 또는 ISMP 수립 완료 이후 예산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음.

예외적으로 ISP 수립 완료 이전에 구축할 수 있는 사유로는 정책적 중요성 및 시급성이 매우 높아 차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사업이며,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 상 '기본 구성 내용'을 모두 포함한 ISP 중간산출물에 대한 검토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경우여야 함.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 상 '기본 구성 내용'은 크게 환경분석, 현황분석,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목표모델 설계, 통합 이행계획으로 구성됨.

[ISP 중간산출물 검토 대상 필수요건]

대상	필수요건(1 2 3 모두 충족)		
	1 중요성	2 시급성	3 기본 구성 내용
ISP 또는 ISMP를 수립 중이나	① 법률 제·개정에 따라, ② 국정과제에 명확히 포함되어, ③ 관계부처 간 합의 및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④ 외부기관의 지적에 의해, 그 밖에 중요성이 인정되어, ※ 중요성에 해당하는 각 사례에서 차년도 구축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존재하여야 함	차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사업	단, ISP 또는 ISMP 기본 구성 내용을 모두 포함한 산출물

자료: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제7판)」, 기획재정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어 중요성이 인정되고, 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정부 내 생산성 향상 및 민간 신기술의 신속한 도입 등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했다는 입장임.

그러나 단순히 정부 내 생산성 향상 목표라는 점에서 차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시급성이 인정된다 보기 어렵고, 기본 구성 내용 측면에서도 당초 ISP 수립 계약기간이 약 6개월이었음을 감안할 때, 2024년 4월말부터 2024년 6월(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시기)까지 한 달 남짓의 기간 내에 완결성 있는 충실한 중간산출물을 도출하기에 충분한 기간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가령 '기본 구성 내용' 항목 중 '통합 이행계획'의 경우 세부과제별 내용이 2024년 6월 기준 중간산출물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나, 예산안이 편성된 이후의 보다 진전된 2024년 9월 기준 중간산출물에는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에 변동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이 사업은 ISP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ISP 중간산출물을 근거로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ISP 중간산출물이 검토 대상의 필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둘째,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사업 및 AI 행정업무 적용 사업은 2025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이후 5개년 총사업비가 3배 이상 확대되었고, 구체적인 서비스 유형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부처 간 협업 준비도 미흡한 등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이 부실하므로, 사업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①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근거인 2024년 6월 기준 ISP 중간산출물에서는 5개년 소요 예산(총사업비)이 160.3억원이었으나, 2024년 9월 기준 중간산출물에서는 총사업비가 486.9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었음.

이처럼 2025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당시와 제출 이후 사업 규모와 내용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당초 2024년 6월 기준 ISP 중간산출물이 부실하였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향후 시스템 구축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2024년 6월 기준 중간산출물과 9월 기준 중간산출물 5개년 소요 예산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이행과제	상세내용	연도별 예산					합계
			2025	2026	2027	2028	2029	
'24.6. 기준	초거대 AI 공통기반 플랫폼 구축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플랫폼 개발, 민관협력체계 구축, 개별부처/기관 학습 및 서비스개발 기능 구현	5,080	1,924	-	-	-	7,004
	학습데이터/ 평가데이터 구축	민간 AI 모델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 학습용 데이터 및 평가 데이터를 구축하여 제공	1,968	1,352	-	-	-	3,321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인프라 구축 및 운영	PPP 클라우드 활용	120	285	351	396	453	1,605
	시스템 구축 감리 및 운영·유지 보수 비용	정보시스템 구축 감리	396	195	-	-	-	591
		운영 및 유지보수	-	683	942	942	942	3,509
	총액		7,564	4,440	1,293	1,338	1,395	16,030

(단위: 백만원)

구분	이행과제	상세내용	연도별 예산					합계
			2025	2026	2027	2028	2029	
'24.9. 기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축	공통기반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773	-	-	-	-	773
		민간 AI 플랫폼 구독료, 민간 AI모델 사용료	1,670	2,234	3,027	3,777	4,152	14,860
	AI 서비스 개발	공통 AI 서비스 개발, 싱글 원 윈도우 개발, PoC 및 서비스 기획 지원	4,172	6,624	710	710	710	12,926
	공통기반 활용 데이터 구축	공용 학습 데이터 구축, RAG 지식 DB 구축	2,021	3,165	-	-	-	5,186
	공통기반 인프라 구축 및 운영	PPP 클라우드 자원 사용료	1,228	2,654	2,375	2,628	2,951	11,828
	운영 및 유지보수	운영 및 유지보수	-	436	711	987	987	3,121
	총액		9,864	15,105	6,823	8,102	8,800	**48,694**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또한 이 사업은 시스템 구축에 있어 필요한 세부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임. 이 사업은 민간 AI 모델을 다양하게 구비하고, 부처별로 더 적합한 민간 AI 모델을 택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이 플랫폼에 몇 개의 민간 AI 모델을 구비할지에 대한 계획이 부재한 상황임. 또한 민간 AI 모델 사용료는 서비스 사용량에 기반하여 해당 모델을 활용한 부처별로 지불하도록 할 계획인데, 이 사용료 과금 체계에 대한 검토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향후 소요 예산에 대하여 예측이 어려운 것으로 보임.[6)]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공통 AI 서비스 10개를 개발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제공할 계획인데, 그 중 2개 서비스를 2025년에 구축하기 위해 34억 6,200만원(초거대 AI 공통 서비스 구현 2개 × 1,731백만원)이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으나, 전체 10개의 공통 AI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2024년 10월까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즉 행정안전부는 10개 서비스 중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2개 서비스를 2025년에 개통하겠다는 입장인데, 전체 10개 서비스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2개 서비스를 선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계획으로 보여짐.[7)]

6)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수요에 따라 특정 기능에 특화된 모델을 들여오는 것으로 제안요청서 상 플랫폼별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모델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함.
또한 과금체계와 관련하여, 기업별로 상이한 산정방식을 고려하여 자율성을 일정 부분 부여하되, 산정 기준을 표준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③ 마지막으로 이 사업의 2025년 1차년도 예산은 행정안전부에 53.9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44.7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예산 편성 및 사업 계획 단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않음. 그 결과 각 부처의 역할이 충분히 구분되지 않고 단순히 예산만 나누어 편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도 예산안에는 민간 플랫폼 구독료와 장비비 등 개발비가 아닌 예산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짐.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에서 기반시스템과 서비스 등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민간 플랫폼 및 장비 등 민간 AI를 공공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지원하도록 역할 분담을 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내부데이터를 담당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외부데이터를 담당하도록 나눌 계획이라 설명함.

그러나 이와 같은 역할 분담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엄격히 구분되는 업무라 보기 어렵고, 부처별 예산이 결과적으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출연되어 추진될 것이란 점에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사업 및 AI 행정업무 적용 사업은 전반적인 사업 방향성 측면에서 사업 준비가 미흡해 보이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7) 행정안전부는 2025년에는 문서 초안 작성 서비스와 법령 등 연관 자료 검색 서비스를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2026년 이후 8개 서비스에 대해서는 민간 서비스 현황과 기관별 수요를 고려하여 정할 예정이라 설명함.

2. AI기반 안전신고 정보의 과학적 분석서비스 기술개발(R&D) 사업: 과제 협약 체결 지연을 고려한 감액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AI기반 안전신고 정보의 과학적 분석서비스 기술개발(R&D)’ 사업은 AI를 활용하여 안전신고 및 각종 재난안전 정보 내 위험징후를 자동 감지·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및 실증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2,000만원(8.0%) 증액된 16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8)]

[2025년도 AI기반 안전신고 정보의 과학적 분석서비스 기술개발(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AI기반 안전신고 정보의 과학적 분석서비스 기술개발(R&D)	1,500	1,620	120	8.0

이 사업은 국정과제인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4년 신규사업으로 시작되어 2028년까지 계속되는 R&D 사업임. 2025년도 예산안은 9개월분에 해당하는 연구비가 편성되었음.

[AI기반 안전신고 정보의 과학적 분석서비스 기술개발(R&D)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1,620백만원
- 1개 × 2,160백만원 × 9/12개월 = 1,620백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이 사업은 ① 안전신문고 신고, 과거 재난·안전사고 뉴스 등 위험징후와 관련된 정보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고, ② AI를 활용하여 학습데이터에 기반한 안전신고 처리(신고분류·분석)를 하며, ③ AI 기반 위험징후 사전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차세대 안전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하는 것임.

8) 일반회계-AI기반 안전신고 정보의 과학적 분석서비스 기술개발(R&D)(2931-608)(재난관리실)

[AI기반 안전신고 정보의 과학적 분석서비스 기술개발(R&D) 사업 세부내용]



자료: 행정안전부

나. 검토의견

AI기반 안전신고 정보의 과학적 분석서비스 기술개발(R&D) 사업은 2024년 사업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어 연구수행기간의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가 있으므로,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예산의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2024년 예산은 협약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9개월분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최신 AI기술 동향 검토 및 실효성 등의 검토로 당초 계획(4월 협약 체결) 대비 6개월 지연되어 2024년 10월 중 협약이 체결될 예정임.

[AI기반 안전신고 정보의 과학적 분석서비스 기술개발(R&D) 사업의 2024년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과제명	2024년 예산	부처 교부액	연구기관 단계 최종집행액
AI 기반 차세대 안전신고 및 위험징후 분석 서비스 기술 개발	1,500	1,500	- (2024. 9. 기준 협약체결 진행 중)

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과제형 R&D 연구개발 사업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제 소요되는 연구기간 및 협약 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연구과제 지연 상황을 고려하여 2025년도 예산안은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이 사업의 연구과제는 6개월 가량 지연되어 2024년 10월 중 정상적으로 연구협약이 체결되더라도 2024년 연구가 2025년 6월까지 지속될 예정이므로,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2025년도 예산안 9개월분 중 3개월분은 추가적인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9)]

[AI기반 안전신고 정보의 과학적 분석서비스 기술개발(R&D) 사업 총 연구기간 및 연구비]

(단위: 백만원)

연구기간	총 연구기간(2024~2028년)				
	1단계		2단계		3단계
총 연구비 (백만원)	1차년도 ('24.10 ~ '25.6)	2차년도 ('25.7 ~ '26.3)	3차년도 ('26.4 ~ '26.12)	4차년도 ('27.1 ~ '27.12)	5차년도 ('28.1 ~ '28.12)
11,500	1,500	1,620	2,800	2,800	2,780

자료: 행정안전부

9)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1차년도(2024년) 9개월, 2차년도(2025년) 9개월, 3차년도(2026년) 9개월 편성하여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임.

3.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사업(신규): 과거 유사 사업 성과를 고려한 사업추진 필요

가. 개 요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사업은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해 침수시 자동으로 출입을 차단하고 위험을 알리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6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0)]

[2025년도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	6,000	6,000	순증

이 사업은 2023년~2024년 추진된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사업’ 종료 후 하상도로를 대상으로 2025~2029년 5년간 60개소씩 추가설치를 지원(국고보조율 50%)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음.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200백만원 × 60개소 × 50% = 6,000백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나. 검토의견

행정안전부는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사업 추진 시 이 사업과 유사한 과거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사업의 성과를 고려하여 면밀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2025년 침수우려 하상도로 60개소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임. 대상지 선정과 관련하여, 과거 5년 이내 침수이력이 있으나 자동차단시설 미설치 상태인 하상도로 316개소 중 지방자치단체 의견 및 추진의지·하천 인접 여부·도로 통행량·

10) 일반회계-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2733-310)(자연재난실)

침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가 시급한 곳 위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이 사업은 폭우 등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여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폭우·태풍 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8~9월 이전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기 설치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유사 사업인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사업의 경우 2024년 9월말 기준 2024년 사업 중 13% 가량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사업의 추진 실적(2024. 9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량	국비 교부액	추진실적		진행률
			설치완료	설치중	
계	270개소	20,250	246개소	24개소	93.3
2023년	90개소	6,750	90개소	-	100
2024년	180개소	13,500	156개소	24개소	86.7

자료: 행정안전부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자동차단시설의 설치 및 연계 등의 세부절차 이행에 필요한 기간(사전 행정절차 제외 4개월)을 고려하여 적어도 7월 이내에 설치가 완료되도록 보조금 교부 및 지방자치단체 집행 시기를 앞당겨 적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단시설 설치 절차 및 소요 기간]

현장 실시설계 용역	→	차단기, CCTV, 수위계, 전광판 등 구매·설치 공사	→	시운전 및 준공
1개월		2개월		1개월

주) 지방비 편성, CCTV 보안성 검토, 계약 심사, 전기·통신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된 경우임
자료: 행정안전부

또한,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사업은 2024년 「재난안전사업평가」에서 '미흡'을 받았는데, 2025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러한 평가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해당 평가는 구체적으로 ① 사업관리의 적정성 측면에서 향후에는 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실제 방문 또는 관련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현황점검이 필요하고,

② 성과관리 측면에서 목표 지표를 개선하고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체계적 계획 및 집행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이 사업과 유사한 과거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사업의 추진실적과 사업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면밀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부내 정보시스템 통폐합 방안 수립 사업(신규): 시스템 통폐합 계획 수립 후 개별 시스템별 통폐합 실시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부내 정보시스템 통폐합 방안 수립’** 사업은 행정전산망 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3~4등급 정보시스템의 통폐합 방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1)]

[2025년도 부내 정보시스템 통폐합 방안 수립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행정안전부정보화	4,491	5,792	1,301	28.9
부내 정보기술 아키텍처 운영 및 관리	118	318	200	169.4
부내 정보시스템 통폐합 방안 수립	-	200	200	순증

이 사업은 2023년 11월 전산망 장애 사태 이후 그 대책에 따라 부내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 45개에 대해 통폐합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사업으로, 행정안전부는 2025년 상반기 중 연구를 완료할 계획임.[12)]

[부내 정보시스템 통폐합 방안 수립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부내 정보시스템 통폐합 방안 수립: 200백만원(260-01목)

- 컨설팅업무량(16.8) × 단가(10,835,831원) + 부가세(10%) = 200백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11) 일반회계-행정안전부정보화(정보화)(7031-500)(기획조정실)

12)

[2023년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사태 개요]

■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 (기간) 2023.11.17.(금), 08:46 ~ 11.18.(토), 09:00

‣ (원인) 네트워크 장비 불량으로 인해, 해당 네트워크에 연결된 행정전자서명(GPKI, 공무원의 업무시스템 로그인 수단)을 활용하는 시도·새올 시스템 로그인 불가

‣ (현상) 시도·새올 접속 장애로 지자체 민원실 등 행정업무가 중단되었고, 동일 네트워크에 연결된 정부24 등 대민서비스 장애로 확산

나. 검토의견

행정안전부는 2024년 수립된 「행정전산망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시스템 통폐합 방안 수립을 위한 일반연구비 2억원을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하면서 이와 함께 개별 사업 예산안에 시스템별 통폐합 예산까지 편성하였는데, 효율적인 통폐합 방안을 확정한 뒤 개별 사업의 시스템별 통폐합 예산을 집행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2023년 11월 전산망 장애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2024년 1월 「행정전산망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음. 이 대책 중에는 3~4등급 정보시스템에 대한 통폐합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행정부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이용도 등을 기준으로 4등급으로 분류하고, 핵심적인 국가 기반 정보시스템은 1등급으로, 나머지는 2·3·4등급으로 분류한 뒤, 국민 이용이 낮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여 관리효율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등급제 기반 통폐합 추진방안]

■(기본원칙) 통폐합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3~4등급 정보시스템
■(통폐합 방식) 3~4등급 전체 정보시스템에 대해 2가지 방식 중 택일
 ‣① 1~2등급 정보시스템으로의 통폐합
 ‣② 기관 내 3~4등급 시스템들과의 통폐합을 통해 1~2등급으로 구축
■(대상관리) 통폐합 검토기준에 따라 기관별로 수립한 통폐합 계획을 전자정부 성과관리 제도와 연계하여 통폐합 추진
■(예산확보 방안)
 ‣(기존 3·4등급) 통폐합 검토기준에 따라 통폐합 추진 예산 신청
 ‣(신규 구축) 1~2등급 예상되는 시스템 대상 구축 예산 신청
※ 통·폐합되어 절감된 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 예산은 1·2등급 정보시스템 보강에 활용

자료: 행정안전부

이러한 내용의 기존 통폐합 계획과 별도로 2025년도 예산안에서 ‘부내 정보시스템 통폐합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기존 통폐합 계획은 통폐합 유형 구분 및 완료 예정 시점만을 결정한 것이고, ‘부내 정보시스템 통폐합 방안’의 경우 세부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대상 시스템 현황과 업무를 분석하여 시스템별 합리적 통폐합 방식을 결정하고 향후 효율적 운영 방안(인력, 조직, 예산) 제시 및 예산 절감 효과를 검증할 계획임. 최종적으로는 통합되는 서비스의 범위와 개발 방안, 인프라 통합을

위한 전환 절차, DB 이관 방안 등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각 사업부서에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임.

[부내 정보시스템 통폐합 방안 연구 주요 내용(안)]

○ 부내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45개)에 대한 통폐합 방안 수립
- 통폐합 대상별 주요 기능, 시스템 구성, 연계 체계 등 현황을 분석하고 서비스 형태에 따른 통합 유형 분류
- 1·2등급 시스템으로 흡수 통합(폐기) 및 3·4등급 시스템 간의 통합(기준) 등 유형별로 세부적인 실행계획 도출

○ 시스템 신규 구축, 등급 조정 등에 따른 통폐합 대상 변경 지원
- 새롭게 통폐합 대상에 추가되거나 측정항목이 변동되어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경우 방안수립 대상에 포함 추진
- 등급 분류 측정근거 보완을 통해 2등급 이상으로 상향이 가능한 경우 조정에 필요한 컨설팅 수행
- 시스템 통합에 따른 기능 조정, 자료 이관, 도메인 변경 등 비용 투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적정 비용 산출

○ '26년 정보시스템 통폐합 소요예산 산출 지원
- '25년 통폐합 대상 중 당초 보다 이관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흡수하는 시스템의 기능개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 '26년 통폐합 대상은 방안수립을 통해 세부적인 이관 범위, DB 이관 규모, 인프라 증설 용량 등에 따른 비용 산출 지원

○ 정보시스템 통폐합 완료 이후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 시스템 통합에 따른 기존 운영 조직 개편 및 세부사업 변경 등 통합적 유지관리 방안 마련
- 유사·중복 기능 삭제, 운영 사업 통합발주 등 시스템 통합 이후 예산 절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산출

자료: 행정안전부

이와 같은 행정안전부의 설명에 따르면 부내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통폐합 방안 수립이 완료된 후에야 부내 정보시스템 통폐합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그러나, 2025년도 행정안전부 전체 예산안을 살펴보면 2024년 1월 발표된 통폐합 계획에 근거하여 개별 사업에 통폐합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행정안전부 2025년도 예산안 중 3~4등급 통폐합 관련 주요 예산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 내용
정부포상	상훈시스템 운영	○ 상훈시스템 기능 개선(정보시스템 등급제 기반 통폐합) : 63백만원 - 재개발 원가(52백만원) + 이윤(10%) + 부가세(10%) = 63백만원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민원행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평가	○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e-시스템 통합: 26백만원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18백만원 + 응용SW 재개발비 8백만원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정부혁신추진기반구축	○ 국민소통플랫폼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1,726백만원 - 정보시스템 통폐합 관리용역비 408백만원 - 통폐합 관련 HW·SW 구매비용 850백만원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정부혁신 확산·홍보	○ 혁신24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420백만원 - 정보시스템 통폐합 비용 107백만원 - 통폐합 관련 HW·SW 구매비용 163백만원
정보보호인프라확충	디지털원패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Any-ID 구축 및 확산 3,701백만원 - 디지털원패스 통폐합 등 관련 1,011백만원
전자정부 성과평가	범정부 정보자원관리 및 공동활용	○ 정보자원관리시스템 통폐합 비용 265백만원 - 운영인력 4명(21MM)에 대한 운영비 476백 x 55.7%(44.3% 할인) ≒ 265백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대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시스템 기능 수정 및 삭제, 데이터 이관, 서버 증설 등 시스템별로 필수 소요 예산만 편성한 것이고, 부내 정보시스템 통폐합 방안 연구와 개별 시스템 통폐합이 동시에 이뤄져도 무방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부내 정보시스템 통폐합 방안 연구 추진일정 상 2025년 6월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므로, 2025년 통폐합 실행계획 수립을 기다렸다가 이를 반영하여 종합적인 통폐합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무리한 시스템 통폐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는 등 안전하고 효율적일 것이라고 여겨짐.

즉 정보시스템별 서버 구성 및 프레임워크가 상이한 상황에서 종합적인 실행계획 없이 성급하게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므로, 세부적인 실행계획과 효율적인 통폐합 방안을 확정한 뒤 개별 사업의 시스템별 통폐합 예산이 순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5. 한국섬진흥원지원 사업: 연내 집행가능한 규모로 출연금 조정 필요 등

가. 개 요

‘한국섬진흥원 지원’ 사업은 「섬 발전 촉진법」에 따라 한국섬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등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9,500만원(△3.9%) 감액된 48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음.[13)]

[2025년도 한국섬진흥원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한국섬진흥원 지원	5,058	4,863	△195	△3.9%

이 사업은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으로 48억 6,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인건비 31억 500만원, 기관운영비 5억 6,900만원, 연구사업비 11억 5,900만원, 자산취득비 3,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국섬진흥원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인건비 : 3,105,000천원
- 원장 1명, 연구직 18명, 행정직 16명, 공무직 3명

○ 기관운영비 : 569,000천원
- 일반수용비(216,800천원), 공공요금·임차료 등(224,980천원), 복리후생비(54,500천원), 여비(18,000천원), 업무추진비(20,000천원), 부서운영비(34,720천원)

○ 연구사업비 : 1,159,000천원
- 섬 관련 국내·외 정책 연구(791,000천원), 한섬원 아카데미(100,000천원), 홍보 및 교류 협력 운영(268,000천원)

○ 자산취득비 : 30,000천원
- 사무 집기 및 전산 장비·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30,000천원

자료: 행정안전부

13) 일반회계-한국섬진흥원 지원(1242-300)(균형발전지원국)

나. 검토의견

첫째, 한국섬진흥원 지원 사업은 그동안 출연금이 과다하게 이월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연내 실제 집행가능한 규모만 출연하는 등 불필요한 출연기관 단계에서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연금 및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한국섬진흥원은 2021년 9월 개원 이후 현재까지 매년 인건비 잔액 및 사업비가 이월되고 있음. 2021년에는 4억 1,500만원, 2022년에는 11억 7,100만원, 2023년에는 15억 6,000만원이 한국섬진흥원 내 집행단계에서 이월되었음.

[2021년~2023년 한국섬진흥원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한국섬진흥원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1	657	657	-	657	241	415	-	36.7
2022	5,719	5,719	415	6,134	4,964	1,171	-	80.9
2023	5,620	5,620	1,170	6,790	5,230	1,560	-	77.0

주) 2021년 예산액은 건물 공사비 등을 제외한 기관운영출연금 규모임
자료: 행정안전부

이월된 예산의 내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인건비와 사업비가 차지하고 있음. 이는 채용 지연에 따른 인력 결원과 위탁연구용역 등 사업 지연으로 실집행이 부진했기 때문임.

2021년에는 총 12명 채용 예정이었으나, 9월 개원 시 2명이 채용되었고, 12월에 3명이 추가 채용되는 데에 그쳐 인건비 집행이 저조하였음. 2022년과 2023년에도 중도 퇴사 및 채용절차 지연에 따른 결원 발생과 사업 지연으로 이월액이 각각 11억 7,100만원, 15억 6,000만원 발생하였음.

[2021년~2023년 한국섬진흥원 실집행이월 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실집행 이월액 세부내역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자산취득비	계
2021	309	56	50	-	415
2022	575	132	419	44	1,170
2023	542	26	990	2	1,560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부터 실집행 실적에 따라 출연금을 분할 교부하여 2024년 9월 기준 2024년 예산 대비 52.6%(26억 5,800만원)만 교부하였고, 연말에 이월이 예상될 경우 출연금을 교부하지 않고 불용할 계획으로 이와 같은 집행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함.

따라서 한국섬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예산은 최근 출연금 이월 규모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출연기관 단계에서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연금 및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한국섬진흥원 지원 사업은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으로만 편성된 것을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350-02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한국섬진흥원 지원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 48억 6,300만원은 전액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으로 편성되어 있음.

[한국섬진흥원 지원 사업 2025년도 예산 편성근거]

세사업 명	편성 근거
한국섬진흥원 지원	○ 기관운영출연금(350-01) : 4,863,000천원 가. 인건비 : 3,105,000천원 · 원장 1명, 연구직 18명, 행정직 16명, 공무직 3명 나. 기관운영비 : 569,000천원 · 일반수용비(216,800천원), 공공요금·임차료 등(224,980천원), 복리후생비(54,500천원), 여비(18,000천원), 업무추진비(20,000천원), 부서운영비(34,720천원) 다. 연구사업비 : 1,159,000천원 · 섬 관련 국내·외 정책 연구(791,000천원), 한섬원 아카데미(100,000천원), 홍보 및 교류 협력 운영(268,000천원) 라. 자산취득비 : 30,000천원 · 사무 집기 및 전산 장비·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30,000천원

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기관운영출연금은 기관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및 경비에 해당하고, 사업출연금은 출연기관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함.

그런데 이 사업에는 한국섬진흥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뿐만 아니라 연구사업비 11억 5,900만원도 포함하고 있어, 사업출연금 성격임에도 기관운영출연금으로 편성된 부분이 존재함.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은 그 집행잔액 처리 방식이 상이하여 그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기관운영출연금은 그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을 기관 세입에 계상할 수 있음. 반면 비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출연금은 관련 법령 상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의 처리지침을 마련하는 등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섬진흥원 지원 사업은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비목이 구분되어 편성될 필요가 있음.

6.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 적정 사업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은 민간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억 9,600만원(100.0%) 증액된 25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음.[14]

[2025년도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지진대비인프라 구축	5,382	5,511	129	2.4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1,296	2,592	1,296	100.0

이 사업은 인증을 위한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 비용(수수료)를 국고보조율 60%로 지원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비로 추가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민간 자부담 비율은 0~10% 수준임.[15] 이 사업은 2025년도 예산안을 통해 2024년 내진성능평가 90건, 인증 60건을 지원하던 것의 2배 수준인 내진성능평가 180건, 인증 120건을 지원할 계획임.

14) 일반회계-지진대비인프라 구축(2731-307)(자연재난실)

15)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비율]

구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내진성능평가	60%	30~40%	0~10%
인증심사	60%	30~40%	0~10%

자료: 행정안전부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내진성능평가 지원 (2,160,000천원) - 180건×20,000천원×60%=2,160,000천원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수수료 지원 (432,000천원) - 120건×6,000천원×60%=432,000천원

자료: 행정안전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시설물의 지진안전성을 진단·평가하고 시설물에 대해 전문인증기관이 이를 검증한 후 인증명판과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임.[16] 이 사업은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내진성능평가 참여를 유인하고 내진성능이 부족한 건축물 등의 자발적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



자료: 행정안전부

나. 검토의견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은 민간건축물 소유자의 참여유인 부족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낮은 문제가 있어 보임.

민간건축물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인증을 받은 민간건축물 수가 감소 추세에 있어 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인증을 받은 민간건축물 중 대부분이 이 사업을 통해 인증수수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 자발적인 인증제도 참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1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 인증 현황]

(단위: 건)

구 분	총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민간건축물 인증	242	77	74	42	49
인증수수료 지원	239	77	72	42	48
인증수수료 미지원	3	-	2	-	1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① 민간건축물의 경우 내진성능평가 및 확보가 법적 의무가 아니어서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고, ② 부정적 평가결과에 대한 낙인효과 우려 및 내진보강공사 부담 등으로 자발적 참여가 저조하다고 설명함.

그러나 이 사업 목적이 민간건축물의 지진안전성을 진단평가하여 내진보강 확산을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참여 유인 부족으로 자발적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단순히 인증수수료 지원 대상 수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 유도가 가능한 사업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임.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2025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결과 2024년 8월말 기준 86개 민간건축물 수요를 확보하는 데 그쳐, 2025년도 예산안 목표치인 180건에 미달하는 수준이고, 이 사업이 수요 미확보 등의 사유로 2020년 30억 300만원에서 2022년 8억 4,400만원으로 예산규모가 줄어들었던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로 자발적 참여가 저조한 경우, 이미 내진성능이 우수하여 인증받을 수 있는 민간건축물 위주로만 사업이 운영되고 실질적으로 내진성능이 부족한 민간건축물은 인증신청 등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어,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자발적 보강이 더욱 기대하기 어렵게 됨.

따라서 이 사업은 사업 목적인 민간건축물의 자발적 내진보강 확산이 달성되기 어려운 구조로 보여지므로, 단순히 인증비용 지원 등 인증제도 운영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17]

17)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내진성능평가 건물에 대해 세제혜택 강화, 감정평가 시 가점 부여,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7. 재난대책비 사업: 당해연도 재난 복구의 차년도 예산 편성 방식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재난대책비’ 사업은 재난으로 발생한 공공시설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인명 또는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자 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및 긴급생활안전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400억 2,000만원(△40.0%) 감액된 3,600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18)]

[2025년도 재난대책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재난대책비	600,040	360,020	△240,020	△40.0

이 사업은 태풍, 홍수,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재난의 발생으로 인명·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시설의 복구를 지원하는 자치단체 보조사업(국고보조율 공공시설 50%, 사유시설 50~70%)임.

[재난대책비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2024년 호우 피해 복구비 237,598백만원
○ 2025년 사유·공공시설 복구비 122,362백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나. 검토의견

재난대책비 사업은 2024년 호우 피해 복구비를 차년도(2025년도) 재난대책비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데, 예비비 활용 대신 이러한 편성방식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전년도 재난 피해 복구가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8) 일반회계-재난대책비(보조)(2734-300)(재난복구지원국)

행정안전부는 재난 피해에 대한 신속 지원을 위해 2011년부터 예비비적 성격의 사업인 재난대책비 사업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고, 2023년 이전까지는 대부분 재난대책비 및 예비비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고 당해연도 내 피해복구를 해왔음.

[최근 재난대책비 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안)
전체 재난대책비	436,000	820,000	100,035	150,035	600,040	359,960
당해연도 재난 대비 예산	36,000	50,000	100,000	150,000	59,717	122,362

주 1) 2020년 당해연도 재난 대비 예산은 코로나19 관련 비용 4,000억원을 제외한 금액임
2) 2021년 당해연도 재난 대비 예산은 전년도 수해피해 복구비 7,700억원을 제외한 값임
3) 2024년 당해연도 재난 대비 예산은 전년도 호우·태풍피해 복구비 5,402억 8,300만원을 제외한 값임
자료: 행정안전부

그러나 2024년 예산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에도 전년도 재난피해 복구비가 포함되어 있어 2025년도 재난대책비 사업 예산안 3,599억 6,000만원 중 2025년 발생할 재난에 대비한 예산은 1,223억 6,200만원에 불과함. 이는 2024. 7. 8.~19. 발생한 호우 피해복구비 중 일부(사유시설 위주) 737억 1,700만원에 대해서만 2024년에 교부하고, 부족액 2,375억 9,800만원을 2025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임.

[2024년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대책비 소요액 및 부족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복구비(국비) 소요	교부액			부족액
		재난대책비	이전용등	계	
2024. 7.8.~7.19. 호우 피해	311,315	59,717	14,000	73,717	237,598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공사의 경우 매년 이월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빠른 복구가 가능한 1억 미만 소규모 기능복구비와 개선복구가 필요한 공사 건의 설계비 일부를 계상하여 2024년에 이·전용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교부하였고 나머지 공사비는 2025년 본예산을 통해 교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이러한 예산편성 방식은 7월까지의 재난에 대해서는 교부규모를 산정하여 편성할 수 있지만, 8월 이후 발생하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존재함.

또한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 교부일로부터 최대 3회계연도에 걸쳐 집행할 수 있는데, 차년도 예산으로 복구하게 될 경우 피해복구가 지나치게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 신속 복구 지원이라는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2024년 호우 피해 복구비를 2025년도 재난대책비 예산에 편성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는 재난 피해 복구가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8.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사업 효과성에 대한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여 업소당 85만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억 2,500만원(△36.1%) 감액된 30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19)]

[2025년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지역경제활성화	5,582	3,819	△1,763	△31.6
지방물가안정관리와 골목상권활성화 등 추진	4,833	3,117	△1,716	△35.5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4,785	3,060	△1,725	△36.1

이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12,000개소 지원(국고보조율 30%)을 목표로 편성되었음. 착한가격업소 지정제도 운영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으나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시・군・구)로 조례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격요소와 위생청결도, 공공성(원산지 표시제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물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 3,060,000천원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 12,000개소×850천원×30% = 3,060,000천원

자료: 행정안전부

이 사업은 2024년 예산을 통해 물품 지원과 배달료 지원을 하였으나, 2025년도 예산안을 통해서는 국비 및 지방비를 활용한 물품 지원만 실시할 계획임. 다만 물품 지원 실시 대상인 착한가격업소 수를 7,000개소에서 12,000개소로 확대 편성하였음.

19) 일반회계-지역경제활성화(1349-301)(지방재정경제실)

[2024년 대비 2025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2024년	2025년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 4,785,000천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 7,000개소×850천원×30% = 1,785,000천원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24년 배달료) : 5,000개소×2천원×1,000건×30% = 3,000,000천원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 3,060,000천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 **12,000개소**×850천원×30% = 3,060,000천원

자료: 행정안전부

나. 검토의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의 지원개소를 2024년 7,000개소에서 2025년에는 12,000개소로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인데, 착한가격업소 지원개소 확대가 실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물품지원 등이 업소 입장에서 유인책으로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2024년 예산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공공요금·홍보 등 지원(물품 지원) 및 배달료 지원을 실시하였는데, 2024년 8월말 기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의 실집행은 19.1%에 그침.

행정안전부는 이 중 물품 지원의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 변동으로 하반기에 대부분 집행될 예정이므로 연말 실집행률은 95% 이상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함. 반면 배달료 지원의 경우 배달앱을 통해 실제 지원이 가능한 업소가 38.3% 수준으로 수요가 저조하여 집행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설명함.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의 2024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2024년 8월 기준	
		실집행액	실집행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물품)	1,785	607	34.0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배달)	3,000	305	10.2
합 계	**4,785**	**912**	**19.1**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25년까지 12,000개소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2025년도 예산안을 증액편성하였음. 그러나 이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가 실제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물품지원 등이 해당 업소 입장에서 유인책으로 적절한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① 우선 행정안전부는 2023년 8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지정요건 중 ‘착한가격 메뉴 수’ 기준과 ‘이용도 만족도’ 기준을 삭제하고 ‘주변 대비 저렴도’ 기준·‘위생·청결’ 기준·‘공공성’ 기준만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기준별 점수 부여 체계도 개편하였음.

개정된 기준에 근거할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에는 용이할 수 있겠으나, 이에 근거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가 실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나 소비자 만족도는 저하될 우려도 존재함.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개정 내용 비교]

<table>
<tr><th colspan="3">구 분</th><th>현 행</th><th>개 정</th></tr>
<tr><td colspan="3">지정 대상</td><td>▸자영업자, 개인사업자에 한함</td><td>▸변경 없음</td></tr>
<tr><td rowspan="5">지정 기준</td><td colspan="2">총 괄</td><td>▸총 110점 중 70점 이상 시 지정
▸평가결과 일부 지표 점수가 지정 곤란 시 지정 보류 가능</td><td>▸총 55점 중 40점 이상 시 지정
▸변경 없음</td></tr>
<tr><td rowspan="2">주변 대비 저렴도</td><td>가격 수준 [30점]</td><td>▸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비율
<table><tr><th>구분</th><th>5%미만</th><th>10%미만</th><th>20%미만</th></tr><tr><td>신규</td><td>20점</td><td>25점</td><td>30점</td></tr><tr><td>재지정</td><td>10점</td><td>15점</td><td>20점</td></tr></table></td><td>▸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신규 지정 30점, 재지정 20점</td></tr>
<tr><td>동결 기간 [10점]</td><td>▸착한가격 유지 기간(재지정 시)
<table><tr><th>6개월 미만</th><th>6개월~1년</th><th>1년 이상</th></tr><tr><td>0점</td><td>5점</td><td>10점</td></tr></table></td><td>▸1년 이상 평균가격 이하 운영 시 점수 부여
<table><tr><th>1년 이상~2년 미만</th><th>2년 이상</th></tr><tr><td>5점</td><td>10점</td></tr></table></td></tr>
<tr><td colspan="2">착한가격 메뉴 수 [25점]→[삭제]</td><td>▸착한가격 메뉴 수
<table><tr><th>2개 이상</th><th>3개 이상</th><th>4개 이상</th></tr><tr><td>15점</td><td>20점</td><td>25점</td></tr></table></td><td>▸[기준 삭제]</td></tr>
<tr><td colspan="2">이용자 만족도 [20점]→[삭제]</td><td>▸포털사이트 만족도 평가 활용
▸현지 실사 시 평가자 평가 점수</td><td>▸[기준 삭제]</td></tr>
<tr><td colspan="2">위생·청결 [10점]</td><td>▸주방 등, 매장 내, 화장실 평가
<table><tr><th>주방 등</th><th>매장 내</th><th>화장실</th></tr><tr><td>10점</td><td>7점</td><td>3점</td></tr></table></td><td>▸변경 없음
※ ❶ 식약처 위생등급 ‘좋음’ 이상 (요식업)
❷ 1년 이내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활용 가능</td></tr>
<tr><td colspan="2">공공성 [5점]</td><td>▸옥외가격·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시책 이행여부
(모두 이행 5점, 일부 미이행 0점)</td><td>▸[변경] 항목별 배점 부여(각1점)
※ 기존 공공성 항목
→ ‘지정제한 조건’</td></tr>
<tr><td colspan="2">가점 [10점]→[삭제]</td><td>▸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사회적 가치실현, 지역화폐가맹점 등</td><td>▸[기준 삭제]</td></tr>
</table>

자료: 행정안전부

②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4년 중 연구용역을 통해 이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직접적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정으로 해당 지역 소비자들에게 해당 품목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어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20] 간접적으로는 인근 업소의 동일품목의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어 이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정성분석 결과 중 사업주 체감 효과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나, 그 지정에 따라 낮은 요금 유지 유인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44.3%, 40.7%로 절반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응답은 각각 14.6%, 13.7%로 나타남.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따른 점포 운영 체감 효과]

구분	그렇지 않다(①+②)	보통이다(③)	그렇다(④+⑤)	총합계
응답자 수(명)	166	467	504	1,137
비율(%)	14.6	41.1	44.3	100.00

자료: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따른 낮은 요금 유지 유인 효과]

구분	그렇지 않다(①+②)	보통이다(③)	그렇다(④+⑤)	총합계
응답자 수(명)	133	443	395	971
비율(%)	13.7	45.6	40.7	100.0

자료: 행정안전부

현실적으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부담 대비 경상적 지원 수준(연 85만원 상당)이 적정한지 고려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유지할지 자진해제(이탈)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업소당 지원액만을 감안하면 여러 제약을 감수하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을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음.

20)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메뉴가격이 일반업소 메뉴가격보다 19.06% 저렴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착한가격업소 지정업소의 물가수준은 대부분 현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최대 12년 전 수준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함.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따른 사업자의 혜택 및 제약]

제약	편익
• 역내 평균 대비 낮은 가격 유지	• 85만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 • 민간 협업을 통한 우수착한가격업소 운영비 등 지원
•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부족(저조한 홈페이지 이용자 수)	• 착한가격업소 표시 • 홈페이지를 통한 업소 홍보 • 카드사, 지도앱, 배달앱 등 민간서비스와의 연계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이 사업은 자발적으로 가격을 낮게 유지해 온 가게를 지원하여 가격인상률을 낮게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업소 측에서 편익만을 고려하여 이탈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이용자 수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네이버, 카카오)과의 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함.

따라서 단순히 연 85만원 수준의 재정적 지원 대상 숫자를 확대 지속하기보다, 착한가격업소 지원개소 확대가 실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물품 지원 등이 업소 입장에서 유인책으로 적절한지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정 유인 증대 및 지역물가 안정 유도가 가능한 사업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사업: 국가재정 부담 완화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사업은 풍수해 등에 대한 실질적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 주택,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 등 풍수해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9억 4,900만원(28.8%) 증액된 489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음.[21)]

[2025년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풍수해보험	38,045	48,994	10,949	28.8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 3개 유형으로 크게 구분되고, 지원대상에 따라 보험료 지원비율이 35%~70%로 차등적으로 지원되고 있음.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3년 미납보험료 144억 8,100만원 및 단가 현실화 등을 위해 증액되었음.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48,580백만원
- 주택: 1,955,537세대(가입대상) × 26.4%(목표가입률) × 13,436원(기준단가) + 제도개선25백만원 ≒ 6,961백만원
- 온실: 244,465,000㎡(가입대상) × 14.0%(목표가입률) × 547원(기준단가) ≒ 18,721백만원
- 소상공인 상가·공장: 850,348개소(가입대상) × 17.67%(목표가입률) × 55,995원(기준단가) ≒ 8,417백만원
- 미납 보험료: 43,444백만원('20~'23년 누적 미정산액) ÷ 3년 ≒ 14,481백만원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및 재난배상책임보험 홍보, 운영 등 414백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21) 일반회계-풍수해・지진재해보험(2734-302)(재난복구지원국)

나. 검토의견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사업의 국가재정 부담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유사한 재해 관련 타 정책보험을 참고하여 국가재정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 관련 2024년~2028년 중장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2024년 이후 2025년 868억 7,700만원[22]이 소요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국가재정 투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가입률 증가에 따라 국가재정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사업 중장기 재정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예산액	38,045	86,877	46,569	50,022	53,797

주) 2025년 868억 7,700만원은 미납보험료를 전액 편성될 것을 가정한 금액으로, 실제로는 2025년도 예산안의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미납보험료 1/3만이 편성되었음
자료: 행정안전부

특히 소상공인 가입률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3자 기부가입제도'에 따라 자부담 없이 가입하는 소상공인 유형 가입이 급증한 결과,[23] 2020년부터 계속하여 국가가 납부해야하는 보험료 미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는 누적된 미납보험료 434억원 가량 중 1/3에 해당하는 144억 8,100만원을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였음.

[2020~2023년 행정안전부의 미납보험료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미납보험료	24	51	168	191	434

자료: 행정안전부

이 사업의 「20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중장기적으로는 지원대상을 자연재해 취약지구의 저소득계층으로만 한정하거나, 지원규모를 차등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일반

22) '2024년~2028년 중장기 재정추계' 상 2025년 868억 7,700만원은 미납보험료를 전액 편성될 것을 가정한 부처 요구액으로, 실제 2025년도 예산안 정부안 작성 과정에서는 미납보험료 1/3만이 편성되어 489억 9,400만원이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음.
한편, 행안부는 미납보험료 전액을 여전히 중기 예산계획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중기계획은 예산 규모와 관계없는 부처의 자체적 판단에 근거하므로 2025년도 정부안 예산안 금액을 반영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중기계획은 별도로 수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함.

23) 제3자 기부가입제도란 민간기업 등 제3자가 가입자의 보험료 자부담금을 지원(기부)하는 방식을 의미함. 이 제도를 활용한 가입건수는 2021년 0건에서 2023년 69,430건으로 증가하였음.

가입자의 자부담율 상향 조정) 등에 대한 검토 필요" 라는 의견이 있었음. 이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는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2024년 7월부터 일반계층의 보험료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56.5%에서 46%로 인하한 바 있고, 연구용역을 통해 손익분담방식[24]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험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함.

따라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사업의 국가재정 부담이 장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사업 및 보험 구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24) 손익분담방식이란 사전에 정한 방식에 따라 보험사와 국가가 손익을 나누는 방식임. 참고로 현재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초과손해율방식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손해율을 국가가 보장하는 방식임.

10. 행정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행정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은 기존 ‘정부24’를 정부 내 모든 서비스가 제공·연결되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로 개편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0억 6,000만원(61.2%) 증액된 133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25)]

[2025년도 행정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행정서비스 통합포털 운영	16,251	24,999	8,748	53.8
행정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	8,270	13,330	5,060	61.2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이 개별 제공하는 서비스를 3년간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할 계획으로, 2024년 1차 사업을 통해 5개 기관의 약 400여종 서비스를 연계·통합하고, 2025년 2차 사업을 통해 8개 기관의 약 800여종 서비스까지 확대할 계획임.

[행정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행정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 13,330백만원
- 서비스 기능개발 : 8,955백만원
- 상용 SW 도입 : 799백만원
- 통합창구 클라우드 이용료 : 3,576백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25) 일반회계-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정보화)(2047-500)(디지털정부혁신실)

[행정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 계획안]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주요 서비스	40종	40종+	40종+
상호연계형	400종	500종	600종
대상기관	5개 기관 ※ 국세청, 고용부, 복지부, 교육부, 대법원	8개 기관 ※ 국토부, 관세청, 금융위, 식약처 등	30개 기관 ※ 외교부, 특허청 등 기타 중앙행정기관

자료: 행정안전부

나. 검토의견

행정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은 2024년 구축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이로 인해 순차적으로 2025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당초 2024년 5월 중 플랫폼 구축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24년 12월 시범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2024년 8월 1일 계약이 체결되면서 서비스 개시 일정이 지연되었음.[26)]

[행정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 추진일정]

사업내용	추진기간	
	당초	변경
사업 착수 (용역계약 체결)	2024년 5월(약 8개월)	2024년 8월(약 6개월)
서비스 개시	2024년 12월	2024년 12월 시범서비스 개시
		2025년 2분기 대국민 서비스 개시

자료: 행정안전부

26) <용역계약 개요>
- 사업기간: 2024. 8. 1. ~ 2025. 3. 29.(240일간)
- 주요내용: 기관연계형(통합인증(Any_ID)) 및 직접제공형(주요서비스) 연계・통합, 주제별 서비스, 사용자 중심의 UI/UX 설계 및 모바일 서비스 개편, 유연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도입 등

2024년 사업 지연 사유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상 민간 클라우드 우선 적용 원칙을 반영하여 인프라 구축 방식이 변경(G클라우드→민관협력형 클라우드)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함.

그러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은 2023년 4월 발표된 계획으로, 2024년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던 부분으로 보여지는 바,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짐.

그 결과 이 사업의 2024년 추진 일정이 3개월 가량 지연된 상황이고, 2024년 8월 체결된 용역계약의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상 개발완료까지 최소 5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서비스 개시 시기는 2025년 2월 이후일 것으로 전망됨.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당초 서비스 개시 예정 시기였던 2024년 12월에 시범서비스를 개시하고 안정화를 거친 뒤 대국민 서비스 개시를 2025년 2분기에 실시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르면 대국민 서비스 개시는 2025년 2분기 이후에 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에는 서비스 개시 후의 운영비(9개월)와 2차 사업 개발비(8개 기관의 약 800여종 서비스로 확대)가 포함되어 있어, 2024년 1차 사업 지연으로 2025년 2차 사업도 순차적으로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운영비의 집행 시기도 늦어질 수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행정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이 순차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1.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 단년도 공사비 편성 방식 적정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은 국지도발 등 적의 침공이나 대형 재난에 대비하여 지하시설이 부족한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대피시설 신규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억 2,000만원(190.6%) 증액된 18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27)]

[2024년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	10,794	6,736	△4,058	△37.6
민방위 시설장비확충	6,614	3,834	△2,780	△42.0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640	1,860	1,220	190.6

이 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국고보조율 50%)으로,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통해 기존 2개소 지원에서 4개소 지원으로 확대하고자 함.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1,220백만원(330-03목)
- 930백만원(개소 당 단가) × 4개소 ×지자체 보조 50%

자료: 행정안전부

27) 일반회계-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2634-304)(비상대비정책국)

나. 검토의견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 사업이 물리적으로 단년도 사업으로 집행이 어려움에도 단년도 사업으로 지원하였기 때문이므로, 이와 같은 사업 구조가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그 대상 부지 확보나 행정절차로 사업 지연·동절기 공사중단·선정 지역 사업 포기 등으로 연례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임.

[2019년~2023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사업대상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19	11개소 (인천5, 경기2, 강원4)	4,800	2,396	7,196	4,023	2,969	204	55.9
2020	6개소 (인천3, 경기2, 강원1)	2,240	2,969	5,209	3,848	962	399	73.9
2021	5개소 (인천3, 경기2)	1,600	962	2,562	1,954	460	148	76.3
2022	3개소 (인천3)	960	460	1,420	493	925	2	34.7
2023	3개소 (인천1, 경기1, 강원1)	960	925	1,885	1,369	496	20	72.6

자료: 행정안전부

2024년 8월말 기준으로도 예산 46억 4,000만원 중 3,300만원(실집행률 0.7%)이 실집행된 것에 그쳤음. 구체적으로 인천(강화)은 3억 2,000만원 전액 교부되었으나 집행액은 3,300만원(실집행률 10.3%)에 불과하고, 경기(연천)는 3억 2,000만원 전액 교부되었으나 실집행은 전혀 없으며, 경북(울릉)은 예산액 40억원이 전액 미교부된 상태임.

실집행 부진 사유도 각각 부지확보 지연 및 설계 보완에 따른 사업 지연, 당초 선정된 마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포기 등 다양하게 나타남.

[2024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8월말 기준)			실집행 부진 사유
	예산액	교부액	실집행액	
인천(강화)	320	320	33	부지확보 지연, 노무비·재료비 등 물가상승으로 실시설계에서 산출된 공사비가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사업계획 변경(면적재산정 당초 130㎡→119㎡) 및 실시설계 내용보완 등으로 설계 지연
경기(연천)	320	320	-	당초 선정된 마을의 사업 포기로 대체 사업대상지 발굴·주민 설명 등으로 사업 지연
경북(울릉)	4,000	-	-	당초 보조율 30%로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2024년 1월 제정 및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울릉도 등 먼섬지원특별법」에 따라 보조율 특례가 적용될 예정으로, 울릉군 사업 포기
계	4,640	640	33	

자료: 행정안전부

이처럼 연례적으로 보조금 교부 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물리적으로 1년 내 완공하기 어려움에도 단년도 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부지 매입의 경우 지방비로 이뤄지나 국비 예산 확정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매입할 수 없으므로 결국 국비 예산 확정 이후 부지 매입부터 추진하게 되는데, 부지 매입(2~3개월), 실시설계 계약 및 완료(3~4개월), 건축공사 계약 및 착공(5~6개월), 준공검사(1개월) 등 최소한으로만 진행되더라도 물리적으로 1년 내 완공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접경지역 특성 상 동절기 공사중단이 3개월 가량 발생하는 문제도 있음.

따라서 현실적으로 단년도 집행이 어려운 구조임에도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하여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 구조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다년도 사업방식으로의 개편 또는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28)]

28)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사업대상지 선정 시 부지확보 여부, 마을주민의 동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함.

1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 사업관리 철저 필요

가. 개 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 사업은 정부 재해 복구 전용 데이터센터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신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35억 3,600만원(△93.6%) 감액된 16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음.[29)]

[2025년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	25,150	1,614	△23,536	△93.6

이 사업은 전쟁·재난·재해·대규모 장애 등 비상사태로 대전·광주센터 동시 기능 마비 시에도 행정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중요 전산자원의 안전한 보호 구현을 위한 정부 재해복구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전산환경 구축 및 이전 486백만원
- 전산환경 구축 401백만원
- 조달수수료 85백
○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1,128백만원
- 전산장비 운영 전문인력 인건비 20명 × 3개월

자료: 행정안전부

나. 검토의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 사업은 2024년 구축 사업이 총사업비 협의로 지연되어 2024년 8월말까지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9) 일반회계-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정보화)(2036-508)(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사업은 2024년 중 공주센터로의 전산환경 구축 및 이전을 완료하기 위해 2024년 예산에 25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이 지연되어 2024년 8월말 기준 전혀 집행되지 않았음.

[2024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 사업 집행 현황(2024. 8.기준)]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예상)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5,150	-	-	-	±1,343	-	25,150	-	-	-	5,663	-

자료: 행정안전부

이는 2023년 11월 발생한 전산망 장애에 대한 종합대책 내용을 반영하면서 ISMP 결과를 보완하여,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절차를 거치게 되어 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임. 2024년 1월 발표된 「전산망 장애 종합대책」 상 등급별 재해복구 구축기준이 새롭게 정립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를 반영하여 2024년 4월까지 ISMP를 보완하였고, 2024년 7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절차를 완료하였음.

행정안전부는 2024년 9월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구축 계약을 조달 발주한 뒤 2025년 9월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2025년 10월부터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3개월분)을 집행할 계획으로, 2025년도 예산안까지 이월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설명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 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

시기	예산 집행 계획
2023. 4 ~ 8	공주센터 전산환경 구축(이전) ISMP 용역 실시
2023. 11 ~ 2024. 4	○ 행정전산망 장애 발생(2023. 11) ○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24.1.31.)」에 따라 수립된 등급별 재해복구 구축기준에 맞춰 ISMP 보완
2024. 7	총사업비 조정(기획재정부) 완료('24.7.2.)
2024. 9	총사업비 조정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 조달 발주 의뢰
2024. 11	공주센터 전산환경 구축 사업자 선정(예정)
2025. 9	공주센터 전산환경 구축 사업 완료(예정)
2025. 10 ~ 12	전산환경(통신망,보안 등) 운영과 재해복구시스템 입주 지원을 위한 위탁운영 추진(예정)

자료: 행정안전부

그러나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표준행정소요일수에 따르면 이 사업 규모에 해당하는 내자구매계약의 경우 통상 2개월~3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구축 사업자 선정 및 구축 완료 시기가 이보다 늦어질 우려가 있음.[30)31)]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30)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3조(표준행정소요일수 등) ① 구매계약 목표(표준)행정소요일수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요청서가 도달한 날부터 구매계약체결(계약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전자서명 또는 날인)을 완료한 날까지로 하되, 계약방법별 목표(표준)행정소요일수는 [별표1]에 따른다.

[별표1] 계약방법별 표준행정소요일수

계 약 방 법			표준행정소요일수	목표행정소요일수
수의계약			26일	21일
경쟁계약	국내입찰	최저가입찰	41일	21일
		적격심사	71일	31일
		협상계약	**89일**	**69일**
		2단계입찰	89일	69일
		규격·가격동시입찰	74일	64일
		종합낙찰	56일	26일
	국제입찰	최저가입찰	84일	54일
		적격심사	114일	64일
		협상계약	129일	69일
		2단계입찰	129일	69일
		규격·가격동시입찰	114일	64일
		종합낙찰	99일	59일

자료: 조달청

31) 행정안전부는 조달 긴급공고를 통해 2024년 11월말까지 계약체결을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13.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섬 25개를 대상으로 2023년~2027년 5년간 기초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1,500만원(△10.0%) 감액된 28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32)]

[2025년도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10,883	11,478	595	5.5%
작은 섬 공도방지.	3,150	2,835	△315	△10.0

이 사업은 「제4차 섬종합발전계획('18~'27)」 지원대상(개발대상섬)에서 제외된 소규모 섬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 지자체 자본보조(국고보조율 70%) 방식으로 식수시설·전력시설·접안시설 및 기타 기반시설 등의 구축을 지원하고자 함.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작은 섬 공도 방지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5개년 계획에 따른 3년차 사업비 2,835백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3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1241-300)(균형발전지원국)

나. 검토의견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은 2024년 실집행 실적이 부진하고 사업이 2023년에 이어 계속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2023년말 실집행률은 40.3%에 그쳤고, 2024년 8월말 기준 2024년 예산의 실집행률도 32.0%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23	3,500	3,500	3,500	3,500	1,410	2,059	31	40.3
2024.8	3,150	3,150	2,165	2,165	693	-	-	32.0

자료: 행정안전부

2023년의 경우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을 거친 뒤 2023년 5월에서야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 5개년(2023년~2027년) 계획」이 확정되었고, 그 후 예산을 교부하여 7월 이후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 실집행이 저조하였음. 2024년 역시 사업지연으로 순차적으로 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상반기 중 2023년 이월액 20억 5,900만원이 전액 실집행되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고, 2024년 예산의 실집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 사업은 2023년~2027년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식수시설・전력시설・접안시설 등 기초인프라 구축 사업 특성 상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지연되어 2024년에도 실집행 단계에서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2024년 실집행 상황과 지자체별 집행단계를 고려해서 2025년도 예산안을 연내 실집행이 가능한 규모로 편성하여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세 출>

14.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집행 부진 및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

가. 개 요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은 빈집으로 야기되는 주거경관 및 치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0억원(100.0%) 증액된 100억원이 편성되었음.[33)]

[2025년도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5,000	10,000	5,000	100.0

이 사업은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목)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철거 및 철거 후 부지활용을 지원(국고보조율 70%)하는 사업임. 이 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 계획 물량 500호의 3배인 1,500호를 지원하기 위해 증액편성되었음.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 10,000백만원(330-01) - 도시지역 정비단가 10백만원 × 빈집 500호 + 농어촌지역 정비단가 5백만원 × 빈집 1,000호

자료: 행정안전부

3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1232-300)(균형발전지원국)

나. 검토의견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은 2024년 사업의 집행부진,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① 우선 이 사업은 2024년 집행이 부진하여, 2024년 신규사업임에도 그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임. 2024년 8월말 기준 교부액은 26억 4,200만원(예산액 대비 52.8%)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도 실집행되지 않고 있음.

이는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하여 사업방식 변경(일반용역비→지자체 경상보조)으로 2024년 5월 예산 전용 후 6월에 지자체 수요 확인 후 7월말부터 지자체 예산배정을 실시하였기 때문임.

2024년 예산안 편성·국회심의 당시 행정안전부는 일반용역비로 편성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용역을 통해 철거하는 방식으로 계획하였다가, 예산안 확정 이후 법령상 빈집정비 업무 소관이 지자체 사무인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 경상보조로 변경하면서 사업이 지연되었음. 이는 지자체별 별도 수요조사 없이 예산이 편성되면서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여겨짐.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시행사 선정 이후 철거 자체는 빠르게 이루어져 연내 집행 및 성과도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② 또한,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타 부처의 기존 빈집정비 관련 사업들과 유사·중복 우려가 있음. 사업 지역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이 사실상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을 포괄하여 큰 차이가 없고, 사업방식의 경우 직접수행 방식에서 보조사업 방식으로 바뀌면서 기존 사업들과 동일해졌음.

[부처별 빈집정비 관련 사업 간 비교]

구분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련 법령	-	「농어촌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사업 지역	인구감소지역	농촌지역	도시지역	어촌지역
사업 방식	직접수행(용역) →지자체보조	지자체보조	지자체보조	지자체보조
관련 사업	• 빈집정비 등 경관 개선 사업 - 도시지역 빈집 500호 + 농어촌 지역 빈집 1,000호	•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 생활여건 열악한 농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인프라 공급 • 농촌공간 정비사업 - 농촌 재구조화에 필요한 난개발 요소 정비 등	• 도시재생사업 - 혁신지구, 지역특화 재생, 우리동네살리기 (26개소)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도심 내 노후 소규모 주택 주거환경 개선	•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 어촌지역의 경제, 생활, 안전 인프라 종합 개선사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공공목적의 경우) 빈집 철거 및 리모델링 지원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타 부처의 기존 사업들은 공간·구역 단위로 지역 재생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공간·구역별 공간정비를 위한 것이어서, 해당 공간·구역 외의 빈집의 경우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공간·구역 외의 개별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함. 또한 전국 빈집이 13만호 수준임에도 기존 사업규모가 협소하여 이 사업을 통해 자발적 빈집 철거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정책수요(전국 빈집 수) 대비 공급(정책사업을 통해 정비되는 빈집 수)이 적은 문제는 기존에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전문성을 갖춘 소관부처에서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고, 정책 사각지대의 경우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타 부처 사업들로 지원되는 구역과 그 외 구역의 빈집을 구분하여 철거할 수 있을지 의문임.

따라서 기존 2024년 사업의 집행이 부진하여 2024년 9월말 기준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타 부처 사업들과의 유사·중복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에 대해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음.

경찰청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경찰청 소관 총수입은 1조 5,040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865억원(14.2%) 증가함.[1)]

[2025년도 경찰청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13,175	15,040	1,865	14.2
총수입	13,175	15,040	1,865	14.2

문의 : 박세경 예산결산조사관 sg.park@assembly.go.kr (02-6788-5698)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경찰청 소관 총지출은 13조 5,364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5,457억원(4.2%) 증가함.

[2025년도 경찰청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129,907	135,364	5,457	4.2
총지출	129,907	135,364	5,457	4.2

나. 예산안

2025년도 경찰청 소관 예산안은 총 3개 회계(일반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조 5,568억원으로 전년 대비 1,861억원(13.6%) 증가함.

[2025년도 경찰청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2,794	14,653	1,859	14.5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913	915	2	0.2
합 계	13,707	15,568	1,861	13.6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경찰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3개 회계(일반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3조 5,930억원으로 전년 대비 5,474억원(4.2%) 증가함.

[2025년도 경찰청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29,494	134,964	5,471	4.2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913	915	2	0.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49	50	1	3.0
합 계	130,456	135,930	5,474	4.2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경찰청 2025년도 예산안에는 총 4개(60억 4,8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그 중 ‘공공수요기반치안현장적용연구개발(R&D)’ 사업은 경쟁형·개방형 연구를 통해 치안 현장의 문제를 다각도로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적용 가능한 각종 장비 및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9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다음, ‘능동형안전서비스제공을위한이동형플랫폼기반솔루션개발(R&D)’ 사업은 예방순찰, 현장 대응 및 사후조치 등 경찰활동 전 과정을 지원하여 현장 경찰 대응력 강화 및 민생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솔루션 개발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6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사이버범죄수사단서통합분석및추론시스템개발(R&D)’ 사업은 급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처하고자 수사단서 분석 및 용의자 추론 등 핵심 대응 기술을 확보하고 검거율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36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마지막으로, ‘경찰작전능력향상기술개발(R&D)’ 사업은 화생방 테러 등 각종 위협에서 경찰·소방관의 안전을 확보하고, 임무 수행 효율성을 도모를 위해 2025년도 예산안은 7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경찰청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	공공수요기반치안현장적용연구개발(R&D)	936
2	능동형안전서비스제공을위한이동형플랫폼기반 솔루션개발(R&D)	692
3	사이버범죄수사단서통합분석및추론시스템개발(R&D)	3,640
4	경찰작전능력향상기술개발(R&D)	780
총지출		6,048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경찰청의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정보업무전산화(정보화)’, ‘사회적약자보호활동’ 사업 등 총 14개임.[3)]

[2025년도 경찰청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정보업무전산화(정보화)	1,092	4,095	3,003	275.0
2	사회적약자보호활동	5,322	16,491	11,169	209.9
3	불법 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기술 개발(R&D)	500	1,500	1,000	200.0
4	사이버수사지원기술개발(R&D)	1,897	5,304	3,407	179.6
5	과학기술 기반 군중밀집 관리 기술 개발(R&D)	1,092	1,976	884	81.0
6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기술 개발(R&D)	1,872	3,120	1,248	66.7
7	형사사법업무전산화(정보화)	7,181	11,550	4,369	60.8
8	미래치안 도전기술 개발(R&D)	934	1,373	439	47.0
9	경찰장비 개선(R&D)	2,359	3,380	1,021	43.3
10	경찰건강 스마트관리(R&D)	4,636	6,490	1,854	40.0
11	해외치안협력강화	5,794	7,969	2,175	37.5
12	경비경찰활동	65,926	83,058	17,132	26.0
13	경찰정보화기반고도화(정보화)	63,374	77,006	13,632	21.5
14	치안활동지원	490,412	507,908	17,496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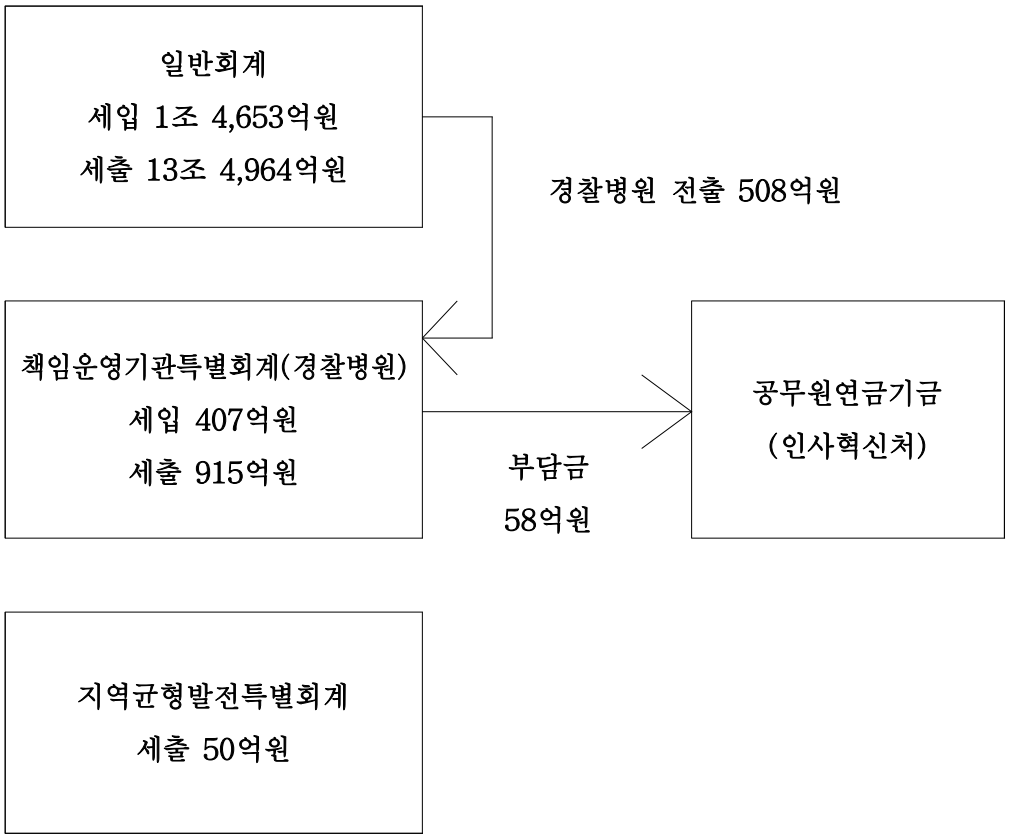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경찰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3개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508억 2,500만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57억 9,000억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경찰청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경찰청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2024년도 대비 R&D 예산이 73억 3,600만원 증액된 640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또한, 2025년 11월 경북 경주에서 21개 국가 정상 등이 참석하는 APEC 정상회의 회의가 예정됨에 따라 5일간 14만여명의 경찰관이 동원될 예정으로 동원경찰관 지원 및 상황실·기획단 운영비 등 정상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어 경비경찰 활동 사업이 171억 3,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2025년도 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 사업은 ISP 수립 없이 AI수사도우미 구축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ISP 수립 없이 시급히 사업이 추진된 만큼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경찰청은 정보화 사업 추진 시 ISP 수립 절차를 생략하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현장장비구입’ 사업은 2026년 사전훈련에 사용될 저위험권총을 구입할 목적으로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추가적인 지연 없이 표준규격과 운용기준을 수립하고 충분한 사전훈련과 시범운영을 거친 뒤 안정적으로 현장에 도입할 수 있도록 경찰청은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셋째, ‘항공 운영비’ 사업은 최근의 항공(헬기) 보험료 및 낙찰차액 추이를 고려하여 항공(헬기)보험료를 적정 금액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음.

넷째, ‘국제경찰청장회의 개최’ 사업은 4회에 걸쳐 한국에서만 개최 및 비용 부담을 하고 있는데, 2025년 제5회 회의에서 순환개최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구체적인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 사업(신규): 사업 준비 철저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 사업은 2024년 9월 개통된 차세대 KICS 내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서비스를 활용하여 사건별 필요한 수사쟁점・유사사건・적용법조문 등을 확인하고 수사서식 초안 생성을 지원하는 AI수사도우미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6억 7,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

[2025년도 형사사법업무전산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형사사법업무전산화		7,181	11,550	4,369	60.8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	-	2,677	2,677	순증

4) 일반회계-형사사법업무전산화(1232-512)(수사기획조정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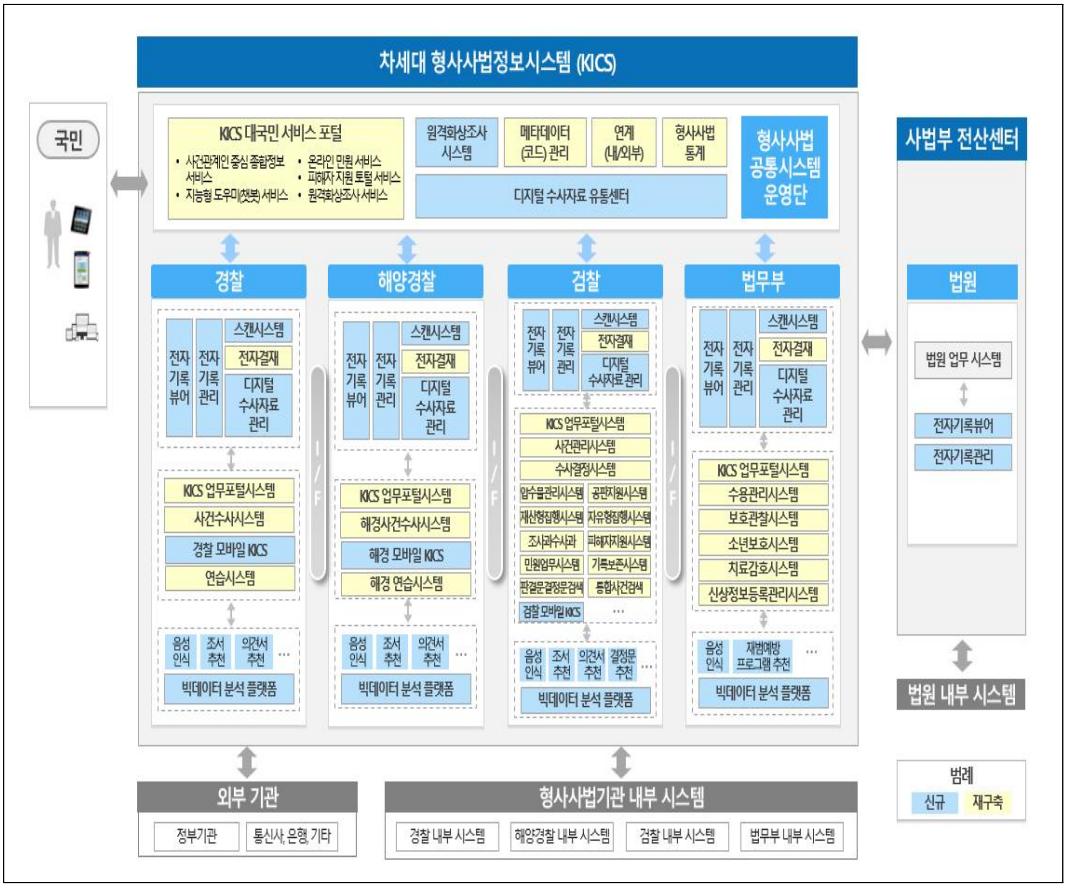
[형사사법업무전산화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 : ('24) 0 → ('25) 2,677백만원(순증) - 생성형AI라이선스 등 구매 : 0 → 1,207백만원 - 학습 인건비 : 0 → 1,271백만원 - 전용망 및 슈퍼컴 이용료 : 0 → 199백만원

자료: 경찰청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고소장·고발장·조서 등 종이문서의 전자문서화 및 수사자료의 디지털 관리 등을 통해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2021년 12월부터 구축하여 2024년 9월 개통되었음.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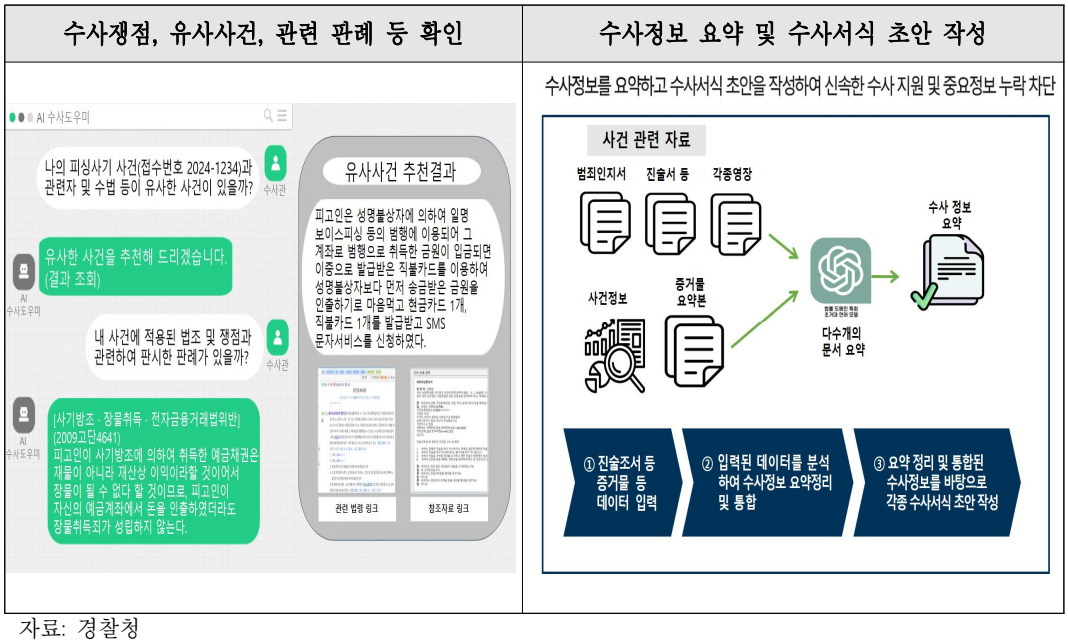
자료: 경찰청

나. 검토의견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 내역사업은 ISP 수립 없이 AI수사도우미 구축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ISP 수립 없이 시급히 사업이 추진된 만큼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경찰청은 정보화 사업 추진 시 ISP 수립 절차를 생략하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경찰청은 사건처리기간 단축 및 수사 완결성 제고를 위해 2025년도 예산안에 수사쟁점 등 확인 및 수사서식 초안 작성이 가능한 AI수사도우미 구축 예산 26억 7,700만원을 포함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기존 「차세대 KICS 구축 BPR/ISP」와 「차세대 KICS 사업계획서」상에는 AI수사도우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AI수사도우미 사업 주요 과제]



자료: 경찰청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과 「ISP·ISMP 수립 공통 가이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 구축 시 원칙적으로 ISP 또는 ISMP 수립 완료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음. 예외적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민간부분이 제안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단순기능개발, 단순물품구매 등 별도의 ISP·ISMP 수립의 실익이 낮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사업에 한해 ISP·ISMP 수립 제외가 가능함.

[ISP·ISMP 수립 제외 유형]

ISP 수립 제외 유형	내용	예시
단순시스템 도입	입력, 조회, 출력 등의 단순 기능을 적용하여 개발하는 시스템	기관 홍보용 홈페이지, 설문 시스템 등
단순기능 개발	기존 시스템에 일부 기능을 개선 또는 추가하는 사업, 내부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	관리시스템 개선 사업 등
운영·유지	기존 시스템을 운영·유지하는 사업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등
단순물품 구매	사무기기(전산장비), 소프트웨어 등 장비구매 위주의 사업	시스템 SW 구매 사업, PC 구매 사업 등
시설 구축	정보시스템이 아닌 단순시설 또는 특수장비를 도입(구매)하는 사업	회선 증설, 시스템 스토리지 디스크 등
DB 구축	시스템 구축 없이 인력 투입을 통해 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온라인)화하는 사업	연구자료 기록물 DB구축 사업, 문헌자료 디지털화 등
민간투자형 SW 사업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ISP 기본 구성항목을 갖춘 사업계획 등을 수립한 민간부문이 제안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

경찰청은 차세대 KICS 내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단순기능 개발’에 해당하여 ISP 수립 제외 유형에 부합한다고 설명함.

그러나 AI수사도우미 구축의 경우 실제 사건처리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으로 단순기능 개발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뿐만 아니라, 당초 경찰청에서 수립하였던 「2025년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상에도 AI 수사도우미에 해당하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충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기획재정부의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5)]

5)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은 부처별 정보시스템간 중복투자 방지 등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것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1항과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5월 20일까지 전년도 정보화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해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점검·분석하여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기획재정부는 제출된 의견을 참고하여 정보화 사업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음.

[경찰청 2025년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 형태	예산		
			2023	2024	2025
형사사법업무전산화	KICS 유지보수	계속	3,313	3,318	2,754
	KICS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	-	-	-
	차세대KICS모바일기기 운영	계속	-	1,415	2,226
	차세대KICSQoS장비 구매	-	-	-	-
	차세대KICS터치모니터 구매	종료('24)	-	2,448	-
	KICS 고도화	종료('23)	114	-	-
	범죄통계 관리강화	종료('22)	-	-	-

자료: 경찰청

따라서 AI수사도우미 사업의 경우 당초 「2025년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업을 ISP 수립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25년도 예산안에 시급히 편성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경찰청은 향후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이와 같이 ISP 수립 절차를 생략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현장장비구입 사업: 저위험권총 구입 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현장장비구입’** 사업은 현장 대응에 필요한 장비·장구를 보급 및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5,100만원(△2.8%) 감액된 154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음.[6)]

[2025년도 현장장비구입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장비관리유지	38,189	43,699	5,510	14.4
현장장비구입	15,858	15,407	△451	△2.8

이 사업은 위해성 장비(호신용 경봉·포승류·수갑류), 재난안전장비(화재대피마스크·안전모), 무인비행장치, 권총(저위험권총·38권총), 총기보조장비(전자충격기), 안전장비, 수색장비(탐색등) 등을 보급하는 것임. 그 중 권총의 경우, 기존 38권총 1,223정 구입 및 저위험권총 1,380정 구입을 위해 32억 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현장장비구입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현장장비 구입비 : (’24) 15,858백만원 → (’25) 15,407백만원(△452백만원)
- 위해성 장비 : (’24) 558백만원 → (’25) 1,428백만원(+871)
- 재난안전장비 : (’24) 253백만원→ (’25) 318백만원(+65)
- 무인비행장치 : (’24) 2,049백만원 → (’25) 3,223백만원(+1,174)
- **권총 : (’24) 8,648백만원 → (’25) 3,232백만원(△5,416)**
- 총기보조장비(전자충격기) : (’24) 2,755백만원 → (’25) 5,610백만원(+2,855)
- 안전장비 : (’24) 1,296백만원 → (’25) 1,296백만원(전년동)
- 수색장비(탐색등) : (’24) 88백만원 → (’25) 88백만원(전년동)
- 기타(해안장비·사무 집기류) : (’24) 212백만원 → (’25) 212백만원(전년동)

자료: 경찰청

6) 일반회계-장비관리유지(4231-314)(미래치안정책국)

나. 검토의견

현장장비구입 사업은 2026년 사전훈련에 사용될 저위험권총을 구입할 목적으로 2025년도 예산안이 편성되었는데, 추가적인 지연 없이 표준규격과 운용기준을 수립하고 충분한 사전훈련과 시범운영을 거친 뒤 안정적으로 현장에 도입할 수 있도록 경찰청은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현장장비구입 사업 중 권총 구입 관련 예산 32억 3,200만원은 저위험권총[7] 구입 예산 20억 7,000만원(150만원×1,380정)과 38권총 구입 예산 11억 6,200만원(95만원×1,223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 중 저위험권총과 관련하여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당시 '경찰청은 자체 성능검사 결과가 미흡한 항목들을 개선한 이후 저위험권총을 도입한다.' 라는 부대의견이 의결된 바 있음.

경찰청은 이를 고려하여 2024년 4월~6월 2차 운용성능검증을 실시하였으나, 2023년 1차 운용성능검증에서 개선사항이었던 5개 항목 중 3개 항목은 목표에 충족하여 개선이 완료된 반면, 2개 항목은 목표에 미충족되었음. 이에 대해 경찰청은 미충족된 2개 항목도 기준에는 미달하나 현장도입이 적정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어 성능 보완은 충분히 되었다는 입장임.

한편 이러한 2차 운용성능검증 결과와 부대의견 취지를 고려하여 경찰청은 2024년 예산을 통해 실험용 시제품 저위험 권총 170정만 구입하였고, 이후에 2025년 3차 운용성능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1,380정을 구입하여 추가적으로 성능을 보강한 뒤 2026년 사전훈련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저위험권총 도입 계획]

2024~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운용 기준 규격 수립 성능 향상 ➡	**서울·부산**	사전훈련	현장 배치		
	全 1급지		사전훈련	현장 배치	
	全 2·3급지			사전훈련	현장 배치

자료: 경찰청

7) 저위험권총은 기존 38권총 대비 소음과 반동이 적고, 10% 수준의 물리력을 보유한 총기로, 경찰청은 흉기난동 등 강력사건 발생 시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한 저위험의 대체 총기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 및 도입 추진 중에 있음.

현재 저위험권총·탄의 표준규격 R&D 과제[8]가 진행 중이어서 장비의 표준규격이 미수립된 상태이고, 적정 사거리 등을 포함한 현장 운용기준도 제작되지 않은 상태로 저위험권총을 대량으로 구입하기에 사업준비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경찰청은 저위험권총을 사업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현장에 보급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8) '경찰장비개선(R&D)' 사업으로 수행되는 '전기 기반 위해성 장비(3종) 및 저위험 권총(1종), 저위험 탄(1종) 표준규격 개발' 과제로, 저위험권총 및 저위험탄 표준규격 연구는 2024년 말까지 완료 예정임.

3. 항공 운영비 사업: 최근 보험료 집행을 고려한 조정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항공 운영비’** 사업은 본청, 13개 시·도경찰청 항공대 운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억 8,200만원(△10.0%) 감액된 115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음.[9)]

[2025년도 항공 운영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헬기운용 및 현대화		59,386	41,424	△17,962	△30.2
	항공 운영비	12,864	11,582	△1,282	△10.0

헬기운용 및 현대화 사업은 각 시·도청 항공대를 지원하는 한편 치안현장에 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내역사업인 항공 운영비 사업은 항공대 운영비, 항공대 관련 공공요금, 유지보수비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그 중 항공(헬기)보험료 지급 목적으로 2025년 예산 26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항공보험의 경우 2021년부터 4개 부처(경찰청·산림청·소방청·해양경찰청) 통합발주로 실시되고 있음.

[항공 운영비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2,710백만원
- 정비대및시도청공공요금 42백만원 = 14대×25만원×100%×12월
- 영상장비 통신료, 부가세 34백만원 = 1식×283백만원×12%
- **항공(헬기)보험료 2,633백만원 = 21대×125.4백만원**
- 정비대 화재보험료 1백만원 = 1대×97만원×100%

○ 일반수용비(210-01) : 178백만원
- 항공대 청사관리비 5백만원 = 1식×1백만원×100%×5회
- 항공기 무선국 검사수수료 3백만원 = 22대×300천원×45.5%
- 헬기 보험 수수료 13백만원 = 19대×2,100백만원×0.0326%
- 일반장비 구입 수수료 11백만원 = 11종×102백만원×1%
- 외자구매 수수료 31백만원 = 50종×31백만원×2%
- 사무용품 구입 5백만원 = 1식×400천원×100%×12월
- 항공도서구입 1백만원 = 5권×40천원×30%×15개소
- 항공외부기관 위탁교육비 20백만원 = 132명×25만원×62%
- 시도청 항공대 운영비 28백만원 = 13대×18만원×100%×12월

9) 일반회계-헬기운용 및 현대화(4232-311)(경비국)

- 항공대 사무용품구입 13백만원 = 13대×10만원×83.3%×12월
- 소모성 정비용품구입 34백만원 = 14대×1,214천원×100%×2회
- 헬기조종사 신체검사비 14백만원 = 70명×20만원×100%×1회

○ 시도청 항공요원 급식비(210-04) : 111백만원 = 105명×7,334원×86%×168일

○ 본청 항공요원 매식비(210-05) : 36백만원 = 17명×7천원×100%×305일

○ 김포공항 시설사용료(210-07) : 532백만원 = 3,823제곱미터×137천원

○ 유류비 (210-08) : 1,134백만원

- 항공 유류비(젯트유) 1,081백만원 = 1,657,000리터×700원×93.2%
- 기타 윤활유 53백만원 = 1,469퀀터×37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6,881백만원

- 김포정비대 청사유지보수 18백만원 = 1대×150만원×100%×12월
- 시도청항공대 청사유지보수 65백만원 = 13대×418천원×100%×12월
- 헬기 계약 정비비(외주정비) 4,666백만원 = 19대×246백만원
- 헬기 부품 구입비 2,132백만원 = 7종×304.6백만원

자료: 경찰청

나. 검토의견

항공 운영비 사업은 최근의 보험료 및 낙찰차액 추이를 고려하여 항공(헬기)보험료를 적정 금액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024년 경찰청의 항공(헬기)보험료 예산액은 39억 6,8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15억 7,500만원(집행률 39.7%)에 불과하였음. 2023년 역시 예산액 39억 6,800만원 중 17억 4,300만원을 집행(집행률 43.9%)하는 데 그쳐, 2025년 예산액 26억 3,300만원은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임.

[4개 부처 항공보험 관련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증감 (A-B)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B)	집행액	예산액 (A)	
경찰청	4,868	3,968	3,968	3,293	3,968	1,743	3,968	1,575	2,633	△1,335 (△33.6)
소방청	5,328	3,072	3,897	2,655	4,067	1,829	3,207	1,749	3,177	△30 (△0.9)
해양경찰청	4,644	4,321	4,344	4,343	5,944	3,616	5,885	3,034	3,480	△2,405 (△40.9)
산림청	4,712	4,140	5,400	4,451	5,400	2,253	5,400	2,471	3,000	△2,400 (△44.4)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경찰청은 2021년부터 통합발주를 실시하였는데 보험료가 낮아진 것이 최근 2년에 불과하고, 2025년 신규 헬기 2대 도입 등으로 보험료 인상 소요가 있어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항공기(헬기)를 운영 중인 부처들의 2024년 예산액 대비 2025년 예산액을 살펴보면 해양경찰청 및 산림청의 경우 각각 24억 500만원(△40.9%), 24억원(△44.4%) 감액되어 경찰청(△33.6%)보다 감액비율이 높고, 2024년 집행액 대비 각각 14.7%, 21.4% 정도만 여유를 두고 있어 경찰청의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여짐.

또한 경찰청에서 발주한 「2024년 항공보험 종합계약 과업지시서」 상 “공동계약 불허”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험사들간 경쟁에 따른 보험단가 하락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10)]

따라서 최근 통합발주에 따른 보험료 하락 추이 및 타 부처 유사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상황을 감안할 때 항공보험료를 적정 금액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10) 2024년 경찰청이 입찰공고한 항공보험 과업지시서 상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상 단일 보험사로 계약이 되더라도 인수여력이 충분하므로 항공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손해보험사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공동계약 불허”라는 내용이 참가자격으로 명시되어 있음. 참고로 항공보험 통합발주 첫 해인 2021년에만 보험사들의 공동계약이 발생하였고 2022년 이후 발생한 바 없음.

4. 차량관리 사업: 불용액 최소화 노력 필요

가. 개 요

‘차량관리’ 사업은 경찰차량에 필요한 보험료 및 제세, 유류비, 차량 수리 및 위생관리, 실내 카메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0억 8,100만원(△7.9%) 감액된 1,060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11)]

[2025년도 차량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차량관리	115,111	106,030	△9,081	△7.9

차량관리 사업은 경찰차량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 유류비, 차량유지관리비용 등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유류비는 경찰 차량 운행에 필요한 경유 및 휘발유 비용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76억 6,900만원 감액된 679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음.

[차량관리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공공요금 및 제세 : (’24) 17,177백만원 → (’25) 15,268백만원(△1,909)
- 보험료 : 14,296백만원 = 17,679대(노후 이륜차 일괄 불용으로 정수감소) × 80.9만원
- 제세 : 972백만원 = 7,843대 × 12.4만원

○ **유류비 : (’24) 75,578백만원 → (’25) 67,909백만원(△7,669)**
- **휘발유 : 37,144백만원 = 20.8백만리터 × 1,786.2원**
- **경유 : 30,765백만원 = 18.5백만리터 × 1,663.4원**

○ 차량유지관리 : (’24) 22,355백만원 → (’25) 22,852만원(+497)
- 수리비 : 19,121백만원 = 17,679대(노후 이륜차 일괄 불용으로 정수감소) × 108만원
- 위생관리 : 2,689백만원 = 수사·순찰 2,185(9,541대 × 1.9만원 × 12회) + 기동대버스 504(504대 × 25만원 × 연4회)
- 구조변경 : 804백만원 = 불용 순찰차 1,516대 × 53만원
- 수사차량 실내카메라 : 238백만원 = 비노출 수사차량 1,587대 × 15만원

자료: 경찰청

11) 일반회계-차량관리(4231-312)(미래치안정책국)

나. 검토의견

차량관리 사업의 유류비는 연례적으로 실제 집행액 대비 과다 편성되어 불용액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전용재원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찰청은 과거 집행 현황 및 최근 친환경 차량 보유현황을 고려하여 유종별 사용량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 분석하고, 집행추이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차량관리 사업의 유류비(210-08목)는 연례적으로 불용과 타 사업·비목으로의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23년은 예산액 925억 5,400만원 중 588억 3,600만원만이 집행(예산액 대비 집행률 63.6%)되고, 299억 9,500만원은 불용되어 집행률이 최근 5년 중 가장 저조하였음. 또한 미집행액 중 37억 2,300만원은 타 사업 또는 비목으로 이·전용되었음.

[최근 차량관리 사업 유류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19	80,136	80,136	-	△211	79,925	63,154	-	16,772	78.8
2020	81,776	72,119		△6,523	65,596	53,141	-	12,456	73.7
2021	68,593	68,593	-	△1,732	66,861	57,181	-	9,680	83.4
2022	77,366	77,366	-	1	77,367	67,040	-	10,326	86.7
2023	92,554	92,554	-	△3,723	88,831	58,836	-	29,995	63.6
2024.7	75,578	75,578	-	-	75,578	44,678	-	-	59.1

자료: 경찰청

유류비의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류 편성물량 대비 사용물량의 비율이 68.2%~74.3%로 매년 유류(휘발유 및 경유) 편성물량이 실제 사용물량 대비 과다하게 계상됨.

[최근 차량관리 사업 유류비 편성 대비 집행 내역]

(단위: 원, 백만리터, %)

연도	휘발유					경유					휘발유 + 경유		
	편성 단가	편성 물량	집행 단가	사용 물량	사용 비율	편성 단가	편성 물량	집행 단가	사용 물량	사용 비율	편성 물량	사용 물량	사용 비율
2019	1,633.0	33.4	1,408.9	26.9	80.5	1,421.0	25.5	1,288.0	15.1	59.2	58.9	42.0	71.3
2020	1,481.0	37.8	1,375.8	25.1	66.4	1,259.0	20.4	1,396.1	14.6	71.6	58.2	39.7	68.2
2021	1,432.0	32.0	1,590.5	23.9	74.7	1,234.0	18.5	1,391.4	13.6	73.5	50.5	37.5	74.3
2022	1,626.4	31.4	1,812.6	22.2	70.7	1,421.4	18.4	1,843.3	14.5	78.8	49.8	36.7	73.7
2023	1,943.5	30.7	1,557.3	23.3	75.9	1,776.2	18.4	1,704.3	13.2	71.7	49.1	36.5	74.3
2024.9	1,774.0	25.4	1501.5	17.7	69.7	1650.1	18.5	1,423.2	12.3	66.5	43.9	29.9	68.1
2025	1,786.2	20.8	-	-	-	1663.4	18.5	-	-	-	-	-	-

자료: 경찰청

유류비 단가의 경우 유가 변동으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편성단가와 집행단가 간 차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는 있으나, 물량의 경우 최근 사용물량 및 친환경 차량 보유 현황을 고려하면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특히, 경유의 경우 2019년~2023년까지 사용물량이 13.2~15.1백만리터에 불과하였음에도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시 18백만리터를 기준으로 한 문제가 있음.[12)]

특히 경찰청은 2021년부터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여, 2024년 8월 기준 총 1,497대를 보유하고 있어 실제 휘발유 및 경유 사용물량이 감소하는 단계에 있음.

[경찰청 친환경 차량 보유 현황 및 2025년 구매 예정 수량]

(단위: 대)

구분		2021	2022	2023	2024.8	2025년 구매(안)
총계		358	682	1,270	1,497	396
일반	전기	303	586	947	968	131
	수소	22	22	28	28	3
특수 (순찰)	전기	10	10	227	397	217
	수소	23	64	68	104	45

자료: 경찰청

따라서 경찰청은 전기차량 및 수소차량 등 친환경 차량의 증가를 반영해 향후 유종별 사용량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 분석하고, 집행추이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12) 2024년 9월말 기준 경찰청의 2025년 휘발유 예상 사용량은 21.9백만리터로 예산안 편성물량인 20.8백만리터를 초과하고, 경유 예상 사용량은 16.4백만리터로 편성물량인 18.5백만리터보다 적어 부정확한 사용량 추계가 이뤄지고 있음.

5.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조사 진술분석전문가 참여 사업: 진술분석 전문가 참여실적 제고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조사 진술분석전문가 참여’** 사업은 아동(13세 미만)・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 민간전문가에게 진술 내용의 타당성・신빙성 등 의견을 조회하고, 동 의견서를 수사・재판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2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음.[13)]

[2025년도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조사 진술분석전문가 참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 수사역량강화	24,120	19,660	△4,460	△18.5
사회적약자대상범죄 피해자 지원	2,725	2,598	△127	△4.7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조사 진술분석전문가 참여	1,299	1,299	-	-

이 사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3조를 근거로 함.[14)] 경찰청은 임상・발달・상담・범죄심리 등 관련 분야 전공자 및 경력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진술분석전문가로 선발・위촉하고, 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전문교육을 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경찰이 피해자를 조사할 때 참여하여

13) 일반회계-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 수사역량강화(1231-313)(형사국)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 · 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조사 · 심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후보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 · 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준용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본다.

피해자 행동을 관찰하고, 진술 내용을 분석하여 타당성·신빙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함.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조사 진술분석전문가 참여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조사 진술분석전문가 참여 : ('24) 1,299→ ('25요구) 1,299백만원, 전년동
- **전문가 참여수당 1,227백만원 = 1,169백만원(4,674건×25만원)**
+ 야간·휴일 수당 58백만원(1,150건×5만원)
- 진술분석 교육 30백만원 = 15회×2백만원
- 진술분석전문가 피드백 18백만원 = 180회×100천원
- 워크숍 및 학습모임지원 24백만원 = 120명×100천원 x 2회

자료: 경찰청

나. 검토의견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조사 진술분석전문가 참여 사업은 진술분석전문가 참여실적이 저조하여 전문가 참여수당 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진술분석전문가 참여실적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진술분석전문가 참여 대상을 기존 아동(13세 미만)·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피해자까지 확대하여 진술분석전문가 참여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예산을 증액하였음. 그러나 이 사업의 2022년~2024년 8월말까지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상참여실적 대비 실제참여실적이 낮아 참여수당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남.

[2022년~2024년 8월말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조사 진술분석전문가 참여 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건)

구분	예산액	집행액	예상참여실적	실제참여실적
2022	1,299	1,091	4,674	3,563
2023	1,299	1,104	4,674	3,888
2024. 8.	1,299	848	4,674	2,770

자료: 경찰청

이에 대해 경찰청은 2024년의 경우 의료파업으로 해바라기센터 운영이 어려워져서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진행된 전문가 참여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고, 근본적으로는 진술분석전문가 활동 인원이 적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설명함.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와 달리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조회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전문가참여제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실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은 「성폭력처벌법」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조문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으나, 「성폭력처벌법」 제33조는 준용하지 않고 있음.[15)]

진술분석전문가 참여실적 제고 방안에 대해 경찰청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전문가 참여 근거 규정 마련,[16)] 신규 진술분석전문가 선발, 전문가 처우 개선, 현장 수사관의 제도 적극 활용 독려 등을 추진하여 피해자 지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사회적약자대상범죄 피해자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와 다양한 유형의 범죄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진술분석전문가 참여 제도 대상 확대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제도만 확대해나갈 것이 아니라, 법령 개정·인력 확보 등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실제 진술분석전문가 연도별 활동 인원은 66명~86명 수준이고, 특히 이 사업 적용대상 확대 시기인 2022년 이후 진술분석전문가 활동 인원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음.

[연도별 진술분석전문가 활동 인원]

(단위: 명)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
활동 인원	86	70	73	**69**	**66**	**74**

자료: 경찰청

따라서 경찰청은 이 사업과 제도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범죄유형별 참여실적과 저조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분석전문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15)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준용) ① 아동학대범죄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②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본다.

16)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24년 6월 24일 발의된 상황임.

6. 국제경찰청장회의 개최 사업(신규): 순환개최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국제경찰청장회의 개최’** 사업은 각국의 경찰을 관장하는 부처의 장・차관, 경찰청장 및 국제기구 대표가 결집하여 치안현안을 분석하고 합동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회담을 개최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5억 9,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7)]

[2025년도 국제경찰청장회의 개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해외치안협력강화	5,794	7,969	2,175	37.5
초국가범죄 공동대응 네트워크 강화	2,946	5,121	2,175	73.8
국제경찰청장회의 개최	-	598	598	순증

국제경찰청장회의는 2015년에 처음으로 개최되어, 격년으로 우리나라에서 계속 개최되고 있음.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3년에 이어 제5회 국제경찰청장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 5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제경찰청장회의 개최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국제경찰청장회의 개최 : (’24) 0백만원 → (’25요구) 598백만원, 598백만원 증액
- 설치・출력물, 통역부스 설치 등 90백만원
- 차량 임차, 행사장・회담장 대관 등 216백만원
- PCO 인건비, 시스템 운영, 홍보・숙박 등 221백만원
- 항공료 지원, 식비・체류비 등 71백만원

자료: 경찰청

이 회의는 주요 치안협력국 치안총수급을 참가대상으로 하여 2015년 17개, 2019년 27개, 2021년 23개, 2023년 35개의 기관이 참가하였음. 행사 의제는 주로 글로벌 치안현안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치안 관련 연대・협력을 내용으로 함.

17) 일반회계-해외치안협력강화(3133-311)(국제협력관)

[국제경찰정창회의 회차별 참석국 현황]

(단위: 개, 명, 백만원)

구 분	제1회 (2015)	제2회 (2019)	제3회 (2021)	제4회 (2023)
참석기관	17	27	23	35
참석인원	70	103	95	140
집행액	340	300	375	560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국제경찰청장회의 개최 사업은 4회에 걸쳐 한국에서만 개최 및 비용 부담을 하고 있는데, 2025년 제5회 회의에서 순환개최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구체적인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음.

국제경찰청장회의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4차례 개최되었으나, 전부 한국에서만 개최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2025년도 예산안 역시 회의개최비용을 전액 부담할 계획이고, 참가기관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2023년 5억 6,000만원에서 5억 9,800만원으로 3,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경찰청은 이 회의가 국제공조·재외국민 보호 등 다른 나라와의 협력이 필요한 치안현안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국내 치안 강화 및 편익 증진에 효과적이며 한국 경찰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도 도움이 되므로 점진적으로 확대·발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이 회의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차례 개최되었으나 모두 한국에서 개최 및 초청하고 관련 비용도 전액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 회의가 국제 치안 현안에 대한 협력 논의의 장으로 확대·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초청만으로 운영되기보다는 다자간 국제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원국 간 순환개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시 부대의견에 순환개최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20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시정요구사항이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

[국제경찰청장회의 개최 사업 관련 국회 심사 내용]

구분	내용
2021년도 예산안 부대의견	(29) 경찰청은 국제경찰청장회의의 2021년도 개최방식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향후 추진시 일방적 초청 회의방식이 아닌 순환개최방식으로 변경한다.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우리나라에서만 개최하고 있는 국제경찰청장회의가 회원국들 사이의 현안을 의제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협력이 이루어지는 다자간 국제협의체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원국 간 순환개최되는 회의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 (제도개선)

주)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경우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 결과기준이고, 2024년 10월 기준 예결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의결 전임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경찰청은 2023년 제4회 회의에서 참가기관과 '과학치안·미래인재 양성·국제연대 협력'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설정하여 주최자 성명으로 발표하여 참가국 간 국제 협의체 구성의 첫 단계를 이행하였고, 2025년 제5회 회의 개최 시 주요 참가기관들과 협의체 구성 의사를 확인하여 단계적으로 순환개최 방식을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함.

순환개최 방식으로의 변경이 단기간에 가능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협의해나갈 문제인 것은 사실이나,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시부터 제기되었던 문제라는 점과, 순환개최 방식으로 변경 시 개최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점, 회의 개최 주기가 격년에서 매년으로 단축될 수 있어 국제 치안문제 협력에도 더 효과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협의해나갈 필요가 있음.

특히, 초청국가 범위와 관련하여, 현재 이 회의는 경찰청 주재관 파견국·기존 MOU 체결국·고위급 교류 국가 등 기존에 교류가 활발한 국가 위주로 초청하고 있는데, 순환개최 방식으로 전환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초청국가를 선정하고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18]

18) 이에 대해 경찰청은 주요 치안지표(재외동포 수, 고위급 회담 여부, 주재관 파견 수, 도피사범 송환 등)를 고려하여 초청국가를 선정하고 있어 객관적이라는 입장이나, 이 역시 외부 변수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2023년 제4차 국제경찰청장회의 사업계획서 상 초청 후보국가(안)]

구분			초청 후보국가
1그룹 (51)	기존 참석	MOU 체결+ 주재관 파견+ 고위급 교류(18)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튀르키예**, **일본**, **중국**, **몽골**, **태국**,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UAE**, **뉴질랜드**, **과테말라**
		MOU 체결(14)	요르단, 카타르, 파푸아뉴기니, **온두라스**, 콜롬비아, **칠레**, **오만**,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피지**, **앙골라**, 르완다, 우간다
		주재관 파견(6)	영국, 독일, **라오스**, 나이지리아, 남아공, 이집트
		고위급 교류(4)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네덜란드**, 체코
	MOU 체결+ 주재관 파견(3)		**호주**, 인도, 아르헨티나
	국제기구・협의체(6)		유엔, **인터폴**, 아세아나폴, **유로폴**, IACP, **UNDP**
2그룹 (32)	MOU 체결 추진(10)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멕시코,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세네갈, 사우디, 이란, 바레인, 이라크
	주재관 파견(5)		파라과이, 브라질, 스페인, **프랑스**, 케냐
	ODA 사업(6)		튀니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민주콩고**, 짐바브웨
	기타 협력 (한인경찰・초청연수・ KPEX 등)(12)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보츠나와, 브루나이, 파키스탄, 폴란드, 모로코, 알제리, 볼리비아, **에콰도르**
3그룹 (21)	국제박람회기구(BIE) 전략지원국(21)		동티모르, 나우루, 도미니카(공), 마셜제도, 솔로몬제도, 토고, 코트디부아르, 투발루, 키리바시, 수리남, 탄자니아, 가나, 사모아, 모잠비크,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통가, 레소토, 감비아, 잠비아, 마다가스카르

주) 볼드처리된 국가들은 실제 2023년 제4회 회의 참가국임
자료: 경찰청

따라서 경찰청은 국제경찰청장회의가 조속히 순환개최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2025년 제5회 회의 개최 시 협의체 구성 등 구체적인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음.

7. 기타 청사시설 관리 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 집행 주의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기타 청사시설 관리’** 사업은 기계설비점검 및 청사시설 관리 업무 체계화 및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용역 등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 1,200만원(23.3%) 증액된 27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음.[19)]

[2025년도 기타 청사시설 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청사시설관리	97,580	81,079	△16,501	△16.9
기타 청사시설 관리	2,200	2,712	512	23.3

이 사업은 ‘경찰청 국유재산 및 건축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안 4억 5,000만원, 직무교육·포럼 용역 예산안 3,400만원, 건축자문위 운영 예산안 2,800만원이 포함되어 전년 대비 5억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기타 청사시설 관리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기타 청사시설 관리 : (’24) 2,200백만원 → (’25 案) 2,712백만원(+512)
- 기계설비성능점검 : 2,019백만원(59개소×34백만원)
- 시설업무 체계화 및 역량강화 : 건축부지 등 타당성 검토 18백만원 + 건축프로그램 23백만원 + **정보시스템 450백만원(연구개발 215, 스토리지 등 200, 유지보수 35)** + 직무교육·포럼 34백만원 + 건축자문위 등 28백만원
- 경찰청사 표준화 등 연구용역 : 일반연구비 140백만원

자료: 경찰청

19) 일반회계-청사시설관리(7131-312(기획조정관)

나. 검토의견

기타 청사시설 관리 사업은 당초 2024년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경찰청 국유재산 및 건축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을 ISP 수립 협의 등 사전절차 없이 추진하였는데, 동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2025년도 예산안 집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경찰청은 2024년 예산 집행 과정에서 당초 2024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경찰청 국유재산 및 건축사업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억 5,00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에서 일반연구비(260-01목)으로 자체전용하였음.

경찰청은 동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2024년 12월까지 기존 엑셀자료 전산화를 완료하고, 2025년에는 설계도면과 계약서 등 다른 자료들의 전산화를 위해 스토리지를 확충하는 등 추가적인 구축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청사시설관리 사업 2024년 전용내역]

(단위: 백만원)

일자	구분	이용·전용 감액			이용·전용 증액			사유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세목 (코드번호)	금액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세목 (코드번호)	금액	
2024-05-02	자체전용	청사시설관리 [7131-312]	시설장비유지비 [210-09]	△250	청사시설관리 [7131-312]	일반연구비 [260-01]	250	경찰청 국유재산 및 건축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자료: 경찰청

이러한 집행 행위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고, 예산을 국회에서 확정된 취지와 다르게 집행하여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저해하는 행위임. 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사업의 경우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과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 상 정보시스템 구축 시 원칙적으로 ISP 또는 ISMP 수립 완료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별도 ISP 수립 없이 자체전용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한 것임.

예외적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민간부분이 제안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단순기능개발, 단순물품구매 등 별도의 ISP·ISMP 수립의 실익이 낮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사업에 한해 ISP·ISMP 수립 제외가 가능함.

경찰청은 이 사업의 경우 기존 엑셀로 관리하던 자료를 데이터 전산화하여 국유재산·건축사업 등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출력하고 변경사항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적용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단순시스템 도입’에 해당하여 ISP 수립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는 입장임.

[ISP·ISMP 수립 제외 유형]

ISP 수립 제외 유형	내용	예시
단순시스템 도입	입력, 조회, 출력 등의 단순 기능을 적용하여 개발하는 시스템	기관 홍보용 홈페이지, 설문 시스템 등
단순기능 개발	기존 시스템에 일부 기능을 개선 또는 추가하는 사업, 내부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	관리시스템 개선 사업 등
운영・유지	기존 시스템을 운영・유지하는 사업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등
단순물품 구매	사무기기(전산장비), 소프트웨어 등 장비구매 위주의 사업	시스템 SW 구매 사업, PC 구매 사업 등
시설 구축	정보시스템이 아닌 단순시설 또는 특수장비를 도입(구매)하는 사업	회선 증설, 시스템 스토리지 디스크 등
DB 구축	시스템 구축 없이 인력 투입을 통해 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온라인)화하는 사업	연구자료 기록물 DB구축 사업, 문헌자료 디지털화 등
민간투자형 SW 사업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ISP 기본 구성항목을 갖춘 사업계획 등을 수립한 민간부문이 제안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

그러나 이 사업은 국유재산이나 건축사업 담당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여 엑셀 등 기존 자료를 전산화하는 것으로서 단순시스템 도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경찰청은 2024년 별도 ISP 없이 자체전용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대한 2차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스토리지 확충 등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나, 향후 동 시스템에 추가될 기능이나 소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부재하여 사업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짐.[20]

이처럼 경찰청 국유재산 및 건축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의 경우 ISP를 통해 시스템의 목표모델 설계 등 구축계획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것이므로, 향후 경찰청은 동 시스템 구축의 사전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와 같은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20) 이에 대해 경찰청은 시스템 사용을 해보고 필요 시 추가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소방청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소방청 소관 총수입은 46억원으로, 전년 대비 2억원(4.9%) 증가함.[1)]

[2025년도 소방청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44	46	2	4.9
총수입	44	46	2	4.9

2025년도 소방청 소관 총지출은 3,311억원으로 전년 대비 93억원(△2.7%) 감소함.

문의 : 오민석 예산결산조사관 ohmin3259@assembly.go.kr (02-6788-5701)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소방청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3,404	3,311	△93	△2.7
총지출	3,404	3,311	△93	△2.7

나. 예산안

2025년도 소방청 소관 예산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46억원으로 전년 대비 2억원(4.9%) 증가함.

[2025년도 소방청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44	46	2	4.9
합 계	44	46	2	4.9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소방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3,311억원으로 전년 대비 93억원(△2.7%) 감소함.

[2025년도 소방청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3,404	3,311	△93	△2.7
합 계	3,404	3,311	△93	△2.7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소방청 2025년도 예산안에는 총 9개(89억 5,5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그 중 ‘리튬기반 배터리 제조소 및 저장·취급 시설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R&D)’ 사업은 고위험 화재위험성을 갖는 리튬이온배터리와 리튬금속을 사용하는 제조·저장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예방 및 대응 기술개발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6억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소방현장 인명피해 예방 및 저감 기술개발(R&D)’ 사업은 반복되는 화재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 예측·예방 및 구조역량 강화 기술개발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7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소방청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	국가재난대응시설구축운영	400
2	국립소방연구원수입대체경비	1,185
3	소방현장 인명피해 예방 및 저감 기술개발(R&D)	1,700
4	소방안전 현장활용 기술개발(R&D)	900
5	다층신소재 기반 현장 맞춤형 개인보호 기술 개발(R&D)	390
6	디지털 혁신기반 화재원인 분석기술 개발(R&D)	500
7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 소화성능 향상 기술개발(R&D)	750
8	리튬기반 배터리 제조소 및 저장 · 취급 시설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R&D)	2,600
9	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 공동전문기관 기획평가관리비(R&D)	530
총지출		8,955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소방청의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우수 소방장비 확산 기반 조성,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 ‘위험물 안전관리 및 제도개선’,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중앙소방학교운영’, ‘119구조견양성및운영’,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시설장비지원’, ‘정책연구개발’,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소방현장 활동지원 기술개발(R&D)’, ‘소방현장 탐색·진압 활동지원 센서 및 로봇 기술개발(R&D)’, ‘전기기반 모빌리티 관련 시설 및 부품 화재대응 기술개발(R&D)’, ‘소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비기술 개발(R&D)’ 사업 등 총 13개임.[3)]

[2025년도 소방청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우수 소방장비 확산 기반 조성	716	5,007	4,291	599.3%
2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	3,833	13,141	9,308	242.8%
3	위험물 안전관리 및 제도개선	343	580	237	69.1%
4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1,134	8,160	7,026	619.6%
5	중앙소방학교운영	3,738	5,296	1,558	41.7%
6	119구조견양성및운영	709	955	246	34.7%
7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시설장비 지원	9,013	18,489	9,476	105.1%
8	정책연구개발	148	400	252	170.3%
9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341	696	355	104.1%
10	소방현장 활동지원 기술개발(R&D)	3,185	5,055	1,870	58.7%
11	소방현장 탐색·진압 활동지원 센서 및 로봇 기술개발(R&D)	1,268	2,000	732	57.7%
12	전기기반 모빌리티 관련 시설 및 부품 화재대응 기술개발(R&D)	3,942	7,806	3,864	98.0%
13	소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비기술 개발(R&D)	2,000	3,000	1,000	50.0%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소방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 단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소방청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전기차·배터리 화재 등 신유형 고강도 재난에 대한 대비·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 도입,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 국가항만 소방정대 설치, 소방헬기정비실 건립, 소방현장 인명피해 예방·저감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R&D) 예산을 확대한 것을 들 수 있음.

2025년도 소방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사업의 경우 2박 3일에서 3박 4일로 제공되는 사업구조 상 교대근무를 하는 구조·구급·화재조사 인원의 참여가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프로그램 기간 조정 등 사업구조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둘째,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의 경우 병원 개원에 필요한 인적, 물적 요소에 관한 채용과 발주 등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방병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셋째, '전기차 화재대응 진압장비 지원(신규)' 사업의 경우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해 무인파괴방수차 도입을 예정하고 있으나, 전기차 화재 진압 상황에서 무인파괴방수차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넷째. '119빅데이터 분석운영' 사업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종료된 이후 신규 데이터 등록 건수 및 데이터 거래 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 구조·구급·상황실 근무자 지원을 위한 사업구조 개선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사업은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문제 발생 위험을 예방·관리하고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6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5년도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4.163	4,677	514	11.0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690	690	-	-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예산안 세부내역]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 6억 5,000만원
 가.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 2,600명(지원인원) × 50만원 × 50%(국고보조)
○ 일반용역비(210-14) : 4,000만원
 가.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 80명(지원인원) × 50만원

자료: 소방청

4) 일반회계-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1131-301)(기획조정관)

이 사업은 2,600명에 대해 국비 50%, 지방비 50%의 비율로 지원되며, 재난현장 스트레스 해소 및 신체리듬 회복을 위한 2~5일간 전문치유(힐링)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있음.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사업 집행 절차]

표준지침 수립 국고보조금 교부	⇨	운영계획 수립 대상자 선발	⇨	프로그램 운영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심신수련 전문기관

나. 검토의견

2023년 보직별 스트레스 회복력강화 프로그램 참가자 현황을 보면, 행정직에 편중되어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구조·구급·상황실 등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참여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구조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업 대상자 선정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마음건강 고위험군' 및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 을 우선 선발하도록 되어있음.

'마음건강 고위험군' 은 마음건강 설문조사 및 상담에 의한 관리·치료 필요군과 대형재난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한 대원 중 '긴급심리지원' 에 의해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인원이며,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긴급심리지원 대상자)' 은 사람 및 자살사고 현장 출동, 다수 사상자 발생 등 대규모 현장 출동 인원임.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사업 긴급심리지원 대상자]

▸ 사망 및 자살사고 현장 출동	▸ 구급대원(소방공무원) 폭언·폭행 발생
▸ 영·유아 사망사고 현장 출동	▸ 동료의 순직 및 자살사고 발생
▸ 다수 사상자 발생 등 대규모 현장 출동	▸ 현장활동 시 부상 및 상해 발생

자료: 소방청

2023년 참여실적을 보면, 전체 2,605명의 참가자 중 화재 보직 참여인원이 901명으로 35%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행정 보직 참여인원이 796명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하였음.

반면, 구조, 구급, 상황실, 화재조사 보직 참여자는 각각 255명(10%), 447명(17%), 94명(4%), 59명(2%)로 우선 순위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에도 이 사업의 참여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음.

[2023년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사업 참여현황]

항 목	항목별 인원 현황						
성 별	남성				여성		
	2,254명(87%)				351명(13%)		
연 령	20대		30대		40대		50대
	336명(13%)		910명(35%)		715명(27%)		647명(25%)
보 직	화재	구조	구급	상황실	화재조사	행정	기타
	901명(35%)	255명(10%)	447명(17%)	94명(4%)	59명(2%)	796명(31%)	53명(2%)

자료: 소방청

시・도별로 살펴보면 행정직 참여자가 최대 48%를 차지하는 지역이 있었고, 대부분의 시・도에서 참여자의 25% 이상이 행정직이었음.

[2023년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사업 시·도별 보직별 참여현황]

지역	보직별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참가자						
	화재	구조	구급	상황실	화재조사	행정	기타
서울	99명(45%)	11명(5%)	33명(15%)	6명(2.7%)	1명(0.5%)	70명(31.8%)	-
부산	54명(42%)	14명(11%)	16명(12.5%)	2명(1.5%)	-	31명(24%)	11명(9%)
대구	58명(44%)	9명(7%)	16명(12%)	5명(4%)	7명(5%)	35명(27%)	2명(1%)
인천	33명(27%)	15명(12%)	10명(8%)	4명(3%)	1명(1%)	58명(48%)	1명(1%)
광주	31명(41.9%)	6명(8.1%)	1명(1.4%)	5명(6.7%)	-	31명(41.9%)	-
대전	26명(38%)	8명(12%)	4명(6%)	3명(4%)	3명(4%)	22명(32%)	3명(4%)
울산	12명(25.5%)	6명(12.8%)	11명(23.4%)	1명(2.1%)	3명(6.4%)	14명(29.8%)	-
세종	22명(35%)	7명(11%)	12명(19%)	5명(9%)	2명(3%)	14명(23%)	명(%)
경기	94명(31.1%)	14명(4.6%)	77명(25.5%)	5명(1.7%)	6명(2%)	101명(33.4%)	5명(1.7%)
강원	55명(38.2%)	12명(8.3%)	49명(34%)	5명(3.5%)	1명(0.7%)	22명(15.3%)	-
충북	63명(42.6%)	12명(8.1%)	30명(20.3%)	7명(4.7%)	-	36명(24.3%)	-
충남	57명(41.4%)	15명(10.7%)	47명(33.6%)	7명(5%)	1명(0.7%)	9명(6.4%)	3명(2.2%)
전북	43명(26.71%)	24명(14.91%)	35명(21.74%)	3명(1.86%)	3명(1.86%)	50명(31.06%)	3명(1.86%)
전남	59명(32%)	19명(10%)	25명(13%)	4명(2%)	2명(1%)	78명(42%)	-
경북	98명(39%)	16명(6%)	40명(16%)	2명(1%)	10명(4%)	72명(29%)	11명(4%)
경남	62명(35.4%)	15명(8.6%)	21명(12%)	20명(11.4%)	2명(1.1%)	48명(27.5%)	7명(4%)
제주	9명(25%)	2명(5%)	11명(31%)	2명(5%)	1명(3%)	10명(28%)	1명(3%)
창원	22명(35%)	3명(4%)	7명(11%)	3명(5%)	1명(2%)	27명(43%)	-

자료: 소방청

2023년 12월 31일 정원 기준으로 시·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총인원이 66,509명이며, 이 중 행정인력이 11,375명으로 전체 인원의 17.2%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행정직 참여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

이와 관련하여 소방청은 행정직 참여자의 비중이 높고, 구조·구급·상황실 보직에 근무하는 참여자의 비중이 낮은 사유에 대해 2박 3일이나 3박 4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일정상 교대근무를 하는 보직에 근무 중인 구조·구급·상황실 인원의 참여가 어려우며 상대적으로 참여가 용이한 행정직 인원의 참여가 높다고 설명하고 있음.

보직과 무관하게 스트레스 회복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관련 지침 등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인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조·구급·상황실 근무자들이 이 사업을 통해 적절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추후 2박 3일이나 3박 4일로 규정된 대면 프로그램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보직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5)]

5) 2024년 보조사업연장평가에서도 사업방식 변경을 제언하며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의 경우 단가와 프로그램 기간을 규정하지 말고 총액 예산 범위에서 다양한 금액, 기간,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시도해보고 성과평가를 통해 추후 효율적으로 개편해 나감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음.

2. 국립소방병원 건립 : 개원 후 차질없는 의료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가. 개 요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은 소방공무원의 주요 상병에 대한 진료 및 연구수행 전담기관을 충청북도 음성군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88억 8,000만원(△12.5%) 감액된 624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음.[6)]

[2025년도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국립소방병원 건립	71,298	62,418	△8,880	△12.5%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① 소방병원 건립 : (’24) 521억 3,000만원 → (’25예산안) 406억 8,500만원(△114억 4,500만원)
② 개원준비단 운영 : (’24) 21억 2,600만원 → (’25예산안) 28억 4,100만원(7억 1,500만원)
③ 국립소방병원 운영비 : (’24) 0백만원 → (’25예산안) 9억 5,700만원(9억 5,700만원)
④ 전산시스템 : (’24) 150억 3,500만원 → (’25예산안) 74억 6,800만원(△75억 6,700만원)
⑤ 의료장비 : (’24) 20억 700만원 → (’25예산안) 40억 6,200만원(+20억 5,500만원)
⑥ 의료용물품 : (’24) 0백만원 → (’25예산안) 12억 3,800만원(+12억 3,800만원)
⑦ 일반비품 : (’24) 0백만원 → (’25예산안) 50억 1,400만원(+50억 1,400만원)
⑧ 정주여건 확보 : (’24) 0백만원 → (’25예산안) 1억 5,300만원(+1억 5,300만원)

자료: 소방청

나. 검토의견

소방청은 당초 운영계획에 따라 병원 개원에 필요한 인적, 물적 요소에 관한 채용과 발주 등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방병원 개원 후 차질없는 진료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6) 일반회계-국립소방병원 건립(1131-305)(기획조정관)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충북 음성 인근) 주민을 위한 일반진료 및 공공의료(지역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함.

소방병원 건립사업은 소방관들의 진료 수요를 위해 화상/외상 센터·정신의학센터·건강검진센터·근골격 재활센터 등을 운영하여 소방공무원에 특화된 주요 상병에 대한 치료와 치유 및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일반진료 및 공공진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임.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울대병원 위탁을 통해 개원준비단을 운영 중이며, 개원준비단은 병원 인력배치 계획, 병원 운영 프로세스 설계 및 의료장비와 병원비품의 구매 및 검토 등을 수행함.

관련 계획에 따르면, 개원준비단은 2024년도 12월까지는 의료장비 도입계획서, 의료기관 인증 관계 규정 등 최종결과물을 산출하여 의료장비 발주 준비를 마칠 예정이며, 2025년도에는 1~2월 중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및 하반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거친 후 2026년 초 시범진료 및 2026년 3월부터 정상운영을 예정하고 있음.

[국립소방병원 개원 계획]

개원준비단 운영	⇨	의료기관 개설허가	⇨	시범진료	⇨	정상운영
2025. 1. ~ 8.		2025. 9. ~ 12.		2026. 1. ~ 2.		2026. 3. ~

자료: 소방청

이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함께 의료장비 및 의료용 물품 예산이 편성되었음.

[국립소방병원 운영비 및 의료장비·의료용물품 예산]

○ 인건비 : 4억 4,600만원

- 의사직(임상) : 1,650만원 × 6명 × 1월 = 9,900만원
- 의사직(진료) : 1,160백만원 × 2명 × 1월 = 2,300만원
- 약무직 : 546만원 × 1명 × 1월 = 500만원
- 간호직 : 453만원 × 40명 × 1월 = 1억 8,100만원
- 보건직 : 454만원 × 2명 × 1월 = 900만원
- 사무직 : 451만원 × 15명 × 1월 = 6,800만원
- 기술직 : 509만원 × 8명 × 1월 = 4,100만원
- 기능직 : 330만원 × 6명 × 1월 = 2,000만원

○ 의료장비 도입 : 40억 6,200만원 × 1식 = 40억 6,200만원

○ 의료용물품 도입 : 12억 3,800만원 × 1식 = 12억 3,800만원

주) 백만원 이하 단위는 단수조정되어 합계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소방청

[2025년 도입 예정 국립소방병원 의료장비·의료용물품]

(단위 : 개, 천원)

구분	부서	장비명	개수	단가	금액
의료장비	영상의학과(MRI실)	MRI	1	2,500,000	2,500,000
	영상의학과(CT실)	CT	1	1,207,000	1,207,000
	중앙공급실	자동기구세척기	2	140,000	280,000
	영상의학과(초음파실)	초음파장비(이동형)	1	75,000	75,000
	합계				4,062,000
의료용물품	진료부	후두경	20	1,485	29,700
	진료부	검안(이)경	11	800	8,800
	진료부	진찰대	3	5,333	16,000
	진료부	진찰의자	100	75	7,500
	진료부	환자운반카	30	2,200	66,000
	진료지원부	자동정제분류시스템	1	330,000	330,000
	진료지원부	검사의학과 테이블	1	398,000	398,000
	진료지원부	기송관시스템	1	382,000	382,000
	합계				1,238,000

자료: 소방청

소방병원이 예정대로 개원하기 위해서는 인력 공백이나 인프라의 부족이 없도록 적절한 인력충원과 물적 요소의 조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7)]

따라서 소방청과 개원준비단은 당초 계획에 따라 병원 개원에 필요한 인적, 물적요소에 관한 채용과 발주 등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할 필요가 있음.

7) 소방청은 2023년 당초 계획과 달리 의시직 부단장을 채용하지 못하였음.

3. 전기차 화재대응 진압장비 지원 사업(신규): 무인파괴방수차 도입의 활용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전기차 화재대응 진압장비 지원’** 사업은 전기차 화재에 대해 효과적으로 진압이 가능한 장비를 중앙119구조본부(소속기관) 및 일선 소방관서에 배치하여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42억 9,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8)]

[2025년도 전기차 화재대응 진압장비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우수 소방장비 확산 기반 조성	395	5,007	4,253	1,076.7
전기차 화재대응 진압장비 지원	-	4,291	4,291	순증

[전기차 화재대응 진압장비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중앙) 질식소화덮개 : 550만원 × 5개 × 4개 특수구조대 = 1억 1,000만원
550만원 × 3개 × 7개 화학센터 = 1억 1,600만원
화재진압용 이동식 수조 : 800만원 × 11개(4개 특수구조대 + 7개 화학센터) = 8,800만원
방사장치 : 700만원 × 11개(4개 특수구조대 + 7개 화학센터) = 7,700만원

○ **(시도) 무인파괴방수차 6대 × 13억원 × 50%(국고보조) = 39억원**

자료: 소방청

2020년 13만 4,000대 수준의 등록 전기차량 규모는 2023년 54만 4,000대로 연평균 약 59.5% 증가하였으며, 이와 함께 전기차 화재발생 건수 또한 2020년 11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연평균 87.1% 증가하였음.

8) 일반회계-우수 소방장비 확산 기반 조성(1132-300)(장비기술국)

[2020~2023년 전기차 화재 발생 현황]

(단위: 천대, 건,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증가율
전기차 등록대수	134	231(72.4%↑)	389(68.4%↑)	544(39.8%↑)	59.5
화재발생건수	11	24(118.2%↑)	43(79.2%↑)	72(67.4%↑)	87.1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년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소방청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기차 화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진압용 화재 장비(질식소화덮개, 화재진압용 이동식 수조, 무인파괴방수차, 방사장치)를 도입하여 화재진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질식소화덮개는 연소확대 방지와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진압 시 차량 전체를 덮는 덮개이며, 화재진압용 이동식 수조는 전기차 배터리의 발화 종식을 위해 배터리를 침수시키는 장비임.

방사장치는 전기차 배터리팩을 직접 타격하고 배터리팩 내부로 물을 주입하여 재발화를 방지하는 장치이며, 무인파괴방수차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격조정 파괴기를 사용하여 외벽이나 천장을 파괴하고 노즐을 내부에 진입시켜 다량의 물이나 소화약제를 살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차량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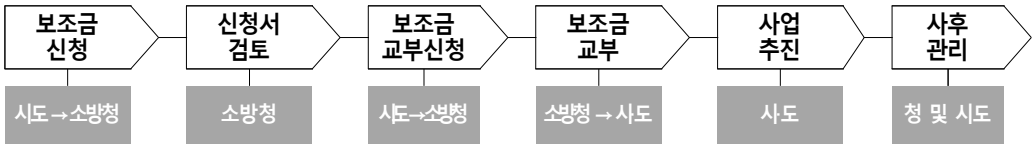
[2025년도 전기차 화재대응 진압장비 지원 사업 구입 예정 장비]

질식소화덮개	화재진압용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무인파괴방수차
			

자료: 국립소방연구원

이 중 무인파괴방수차는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 방식을 통해 시·도 일선 소방센터에 도입을 계획하고 있음.

[무인파괴방수차 도입 각 사업집행절차 및 각 사업단계별 예상 기간]



① 보조금 확정통보 : 2024.12.30.
② 보조금 교부신청 : 2024.12.31.~2025.1.6.(7일)
③ 보조금 교부검토 및 결정 : 2025.1.7.~2025.1.10.(4일)
④ 보조금 교부 : 2025.1.11.~2025.1.15.(5일)
⑤ 사업추진 : 2025.1.16.~2025.12.31.(350일 = 330일 + 예비 20일)
- 계약절차 약 90일(조달계약 요청 이후) + 계약 후 약 240일(국산 차대 + 특장 시)

자료: 소방청

나. 검토의견

전기차 화재 진압 시 무인파괴방수차의 실효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무인파괴방수차를 활용한 화재진압 방식이 전기차 화재진압 매뉴얼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무인파괴방수차의 도입 후 활용계획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함.

전기차의 배터리에서 화재원인(배터리 결함,과충전,외부충격)이 발생하면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고 가연성 기체인 오프가스[9]가 방출됨.

오프가스의 발생으로 인해 전기차 배터리팩 내부에서 발생된 화재의 경우 화염 방향이 수평이 되는 지향형 화염이 발생하는데, 내연기관 자동차 화재가 바람의 영향이 없는 경우 주로 위로 향하는 것과 차이를 보임.

[내연기관 및 전기차 화재 화염방향 비교]



내연기관 자동차의 화염 방향	전기자동차의 화염 방향

자료: 국립소방연구원

9)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증기와 기체를 의미함. 배터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서 배터리 내부의 전해질이 끓어오르게 되는데, 이때 내부 압력이 증가하면서 오프가스가 방출됨.

전기차의 배터리 특성 및 충전상태와 구조 등에 따라 화재가 전이되는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프가스 유출 후 열폭주[10]가 발생되고 빠른 속도로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할 때 주변으로의 화재전이 속도가 빠른 경향이 있음.

이러한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근본적으로 진압하는 방법은 주변 배터리로 전달되는 열을 차단하여 열폭주 확산을 막는 것으로, 배터리가 열폭주 반응 온도 이하로 냉각되는 경우 열폭주가 전이되지 않으므로 냉각을 통해 열폭주가 발생한 배터리의 반응이 종료되면 화재가 진압될 수 있음. 그런데 전기차는 배터리가 차체의 하부(내부)에 주로 매립되어 있어 차체 외부 주수에 의한 냉각 효과가 미미함.[11]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적절한 전기차량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① 빠른 속도의 화재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초기대응, ② 상방향 주수를 통해 하부에 위치한 배터리의 냉각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국립소방연구원의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가이드」에서도 ① 지상에서 충전중 발생된 전기차 화재 대응, ② 지하에서 충전중 발생된 전기차 화재 대응, ③ 전기버스 화재 대응으로 나누어 대응 가이드를 제공하고, 배터리가 상부에 위치한 전기버스를 제외하고는 상방향 주수를 통한 배터리 냉각이 대응 절차에 포함되어 있음.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방법]

사례	대응 방식
지상 전기차 화재대응	1. 전기차 화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된 전기차 위치 식별 및 정보 전파 2. 구조상황에는 절연장갑, 절연화를 착용하고, 화재진압 시에는 상대적으로 감전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절연성능이 확보된 방화신발 및 방화장갑을 착용 3. 전기차 화재현장에서 미연소된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폭발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 주변을 분무 소화하여 폭발 위험 제거 **4. 전기차 배터리팩을 훼손하지 않고 내부를 냉각시키기 위해서는 열전도도가 높은 배터리팩 바닥 부위에 집중 소화하여 전체를 냉각시켜 열폭주 전이를 지연 또는 소화 시킴** 5. 전기차 하부 배터리팩을 주수하는 동시에 자동차 실내에 물을 주수하게 되면 소화수조에 차량이 침수된 상태와 유사한 냉각효과가 발생됨 6. 전기차에서 추가적인 화염분출 및 오프가스가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 7. 전기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견인차로 이동시 소방펌프차가 동행하여 재발화에 대응해야하며, 부득이하게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 소화수조 등을 활용하여 재발화를 방지하여야 함

10) 열폭주(thermal runaway)란 온도상승이 역학적 과정에 의해 에너지 방출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온도상승을 더욱 가속시키는 양성 피드백현상으로, 리튬이온배터리에서 열폭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처음에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에서 주변 배터리의 온도를 급상승 시킴

11) 스프링클러설비 등과 같이 외부에서 물을 뿌리는 방식의 일반적인 소화시스템으로는 진압이 어려우며, 차체 하부에 위치한 배터리를 냉각시키기 위해 방사장치를 사용해 상방향으로 물을 분사하는 것임

지하 전기차 화재대응	1. 전기차 화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된 전기차 위치 식별 및 정보 전파 2. 구조상황에는 절연장갑, 절연화를 착용하고, 화재진압 시에는 상대적으로 감전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절연성능이 확보된 방화신발 및 방화장갑을 착용 3. 전기차 화재현장에서 미연소된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폭발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 주변을 분무 소화하여 폭발 위험 제거 **4. 전기차 배터리팩을 훼손하지 않고 내부를 냉각시키기 위해서는 열전도도가 높은 배터리팩 바닥 부위에 집중 소화하여 전체를 냉각시켜 열폭주 전이를 지연 또는 소화 시킴** 5. 지하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된 경우, 많은 양의 연기로 인해 소방대원 시야확보가 어려우므로 질식소화덮개를 사용하여 연기발생을 억제하고 소방대원 시야를 확보 5. 전기차에서 추가적인 화염 분출 및 오프가스가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 6. 전기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견인차로 이동시 소방펌프차가 동행하여 재발화에 대응해야하며, 부득이하게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 소화수조 등을 활용하여 재발화를 방지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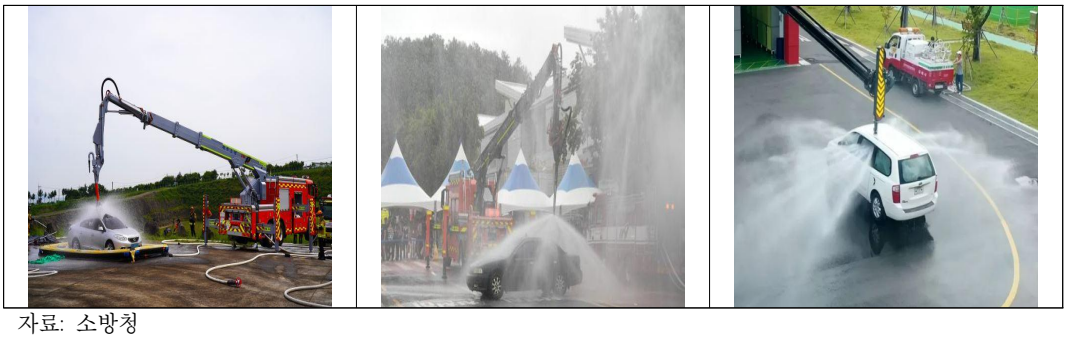
자료: 국립소방연구원

이러한 전기차 화재특성 및 대응 매뉴얼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무인파괴방수차 6대를 지방비 매칭(50%)를 통해 도입할 예정인데 전기차 화재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무인파괴방수차 세부운용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① 무인파괴방수차는 전기차 화재에 특화된 차량이 아닌 건물내부 화재 시 외벽이나 천장을 파괴하고 노즐을 내부에 진입시켜 다량의 물이나 소화약제를 살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장비임. 동 장비는 주로 하방향 주수를 위해 사용하는데, 관련 매뉴얼에 따라 상방향 주수가 필수적인 전기차 화재에 효율적일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소방청에 따르면 2023년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서 무인파괴방수차를 활용한 전기차 화재진압을 시연하였고, 2024년 10월 중앙119구조본부의 무인파괴방수차 운영 전문가 양성 특별교육 시 전기차 화재 대응훈련을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실제 전기차 화재진압 현장에서 무인파괴방수차를 활용한 사례가 없어 실효성은 불확실함.

[무인파괴방수차 화재진압 시연 사례 등]



자료: 소방청

③ 현재 소방청이 운영 중인 무인파괴방수차 차량의 전고는 3.68m~4.0m로 이러한 차량의 구조를 고려할 때 지하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에 무인파괴방수차를 활용할 수 없음.[12)]

이러한 지적에 대해 소방청은 무인파괴방수차는 패널[13)] 화재에 특화된 특수장비이지만, 다양한 방법의 주수가 가능하고 다량의 물을 사용하여 화재진압이 필요한 전기차 및 배터리 화재 등에 적용이 가능하므로 배터리 화재의 열폭주 및 폭발의 위험 상황에서 대원의 안전성을 제고 할 수 있다는 입장임.[14)]

그러나 초기 빠른 진압이 중요한 전기차 화재 상황에서 무인파괴방수차량을 원격조종하여 화점에 정확하고 빠르게 조준 후 물을 분사하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무인파괴방수차 구입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차량 구입 후 활용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15)]

---

1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 가목에 따르면 지하식 노외주차장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4.0m 이상의 지하주차장이 일반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13) 건축용 널빤지로 창고나 공장 등의 건축자재로 활용됨.

14) 추가로 소방청은 최근 가파르게 보급되고 있는 전기버스의 경우 ① 배터리가 대부분 지붕에 있고, ② 지붕이 금속재질로 되어 있어 감전의 위험이 크며, ③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어 무인파괴방수차와 같이 높은 위치에서 주수 가능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음.

15) 일선 소방관서의 수요를 면밀히 조사하여 전기차 화재진압에 필요한 다른 안전 장비 등을 구입하는 것 또한 전기차 화재진압 역량 강화의 방법이 될 수 있음.

4. 119빅데이터 분석운영 : 빅데이터 플랫폼의 활성화 노력 필요

가. 개 요

‘119빅데이터 분석운영’ 사업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 정책 수립 및 과학적 현장 대응을 위해 119빅데이터 플랫폼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00만원(△0.2%) 감액된 19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음.[16)]

[2025년도 119빅데이터 분석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119빅데이터 분석운영	1,910	1,907	△3	△0.2

[119빅데이터 분석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① 119빅데이터 분석: (’24) 6억 9,000만원 → (’25 예산안) 6억 9,000만원, 전년동
② 119빅데이터 운영: (’24) 7,000만원 → (’25 예산안) 6,700만원, △4.3%
③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24) 11억원 → (’25 예산안) 11억원, 전년동
④ 시각화SW 구매 : (’24) 5,000만원 → (’25 예산안) 5,000만원, 전년동

자료: 소방청

나. 검토의견

119빅데이터 분석운영 사업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종료된 이후 신규 데이터 등록 건수 및 데이터 거래 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은 소방안전에 대한 유·무상 데이터를 거래하는 플랫폼으로, 2020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26개월간 102억 8,600만원(정부지원금 92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구축되었음.

16) 일반회계-119빅데이터 분석운영(1131-311)(화재예방국)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비용]

(단위: 백만원)

구 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2023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전체 사업예산	정부지원금[1]		4,345	2,590	2,280	9,215	1,053
	자체부담금[2]	현금	56	26	29	111	-
		현물	467	236	256	959	-
합계			4,868	2,852	2,565	10,285	1,053

주 1) 2020~2022년까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출연금 예산이며, 2023년 정부지원금은 플랫폼 민간위탁을 위한 소방청의 예산임
2) 자체부담금은 플랫폼 개발에 참여한 업체들이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현물 부담금은 인력지원 형태로 공급됨

자료: 소방청

2022년 12월말까지 데이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금[17]이 종료됨에 따라 신규 데이터 등록 수 및 데이터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예를 들어 2022년 601건의 신규 데이터 등록건수는 2023년 206건으로 감소하였으며,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온라인 유상 데이터 거래실적 또한 2022년 약 2억 434만원에서 2023년 약 3,359만원으로 급감하였음.

[2020~2024년 5월말 기준 신규 119 데이터 등록 건수]

(단위: 건)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유상 데이터	513	908	365	130	-
무상 데이터	192	698	236	76	-
합계	705	1,606	601	206	-

주: 2024년의 1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의 등록현황임

자료: 소방청

[2021~2023년 유상 데이터 거래 금액]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유상 데이터 거래 금액	232,964	426,395	276,594
온라인	84,459	204,348	33,594
오프라인	148,505	222,047	243,000

자료: 소방청

17) 기업 및 소방산업기술원과 같은 기관에 3년 총액 49억 6,100만원이 지원되었음.

소방청은 관련 기업들이 원(raw)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18]를 구축하고 데이터 품질관리를 하는 과정에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금이 종료되자 신규 등록 건수와 거래 규모가 감소하는 측면이 있어 추가적인 정부 지원금이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정부 지원금에 의해서만 데이터 등록이 활성화되는 것은 플랫폼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신규 등록 데이터 수가 감소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타 플랫폼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방안전 분야 데이터를 위한 플랫폼이 비활성화되어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

따라서 소방청은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운용계획과 함께 신규 데이터 활성화 및 플랫폼 이용자 추가 유입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19]

18)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로, 다른 데이터를 정의하고 기술하는 데이터를 의미함.

19) 소방청은 연계 데이터 발굴, 데이터 수요 기업 발굴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인사혁신처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수입은 23조 1,43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524억원(5.2%) 증가함. 예산은 65억원으로 전년 대비 0.08억원(△0.1%) 감소한 반면, 기금은 23조 1,365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524억원(5.2%) 증가함.[1)]

[2025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65	65	0	△0.1
기 금	219,841	231,365	11,524	5.2
총수입	219,906	231,430	11,524	5.2

문의 : 박세경 예산결산조사관 sg.park@assembly.go.kr (02-6788-5698)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지출은 28조 4,885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8,346억원(6.9%) 증가함. 예산은 2,35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억원(4.9%) 증가하고, 기금은 28조 2,527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8,235억원(6.9%) 증가함.

[2025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2,247	2,358	111	4.9
기 금	264,292	282,527	18,235	6.9
총지출	266,540	284,885	18,346	6.9

나. 예산안

2025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62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0억원(47.6%) 증가함.

[2025년도 인사혁신처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420	620	200	47.6
합 계	420	620	200	47.6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6조 4,086억원으로 전년 대비 6,033억원(10.4%) 증가함.

[2025년도 인사혁신처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58,053	64,086	6,033	10.4
합 계	58,053	64,086	6,033	10.4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1개 기금(공무원연금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33조 7,737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947억원(7.6%) 증가함.

[2025년도 인사혁신처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공무원연금기금	313,790	313,790	337,737	23,947	7.6
합 계	313,790	313,790	337,737	23,947	7.6

주)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인사혁신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2개(43억 2,300만원)의 신규 사업이 편성됨.[2)]

그 중 ‘신규시설건립’ 사업은 전·현직 공무원과 그 가족이 이용하는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제공 목적의 원주문막 추모공원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2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은퇴지원교육수입대체경비’ 사업은 공무원 은퇴지원교육 사업을 통하여 퇴직 예정공무원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40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음(기존 고객지원사업에서 분리, 계획안은 전년과 동일함).

[2025년도 인사혁신처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계획안)
[공무원연금기금]		
1	신규시설건립	230
2	은퇴지원교육수입대체경비	4,093
총지출		4,323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인사혁신처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 ‘인사행정 한류확산’ 사업, ‘퇴직급여’ 사업 등 총 6개임.[3)]

[2025년도 인사혁신처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8,609	13,284	4,675	54.3
2	인사행정 한류확산	319	474	155	48.6
[공무원연금기금]					
3	퇴직급여	21,945,761	23,559,168	1,613,407	7.4
4	퇴직수당	2,746,498	3,097,663	351,165	12.8
5	주택사업관리	339,282	358,141	18,859	5.6
6	기타민간차입금이자상환	123	228	105	8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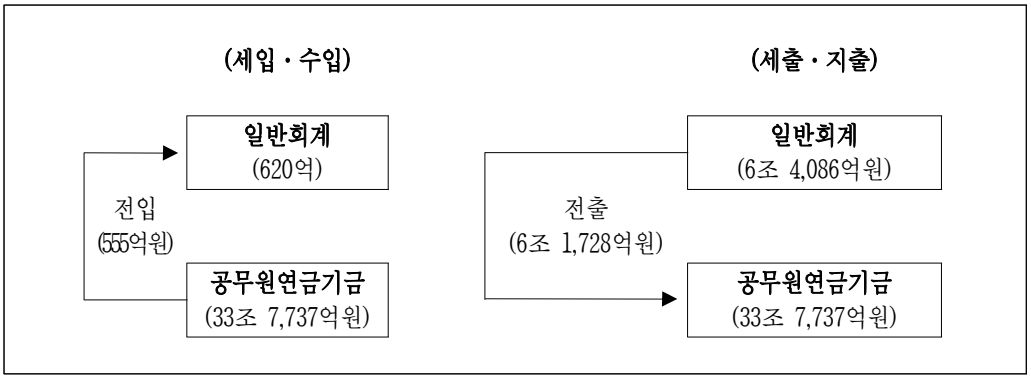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인사혁신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1개, 공무원연금기금 1개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6조 1,728억원이 전출되었음. 또한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반회계로 555억원이 전입되었음.

[인사혁신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국익증진과 정부경쟁력을 제고하는 인사정책 추진, 국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 인사혁신, 헌신과 열정을 다하는 공직여건 조성, 안정적인 공무원 연금재정 운용 및 기금 운용수익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들 수 있음.

2025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장·단기 국외훈련’ 사업은 훈련 목적과 관련성이 적은 훈련기관 및 훈련과제가 선정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등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임대주택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규모와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할 때 설계단계 등 사업 지연 우려가 있으므로, 대규모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장·단기 국외훈련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국외훈련이 이뤄지도록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장・단기 국외훈련’** 사업은 공무원의 장・단기 국외훈련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1억 6,600만원(22.9%) 증액된 438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5년도 장·단기 국외훈련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공무원인재개발	43,572	51,202	7,630	17.5
장・단기 국외훈련	35,646	43,812	8,166	22.9

이 사업은 20~30대 청년 공무원 사기 제고 및 역량개발 기회 부여를 위해 청년세대 대상 장・단기 국외훈련을 확대하여 2025년도 예산안이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음.

[장·단기 국외훈련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장・단기 국외훈련 (’24) 35,646백만원 → (’25요구) 43,812백만원 - 국외 장기훈련 38,357백만원(교육여비 25,053백만원, 학자금 13,304백만원) - 국외 단기훈련 5,455백만원(교육여비 4,521백만원, 학자금 934백만원)

자료: 인사혁신처

이 사업은 ① 각 부처의 훈련과제 및 훈련대상자 추천, ② 인사혁신처의 대상자 선발(과제심사 및 심층면접), ③ 선발대상자의 훈련기관 선정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짐.

4) 일반회계-공무원인재개발(1732-300)(인사관리국)

나. 검토의견

장·단기 국외훈련 사업은 훈련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해외 훈련기관이 선정되는 사례가 일부 존재하는데, 청년세대 공무원의 국외훈련을 비롯한 공무원 국외훈련이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훈련기관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인사혁신처는 2024년부터 청년세대 대상 장·단기 국외훈련을 통해 청년세대 공무원의 공직 매력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 결과 2024년 장기국외훈련 30명 선발, 단기국외훈련 25명 선발이 되었음.

그러나, 이들 중 2024년 9월 기준 '기관협의 및 파견준비' 상태인 인원이 2024년 장기국외훈련 선발인원 중 4명, 단기국외훈련 선발인원 중 22명으로 전체 2024년 선발 인원 55명 중 52.7%만이 실제 훈련인원에 해당함.[5)]

[2024년 청년세대 대상 장·단기 국외훈련 선발 및 훈련 현황]

(단위: 명)

구분	2024년 장기국외훈련	2024년 단기국외훈련
부처 추천인원	80	35
선발인원	30	25
실제 훈련인원	26	3
기관협의 및 파견준비 인원	4	22

자료: 인사혁신처

이 중 '기관협의 및 파견준비' 상태인 인원이 발생한 것은 이 사업이 선발된 훈련 대상자가 직접 해외 훈련기관을 선정하여 훈련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임.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는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외 훈련기관을 외국정부·국제기구·NGO·민간기관 위주로 선정하되, 영미권 대학연구소의 경우 분야별 40위권 이내 기관으로 제한하는 방침을 두고 있으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미비한 상황임.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선발된 훈련대상자가 직접 훈련기관과 훈련과제를 정하는 것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해당 분야나 직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처

5) 이처럼 선발인원의 절반가량이 실제 파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선발된 훈련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인사운영상 파견시점이 통상 11~12월에 이루어져 왔고, 연내에 선발인원 모두가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혹은 개별 공무원이 정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별도 가이드라인을 두지 않고 있다는 입장임.

그런데 실제 최근 공무원 해외 훈련기관 목록을 살펴보면, 교육목적의 효과적 달성과 관련성이 낮을 우려가 있는 기관이 포함되어 있고, 이 중 소규모 로펌 등도 포함되어 있어 가이드라인 등 관리의 필요성이 존재함.[6)]

실제 부처별 장기국외훈련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75명, 2022년 161명, 2023년 179명이 해외 연구소, 로펌 등으로 파견된 바 있음.

[최근 3년간 장기국외훈련 현황]

(단위: 명)

훈련형태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309	300	317
학위	134	139	138
직무훈련*	175	161	179

주) 직무훈련기관에는 연방정부, 국제기구, 연구소, 벤처기업, 로펌 등이 포함됨
자료: 인사혁신처

그러나 직무훈련 과제별로 살펴보면 훈련기관과 훈련과제 간 관련성이 적은 경우가 일부 존재함. 예를 들어 2021년 실시된 직무훈련 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에너지 대응전략 연구' 과제나 '개인 주도 의료정보 이용 활성화' 과제는 해외 로펌에서 직무훈련이 이뤄졌으나, 이는 반드시 로펌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과제라 보기 어려움. 그 외에도 '국방사이버분야 국제협력' 과제는 해외 대학 부설 연구소[7)]에서 직무훈련이 이뤄졌으나, 해당 연구소가 국방분야 특화 기관이라 보기 어려워 과제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여짐.[8)]

[최근 공무원 해외 훈련기관 중 해외 로펌 현황]

훈련기관명	훈련기관명(현지)
앙쿠라 컨설팅 그룹(미국, 유럽, 중동 등)	Ankura Consulting Group
라부아(프랑스, 파리)	Lavoix
맥밀란(캐나다, 밴쿠버·오타와 등)	Mcmillan, LLP
아이엠에이(스페인, 마드리드)	IMA Legal
반앤쏜버그(미국, 인디애나주)	Barnes & thornburg, LLP
조인타이드(중국, 베이징·상하이 등)	众成清泰律师事务所(JOINTIDE Law Firm)

6) 자료: 인사혁신처

7) 캐나다 빅토리아대학교 부설 연구소

8)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훈련기관 선정 시,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직무훈련기관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훈련과제와 관련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하거나, 학교

이처럼 장·단기 국외훈련 선발 이후 훈련기관 및 과제 선정에 대해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결과 훈련 목적과 관련성이 적은 기관이나 과제가 선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사혁신처는 단순히 훈련 대상자 선발에 그치지 않고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훈련기관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커리큘럼 및 학위과정의 일환으로 직무훈련기관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 훈련기관의 특성에 맞게 직무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임.

2. 공무원 재해예방사업 추진 사업(신규): 관련 법령 개정 등 사전 준비 철저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공무원 재해예방사업 추진’** 사업은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억 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9)]

[2025년도 공무원 재해예방사업 추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공무원 재해보상사업 운영	2,325	2,591	266	11.4
공무원 재해예방사업 추진	-	101	101	순증

이 사업은 2024년 8월 발표된「범정부 재해예방 종합계획」및 재해예방 체계 법제화 추진에 따라 신규로 편성된 내역사업임.

[공무원 재해예방사업 추진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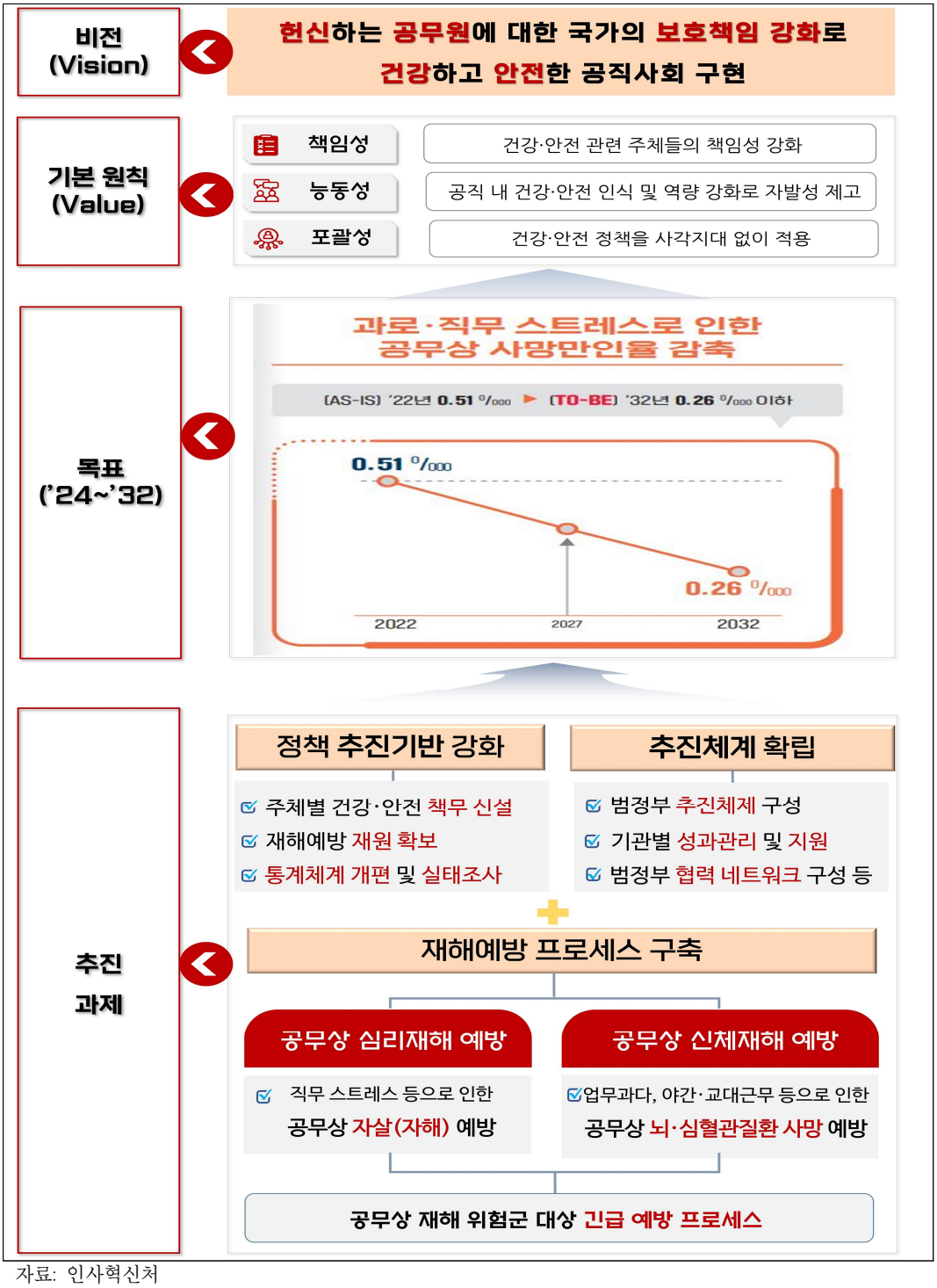
○ 공무원 재해예방사업 추진 : (’24) - → (’25요구) 101백만원 (순증)
- 범정부 재해예방 협의회 구성 및 운영비 : 200천원*5명*12회=12,000천원
- 위험요인 진단가이드 개발 : 39,000천원 × 1식 = 39,000천원
- 심리재해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 50,000천원 × 1식 = 50,000천원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2024년 8월「범정부 재해예방 종합계획(2024~2027)」에 기반하여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를 방지할 것을 발표하였음. 동 계획은 재해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재해예방 추진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9) 일반회계-공무원 재해보상사업 운영(2044-306)(재해보상정책관실)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 체계도]



자료: 인사혁신처

나. 검토의견

공무원 재해예방사업 추진 사업은 관련 법령상 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그 운영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공무원 재해예방을 위해 범정부 재해예방협의회(건강안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위험요인 진단 및 심리재해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개발을 내용으로 함.

그런데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10] 특히 범정부 재해예방협의회(건강안전협의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정책 협의를 하는 회의체이나, 그 운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임.

[범정부 재해예방협의회(건강안전협의회) 구성·운영안]

○ 現 마음건강협의체 개편(국가 → 국가+지방 / 마음건강 → 마음건강+신체건강) - (구성)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등 재해보상법 적용 기관(건강안전책임관, 담당자 등), 안전·보건분야 민간 전문가, 관련 기관 등 - (기능) 재해예방 전문성 강화, 제도 개선 의견수렴, 건강·안전 사각지대 발굴 등

자료: 인사혁신처

이에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재해예방 종합계획(2024~2027)」에 따른 정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2025년 중 국회 의결 후 2026년 중 시행을 목표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

10)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6조(재해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상 재해의 예방(이하 이 조에서 "재해예방"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의 마련
3. 재해예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4.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예방 관련 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공무상 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연구
3.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장비의 안전 점검 및 컨설팅
4. 재해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및 상담
5. 재해예방 관련 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
6.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중 재해예방사업 관련 내용]

제46조의2(건강안전관리체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안전담당관, 건강관리의, 건강관리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건강안전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2. 위험요인 진단 및 조치, 재발방지 대책 등 기관 내 건강안전 관리 절차
3. 건강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듣는 절차
4. 재해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건강안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필요한 정보의 교류 및 관련 정책의 협의 등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건강안전협의회를 두고, 위원장은 인사혁신처 차장으로 한다.
1.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건강안전책임관
2.「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 사무차장
3. 그 밖에 공무원 건강 및 안전 보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그 밖에 건강안전책임관의 지정 및 건강안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현행 법령상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정을 근거로 ‘범정부 마음건강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범정부 재해예방협의회(건강안전협의회)’로 확대·발전시키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범정부 재해예방협의회(건강안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명시적 세부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고, 협의회 위원으로 예상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 건강안전책임관 지정도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임.

따라서 공무원 재해예방사업 추진 사업, 특히 범정부 재해예방협의회 관련 내용은 법령 개정 및 관리체계 마련 등의 선행조치가 필요하므로, 향후 차질 없이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공무원연금기금】

<지 출>

3. 임대주택건립 사업(신규): 사업관리 철저 필요

가. 개 요

‘임대주택건립’ 사업은 무주택공무원에게 공급하기 위한 임대주택을 건립 또는 매입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45억 2,500만원(24.2%)이 증액된 232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음.[11)]

[2025년도 임대주택건립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임대주택건립	18,736	18,736	23,261	4,525	24.2

주) 2023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이 사업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이 직접 임대주택을 건립하거나, 임대주택이 부족한 지역 내 기존주택을 신규로 매입하거나, 공단이 직접 혹은 조합원으로 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짐.

[임대주택건립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고덕 8단지 재건축: 827백만원(복합사업지구 지정 149백만원, 사업계획승인 신청 678백만원)
○ 지방 임대주택 매입 10,000백만원 = 267백만원 × 37세대
○ 재건축(참여방식) 1,454백만원(대전중촌 525, 군산나운 929)
○ **세종1차 신규건립 10,980백만원(토지비 8,540, 설계비 2,440)**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이 중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공단이 직접 세종시에 임대주택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한 109억 8,0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공단은 1차 공급 임대주택 550세대 건립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3,00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세종1차 신규건립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1,441억원임.

11) 공무원연금기금-임대주택건립(3151-361)(공무원연금공단)

[세종 신규건립 사업 계획안]

구분	세대수	면적(전용)	사업부지	대지면적	입주시기
1차 공급	550*세대	22~46㎡	4-2생활권(UR1·2-1블록)	9,540㎡	'27년下
2차 공급	800세대	24~84㎡	5-1생활권(L2블록)	47,750㎡	'28년下
3차 공급	1,650세대	84㎡ 이하	6-2생활권	98,906㎡	'30년上
합 계	3,000세대	22~84㎡	-	156,196㎡	-

주) 1차 공급 550세대는 아름관 전환 35세대를 포함한 계획임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나. 검토의견

임대주택건립 사업 중 세종1차 신규건립 사업은 2025년도 계획안에 토지매입비와 설계비를 동시 계상하고 전체 설계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하였는데, 총사업비 1,441억원 규모의 대규모 건립사업이란 점을 고려할 때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세종1차 신규건립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안에는 토지매입을 위한 건설보상비(410-00목) 85억 4,000만원과 설계를 위한 실시설계비(420-02목) 24억 4,000만원이 함께 계상되어 있음.

[세종1차 신규건립 사업 연차별 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5년계획(안)	'26년전망	'27년전망	'28년전망
토지비	16,305	8,540	6,988	-	777
설계비	6,100	2,440	3,050	-	610
감리비	5,552	-	1,110	2,776	1,666
공사비	115,801	-	22,832	57,083	35,886
시설부대비	342	-	68	171	103
합 계	**144,100**	**10,980**	**34,048**	**60,030**	**39,042**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재정법」 제39조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경우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만을 해당 연도 예산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12)]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사업의 경우 동법 제39조제1항 후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하에 토지매입비와 설계비를 동시에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이는 공무원연금공단이 기획재정부와 직접적으로 협의한 것이 아니어서 「국가재정법」 제39조제1항 위반 소지가 있음.[13)]

또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별표1 공종별 설계기간]에 따르면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인 건축 사업의 경우 기본설계는 9.5개월, 실시설계는 8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실시설계 시 기본설계를 함께 수행한다 하더라도 실시설계기간의 1.3배~1.5배에 해당하는 10.4개월~12개월 가량 소요될

12) 「국가재정법」
제39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 실시설계비 · 보상비(댐수몰지역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와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완공 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단계 이상의 예산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4조(대규모 개발사업)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13) 공무원연금공단은 기획재정부와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예산내용, 예비타당조사결과 등 사업설명을 통한 협의로 토지매입비와 설계비를 동시에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설계비를 총설계비 중 40%만큼 편성한 것은 사업 지연 우려로 연내 집행가능성 대비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임.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상 공종별 설계기간]

(단위 : 개월)

공종	기본설계			실시설계		
	100-500억	500-1,000억	1,000억이상	100-500억	500-1,000억	1,000억이상
도로	8	9	14	8	12	14
철도	12	13	15	12	15	18
지하철	13	16	17	24	27	30
공항	12	13	16	12	13	15
하천	12	18	24	7	10	12
항만	12	13	14	10	11	12
댐	13	14	15	14	15	16
상하수도	16	19	21	14	16	18
건축	**4.5**	**7**	**9.5**	**7**	**7.5**	**8**
단지조성	4	-	-	7	-	-

주 1)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기간은 관계기간 협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 평가 등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2) 단순, 보통, 복잡 등에 따라 공종별 설계기간에 ±10%의 범위내에서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음
3) 실시설계시 기본설계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실시설계기간의 1.3 ~ 1.5배를 적용할 수 있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은 세종 1차 신규건립 사업의 공급 세대수 550세대 규모와 유사한 과거 임대주택 건립 사례에서 설계용역업체 선정부터 설계완료까지 10개월이 소요된 바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10개월 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임.[14]

14) 497세대 규모 충남내포 건립 사업의 설계기간은 10개월(2013.3.~2014.1.), 499세대 규모 경북안동 건립 사업의 설계기간은 10개월(2012.10.~2013.8.)이었음.

[2025년 세종1차 신규건립 사업 추진일정안]

추진 내용	일정	비고
설계용역업체 선정	'25. 1월	
기본설계	'25. 2월 ~ '25. 8월(7개월)	사업계획 승인
실시설계	'25. 9월 ~ '25. 11월(3개월)	공사비 산출 및 발주
건설공사	'26. 2월 ~ '27. 12월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시한 과거 사례와 달리 이 사업은 총사업비 규모가 1,441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이고, 10년 전의 사업을 예로 들어 설계기간을 10개월 이내로 전망하는 것은 타당치 않아 보임.

실제로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추진하는 '합강동(행복도시 5-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452억원으로 이 사업보다 작은 규모에 해당하나, 설계공모 3개월, 기본설계 7개월 등으로 10개월 이상 소요되어 사업기간이 당초 2021년~2024년에서 2021년~2026년까지 연장된 바 있음.

따라서 이 사업은 총사업비 규모와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할 때 설계단계 등 사업 지연 우려가 있으므로, 대규모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13억원으로, 전년 대비 87억원(△87.0%) 감소함.[1)]

[2025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100	13	△87	△87.0
총수입	100	13	△87	△87.0

문의 : 오민석 예산결산조사관 ohmin3259@assembly.go.kr (02-6788-5701)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3,635억원으로 전년 대비 4,937억원(△57.6%) 감소함.

[2025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8,572	3,635	△4,937	△57.6
총지출	8,572	3,635	△4,937	△57.6

나. 예산안

2025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13억원으로 전년 대비 87억원(△87.0%) 감소함.

[2025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00	13	△87	△87.0
합 계	100	13	△87	△87.0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3,635억원으로 전년 대비 4,937억원(△57.6%) 감소함.

[2025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8,572	3,635	4,937	△57.6
합 계	8,572	3,635	4,937	△57.6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에는 신규사업이 편성되지 않았고[2] 주요 증액사업도 없음.

다만, 2026년에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경비로 4,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인건비 단가 증가에 따라 인건비, 청사관리 세부사업이 각각 39억 9,800만원, 10억 4,600만원 증액되었음.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국회의원선거 종료에 따른 선거경비 순감으로 대부분의 사업비가 감액되어 전체 예산 3,635억원 중 인건비가 2,414억원으로 인건비 비중이 66.4%를 차지함.

2025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금으로 충당되는 선거보전비용이 미반환되어 당선무효자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징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둘째, ‘재보궐선거관리 계도홍보’ 사업의 경우 하반기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용역 예산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기타경상이전수입: 선거보전비용 반환금의 철저한 수납 필요

가. 개 요

‘기타경상이전수입’ 은 공직선거후보자 기탁금·선거보전비용 국고귀속액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금 등이 수납되는 세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4억 4,000만원 감소한 11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음.[3)]

[2025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9,565	1,125	△8,440	△88.2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 세부내역]

○ 국회의원재보궐선거 후보자 기탁금 국고귀속액 2억 2,500만원
- 귀속대상 후보자 2.5명 × 6선거구 × 기탁금 1,500만원
○ 국회의원선거 당선무효된 자 등 선거비용보전 반환금: 8억원
- 10명 × 보전비용 8,000만원
○ 기타 과오지급금 회수 등: 1억원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일반회계-기타경상이전수입(12-57-571)(기획국)

나. 검토의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금으로 충당되는 선거보전비용이 미반환되어 당선무효자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징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공직선거후보자 기탁금의 국고귀속액, 당선무효된 자 등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 반환금, 국고귀속후원금, 기타 과오지급금 회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타경상이전수입 개요]

구분	내용
공직선거후보자 기탁금 국고귀속액	국가선거에서 후보자별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15미만 득표자 등 선거일 후 30일 이내 기탁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기탁금은 국고 귀속
당선무효된 자 등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 반환금 등	국가선거에서 후보자,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무효 형이 확정되어 보전금 등 반환사유 발생 시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국고귀속후원금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정치자금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인 경우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후원인에게 반하거나 반환할 수 없는 경우 국고 귀속
기타 과오지급금 회수 등	과오지급금 회수 및 전세보증금 반환 등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근거하여 선거비용 보전 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반환(기탁금)·보전받은 금액(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4)]

4)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2023년까지의 국가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미반환액의 미수납현황을 기간별로 보면, 2023년에 반환명령된 1억 8,100만원은 전액 반환되었으나, 2023년 이전의 미반환액까지 포함하면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선거보전비용 등의 미반환액은 총 11억 6,400만원이며 모두 임의체납 되었음.

[국가선거비용 및 기탁금 미반환액의 미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반환명령액	미반환액	주요 미반환 사유		
			납기미도래[5]	징수유예[6]	임의체납[7]
2018년 이전	6,961	952	-	-	952
2019	210	-	-	-	-
2020	240	134	-	-	134
2021	464	-	-	-	-
2022	78	78	-	-	78
2023	181	-	-	-	-

주) 2024년 1월 31일 기준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체납기간별로는 11억 6,400만원 중 9억 5,200만원(81.8%)이 5년 이상 체납된 금액이며, 2억 1,200만원(18.2%)가 체납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하에 해당하여 대부분의 미반환액이 장기 체납금액임.

[국가선거비용 및 기탁금 미반환액 체납기간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체납기간						계	
	1년 미만		1~5년		5년 이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체납기간별 현황	-	-	2	212	9	952	11	1,164

주) 2024년 1월 31일 기준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납기미도래'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3제4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함.

6) '징수유예'란「국세징수법」제13조에서 제17조까지 규정된 바에 따라 조치한 경우로서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하는 경우를 의미함.

7) '임의체납'이란 납기미도래나 징수유예가 아닌 기타의 사유로 체납한 경우로서 반환자가 비용을 반환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액을 내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보전비용 미반환금 등의 소멸시효(5년)을 중단하기 위하여 소멸시효 연장 재판청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8)]

미반환금액에 대한 강제징수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되어 있지 않고 당선무효가 된 사람 등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징수 위탁하는 이외에 「공직선거법」상 선거보전비용반환 등의 실효적인 규정이 없으며, 징수를 위탁한 경우에도 선거비용반환대상자가 보유한 재산이 없어 관할세무서에서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선거비용 미반환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음.[9)]

현행 제도의 한계로 선거비용 보전금 등을 반환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선거보전비용은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인 만큼 국가선거보전비용 등이 당선무효자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히 환수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보전비용 환수율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불납결손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수납 선거보전비용 반환금 채권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선거보전비용 미반환액 징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10)11)]

---

8)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 ·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9) 추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세무서에 징수 위탁 이후에는 세무서 내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세무서가 선관위에 통보하는 절차나 의무 규정도 없어 선관위가 세무서에 수시로 확인하거나 협조를 기대하는 외에는 적절한 관리수단을 강구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음.

10) 제21대국회에서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되었음 (의안번호 제2113909호, 제2125417호)

11) 미반환액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징수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도 있음.

<세 출>

2. 재보궐선거관리 계도홍보 사업(신규): 하반기 유권자 의식조사 감액 조정 검토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재보궐선거관리 계도홍보’** 사업은 재보궐선거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3,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2)]

[2025년도 재보궐선거관리 계도홍보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공명선거기반조성	1,354	740	△614	△45.3%
재보궐선거관리 계도홍보	-	31	31	순증

[재보궐선거관리 계도홍보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언론매체 홍보 1,500만원(순증)
- 200만원×7선거구
○ 인쇄물 홍보 6,00만원(순증)
- 150만원×2종×2회
○ 유권자 의식 조사 1,000만원(순증)
- 1,000만원×1회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 일반회계-공명선거기반조성(1133-332)(선거정책실)

나. 검토의견

202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후에 수행하는 유권자 의식조사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201조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2025년 하반기에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재보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는 재보궐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도, 투표 참여 의식,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인식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재보궐선거 이후에 실시하는 것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상반기’ 재보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를 위해 재보궐선거 관리 세부사업에 1,700만원을 일반연구비(260-01)목으로 편성하고, ‘하반기’ 재보궐선거 유권자의식조사를 위해 공명선거기반조성 세부사업에 유권자의식조사 예산 1,000만원을 일반용역비(210-14)목으로 신규 편성하였음.

[유권자 의식조사 사업 현황]

세부사업	재보궐선거관리(1131-303)	공명선거기반조성(1133-332)
내역사업	선거관리일반	재보궐선거관리 계도홍보
조사시기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	202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후
표본설계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의 성별·연령별·지역(실시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의 성별·연령별·지역(실시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조사규모	1,000명	1,000명
비목	일반연구비(260-01)	일반용역비(210-14)
금액	1,700만원	1,000만원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상반기와 하반기는 선거지역, 선거인 수, 선거 규모 등이 달라 각각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실시 가능성이 낮은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 및 교육감의 재보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 및 10월 첫 번째 수요일 연 2회로 규정하고 있음.[13] 그러나 2025년 10월 재보궐선거의 경우 2026년 지방선거(2026년 6월 3일 예정)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201조[14]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2025년 3월 1일 이후로 궐위 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가능성이 높음.[15]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경우 2022년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있는 사유로 실시하지 않았음.

따라서 2025년 하반기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보궐선거 후에 수행하는 ‘하반기’ 유권자의식조사 연구용역 예산 1,000만원은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3)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② 보궐선거 · 재선거 · 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 폐지 · 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 · 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 · 재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각 목에 따른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가.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 · 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 · 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 · 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14)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① **보궐선거 등**(大統領選擧 ·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任期滿了日까지의 기간이 1年 이상인 때에 再選擧 · 延期된 選擧 또는 再投票事由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궐원된 의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5)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는 2025년 상반기에 1회 실시하며,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없음.[1)]

2025년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169억원으로 전년 대비 2억원(0.7%) 증가함.

[2025년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예 산	167	169	2	0.7
총지출	167	169	2	0.7

문의 : 박세경 예산결산조사관 sg.park@assembly.go.kr (02-6788-5698)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나. 예산안

2025년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음.

2025년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169억원으로 전년 대비 2억원(0.7%) 감소함.

[2025년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67	169	2	0.7
합 계	167	169	2	0.7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에는 신규사업이 없고,[2] 주요 증액사업이 없음.[3]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간 거래는 없음.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167억 4,900만원 대비 1억 2천만원이 증액된 168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2025년 11월 중 종료[4]됨에 따라, 남은 기간의 조사 활동과 위원회 정리 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음.

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일은 2021년 5월 27일로, 연장을 포함한 조사기간은 2025년 5월 26일까지이며, 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고 기한은 2025년 11월 26까지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5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 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②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